

軍

Military History

史

2021. 9. 제120호

- 6·25전쟁 시기 ‘세균전’ 설 제기 과정과 내막
- 1954년 밴 플리트 사절단의 동아시아 냉전 구상과 한미관계의 구성
- 주월한국군의 중대전술기지 운용이 지닌 이상과 현실
– 독꼬 전투(1966)를 중심으로 –
- 러일전쟁 이후 러시아 극동의 방위계획과 재무상과 육군상의 정책대립
– 안중근의 하얼빈의거와 관련하여 –
- 조선후기 충청도 안흥첨사의 위상과 재임실태

[서 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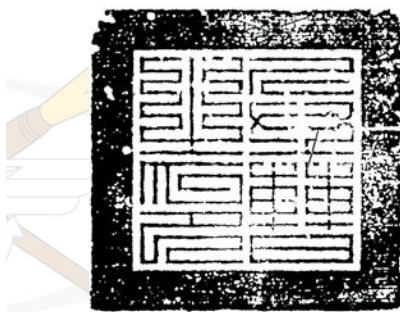
- 국제관계의 구조 속에서 임진전쟁을 재조명하다
– 김문자 저, 『임진전쟁과 도요토미 정권』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軍史

第120號
2021. 9.



國防部 軍史編纂研究所

Contents | 2021. 9. 제120호

- | | | |
|----|--|-----|
| 1 | ▶ 6·25전쟁 시기 ‘세균전’ 설 제기 과정과 내막 | 전예목 |
| 43 | ▶ 1954년 밴 플리트 사절단의 동아시아 냉전 구상과
한미관계의 구성 | 이동원 |
| 79 | ▶ 주월한국군의 중대전술기지 운용이 지닌 이상과 현실
- 독꼬 전투(1966)를 중심으로 | 심호섭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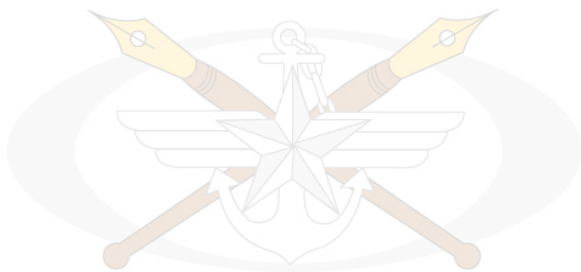


軍史



Contents | 2021. 9. 제120호

- 131 ▶ 러일전쟁 이후 러시아 극동의 방위계획과 재무상과 육군 상의 정책대립 최덕규
- 안중근의 하얼빈의거와 관련하여
- 173 ▶ 조선후기 충청도 안흥첩사의 위상과 재임실태 문광균
- 225 ▶ [서평] 국제관계의 구조 속에서 임진전쟁을 재조명하다 김정태
- 김문자 저, 『임진전쟁과 도요토미 정권』



본 저작물은 정부예산으로 발간하였으므로 기관(부대) 자산으로 영구보존하시기 바라며, 보관이 불가능할 경우 당 연구소로 회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1, No. 120, pp.1-41
<https://doi.org/10.29212/mh.2021..120.1>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6·25전쟁 시기 ‘세균전’ 설 제기 과정과 내막*

전예목**



1. 머리말
2. ‘세균전’ 설 제기 과정
3. ‘세균전’ 설의 내막
4. 맺음말

1. 머리말

불과 몇 개월 사이 낙동강부터 압록강까지 전선이 급격하게 전환

* 이 글은 전예목, “한국전쟁기 북한의 ‘세균전’ 주장과 그 활용,” 한양대학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21, 1-39쪽을 수정·보완함. 또한 이 글은 제5회 민연 젊은 한국학 아카데미(2020.12.17), “한국전쟁 시기 북한의 동원 정치 및 외교 전략 연구”에서 일부 내용이 발표됨. 이 글을 심사하고 귀중한 조언을 준 네 분의 심사 위원에게 감사 말씀을 올린다.

** 한양대학교 사학과 석사 졸업, 이메일: 1xioix1@hanyang.ac.kr

되었던 6·25전쟁¹⁾ 초기와 달리, 1951년 중반부터 전쟁은 소강국면에 접어들었고 정전회담이 진행되었지만 회담도 지지부진하였다. 칼과 펜이 모두 통하지 않는 상황에서 전장에는 ‘세균 무기’라는 신무기(新武器)가 등장하였다. 이에 공산 측은 미군에 대해 ‘세균전’ 혐의를 제기하였고 동시에 전쟁에 참여하는 미국에 대한 국제적 여론을 악화시키기 위해 ‘세균전’ 혐의를 이용한 전 세계적인 선전전을 펼쳤다. 많은 연구자들이 미군이 ‘세균전’을 실제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하였지만 지금까지 명확한 결론이 나지는 않았다.

6·25전쟁 시기 ‘세균전’ 설(說)의 진위를 밝히고자 한 연구는 ‘세균전’이 미군에 의해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보는 측²⁾과 그렇지 않은 측³⁾으로 크게 양분되어 연구되어 왔다. 세균전 의혹이 사실이라고

1) 학계에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한반도에서 진행된 전쟁을 부르는 명칭은 크게 ‘6·25전쟁’과 ‘한국전쟁’으로 나뉜다. 먼저 ‘한국전쟁’이라는 명칭은 그 가리키는 바가 모호하며 또한 전쟁의 성격을 외국의 시선으로 보아 자국의 역사를 주변적으로 인식하게 한다는 비판이 있다(김학준, 『6·25전쟁에 관한 몇 가지 예비적 토론』, 『탈냉전시대 한국전쟁의 재조명』, (서울: 백산서당, 2000), p.26, p.30). 다만 ‘한국전쟁’이라는 용어가 모호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령 ‘프랑스 혁명’, ‘미국 혁명’이라는 용어가 그 나라의 모든 혁명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듯이 ‘한국전쟁’도 한국에서 일어난 모든 전쟁이 아니라 ‘특정한 역사적 사건’으로 인식되고 있다(박명림, 『한국전쟁/6·25를 기억하는 방식』, 역사비평편집위원회, 『역사용어 바로쓰기』, 역사비평사, 2006, p.195). 반면에, ‘6·25전쟁’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때의 대표적 비판은 다음과 같다. 북한의 남침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6·25전쟁’이라는 명칭은 6월 25일 남침을 침략한 북한을 증오하는 것을 넘어 6·25전쟁(한국전쟁)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통해 더 많은 교훈을 배우는 것을 방해할 여지가 있다(박명림, 같은 책, p.182).

2) Stephen Endicott, “Germ Warfare and ‘Plausible Denial’: The Korean War, 1952–1953,” *Modern China* 5, no. 1, (1979): 79–104; Stephen Endicott, and Edward Hagerman, *The United States and Biological Warfare: Secrets from the Early Cold War and Korea*,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98); Thomas Powell, “Biological Warfare in the Korean War: Allegations and Cover-Up,” *Socialism and Democracy* 31, no. 1, (2017): 23–42; 강정구, 『한국전쟁과 미국의 세균전』, 『분단과 전쟁의 한국현대사』, (서울: 역사비평사, 1996).

주장하는 측의 대표적인 학자로 엔디코트(Endicott)가 있다. 엔디코트는 미국이 '세균전'을 실시하였다는 전제⁴⁾ 하에 미국의 세균 무기 사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찾고자 하였다. 그는 미국의 여러 문서고에 소재한 문헌을 조사하는 작업을 통해 중국 당국이 제기한 '세균전' 설을 입증할 수 있는 다양한 정황 증거를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비정규전과 관련하여 CIA가 생물학전에 개입하였을 가능성에 대한 의혹⁵⁾, 제581 공중재보급 및 통신비행단(581st Air Resupply and Communications Wing)이 사용하던 채프 디스펜서(chaff dispenser)⁶⁾를 통해 박테리아나 곤충을 넣을 수 있는 벧짚이나 나뭇잎을 살포하였을 가능성⁷⁾, 1951년 11월 대통령 산하 심리전략위원회(Psychological Strategy Board)에서 핵무기나 생물학 무기 사용을 암시할 수 있는 "신무기(Novel Weapons)"에 대한 성명서를

3) Kathryn Weathersby, "Deceiving the Deceivers: Moscow, Beijing, Pyongyang and the Allegations of Bacteriological Weapons Use in Korea," *Cold War International History Project Bulletin* 11, (1998): 176-185; Milton Leitenberg, "New Russian Evidence on the Korean War Biological Warfare Allegations: Background and Analysis," *Cold War International History Project Bulletin* 11, (1998): 185-199; Milton Leitenberg, "China's False Allegations of the Use of Biological Weapons by the United States during the Korean War," *Cold War International History Project Working Paper* 78, (2016): 1-82; Tom Buchanan, "The Courage of Galileo: Joseph Needham and the 'Germ Warfare' Allegations in the Korean War," *History* 86, no. 284, (2001); 조성훈, 「한국전쟁의 세균전 논쟁 비판」, 『군사』 제41호, (2000); 황영린, 「왜 거짓말을 하였는가?」, 『생태환경과 역사』 제2호, (2016).

4) 미국이 '세균전'을 실시하지 않았다면 '세균전'에 대한 직접적인 근거는 발견할 수 없다. 그러나 엔디코트가 '세균전'에 대한 '증거'를 찾으려고 하였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가 미국에 의한 '세균전'을 이미 전제하고 연구를 진행하였음을 추론할 수 있다. 반면에, 미국의 '세균전'의 실사를 전제하지 않은 연구는 소련, 북한, 중국이 내놓은 '증거'의 신빙성을 조사하는 연구일 것이다. 이것은 웨더스비와 라이텐버그가 취한 연구 방법이다.

5) Endicott and Hagerman, *The United States and Biological Warfare*, p.142.

6) 채프 디스펜서의 원래 기능은 비행기로부터 금속 조각을 아래로 살포하여 적의 레이다를 교란하는 것이다.

7) Ibid., p.123.

발표한 사건⁸⁾ 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엔디코트는 결정적 증거를 찾지 못하였다. 그 대신 전쟁 기간 동안 미국이 생물학 무기 실험을 하였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일반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미국의 문서고에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결론만 내릴 수 있었다.⁹⁾ 한국에서는 강정구¹⁰⁾가 1952년 당시 공산 진영이 기획한 국제과학위원회(International Scientific Commission, ISC)의 보고서와 엔디코트의 연구 내용을 재확인하는 방식으로 세균전이 사실임을 입증하려고 시도하였다.

반면에 ‘세균전’ 설이 공산 진영의 날조라고 주장하는 학자는 우드로 윌슨 센터(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 for Scholars)의 냉전 국제사 프로젝트(Cold War International History Project)에 참가하였던 학자인 캐서린 웨더스비(Kathryn Weathersby)와 밀턴 라이텐버그(Milton Leitenberg)가 있다. 웨더스비¹¹⁾와 라이텐버그¹²⁾는 1998년 『산케이신문[産經新聞]』의 기사를 통해 얻은 12개의 러시아 연방 대통령 문서관(Архив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¹³⁾ 소장 문헌을 통해 미군에 대한 ‘세균전’ 설이 허구임을 밝혀내고자 하였다. 12개의 문헌은 1952-1953년 ‘세균전’ 설과 관련하여 소련, 중국, 북한 수뇌부 사이에 오고 갔던 문서였다. 이를 통해 당시 중국과 북한이 소련의 허락 혹은 도움으로 세균전 혐의에 대한 증거를 조작하였음을 입증하고자 하였다. 이 소련 문서들은 원본이 아니라 원본의 일부를 수기(手記)로 옮겨 적은 것이기에 원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명이나 문서 번호와 같은

8) Ibid., pp.127-128.

9) Ibid., pp.188-189.

10) 강정구, 위의 책.

11) Weathersby, “Deceiving.”

12) Leitenberg, “New Russian Evidence.”

13) 이후에는 표기 편의상 알파벳으로 표시하여 “Archive of the Presid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APRF)”으로 표기하도록 한다.

정보가 없다. 하지만 웨더스비는 사본에 나타나는 인물, 시간, 사건 등이 다른 사료에서 서술하는 것과 일치하므로 사본의 내용이 조작될 가능성은 적다고 판단하였다.¹⁴⁾

한국의 조성훈¹⁵⁾은 1951년과 1952년에 공산 진영에서 제기하였던 '세균전' 설에 대한 쟁점을 분석함으로써 미군의 '세균전' 실시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이었다. 특히 미군이 세균전을 실시할 능력이 없었다는 점, 미군이 공산 진영의 전쟁포로를 이용하여 세균 실험을 하였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점, 미군 공군 포로에 의한 세균전 시행 자백은 강압과 회유에 의해 쉽게 도출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공산 진영의 주장은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였다.

이후 공산 진영의 세균전 증거 조작을 입증할 수 있는 사료들이 추가로 발견되었고 라이텐버그는 새롭게 발견된 사료를 반영한 글을 2016년에 발표하였다. 이를 통해 그는 기존 입장을 더욱 강화할 수 있었다.¹⁶⁾ 새롭게 발견된 사료들은 크게 중국 측 문서와 러시아 측 문서로 나뉜다. 중국 측 문서로 2013년 11월 『염황춘추(炎黃春秋)』¹⁷⁾에 게재되었던 우즈리(吳之理)의 회고

14) Weathersby, "Deceiving," p.176.

15) 조성훈, 「한국전쟁의 세균전 논쟁 비판」, 『군사』, 제41호, (2000).

16) Leitenberg, "China's False Allegations."

17) 『염황춘추』는 1991년 두다오정(杜導正)을 포함한 개혁적 성향의 공산당 원로들이 창간한 잡지이다. 개혁적 성향 탓에 창간 초기부터 중국 정부와 마찰이 있었고 시진핑이 집권하면서 알력이 심해졌다. 급기야 2016년에는 기존 경영진들이 면직되었고 정간되었다. 이후 친정부측 인사로 구성되어 관변화되었으며 지금은 이름만 유지하고 있다(「개혁논조 월간지 '염황춘추' "사장 나이 많다" 교체 명령」, 『조선일보』, 2008.11.5; 「'사상통제' 고삐 죄는 시진핑...장쩌민·후진타오보다 강경」, 『조선일보』, 2016.8.6). 공식 홈페이지에는 이전 경영진 시기에 작성된 기사를 모두 삭제하였다. 한편 CNKI(China National Knowledge Infrastructure) DB를 통해서 2016년 이전의 기사를 볼 수 있지만 우즈리의 회고록이 실린 기사만은 CNKI에서 볼 수 없도록 기사를 제공하지 않고 있으며, 2013년 11월에 발간된 인쇄판을 통해서만 기존 기사를 확인할 수 있다.

록¹⁸⁾이 있다. 이 회고록은 시진핑의 정치적 통제가 본격화되기 전인 집권 초기에 공개되었다. ‘세균전’ 사건 당시 인민지원군 위생 부장이었던 우즈리의 회고록은 1997년 9월에 작성되었으나 그의 사후(死後) 약 15년 만에 공개되었으며 여기에 중국 측이 어떤 방법으로 증거를 조작하였는지 비교적 자세히 나와 있다. 러시아 측 문서는 2010년 러시아 국립 사회 정치사 문서관(Россий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архив социально-политической истории, РГАСПИ)¹⁹⁾에서 공개한 여섯 개의 새로운 문서(스탈린, 마오쩌둥, 저우언라이 사이의 전문), 그리고 2016년에 러시아 국립 현대사 문서관(Россий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Архив Новейшей Истории, РГАНИ)²⁰⁾에서 발견한 두 개의 문서가 있다. 라이텐버그에 의하면 이 두 개의 문서는 1998년 『산케이신문』에서 공개된 소련 문헌 중 세 개가 진본임을 밝혀주었다. 이를 통해 1998년에 공개된 소련 사료에 대한 전반적인 신빙성을 높였다. 대부분의 문서가 1953년 스탈린 사후 권력 다툼 시기에 발생한 문서이기에 대규모 ‘세균전’ 선전이 이루어진 1952년의 상황은 알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지만, 동시에 1952년의 상황을 비교적 자유롭게 언급할 수 있었다는 장점도 있다. 이외에 황영원(黃永遠)도 우즈리의 회고록을 주로 인용하면서 ‘세균전’ 설의 조작을 주장하였다.²¹⁾

한편 톰 뷰케넨(Tom Buchanan)은 영국의 제국 전쟁 박물관(Imperial War Museum, IWM)이 보유하고 있는 조셉 니덤(Joseph

18) 우즈리의 회고록은 1997년 9월에 작성되었으나 2008년 그가 사망한 후 발견되었다. 그리고 2013년 11월에 가서야 중국의 개혁적 성향의 잡지인 『炎黃春秋』에 실리게 되었다(Leitenberg, “China’s False Allegations,” p.16).

19) 이후에는 표기 편의상 알파벳으로 하여 “Russian State Archive of Socio-Political History (RGASP)”으로 표기하도록 한다.

20) 이후에는 표기 편의상 알파벳으로 하여 “Russian State Archive of Contemporary History (RGANI)”으로 표기하도록 한다.

21) 황영원, 「왜 거짓말을 하였는가?」, 『생태환경과역사』, 제2호, (2016).

Needham)의 개인 서신이나 영국 외무성의 각종 문서를 통해 니덤이 주도하였던 국제과학위원회(International Scientific Commission, ISC) 보고서의 진위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중국 정부가 국제과학 위원단의 활동을 제한하여 지정된 곳 이외에는 조사할 수 없었던 사실과 니덤 스스로도 처음에 자신의 전공 분야가 아니라서 국제과학 위원단의 조사원 중 한 명으로 참가하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사실 등을 새롭게 밝혀냈다. 이를 통해 국제과학위원단의 보고서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결론 내렸다.²²⁾

‘세균전’ 설의 진위에 대한 연구 성과를 종합하자면 다음과 같다. ‘세균전’ 설 진위에 대한 연구는 당시 공산 진영 측이 미군의 ‘세균전’ 설을 입증하기 위해 제시한 증거들이 조작된 것이라는 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이것은 공산 진영에 속한 ‘증거’ 조작 행위 참가자의 증언과 관련 공문서를 통해 드러났다.

그러나 기존 연구에서 북한의 사료와 해외의 사료를 종합하여 ‘세균전’ 설 제기 과정과 그 내막을 살펴보고자 하는 시도는 제한적이었다. 일부 지역에서 생산된 사료만의 사용은 6·25전쟁 시기 ‘세균전’ 설 제기 과정의 양상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일을 어렵게 하였다. 본고는 이전의 연구의 한계와 성과를 바탕으로 비록 공산 측 사료에 대한 접근이 제한적이지만 최근 발견된 중국과 러시아 사료뿐만 아니라 한국, 중국, 미국, 영국 등 다양한 나라의 도서관과 문서고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료를 가능한 폭넓게 활용하였다. 이로써 북한을 비롯한 공산 진영이 ‘세균전’ 설을 제기한 과정과 그 내막을 살펴보고자 한다.

22) Buchanan, “The Courage,” p.510, 512, 5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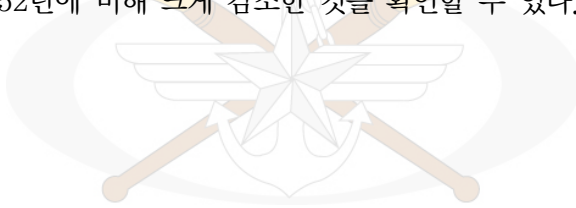
2. ‘세균전’ 설 제기 과정

6·25전쟁 시기 ‘세균전’ 선전 양상은 북한의 대표적 기관지인 『로동신문』과 『민주조선』의 기사 제목에서 ‘세균전’ 설과 관련된 어휘가 나타난 빈도를 통해서 파악될 수 있다. 전쟁 시기 ‘세균전’과 ‘세균 무기’라는 단어가 기사 제목으로 등장한 횟수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그림 1>²³⁾과 같으며 1951년, 1952년에 등장한 횟수를 표로 나타낸 것은 <표 1>과 같다. 전쟁 시작부터 1951년까지 ‘세균전’과 ‘세균 무기’가 등장한 횟수는 총 38회이다. 이전에는 ‘세균전’ 혹은 ‘세균 무기’의 등장이 거의 없다가 1951년 5월과 6월에 집중적으로 총 23회 등장하였고, 같은 해 12월에 11회 등장하였다.

1952년의 경우 1952년 3월부터 5월까지 단어 등장 횟수가 극적으로 증가한다. 세균 무기 사용 혐의가 본격적으로 제기되었던 1952년은 3월의 81회를 정점으로 정전협정이 체결된 1953년 7월 27일까지 총 264회 등장하였다. 등장 빈도만 비교하더라도 ‘세균전’ 선전 양상은 1951년과 분명히 대조된다. 하지만 1952년 내내 ‘세균

23) <그림 1>은 통일부 북한자료센터에 있는 『로동신문』과 『민주조선』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검색한 결과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다만 데이터베이스는 6·25전쟁 기간에 발간된 모든 신문 기사를 포함하고 있지는 않으며 누락된 기사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로동신문』은 1950년 9월 15일부터 1951년 1월 8일까지, 1952년 1월부터 2월까지의 모든 기사, 『민주조선』은 1950년 6월 25일부터 1950년 12월 31까지의 모든 기사가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즉 두 신문 기사가 모두 존재하지 않는 기간은 1950년 9월 15일부터 1950년 12월 31일까지이다. 따라서 <그림 1>은 누락된 부분을 상호 보완하고 전반적인 추세를 알아보기 위해 『로동신문』과 『민주조선』의 ‘세균전’과 ‘세균 무기’의 등장 횟수를 합계하여 표현하였다. 비록 1950년에 4개월 정도 모든 기사가 누락된 기간이 있으나 ‘세균전’과 ‘세균 무기’가 등장 빈도에 관한 대체의 경향을 보는 것과 관련하여 큰 부족함은 없다. 누락 기사에 대한 자료를 주한 통일부 김태민 주무관, MATLAB으로 <그림 1>을 제작해준 이화여자대학교 이예슬 연구원에게 모두 감사를 표한다.

전’ 선전이 전개된 것이 아니라 1952년 초에 집중적으로 진행되었음을 ‘세균전’과 ‘세균 무기’라는 어휘의 등장 빈도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1952년 중후반으로 갈수록 ‘세균전’ 선전이 줄어든 이유는 러시아 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쟁 당시 북한의 고문으로 있던 라주바예프에 의하면 북한은 1953년 1월부터 ‘세균전’ 자료 발간을 자제하였으며 중국은 북한에게 같은 해 2월에 ‘세균전’ 폭로를 다시 시작하자는 요청을 하였으나 북한은 이를 거절하였다.²⁴⁾ 또한 1953년 5월과 6월 소련은 중국과 북한에 ‘세균전’ 선전을 더 이상 하지 말 것을 요청하였다.²⁵⁾ 소련 측이 ‘세균전’ 선전을 통해 소련이 국제 사회에서 실질적인 정치적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²⁶⁾ 그래프상에서도 1953년 ‘세균전’과 ‘세균 무기’ 어휘 등장 횟수는 1952년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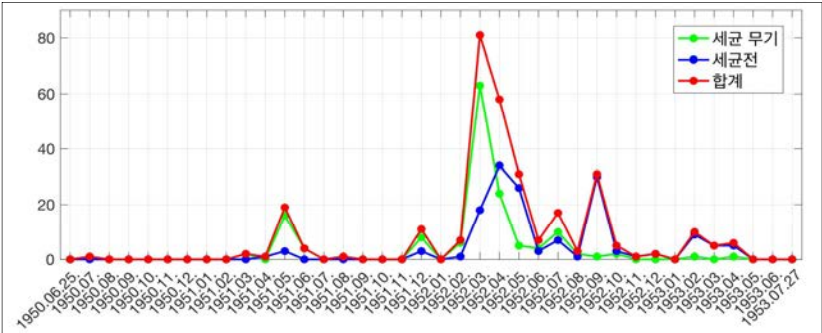


24) "Explanatory Note from Lt. Gen. V.N. Razuvaev to L.P. Beria," 1953.4.18.

25) "Telegram to V.M. Molotov from Beijing from the USSR Ambassador to the PRC, V.V. Kuznetsov," 1953.5.11; "Telegram from the USSR Charge d' Affaires in the DPRK, S.P. Suzdalev to V.M. Molotov," 1953.6.1.

26) "Memorandum from L.P. Beria to G.M. Malenkov and to the Presidium of the CC CPSU," 1953.4.21.; "Protocol No 6 of the Meeting of the Presidium of the CC CPSU," 1953.4.24.

〈그림 1〉 6·25전쟁 시기 『로동신문』, 『민주조선』에서
‘세균전’과 ‘세균 무기’ 어휘 등장 빈도(단위: 회)



〈표 1〉 1951-1952년 연월별 『로동신문』, 『민주조선』에서
‘세균전’과 ‘세균 무기’ 어휘 등장 빈도²⁷⁾

1951년				1952년			
연월	등장 횟수(단위: 회)			연월	등장 횟수(단위: 회)		
	세균전	세균 무기	합계		세균전	세균 무기	합계
1951.05	3	16	19	1952.02	1	6	7
1951.06	0	4	4	1952.03	18	63	81
1951.08	0	1	1	1952.04	34	24	58
1951.12	3	8	11	1952.05	26	5	31
합계	6	29	35	1952.06	3	4	7
총계	35			1952.07	7	10	17
				1952.08	1	2	3
				1952.09	30	1	31
				1952.10	3	2	5
				1952.11	1	0	1
				1952.12	2	0	2
				1953.02	9	1	10
				1953.03	5	0	5
				1953.04	5	1	6
				합계	145	119	264
				총계	264		

27) 특정 달에 ‘세균전’과 ‘세균 무기’ 등장 횟수가 모두 없는 경우에는 <표 1>에 연월을 따로 표시하지 않고 생략하였다.

가. 1951년 단발적 '세균전' 설과 샘즈의 특수작전

6·25전쟁 시기 북한을 비롯한 공산 진영이 펼친 세균전 혐의 제기 양상은 두 시기로 나눌 수 있다.²⁸⁾ 첫 번째 시기인 1951년 세균전 혐의가 단발적으로 제기되었으며, 두 번째 시기인 1952년이 되자 1952년 2월부터 세균전 혐의가 본격적으로 제기되었다.

1951년 세균전 혐의 제기는 1951년 3월에 수행되었던 준장 크로포드 샘즈(Crawford F. Sams)의 원산 상륙 특수 작전을 계기로 전개되었다. 당시 미 해군은 원산 봉쇄 작전을 그해 2월부터 시작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미국은 원산 주변의 제해권(制海權)을 확보할 수 있었기에 원산 특수 작전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²⁹⁾ 샘즈는 제2차 세계대전 후 일본에서 보건의 개혁을 이끈 인물이며 전쟁 당시에는 더글라스 맥아더(Douglas MacArthur) 장군의 보건복지 참모(Public Health and Welfare Section Chief)였다.³⁰⁾

북한에 의해 세균전 혐의가 처음으로 제기되었던 1951년 5월은 1950년 말과 1951년 초 북한 지역에 감염병³¹⁾이 광범위하

28) 북한 발간 서적에서는 본고에서 나눈 '1951년 단발적 세균전 혐의 제기', '1952년 본격적 세균전 혐의 제기'를 각각 '미제의 국부적인 세균전의 만행'과 '미제의 전면적인 세균전의 만행'으로 구분하고 있다(고상진과 전도명(1989), 『조선전쟁시기 감행한 미제의 만행』,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9)).

29) Malcolm W. Cagle and Frank Albert Manson, *The Sea War in Korea*, (Annapolis: United States Naval Institute, 1957), p.398, p.401, p.435. 1951년 2월 15일 미 해군 구축함 월라스(Wallace)와 오즈본(Ozbourn)에 의해 원산 봉쇄 작전이 개시되었다. 이 포위 작전을 통해 미 해군은 원산만의 몇 개의 섬을 점령할 수 있었다. 정전 협정일까지 총 861일 동안 원산 봉쇄는 유지되었고 이것은 당시 미국 현대 해군사에서 가장 긴 봉쇄 작전이었다.

30) Sonia G. Benson and Gerda-Ann Raffaele, *Korean War: Almanac and Primary Sources Vol. 1*, (Detroit: UXL, 2002), p.182.

31) '전염병(傳染病)'은 "사람들 사이에 전파되는 질병"을 의미하며 '감염병(感染病)'은 사람 사이에 전파되는 전염성 질환과 사람들 사이에 전파되지 않는 비전염성 질환을 모두 의미한다. 한국에서는 '전염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다가 '전염병'이

게 퍼진 상황을 배경으로 한다.³²⁾ 당시 북한에 파견된 미국 측 공작원들은 1951년 1월과 2월에 감염병이 매우 유행하고 있고 북한 정부는 이를 대처할 의료적 역량이 없다고 보고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미군은 당시 북한이 점령하고 있던 원산에 선페스트(腺pest, bubonic plague), 즉 소위 ‘흑사병’이 유행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였다. 이 첩보를 보고받은 샘즈는 진위 여부를 조사할 필요성을 느꼈다. 첩보원들은 의학 전문가가 아니었기에 감염병의 발생 유무는 알 수 있어도 그것이 정확히 어떤 질병인지 판단하는 능력은 갖추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샘즈는 페스트가 발생하였다는 첩보원들의 보고를 믿기 어려웠다.³³⁾

작전의 난이도는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페스트 감염 유무를 알아보기 위해 원산에 잠입하는 9번의 특수 작전 시도가 모두 실패하였기 때문이다.³⁴⁾ 작전이 계속 실패하자 1951년 3월 9일 정오 샘즈가 직접 특수 작전에 참가한다.³⁵⁾ 해군 하급 장교와 남한의 해병대로 구성된 샘즈의 파견대는 적군이 중국인과 북한 사람으로 착각할 수 있게 위장한 다음 적진으로 침투하였고 파견대의 임무는 감염된 환자나 시신을 가지고 오는 것이었다. 그

라는 용어 사용이 사람 사이에 전파되지 않는 질병을 관리하지 않을 문제 소지가 있어 2010년 12월 30일부터 법률 제9847호를 통해 ‘감염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감염병’과 ‘전염병’을 특별히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료에서 ‘전염병’이라고 사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염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서경희, 『전염병예방법 전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803388, 2008.12.31; 성민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0.12.30시행) 주요내용」, 『주간 건강과 질병』제4권, 제2호 (2011.1.14), 2011, p.17).

32) A. E. Cowdrey, *The Medics' War*, (Washington, D.C.: Center of Military History, U.S. Army, 1987). p.220.

33) Crawford F. Sams, *Medic: The Mission of an American Military Doctor in Occupied Japan and Wartorn Korea*, (Armonk, NY: M.E. Sharpe, 1998), pp.246-248.

34) "Plague is Believed Raging among Foe," *New York Times*, 1951.6.19.

35) Sams, *Medic*, p.175.

들이 원산 해안가에 고무보트를 타고 접근하였을 때, 공작원이 때에 맞춰 나와 샘즈의 파견대를 병원으로 안내하였다. 하지만 감염병 상황을 파악한 샘즈는 환자를 데리고 올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다.³⁶⁾ 샘즈는 첩보원의 보고와는 다르게 페스트가 아니라 출혈성 천연두였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출혈성 천연두는 피하 출혈로 인해 피부가 검게 보이는 임상 증상을 보인다. 이 때문에 첩보원들이 흑사병으로 오인한 것이었다.³⁷⁾ 이후 샘즈와 부대원들은 적에게 발각되지 않고 모두 무사히 귀환하였다. 한편 북한을 비롯한 공산 진영은 샘즈의 원산 특수 작전을 1951년 4월 9일 뉴스위크(Newsweek)지의 보도를 통해 뒤늦게 알게 되었고³⁸⁾ 샘즈를 도와주었을 것이라고 의심되는 이들을 처형하였다.³⁹⁾

1951년 5월 3일 중국 홍십자회(紅十字會)⁴⁰⁾는 이 사실을 왜곡하여 샘즈가 중국 포로를 세균전 실험에 사용하였다는 내용의 혐의를 국제적십자위원회(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ICRC)와 국제적십자연맹(League of Red Cross Societies, LRCS)에 각각 제소하였다. 또한 홍십자회는 상륙함이 원산에 상륙한 이유가 유행병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는 미국 측의 주장은 세균전 실험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⁴¹⁾ 중국의 신화통신도 5월 18일 미국의 AP통신의 내용을 인용하여 유사한 내용을 보도하였다.⁴²⁾ 폴란드의 한 언론은 샘즈가 생물학전을 위한 시설을 만들

36) *New York Times*, 1951.6.19.

37) Cowdrey, *The Medics' War*, p.176.

38) *Ibid.*, p.220.

39) *New York Times*, 1951.6.19.

40) 중국에서는 'Red Cross'에 해당하는 명칭을 한국에서의 '적십자(赤十字)'가 아니라 '홍십자(紅十字)'로 사용하고 있다.

41) Shihchieh Chihshih, *A Chronicle of Principal Events Relating to the Korea Question 1945-1954*, (Peking: Shihchieh Chihshih, 1954)(정용욱과 이길상, 『해방전후 미국의 대한정책사 자료집 13: 소련 중국의 한반도 관련 자료』, (서울: 다락방, 1995), p.120).

기 위해 임명되었다는 조작된 사실을 기사에 실었고 소련의 언론사인 프라우다(Pravda)와 이즈베스티야(Izvestiya)도 유사하게 미군의 세균전 실험 의혹을 보도하였다.⁴³⁾ 즉 이때까지만 하여도 북한 이외의 공산 진영은 미군의 세균 실험 의혹, ‘세균전’ 준비 의혹, 화학 무기 사용⁴⁴⁾에 대해서만 언급하였지 미국이 전쟁에 직접 세균 무기를 사용하였다는 혐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에 대한 추가 언론 보도도 거의 없었다. 그러나 북한은 이 시기에 다른 공산 국가와는 다르게 세균 무기 사용 혐의를 직접 제기하였다. 1951년 5월 8일 외무상 박헌영은 유엔 총회 의장에게 보내는 성명서에서 미군이 “작년 12월에 북조선으로부터 퇴각할 때 ... 천연두를 전파”하였다면서 미국의 ‘세균전’ 실시에 대해 공식적으로 처음 항의하였다.⁴⁵⁾ 북한의 성명서는 당시 조선인민군의 군사의무대 소련 고문이었던 셀리바노프(Selivanov)의 도움으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소련 공산당의 내부 문건에 따르면 셀리바노프는 1951년 초 북한 의무진을 도와 미국이 북한 주민에게 천연두를 전파하고 있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작성하는 일을 하였는데 시기와 내용의 유사성으로 보아 여기서 말하는 성명서는 박헌영의 성명서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⁴⁶⁾ 한편 1951년 소련이 ‘세균전’ 설을 책동한 이유 중 하나로 미국의 핵무기 사용에 대한 소련의 두려움이 작용하였다는 소련 첩보원의

42) 岳鴻文,『細菌戰 ?』, (香港: 友聯出版社, 1952)(국민방첩연구소,『세균모략전: 6.25 당시의 붉은 날조극』, (서울: 甲子文化社, 1984), pp.116-117).

43) Cowdrey, *The Medics' War*, p.220.

44) 중국의 경우 1951년 초 미군의 독가스 사용에 대한 항의가 있었다(「侵朝美軍使用毒氣炸彈 北大師大同學嚴重抗議」,『人民日報』,1951.3.7;「中國人民志願軍發言人發表談話 嚴斥侵朝美軍使用毒氣 決不饒恕血腥屠夫定將捉拿嚴予懲辦」,『人民日報』,1951.3.17).

45) 「유엔 총회 의장, 안전보장리사회 의장 귀하」,『조선중앙년감 1951-1952』,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52), p.112.

46) Selivanov, “Explanatory Note from Lieutenant Selivanov to L.P. Beria,” 1953.4.14.

진술이 있다. 당시 소련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기는 하였지만 그 위력이 약하였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본 주재 소련 첩보원은 일본 공산당원을 포섭하여 미국이 일본에서 일본인 시체를 구매하여 세균 실험을 하고 있다는 유언비어를 퍼뜨리고자 노력하였다.⁴⁷⁾

나. 1952년 본격적 '세균전' 설과 공산 진영 측의 조사

1951년 5월 이후 공산 진영의 세균전 혐의 제기는 줄어들었다. 그러나 1952년 초부터 다시 본격적인 세균전 혐의 제기가 전개되었다. 1952년 2월 18일 모스크바 라디오 방송은 미국의 세균 무기 사용에 대한 혐의를 제기⁴⁸⁾하였고 나흘 뒤인 1952년 2월 22일 박헌영 외무상은 미군이 군용기를 통해 1월 28일부터 '세균 독충'을 철원, 평강 등 북한 지역에 살포하고 있다고 밝혔다.⁴⁹⁾ 이어서 이튿날인 2월 23일 중국 공산당의 기관지 『人民日報』는 사설(社論)을 통해 “미국이 군사적 참패를 만회하기 위해 전선과 후방에 독균을 살포하고 있으며 이것은 ‘정전 담판’을 지연시켜 계속 전쟁을 이어나가고 더 잔혹한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⁵⁰⁾ 이 사설은 중국이 처음 공식적으로 세균 무기 사용 혐의를 제기한 것이다. 하지만 마오쩌둥(毛澤東)은 스탈린에게 이미 1952년 2월 21일에 미국이 세균전을 시행하고 있다면서 소련의 도움을 요청하는 전문을 보내었다.⁵¹⁾ 1952년 2월 24일에는 중국의 외무장인 저우언라이(周

47) Yuri A. Rastvorov, “Red Fraud and Intrigue in Far East,” *Life*, 1954.12.06, pp.176-178.

48) Zhang Shu Guang, *Mao's Military Romanticism: China and the Korean War, 1950-1953*, (Lawrence: University Press of Kansas, 1995), p.183.

49) 「조선에서의 미제 무력 간섭자들의 세균 무기 사용과 관련한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외무상의 성명」, 『조선중앙년감 1953』,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53), p.113-114.

50) 「全世界人民起來，制止美國侵略者進行細菌戰爭的滔天罪行！」, 『人民日報』, 1952.2.23.

恩來)는 중국 정부와 중국 인민을 대표하여 22일에 발표된 박헌영의 성명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고 현재 북한 인민에게 닥친 재난을 단호하게 제지하지 않으면 세계 모든 인민에게 똑같은 재난이 임할 것이라고 호소하였다.⁵²⁾

〈표 2〉 북한, 중국, 소련이 ‘세균전’ 설을 ‘검증’하기 위해 조직한 세 개의 조사단

구 분	미국 제국주의 세균전 죄행 조사단	국제민주변호사협회 위원단	국제과학위원회
설립 주체	중국 정부	국제민주변호사협회	세계평화이사회
구성	중국인 과학자, 기자, 정당 및 사회단체인 70명	다국적 출신 변호사 9명	다국적 출신 과학자 6명
기간	1952.3.15. - 1952.4.10.	1952.3.3. - 1952.3.19.	1952.6.23. - 1952.8.31.
보고서	1952.4.25. 미제국주의의 조 선 내 세균 살포에 관한 죄 행조사보고서	1952.3.31. 북한 내 미국의 범죄에 대한 보고서 1952.4.2. 미군의 중국 영 토 내 세균 무기 사용에 대 한 보고서	1952.8.31. 북한과 중국에서의 세균전에 대한 사실조사를 위한 국제 과학위원단의 보고서

‘세균전’ 설을 조사하기 위해 공산 진영이 기획한 조사는 1952년 총 세 번에 걸쳐서 이루어졌다(〈표 2〉). 이 조사는 크게 중국 자국인에 의한 조사와 국제 조사로 나뉘었다. 먼저 중국 자국인으로 대부분 구성된 조사단의 이름은 ‘미국 제국주의 세균전 죄행 조사단(美國帝國主義細菌戰罪行調查團)’이었다. 이 조사단은 단장인 중

51) “Ciphred Telegram No. 16715 from Beijing, Mao Zedong to Filippov [Stalin],” 1952.2.21. 이 전문에서 마오쩌둥은 이시이 시로를 포함한 일본인 세균전 참가자를 거론하며 이들이 제2차 세계대전 시기 사용하던 방법으로 미국이 ‘세균전’을 실시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52) 「我中央人民政府外交部部長周恩來 支持朝鮮朴憲永外務相抗議美國政府進行細菌戰的聲明」, 『人民日報』, 1952.2.25.

국 홍십자회 회장 리더취안(李德全)을 위시하여 중국의 주요 정치 사회단체 인물 및 의학 전문가가 참가하였으며 조사단에 속한 인원은 총 70명에 이르렀다. 이 인물 중에 조선족 출신 과학자인 방관혁(方觀赫)도 세균학 전문가로서 참가하였다.⁵³⁾ 조사단은 1952년 3월 15일에 베이징을 출발하여 북한으로 향하였다.⁵⁴⁾ 3월 20일에 북한에 도착한 조사단은 중국인민지원군 위생부, '중국 인민지원 방역 검험대(中國 人民志願 防疫 檢驗隊)'와 함께 원산 일대와 38선 지역에 대한 세균전 혐의 조사를 진행하였다. 이후 조사단은 북한에서의 조사를 끝마치고 4월 10일 베이징에 도착하였으며, 4월 25일에는 항목별로는 7장으로 구성된 보고서를 『人民日報』에 발표하였다.

다른 두 번의 조사는 다양한 국가에서 온 인물들로 조직된 국제 위원단이었으며 각각 국제민주법률가협회 위원단(Commission of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Democratic Lawyers)과 국제과학 위원단(International Scientific Commission, ISC)에 의해 조사가 진행되었다.

국제민주법률협회는 1946년 10월 프랑스인 변호사들을 주축으로 24개 국가의 법조인이 만든 단체다.⁵⁵⁾ 1951년 5월 27일 국제민주여성연맹(Commission of the Women's International Democratic Federation, WIDF)의 보고서 '우리는 고발한다(We

53) 1935년 세브란스연합의학전문학교를 졸업한 방관혁은 당시 중국 이름 '팡리양(方亮)'을 사용하였고 조사단의 명단에도 팡리양으로 되어 있다. 조사단에서 방관혁의 역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연구를 참고할 수 있다. 왕원주와 신규환, 「한국전쟁기 세균전 문제와 세균학자 방관혁의 선택」, 『의료사회사연구』, 제5권, 의료역사연구회, (2020).

54) 「“美國帝國主義細菌戰罪行調查團”組成 今天前往朝鮮和東北實地調查」, 『人民日報』, 1952.3.15.

55) Howard Tolley, *The International Commission of Jurists: Global Advocates for Human Rights*,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1994), p.28.

Accuse)’가 발간되었고 여기서 드러난 북한의 참상에 대해 국제 민주법률협회는 심각성을 느꼈다. 이에 따라 협회는 1951년 9월 베를린 회의에서 미국의 국제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다국적 출신의 변호사를 소집하여 북한에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오스트리아 그라츠 대학교(University of Graz)의 국제법 교수인 헤인리히 브랜드와이너(Heinrich Brandweiner)를 단장으로 하는 국제민주법률가협회 위원단은 1952년 3월 3일부터 19일까지 평양과 평안남북도를 포함한 북한의 여러 지역을 방문하였다.⁵⁶⁾ 이후 위원단은 두 가지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하나는 1952년 3월 31일에 작성된 ‘북한 내 미국의 범죄에 대한 보고서(Report on U.S. Crimes in Korea)’이며, 다른 하나는 1952년 4월 2일에 작성된 ‘미군의 중국 영토 내 세균 무기 사용에 대한 보고서(Report on the Use of Bacterial Weapons in Chinese Territory By the Armed Forces of the United States)’이었다. 하지만 2주일 남짓 되는 짧은 조사 기간을 고려해보았을 때 심도 깊은 조사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은 낮다.

마지막으로 국제과학위원단은 세 개의 조사단 중 외교 측면이나 국제 여론 측면에서 가장 큰 영향을 주었으므로 다른 조사단보다 자세히 다룰 필요가 있다. 국제과학위원단은 공산주의 성향을 가진 세계평화이사회(World Peace Council)에 의해 임시적으로 구성된 조직이었다.⁵⁷⁾ 국제과학위원단은 1952년 2월 25일 중국인민 세계평화옹호위원회 위원장이었던 귀모뤄(郭沫若)가 세계평화이사회에 호소문을 제출한 것을 계기로 조직되었다. 이 같은 중국의 국제적 행동은 저우언라이가 작성한 반세균전 대처방안 6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였으며 이것은 마오쩌둥의 지시에 의한 것이

56) Commission of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Democratic Lawyers, “Report on U.S. Crimes in Korea,” Pyongyang, 1952.3.31, p.1.

57) Leitenberg, “New Russian Evidence,” p.186.

었다.⁵⁸⁾ 이후 1952년 3월 29일부터 4월 1일까지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세계평화이사회 집행국 회의가 개최되었고⁵⁹⁾ 이때 중국 대표로 귀모뤄, 북한 대표로 이기영(李箕永)⁶⁰⁾이 참가하였다.

국제과학위원단은 총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위원 중 대표적인 인물은 조셉 니덤과 주코프-베레즈니코프(Zhukov-Verezhnikov)이다. 니덤은 생화학자로서 명망이 높았고 제2차 세계대전 시기 중국 충칭의 영국 대사관 과학 고문으로 근무하기도 하였다. 의료 전문가인 주코프는 소련이 주재한 하바로프스크 전범 재판에서 중일전쟁기 세균전에 참가한 일본 군인을 조사하였던 인물이다.⁶¹⁾

첫 회의는 1952년 6월 23일 베이징에서 거행되었으며 중국 동북 지방과 북한에서의 조사를 끝낸 뒤, 8월 9일 다시 베이징에 돌아와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하였으며 8월 30일에 초안을 완성하고 부록들을 수집하였다. 조사기간은 약 2개월 정도 걸렸으며, 40번의 회의가 진행되었다. 1952년 8월 31일에는 마지막 일정으로 모든 위원이 서명하였고 베이징에서 기자회견을 하였다.⁶²⁾

58) Endicott and Hagerman, *The United States and Biological Warfare*, p.8; 齐德学, 『朝鲜战争决策内幕』, (沈阳: 辽宁大学出版社, 1991), pp.281-2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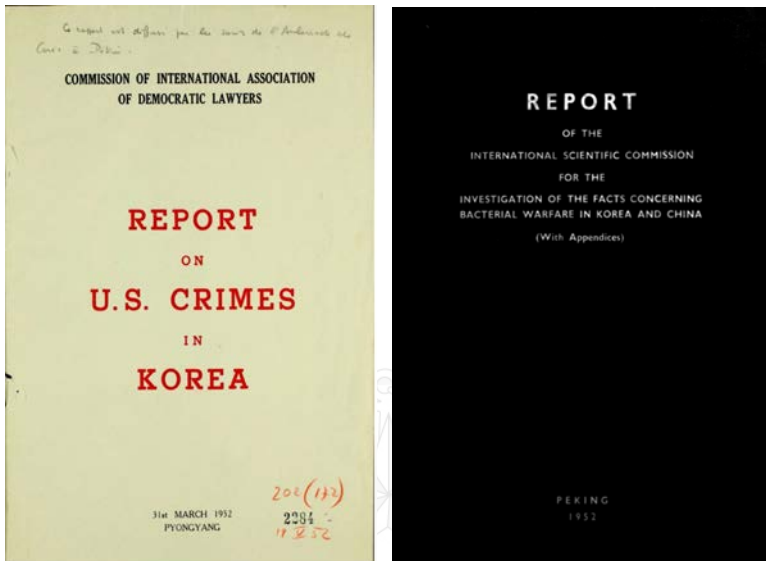
59) World Peace Council, "An Appeal of the World Peace Council Against Bacteriological Warfare," *People's China*, no. 8, (1952), p.1 (Supplement).

60) 이기영은 대표적인 월북 작가이며 소설 『고향』을 집필하기도 하였다. 또한 그는 『조선문학』 1954년 7-8월호에 『강안마을』이라는 제목의 중편소설을 연재하기도 하였는데, 소설의 내용 중에는 미군이 '세균전'을 실시한 사실을 고발하는 부분도 있다.

61) International Scientific Commission, "Report of the International Scientific Commission for the Investigation of the Facts Concerning Bacterial Warfare in Korea and China (with Appendices)," Peking, 1952, p.3.

62) International Scientific Commission, "Report of the International Scientific Commission," pp.63-67.

〈그림 2〉 국제민주변호사협회 위원단 보고서의 표지⁶³⁾(좌)와
국제과학위원단의 보고서의 표지(우)



3. ‘세균전’ 설의 내막

가. 국제과학위원단의 조사와 보고서에 대한 신빙성 문제

국제과학위원단의 조사와 보고서는 의심스러운 점이 많았다. 니 텀은 1952년 8월 31일 중국 베이징에서의 기자회견에서 “미국 비행기가 세균 무기를 투하하는 것을 목격할 기회를 얻지는 못하였다”고 하였다.⁶⁴⁾ 마찬가지로 1952년 9월 27일 영국 런던의 기

63) 출처: 국가기록원(BTA0001128, 12-1).

64) 「國際科學委員會在北京舉行中外記者招待會」, 『人民日報』, 1952.9.15.

자회전에서 니덤은 “위원단이 현지 조사를 할 때 ‘세균전’ 공습 순간을 보기로 계획되어 있었지만 중국 측은 증거가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현장 조사를 허락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위원단은 “중국 측을 언짢게 하고 싶지 않았고 ‘세균전’이 몇 달 전에 발생하였다는 지역에 한정하여 조사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또한 위원단은 “미군 비행기로부터 투하되었다고 하는 곤충을 직접 조사한 적이 없으며, ‘세균’ 공습으로 인해 병에 걸린 환자 중 단 한 명도 직접 조사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리고 위원단은 “중국과 북한 과학자들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였다.⁶⁵⁾ 이처럼 니덤을 비롯한 위원들이 보거나 분석한 것은 직접적인 증거를 목격한 것이 아니라 간접적인 증거를 접한 것이었다.⁶⁶⁾ 즉 그들이 증거로서 확인한 것은 미군이 독충을 살포하기 위해 ‘사용’하였다는 용기(容器), 세균 매개 곤충의 샘플, 그리고 이른바 ‘세균전’ 피해자의 증언이었다.⁶⁷⁾ 이처럼 위원단의 보고서는 공정성 측면에서 하자가 있었다. 비록 위원단은 669쪽이나 되는 방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였지만 신빙성이 떨어지는 ‘증거’로 구성되었기에 그것에 의해 도출된 결론은 믿기 어렵다.

게다가 국제과학위원단이 ‘세균전’ 설을 조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도 논란이 된다. 강정구는 국제과학위원단이 “저명한 과학자”로 이루어져 있다고 분석하였으며 그들이 펴낸 보고서의 가치도 높게 평가하였다.⁶⁸⁾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

65) Dudley Barker, “The Germs He Did Not See,” *Daily Herald*, 1952.9.27.

66) Peter Williams and David Wallace, *Unit 731: the Japanese Army's Secret of Secrets*, (London: Hodder & Stoughton, 1989), p.240. 이 내용은 니덤이 직접 1987년 2월 캠브리지(Cambridge)에서 구술한 내용이며, 같은 해 11월 제국전쟁 박물관(Imperial War Museum)에서 콘래드 우드(Conrad Wood)가 니덤을 구술하였을 때도 그가 본 것은 모두 정황 증거뿐이라고 답하였다(1987년 11월 조셉 니덤의 구술).

67) Dudley Barker, “The Germs He Did Not See,” *Daily Herald*, 1952.9.27.

68) 강정구, 위의 책, pp.248-249.

았다. 국제과학위원단의 실질적 단장 역할을 맡은 조셉 니덤조차 처음에는 본인이 ‘세균전’을 조사할 전문가가 아니라고 생각하여 위원단의 연락 업무만 맡고자 하였고 다른 전문가를 위원단에 초청하고자 노력하였지만 실패하였다. 또한 니덤은 자신의 아내에게 쓰는 편지에서 다른 위원들의 전문가적 소질이 부족하다고 언급하였다.⁶⁹⁾

나. 우즈리의 회고록과 소련 문헌에서 드러난 ‘세균전’ 설의 내막

니덤이 부정하였던 북한과 중국의 ‘증거’ 조작은 최근에 공개된 우즈리의 회고록과 스탈린 사후 권력투쟁기에 생산되었던 소련 문서에서 잘 드러난다. 이 자료들을 중심으로 1952년에 불거진 ‘세균전’ 설의 내막을 살펴보기로 한다.

6·25전쟁 시기 중국 인민지원군 위생 부장이었던 우즈리의 회고록⁷⁰⁾에는 중국 측에서 ‘세균전’ 설을 형성하는 과정이 기술되어 있으므로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즈리에 의하면 강원도 평강군(平康郡)에 주둔한 중국인민지원군 제42군이 1952년 1월 28일 미군의 비행기가 지나간 뒤 곤충이 발견되었다는 내용의 전문(電文)을 1월 29일 지원군 사령부와 위생부에 각각 보내었으며 위생부에는 곤충 견본도 전달하였다. 지원군 사령관이었던 평덕화이(彭德懷)는 제42군의 전문에 큰 관심을 가졌고 이를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에 보고하였다.⁷¹⁾ 그러나 당시 위

69) Buchanan, “The Courage,” p.510-511

70) 吳之理, 「1952年的細菌战是一场虚惊」, 『炎黃春秋』, 2013年 第11期. 우즈리의 회고록은 1997년 9월에 작성되었으나 2008년 그가 사망한 후 발견되었다. 그리고 2013년 11월에 가서야 중국의 개혁적 성향의 잡지인 『炎黃春秋』에 실리게 되었다 (Leitenberg, “China’s False Allegations,” p.16).

71) 평덕화이가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에 ‘세균전’을 보고함으로써 중국의 ‘세균전’ 선전 공세가 시작하였다는 사실은 러시아 문서에서도 확인되는 내용이다. 북경 주

생 부장이었던 우즈리는 제42군이 보내온 곤충 견본을 조사하였지만 감염성 세균을 발견하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그는 미군이 세균전을 실시하였다는 증거는 없다고 평터화이에게 보고한다. 이에 대해 평터화이는 우즈리를 매우 강하게 비판하면서 “우리의 보건 부장은 미 제국주의의 간첩이라서 적을 대변하여 말한다”⁷²⁾라고 하였고, 이어서 평터화이는 “전장에서는 천 명, 만 명이 죽을 수도 있지만, 세균 무기에 의해 한 명이 죽으면 너를 찾아 끝장을 내겠다”⁷³⁾라고 하며 우즈리에게 굉장한 모욕을 주었다. 평터화이가 우즈리의 태도에 민감하게 반응한 이유는 평터화이가 잘못된 보고를 올린 것에 대해 상부로부터 문책 받을 것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일 수 있다. 이후 우즈리는 일반 벼룩에서 페스트 균을 배양하여 페스트 균에 감염된 벼룩을 만드는 것과 같은 ‘세균전’ 증거 조작을 감행하였고 세 차례의 ‘세균전’ 조사단이 방문할 때 안내도 도맡았다. 한편 국제과학위원단 중 한 명이었던 주코프가 소련으로 돌아간 뒤 중국에서 그가 관찰한 바를 스탈린에게 보고하였고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중국 측에 “세균전은 헛된 놀람[虚惊]⁷⁴⁾”이라는 내용의 전문을 보냈다.⁷⁵⁾ 이에 저우언라이는 황커창(黃克誠) 총참모장(總參謀長)과 홍쉐

재 소련대사 쿠즈네초프(Kuznetsov)와 대화하는 자리에서 마오쩌둥은 ‘세균전’의 기원이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 즉 평터화이의 보고에 기초하였다고 말하였다 (“Telegram to V.M. Molotov from Beijing from the USSR Ambassador to the PRC, V.V. Kuznetsov,” May 11, 1953).

72) “我们的卫生部长是美帝国主义的特务，替敌人说话 …” (吳之理, 위의 책, p.37).

73) “… 战场上死一千死一万都可以，下来后死一个，我都找你算账。” (吳之理, 위의 책, p.37).

74) ‘虚惊’은 구체적으로 “사후에 불필요하게 놀란 것임이 증명된 것”을 의미한다(中国社会科学院語言研究所詞典編輯室, 『現代漢語詞典』 第7版, (北京: 商務印書館, 2016), p.1478).

75) 吳之理, 같은 책, p.39. 우즈리의 회고록에서도 소련의 문헌에서 밝힌 것과 같이 ‘세균전’ 선전의 중단 지시가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로부터 전달된 것이라고 공통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이것은 우즈리의 회고록에서 밝히고 있는 사실 정보가 신빙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즈(洪學智) 부사령(副司令)을 불러 “너희가 속임수를 사용하였는가?”하고 물었고 홍쉐즈는 “그렇지 아니 하였다면 보고할 것이 없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저우언라이는 “(세균전 선전을) 즉시 철회”하라고 명령하였다. 우즈리에 의하면 “수뇌부만 이 사실을 알았으며 하부 조직은 이를 전혀 몰랐기에 이후 중국의 저자들이 미국이 ‘세균전’을 실시하였다는 내용을 기술하였다”고 밝혔다.⁷⁶⁾

〈표 3〉 ‘세균전’ 설과 관련된 주요 소련 문헌

시기	이름	기관 ⁷⁷⁾	코드 ⁷⁸⁾
1952.2.21.	Ciphered Telegram No. 16715 from Beijing, Mao Zedong to Filippov [Stalin]	APRF ⁷⁹⁾	1, 2, 5
1952.2.23.	Cable, Filippov [Stalin] to Mao Zedong	RGASPI	2
1952.3.7.	Cable, Zhou Enlai to Filippov [Stalin]	RGASPI	2
1952.3.10.	Ciphered Telegram No.17318 from Beijing, Zhou Enlai to Filippov [Stalin]	RGASPI	2
1952.3.14.	Cable, Filippov [Stalin] to Zhou Enlai	RGASPI	2
1952.6.24.	Cable, Mao Zedong to Filippov	RGASPI	2
1953.4.13.	Explanatory Note from Glukhov to L.P. Beria	APRF	1
1953.4.14.	Explanatory Note from Lieutenant Selivanov to L.P. Beria	APRF	1
1953.4.18.	Explanatory Note from Lt. Gen. V.N. Razuvaev to L.P. Beria	APRF	1
1953.4.21.	Memorandum from L.P. Beria to G.M. Malenkov and to the Presidium of the CC CPSU	APRF	1, 4
1953.4.21.	Memorandum from V.N. Molotov to Members of the Presidium of the CC CPSU	APRF	1, 4

76) 吳之理, 같은 책, p.39.

77) APRF는 러시아 연방 대통령 문서관(Archive of the Presid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APRF), RGANI는 러시아 국립 현대사 문서관(Russian State Archive of Contemporary History, RGANI), RGASPI는 러시아 국립 사회 정치사 문서관(Russian State Archive of Socio-Political History, RGASPI)을 각각 의미한다.

78)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된 ‘코드’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1: 1998년 『산케이신문(産經新聞)』에 의해 공개된 12개의 문헌,

시기	이름	기관	코드
1953.4.24.	Memorandum about Sessions of the CPSU CC Presidium from 13 March to 24 April 1953 ⁸⁰⁾	RGANI	3
1953.4.24.	Cover Sheet for Issue II Considered by the CPSU Presidium at Its Session on 24 April 1953 ⁸¹⁾	RGANI	3
1953.4.24.	Protocol No 6 of the Meeting of the Presidium of the CC CPSU	APRF	1, 4
1953.5.2.	Resolution of the Presidium of the USSR Council of Ministers	APRF	1
1953.5.11.	Telegram to V.M. Molotov from Beijing from the USSR Ambassador to the PRC, V.V. Kuznetso	APRF	1
1953.5.17.	Memorandum from the Chairman of the Party Control Commission Shkiriato to G.M. Malenkov	APRF	1
1953.6.1.	Telegram from the USSR Charge d'Affaires in the DPRK, S.P. Suzdalev to V.M. Molotov	APRF	1
1953.6.2.	Decision of the Party Control Commission of the CPSU CC Regarding Comrade S.D. Ignatiev	APRF	1

2: 2010년 RGASPI에서 공개한 6개의 문헌,

3: 2016년 RGANI에서 발견된 문헌,

4: 2016년 RGANI에 발견된 문서로 인해 실제 '존재'가 확인된 문서 ('내용'은 확인되지 않음),

5: 2010년 RGASPI에서 공개한 문서로 인해 '내용'이 확인된 문헌.

79) 1998년 웨더스비(Weathersby)가 발표한 글에서는 APRF 출처 문서의 일부 내용만 있었지만 이후 2016년 RGASPI는 해당 문서의 전문이 공개되었다. 이때 1998년 공개된 문서의 일부 내용은 2016년에 공개된 문서의 내용과 서로 일치하였다. 이로써 1998년에 『산케이신문(産經新聞)』 기자에 의해 공개된 러시아 문헌의 신빙성을 높여주었다.

80) 라이텐버그는 해당 문헌의 뒷면에 쓰여진 “Note No. 37B of Cde. Beria dated 21 IV 53,” “Note No. 59ss of Cde. Molotov dated 21 IV 53”을 통해 1998년에 공개된 1953년 4월 21일에 작성된 문헌 “Memorandum from V.N. Molotov to Members of the Presidium of the CC CPSU”과 “Memorandum from V.N. Molotov to Members of the Presidium of the CC CPSU”의 존재를 입증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물론 라이텐버그의 주장처럼 동일 문헌일 가능성은 존재하나, 기록 날짜와 작성인이 일치한다고 해서 반드시 동일 문헌라고 보기에는 어려워 보인다.

81) 해당 문헌에 적혀져 있는 “24 April 1953 (Prot. No. 6),” “Note of the USSR MVD Concerning a Review of the Report from the Former [Soviet] Advisers Assigned to the DPRK Ministry of Public Security”는 1998년에 공개된 1953년 4월 24일에 작성된 문헌인 “Protocol No 6 of the Meeting of the Presidium of the CC CPSU”의 존재를 입증해주었다.

스탈린 사후 권력투쟁기에 생산되었던 APRF 보관 소련의 문서는 ‘세균전’ 선전과 북한의 ‘세균전’ 증거 조작에 소련의 개입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북한의 내무성 고문으로 파견되었던 글루호프(Glukhov)에 의하면, 북한에 파견된 소련의 고문의 도움을 받아 북한 정부는 오염지역을 허위로 설정하였으며, ‘세균전’ 증거 조작에 필요한 콜레라균은 중국에서 공급 받았다. 또 소련 고문은 국제과학위원단의 북한 방문 시, 공포감을 주기 위해 가짜 폭탄을 터뜨리는 것을 계획하였으며⁸²⁾ 이미 감염병으로 사망한 시신들을 매장하여 발견되게 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심지어 세균전에 대한 ‘증거’를 만들기 위해 살아있는 사람을 병균에 감염시키는 일까지 자행하였다. 소련 고문은 북한의 두 사형수를 콜레라와 페스트에 감염시킨 다음 그들을 초가집에 격리시켜 ‘증거’를 만드는 일을 제안⁸³⁾하였는데 실제로 그 중 한 명이 사망하였다.⁸⁴⁾ 이와 같은 진술은 소련의 여러 간부들과 소련 국가안전부의 문서를 통해 반복적으로 나타난 사실이다. 하지만 1952년 ‘세균전’ 설 선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던 소련 정부는 1953년 3월 스탈린이 사망한 후 ‘세균전’ 설을 부정한다. ‘세균전’ 선전으로 인해 소련의 국제적 위신에 손해가 있었다⁸⁵⁾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이후 소련은 1953년 5월과 6월 사이에 중국⁸⁶⁾과 북한⁸⁷⁾에 각각 ‘세균전’ 선전을 중단하라는 지시를 전달하였다.

소련의 지시를 계기로 그 전까지 ‘세균전’ 설을 믿었던(혹은 의심

82) “Explanatory Note from Glukhov to L.P. Beria,” 1953.4.13.

83) “Explanatory Note from Lt. Gen. V.N. Razuvaev to L.P. Beria,” 1953.4.18.

84) “Memorandum from L.P. Beria to G.M. Malenkov and to the Presidium of the CC CPSU,” 1953.4.21.

85) “Memorandum from L.P. Beria to G.M. Malenkov and to the Presidium of the CC CPSU,” 1953.4.21.

86) “Telegram to V.M. Molotov from Beijing from the USSR Ambassador to the PRC, V.V. Kuznetsov,” 1953.5.11.

87) “Telegram from the USSR Charge d’Affaires in the DPRK, S.P. Suzdalev to V.M. Molotov,” 1953.6.1.

스럽지만 믿었던) 북한 수뇌부의 입장은 바뀌었을 수 있다. 1953년 6월 1일 소련으로부터 ‘세균전’ 선전 중단 권고를 들은 북한의 선전 선동부장 박창옥은 “중국 비행기로부터 (세균) 폭탄과 (세균을 담은) 용기가 투하되었고, 또 감염이 없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⁸⁸⁾라고 말하여 미국에 의한 ‘세균전’ 설에 대한 의구심과 함께 중국에 의해 ‘세균전’ 설이 조작된 것일 수 있다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내비치었다. 이것은 ‘세균전’ 설에 대한 북한의 큰 태도 변화를 의미한다. 1953년 박창옥의 발언은 1952년 ‘세균전’ 설을 최초로 제기할 때 북한 정부가 미군의 ‘세균 무기’ 사용을 진지하게 믿었던 것과 크게 대조되기 때문이다. 심지어 1952년 초 김일성은 ‘세균 무기’가 정기적으로 사용될 것을 두려워하기도 하였다.⁸⁹⁾ 이 사실에 근거하여 볼 때, 1952년 초기 북한 수뇌부는 ‘세균전’ 설을 믿었다가 1953년 중엽 소련의 ‘세균전’ 선전 중단 권고 이후에 ‘세균전’ 설이 중국에 의해 조작된 것이라고 판단하였을 수 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중국의 상황과 유사하게 북한 수뇌부는 하부 조직에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당시 포로였던 미국의 종군기자 필립 딘(Philip Dean)에 의하면 1953년 3월에도 여전히 ‘세균 수집(collecting the germs)’과 같이 미군의 ‘세균전’ 설에 의거한 군부대의 위생 사업이 진행되었기 때문이다.⁹⁰⁾

새롭게 발견된 중국과 소련의 사료와 이전 사료를 종합해 볼 때 1952년 ‘세균전’ 설은 중국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헝가리 기자 티버 머레이에 의하면 1952년 3월 6일 북한의 보건성 부상(副相)인 로진한이 머레이에게 “우리는 … 중국인민지원군을

88) “Telegram from the USSR Charge d’ Affaires in the DPRK, S.P. Suzdalev to V.M. Molotov,” 1953.6.1.

89) “Explanatory Note from Lieutenant Selivanov to L.P. Beria,” 1953.4.14.

90) Philip Deane, *I Was a Captive in Korea*, (New York: Norton, 1953), p.226.

통해 세균 공격을 처음 알게 되었다”고 처음 진술하였다. 하지만 며칠 뒤 로진한은 머레이에게 “중국인민지원군”이 대신 “최전선의 전사”라는 용어를 기사에 사용하기를 요청하였다.⁹¹⁾ 소련의 문서에서도 1952년 ‘세균전’ 설의 출처가 중국임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나타난다. 북한은 “중국을 통해 ‘세균전’에 대한 정보”를 받았다⁹²⁾고 하며, 이와 유사하게 라주바예프(Разуваев)는 베리야(Берия)에게 보내는 전문에서도 “1952년 봄 중국 정부가 북한 정부에게 미국에 대한 ‘세균전’ 혐의를 제기하는 성명서를 제공”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김일성과 박헌영은 ‘세균전’ 설에 대한 자문을 라주바예프에게 구했지만 라주바예프에 따르면 “소련의 고문관과 북한의 정부 기관은 이것이 사실인지 확증하지 못하였다”고 하였다.⁹³⁾ 즉 1952년 ‘세균전’ 설에 대해 소련과 북한은 초기에 이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중국에 의해 비로소 인지하였음을 추측할 수 있다. 우즈리의 회고록에서도 ‘세균전’ 설의 중국 기원설을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이 등장한다. 우즈리는 스탈린으로부터 ‘세균전’ 설이 사실인지 묻는 전화를 받았다고 한 것⁹⁴⁾을 고려해 볼 때, 소련이 아니라 중국에서 ‘세균전’ 설이 시작되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그리고 1952년 ‘세균전’ 설에 대한 신빙성 있는 주장⁹⁵⁾ 중 가장 이른 시기의 것은 우즈리의 회고록에 등장하는 중국인민지원군 제42군의 1월 29일 보고이며 이 보고에서 제42군은 1월 28일 군 주둔지와 참호에서 벌레를 보았다고 하였다.⁹⁶⁾ 이후 ‘세균전’ 설 주장이 대대적으로 전개되었던

91) Tibor Méray, “The Truth about Germ Warfare,” *Franc-Tireur*, May 6-18, 1957, 6th.

92) “Explanatory Note from Lieutenant Selivanov to L.P. Beria,” 1953.4.14.

93) “Explanatory Note from Lt. Gen. V.N. Razuvaev to L.P. Beria,” 1953.4.18

94) 吳之理, 위의 책, p.37.

95) 공산 진영에 의한 조사 결과가 아닌 우즈리의 회고록이나 소련 문헌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부 정보에 의한 정보를 의미한다.

모습을 앞에서 확인하였다. 이처럼 여러 문헌을 참고해봤을 때 1952년 ‘세균전’ 설이 중국에 의해 제기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중국이 북한과 소련을 추동하여 두 나라도 ‘세균전’ 선전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새롭게 발견된 사료들을 종합하여 봤을 때, 북한, 중국, 소련에 의한 ‘세균전’ 증거 조작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라이텐버그의 주장⁹⁷⁾처럼 공산 측의 ‘세균전’ 증거 조작 사실이 미국에 의한 ‘세균전’ 설을 완전히 부정할 수 있는 근거라고 보기는 어렵다. 가령 세균전 ‘증거’의 조작을 입증하는 것만으로는 증거가 불충분하게 발견될 수 있는 소규모 실험적 ‘세균전’을 미국이 감행하였을 가능성과, 공산 측에서 증거를 과장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세균전’ 설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다.

다. 중국과 소련의 ‘세균전’ 설 제기 목적

‘세균전’ 설의 진위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내기는 어렵지만 공산 진영이 ‘세균전’ 선전을 활용한 방식에 대한 조사는 가능하다. ‘세균전’ 설을 제기한 이유로 자주 거론되는 것으로 당시 중국과 북한 지역에서 만연하였던 감염병 예방을 위해 ‘세균전’ 설을 이용하였다는 주장⁹⁸⁾이 있다. 하지만 여기서는 새롭게 발견된 사료에 기

96) 吳之理, 같은 책, p.36. 1952년 미군에 의한 ‘세균전’의 시작일이 우즈리의 회고록과 동일하게 마오쩌둥이 스탈린에게 보낸 전문에도 1월 28일이라고 되어 있다(“Ciphred Telegram No. 16715 from Beijing, Mao Zedong to Filippov [Stalin],” 1952.2.21). 그리고 공산 측이 진행한 조사 보고서에서도 모두 미국의 ‘세균전’ 공격의 시작을 1952년 1월 28일로 적었다. 이처럼 ‘세균전’ 설이 처음 제기된 날짜가 중국에서 주장한 날짜와 동일하다는 것 또한 ‘세균전’ 설이 중국에서 비롯되었음을 시사한다.

97) Leitenberg, “China’s False Allegations,” p.20.

반하여 기존에 비교적 논의되지 않았던 중국과 소련의 ‘세균전’ 활용 방식을 간단하게 논의하고자 한다.

중국은 소련의 지원을 받기 위해 ‘세균전’ 선전을 활용한 측면이 있다. 중국과 소련이 주고받았던 전문에서 중국은 미군의 ‘세균전’ 실시를 거론하면서 소련의 군사 지원이나 의료 지원을 함께 요청한 사실이 발견된다. 1952년 3월 11일 마오쩌둥은 미군 비행기가 세균을 살포하고 있다면서 스탈린에게 북한 지역을 지원할 전투기뿐만 아니라 선양 기지에 소련의 공군 사단을 더 투입해줄 것을 요청하였다.⁹⁹⁾ 전쟁에서 인민지원군의 가장 큰 약점이 미군에 비해 형편없는 제공권 장악력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3월 7일과 3월 10일 저우언라이는 의료분야 지원을 소련에 요청하였다. 3월 7일 저우언라이는 미국의 ‘세균전’에 대응하는 노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명목으로 9명의 보건 및 의료 전문가를 파견해줄 것을 소련에 요청하였다.¹⁰⁰⁾ 며칠 뒤 3월 10일 저우언라이는 중국이 부족한 페스트, 콜레라, 파상풍, 장티푸스, 파라티푸스와 같은 각종 백신 2,000만 명분과 DDT 600톤을 소련에게 요청하였다.¹⁰¹⁾ 즉 중국에게 ‘세균전’ 선전에 쓰이는 물자

98) A. E. Cowdrey, "'Germ Warfare' and Public Health in the Korean Conflict," *Journal of the History of Medicine and Allied Sciences* 39, no. 2, (1984); Ruth Rogaski "Nature, Annihilation, and Modernity: China's Korean War Germ-Warfare Experience Reconsidered," *Journal of Asian Studies* 61, no. 2, (2002).

99) 沈志华,『中苏关系史纲 上册』, (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16), pp.182-187.

100) "Cable, Zhou Enlai to Filppov [Stalin]," 1952.3.7. 다음과 같이 중국은 소련에 구체적으로 그들이 원하는 전문가를 명시하였다. 보건 방역 전문가 1명, 세균 미생물학과 의학을 전공한 의사 및 연구자 1명, 곤충 및 기생충 학자 1명, 바이러스 백신을 제작할 수 있고 백신과 혈청 생산을 전공한 세균학자 2명, 백신과 혈청을 표준화할 수 있는 연구자 2명, 소독과 세균 박멸 전문가 1명, 역학자(疫學者) 1명.

101) "Ciphared Telegram No. 17318 from Beijing, Zhou Enlai to Filippov

와 인력은 일종의 더 큰 이득을 챙기려는 '투자'였던 셈이다. 그러나 소련은 중국이 만족할 만한 물자를 제공해주지 못하였다. 저우언라이의 요청 물량에 비해 소련이 제공한 물자는 요청량의 절반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¹⁰²⁾ 그러나 당시 중국인민지원군의 파병 규모를 고려해봤을 때, 저우언라이는 처음부터 전시에 필요량보다 더 많은 백신을 소련에게 요구하였다. 소련은 이를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판단한 적당량을 중국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소련은 전쟁 수행 명목으로 소련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중국의 의중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다. 북한 주재 소련 고문 라주바예프는 중국 지도자들이 전쟁이 끝나면 소련의 군사 지원이 줄거나 중단될 것을, 한국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것이 중국과 북한의 역량 약화를 초래할 것을 각각 우려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¹⁰³⁾ 즉 중국 입장에서 6·25전쟁이 지속되는 것은 크게 불리한 것이 아니었다.

소련의 경우, 중국처럼 '세균전' 선전을 통해 6·25전쟁을 지속하려는 저의가 있었지만 이유는 달랐다. 소련이 전쟁 지연 전략의 방법으로 '세균전' 설을 활용한 이유는 정확히 알기 어렵지만, '세균전'을 구실 삼아 휴전협상을 지연시키거나 대규모 군사 행동을 개시하는 방법¹⁰⁴⁾으로 전쟁을 장기화할 수 있으므로 소련은 '세균전' 설을 전쟁 장기화의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소련의 정보 요원이었다가 미국으로 망명한 유리 라스트보로프(Yuri Rastvorov)은 소련의 '세균전' 설 활용 목적이 전쟁 지연에 있음을 뒷받침하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그에 의하면 소

[Stalin],” 1952.3.10.

102) “Cable, Filippov [Stalin] to Zhou Enlai,” 1952.3.14.

103) 梁鎮三(沈志华), 「朝鮮戰爭期間中朝高層的矛盾、分歧及其解決－冷戰中社會主義陣營內國家關係研究案例之一」, 『近代史研究所集刊』第四十期, (2003), p.83.

104) “Communist Charges of US Use of Biological Warfare,” General CIA Records, 1952.3.25, CIA-RDP79S01011A000600050006-3, p.2.

련의 간첩 활동과 선전 운동은 그 배후에 장기 외교 전략이 있으며, ‘세균전’ 선전의 배후에 있는 외교 전략은 휴전 회담을 지연시켜 전쟁을 오래 지속하는 것이며, 동시에 당시 미 국무장관 존 포스터 덜레스(John Foster Dulles)가 진행 중이던 일본과의 강화조약을 방해하는 것이었다.¹⁰⁵⁾ 즉 당시 소련의 외교 전략은 스탈린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다. 스탈린 사후에 곧 ‘세균전’ 선전이 잠잠해진 것과 정전협정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간접적으로 증명한다.

실제로 스탈린은 6·25전쟁을 큰 물자나 인원을 들이지 않고 중국과 북한을 통해 최대 적국인 미국의 군사력과 경제력을 소진시키는 수단이라고 생각하였다. 스탈린은 6·25전쟁에서 북한 사람들이 입는 피해를 제외하고는 어떤 불리함도 없다면서 6·25전쟁은 미국의 제3차 세계대전 준비를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¹⁰⁶⁾ 또한 6·25전쟁은 소련에게 미국의 군사 기술과 조직에 대한 정보를 얻는 데 좋은 기회였다. 그래서 스탈린은 중국과 북한이 휴전회담에서 강경한 노선을 취하도록 하여 회담을 지연시켰다.¹⁰⁷⁾

4. 맺음말

이 글은 공산 측의 ‘세균전’ 설 제기 과정, 그 과정에서 실행된 ‘증거’ 조작 양상, 공산 측이 이러한 ‘세균전’ 설을 제기한 내막을 각각 살펴보았다. 북한을 비롯한 공산 진영이 펼친 ‘세균전’ 혐의 제기

105) Yuri A. Rastvorov, “Red Fraud and Intrigue in Far East,” *Life*, 1954.12.06, pp.176-178; 「蘇聯의 極東侵略陰謀 韓國戰爭의 脚本内幕 (下)」, 『동아일보』, 1955.2.20.

106) “Ciphred Telegram No. 21646 from Mao Zedong to Filippov [Stalin],” 1952.7.15.; 梁鎮三(沈志华), 같은 책, p.86.

107) Weathersby, “Deceiving,” p.179.

양상은 크게 1951년 단발적으로 ‘세균전’ 혐의를 제기한 시기와, 1952년 본격적으로 ‘세균전’ 혐의를 제기한 시기로 구분할 수 있었다. ‘세균전’ 설 공세가 재개된 1952년 2월부터는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과 소련도 참여하였다. 제한적인 ‘세균전’ 선전이 이루어진 1951년과 달리 1952년에는 미국에 대한 ‘세균전’ 혐의 선전이 대규모로 이루어졌다. 특히 공산 측은 국제과학위원단을 위시로 한 3번의 조사단을 조직하여 ‘세균전’ 혐의를 조사하였고 이후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국제과학위원단의 사실상 단장 역할을 맡은 조셉 니덤이 기자회견 석상과 인터뷰에서 밝힌 위원단의 조사 수행 방식과 능력의 한계는 국제과학위원단 보고서의 신빙성을 의심하게 하였다. 최근 중국 인민지원군 위생 부장 우즈리의 회고록과 스탈린 사후에 작성되었던 소련의 문서는 ‘세균전’ 설이 공산 진영에 의해 조작되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다. 그러나 라이텐버그의 주장과 달리 공산 측의 ‘세균전’ 증거 조작이 반드시 ‘세균전’ 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끝으로 중국과 소련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세균전’ 설을 활용하기도 하였다. 중국은 ‘세균전’ 설을 통해 소련으로부터 군사와 의료 분야의 지원을 얻고자 한 모습이 보이며, 소련의 경우 ‘세균전’ 설을 통해 전쟁을 지연시켜 군사·외교·경제적 이득을 얻고자 하는 의도가 포착되었다.

비록 이 연구는 자료 접근의 한계로 공산 측의 내부 문헌을 폭넓게 다루지 못하여 새로운 사실의 제시와 문제 제기가 제한적이었다는 한계가 있으나, 다양한 지역에서 생산된 사료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기존 연구에서 밝히지 못하였던 몇 가지 사실을 새롭게 발굴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우선 1951년과 1952년 ‘세균전’ 설의 기원이 서로 달랐다는 점을 밝혀, 1951년 북한이 ‘세균전’ 설을 단독으로 제기하였던 배후에는 소련이 있었으나 1952년 ‘세균전’ 설은 중국이 주도하였다는 ‘중국 기원설’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1952년 혐의 제

기 초기에 북한과 소련은 중국에 적극 협조하였던 것과 달리 전쟁 말미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는 소련의 문서에서 나타난 ‘세균전’ 설에 대한 북한 지도부의 태도 변화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또 중국의 ‘세균전’ 설 제기 목적 중에 소련으로부터 군사 및 의료 지원을 받기 위함이 있었다는 점, 중국 지도부는 ‘세균전’ 설이 이후에 거짓임을 알았으나 이를 하부 조직에는 알리지 않았다는 점을 각각 이 글에서 새롭게 밝혔다.

(원고투고일 : 2021. 7. 8, 심사수정일 : 2021. 8. 17, 게재확정일 : 2021. 8. 25.)

주제어 : 6·25전쟁, 세균전, 북한, 중국인민지원군, 전염병, 심리전, 선전, 소련, 냉전, 미국, 크로포드 샘즈

〈참고문헌〉

1. 신문 및 잡지

『동아일보』, 『로동신문』, 『민주조선』, 『조선일보』, 『조선문학』, 『주간 건강과 질병』, 『炎黃春秋』, 『人民日報』, *Daily Herald*, *Life*, *New York Times*, *People's China*

2. 우드로 윌슨 센터 디지털 아카이브 자료(연도순)

“Ciphared Telegram No. 16715 from Beijing, Mao Zedong to Filippov [Stalin],” 1952.2.21.

“Cable, Filippov [Stalin] to Mao Zedong,” 1952.2.23.

“Cable, Zhou Enlai to Filippov [Stalin],” 1952.3.7.

“Ciphared Telegram No.17318 from Beijing, Zhou Enlai to Filippov [Stalin],” 1952.3.10.

“Cable, Filippove [Stalin] to Zhou Enlai,” 1952.3.14.

“Cable, Mao Zedong to Filippov,” 1952.6.24.

“Explanatory Note from Glukhov to L.P. Beria,” 1953.4.13.

“Explanatory Note from Lieutenant Selivanov to L.P. Beria,” 1953.4.14.

“Explanatory Note from Lt. Gen. V.N. Razuvaev to L.P. Beria,” 1953.4.18.

“Memorandum from L.P. Beria to G.M. Malenkov and to the Presidium of the CC CPSU,” 1953.4.21.

“Memorandum from V.N. Molotov to Members of the Presidium of the CC CPSU,” 1953.4.21.

“Memorandum about Sessions of the CPSU CC Presidium from 13 March to 24 April 1953,” 1953.4.24.

- “Cover Sheet for Issue II Considered by the CPSU Presidium at Its Session on 24 April 1953,” 1953.4.24.
- “Protocol No 6 of the Meeting of the Presidium of the CC CPSU,” 1953.4.24.
- “Resolution of the Presidium of the USSR Council of Ministers,” 1953.5.2.
- “Telegram to V.M. Molotov from Beijing from the USSR Ambassador to the PRC, V.V. Kuznetso,” 1953.5.11.
- “Memorandum from the Chairman of the Party Control Commission Shkiriakov to G.M. Malenkov,” 1953.5.17.
- “Telegram from the USSR Charge d’Affaires in the DPRK, S.P. Suzdalev to V.M. Molotov,” 1953.6.1.
- “Decision of the Party Control Commission of the CPSU CC Regarding Comrade S.D. Ignatiev,” 1953.6.2.
- Tibor Méray, “The Truth about Germ Warfare,” Franc-Tireur, May 6–18, 1957, 6th.

3. 단행본 및 논문

- 강정구, 『한국전쟁과 미국의 세균전』, 『분단과 전쟁의 한국현대사』, 서울: 역사비평사, 1996.
- 국민방첩연구소, 『세균모략전: 6.25 당시의 붉은 날조극』, 서울: 甲子文化社, 1984.
- 고상진과 전도명, 『조선전쟁시기 감행한 미제의 만행』,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9.
- 정용욱과 이길상, 『해방전후 미국의 대한정책사 자료집 13: 소련 중국의 한반도 관련 자료』, 서울: 다락방, 1995.
- 『조선중앙년감 1951–1952』,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52
- 『조선중앙년감 1953』,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53.
- A. E. Cowdrey, *The Medics' War*, Washington, D.C.: Center of

- Military History, U.S. Army, 1987.
- Crawford F. Sams, *Medic: The Mission of an American Military Doctor in Occupied Japan and Wartorn Korea*, Armonk, NY: M.E. Sharpe, 1998.
- Howard Tolley, *The International Commission of Jurists: Global Advocates for Human Rights*,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1994.
- Malcolm W. Cagle and Frank Albert Manson, *The Sea War in Korea*, Annapolis: United States Naval Institute, 1957.
- Peter Williams and David Wallace, *Unit 731: the Japanese Army's Secret of Secrets*, London: Hodder & Stoughton, 1989.
- Philip Deane, *I Was a Captive in Korea*, New York: Norton, 1953.
- Sonia G. Benson and Gerda-Ann Raffaele, *Korean War: Almanac and Primary Sources*, Vol. 1, Detroit: UXL, 2002.
- Stephen Endicott, and Edward Hagerman, *The United States and Biological Warfare: Secrets from the Early Cold War and Korea*,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98.
- Zhang Shu Guang, *Mao's Military Romanticism: China and the Korean War, 1950-1953*, Lawrence: University Press of Kansas, 1995.
- 齐德学, 『朝鲜战争决策内幕』, 沈阳: 辽宁大学出版社, 1991.
- 沈志华, 『中苏关系史纲 上册』, 北京: 社会科学文献出版社, 2016.
- 中国社会科学院语言研究所词典编辑室, 『现代汉语词典』 第7版, 北京: 商务印书馆, 2016.
- 조성훈, 「한국전쟁의 세균전 논쟁 비판」, 『군사』 제41호, (2000).
<http://uci.or.kr/I410-ECN-0101-2016-390-001811943>
- 황영원, 「왜 거짓말을 하였는가?」, 『생태환경과 역사』 제2호, (2016).
<http://uci.or.kr/I410-ECN-0101-2017-090-002216430>

A. E. Cowdrey, "Germ Warfare and Public Health in the Korean Conflict," *Journal of the History of Medicine and Allied Sciences* 39, no. 2, (1984).

<http://doi.org/10.1093/jhmas/39.2.153>

Kathryn Weathersby, "Deceiving the Deceivers: Moscow, Beijing, Pyongyang and the Allegations of Bacteriological Weapons Use in Korea," *Cold War International History Project Bulletin* 11, (1998).

Milton Leitenberg, "New Russian Evidence on the Korean War Biological Warfare Allegations: Background and Analysis," *Cold War International History Project Bulletin* 11, (1998).

_____, "China's False Allegations of the Use of Biological Weapons by the United States during the Korean War," *Cold War International History Project Working Paper* 78, (2016).

Ruth Rogaski "Nature, Annihilation, and Modernity: China's Korean War Germ-Warfare Experience Reconsidered," *Journal of Asian Studies* 61, no. 2, (2002).

<http://doi.org/10.2307/2700295>

Stephen Endicott, "Germ Warfare and 'Plausible Denial': The Korean War, 1952-1953," *Modern China* 5, no. 1, (1979).

<http://doi.org/10.1177/009770047900500103>

Thomas Powell, "Biological Warfare in the Korean War: Allegations and Cover-Up," *Socialism and Democracy* 31, no. 1, (2017).

<https://doi.org/10.1080/08854300.2016.1265859>

Tom Buchanan, "The Courage of Galileo: Joseph Needham and the 'Germ Warfare' Allegations in the Korean War," *History* 86, no. 284, (2001).

<https://doi.org/10.1111/1468-229X.00203>

梁鎮三(沈志华), 「朝鮮戰爭期間中朝高層의矛盾、分歧及其解決－冷戰中社會主義陣營內國家關係研究案例之一」, 『近代史研究所集刊』第四十期, (2003).

<https://doi.org/10.6353/BIMHAS.200306.0055>

4. 기타 자료

서경희, 『전염병예방법 전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803388, 2008.12.31.
Commission of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Democratic Lawyers,
“Report on U.S. Crimes in Korea,” Pyongyang, 1952.3.31.
General CIA Records, “Communist Charges of US Use of Biological
Warfare”, 1952.3.25., CIA-RDP79S01011A000600050006 -3.
International Scientific Commission, “Report of the International
Scientific Commission for the Investigation of the Facts
Concerning Bacterial Warfare in Korea and China (with
Appendices),” Peking, 1952.

(Abstract)

The Process of 'Biological Warfare' Allegation and Behind-The-Scenes Accounts during the Korean W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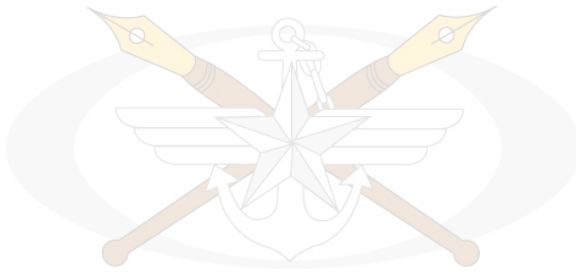
Jeon, Ye-mok

This article aims to examine a series of events when North Korea, China, and the Soviet Union raised the allegation of 'biological warfare' against the US and allies, and its inner story by comparing and analyzing documents, letters, memoirs recorded in Korea, China, Britain, the Soviet Union, and the US during the Korean War.

This article consists of two parts. The first part examines the process of raising the allegations mainly from 1951 to 1952. The allegations of biological warfare by the US, were first raised on May 8, 1951, when Park Heon-young, a foreign minister of North Korea, issued a statement charging the US of using biological weapons but there were no ensuing allegations after that time. In 1952, the large scale propaganda of the 'biological warfare' allegations occurred in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China, and the Soviet Union. Three investigation teams were, supported by those countries, also established. The second one looks into 'evidence' provided by communist countries was highly likely to be fabricated. This fabrication was attested to in the memoir of a head of the Chinese Army's sanitary department, Wu Zhi-ri, as also was reaffirmed in documents of the Soviet Union, implying that the origin of allegations was from China. This, however, does not necessarily mean that the allegations were entirely manipulated. China and the Soviet Union used the allegations of 'biological warfare' for the benefit of their countries. China appeared to use the allegation to gain military and medical supports from the Soviet Union. The Soviet Union intended to prolong

the Korean War through the allegation in order to learn the information of US military and to lessen the possibility of World War III by draining US military power in Asia.

Keywords : Korean War, North Korea, Biological Warfare, Germ Warfare, People's Volunteer Army, Infectious Disease, Psychological War, Propaganda, Soviet Union, Cold War, United States, Crawford Sams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1, No. 120, pp.43-78
<https://doi.org/10.29212/mh.2021..120.43>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1954년 밴 플리트 사절단의 동아시아 냉전 구상과 한미관계의 구성*

이동원**

- 
1. 머리말
 2. 밴 플리트 사절단 파견의 배경
 3. 사절단 활동과 밴 플리트 중도 귀환의 의미
 4. 밴 플리트 보고서와 한미 동맹관계의 구성
 5. 맺음말

1. 머리말

6·25전쟁 휴전 이후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동아시아 냉전 전략과 군사원조 규모를 재검토하기 위해 1954년 4월 밴 플리트(James

* 이 논문은 필자의 박사학위논문, 『이승만 정권기 미국의 대한(對韓) 군사원조 연구』 (2019)의 제2장 제1절의 일부 내용을 바탕으로 수정·보완한 것입니다.

**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조교수

A. Van Fleet) 전(前) 미 제8군 사령관을 단장으로 하는 군사원조 특별사절단을 동아시아에 파견했다. 이렇게 탄생한 일명 ‘밴 플리트 사절단(the Van Fleet Mission)’은 한국, 대만, 일본, 필리핀을 방문하고 군사 문제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제를 아우르는 동아시아 정책에 대한 종합 보고서를 작성하여 9월 30일 아이젠하워 대통령에게 제출했다. 본고는 이때 제출된 밴 플리트 사절단 보고서를 중심으로 6·25전쟁 휴전과 한미군사동맹 체결, 인도차이나반도 문제의 부상으로 점차 전략적 가치가 높아지고 있었던 동아시아에 대한 당시 미국의 냉전 구상을 입체적으로 파악하고, 이것이 한미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밴 플리트는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미 육사 동기로 전역 이후에도 아이젠하워의 두터운 신임을 받아 특별사절단 단장을 맡았다. 밴 플리트를 군사원조특별사절단장에 임명한 것은 물론 미국의 필요에 부합했기 때문이지만 이승만 대통령의 요청에 의한 것이기도 했다. 밴 플리트는 6·25전쟁기 미 제8군 사령관을 역임했고 이승만 대통령과도 매우 가까운 사이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밴 플리트는 미국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면서도 맥아더와 유사하게 ‘아시아주의자’의 면모를 드러냈고, 이 때문에 밴 플리트 사절단의 보고서는 미국의 이해관계와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의 이해관계를 절충하는 내용을 담게 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는 미국과 동아시아 국가들, 특히 미국과 한국의 관계 형성 과정과 그 상호적 성격을 이해하는 역사적 사례 연구가 될 것이다. 동시에 ‘한국군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밴 플리트 장군이 전역 이후 한국의 군사원조 문제와 한국군 증강에 어떻게 개입하고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휴전 이후 한미합의의사록으로 대표되는 미국의 대(對) 한국 공약(公約)이 어떤 과정을 거쳐 구체화되었는지도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 방법은 기존의 연구사를 바탕으로 밴 플리트 사절단 보고서 및 예비보고서 등 관련 문서들을 활용하는 방식이 될 것이다. 이와 함께 이 시기 NSC(National Security Council) 문서와 미 국무부 간행 FRUS(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등을 활용하여 미국의 대 아시아 정책, 대 동아시아 정책, 대한정책의 전체적인 맥락도 함께 살펴볼 것이다.

밴 플리트 사절단 보고서를 직접 다룬 국내 연구는 조성훈의 연구가 유일하며 이는 밴 플리트 사절단의 구성 배경과 인적 구성 등 기초적인 사실 관계를 밝혀낸 선구적 연구라 할 수 있다.²⁾ 그러나 연구의 초점이 미국의 독도 인식에 있었기 때문에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분석의 대상이 아니었다.

국외에서도 폴 F. 브레임의 전기와 같이 밴 플리트 개인의 일대기를 정리한 전기류 연구가 많지만, 한미관계의 맥락에서 이 보고서에 집중한 연구는 찾기 어렵다.³⁾ 국내 연구에서는 광경상, 권혁은, 이동원 등의 연구가 한국의 울산 정유공장 및 울산 공업단지 건설, 제주 송당 목장 건설 등에서 밴 플리트가 민간투자 중개인으로서는 어떤 역할을 했는지 살펴보았으나 한국군 증강 등 군사원조와 관련한 그의 역할을 분석하지는 못했다.⁴⁾

따라서 본 연구는 6·25전쟁 휴전 이후 한국군 증강 논의 과정에서 밴 플리트의 역할을 이해하고, 미국과 한국, 아이젠하워와 이승만의 이해관계를 조율했던 그의 독특한 위상을 이해하는 첫 걸음이

2) 조성훈, 2009 「1954년 밴 플리트 사절단 보고서와 미국의 독도 인식」, 『동양학』 46.

3) 폴 F. 브레임 지음, 육군교육사령부 자료지원처 번역실 옮김, 2002 『승리의 신념 : 밴 플리트 장군 일대기』 불명

4) 광경상, 2016 「해방 후 남한 석유시장의 개편과 울산 정유공장 건설 계획」, 『동방학지』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권혁은, 2017 「5.16 군사정부가 미 대한원조정책의 성격과 AID-유송의 역할 - 초기 울산공업단지 건설과정을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 105; 이동원, 2018 「‘전쟁영웅’의 이면, 밴 플리트의 대한 민간투자 유지 활동」, 『역사비평』 125.

될 것이다. 또한 이 시기 미국의 동아시아 지역통합전략의 내용과 한미 갈등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에도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2. 밴 플리트 사절단 파견의 배경

6·25전쟁 휴전 이후 한국 정부는 1953년 10월 1일 한미상호방위조약으로 미국과 군사동맹을 체결했음에도 곧바로 미국에 군사력의 대폭적인 증강을 요구했다. 손원일 국방부장관은 월슨(Charles Erwin Wilson) 국방부장관에게 20개 사단의 조기 증강, 한국군의 전투능력 강화를 요구하는 서한을 두 차례나 보냈고, 이승만 대통령도 11월 5일 아이젠하워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 한국군 증강 제안의 긍정적 검토를 요청했다.⁵⁾ 1954년 초 미국이 당초 약속했던 한국군 20개 사단 창설이 실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추가 요구를 이어갔다. 백두진 국무총리는 스티븐스(Robert T. Stevens) 육군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현행 20개 사단에 더해 15개 내지 20개 사단의 추가 증설을 요청했던 것이다.

선행 연구는 한국 정부가 이승만 대통령 주도 하에 군사력 증강을 요구했던 배경으로 북진통일을 위한 단독공격 행동의 필요성, 단독행동 위협을 통한 대미교섭력 강화 시도, 일본 재군비 동향에 대한 우려 등을 지적했다. 특히 한국정부가 일본의 재군비 동향을 우려하며 “한일 양국의 군사력의 균형을 맞춘 증강”을 요구했다고 보았다.⁶⁾ 그러나 당시 한국 측 관계자들의 입장을 살펴보면 한국군 증강 요구는 일본의 재군비에 대한 우려보다는 미군 철수 이후를

5) “한국군 증강과 관련해 미국의 입장을 설명하는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서한” (1953.12.23.), 『이승만 대통령 영문서한 번역집 1』 대통령기록관, 2012, 92~93쪽.

6) 李鍾元, 1996 『東アジア冷戦と韓米日關係』東京大學出版會, pp.78~80.

대비하기 위한 군사원조의 확대 기대에서 기인한 것이었다.⁷⁾

실제로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1953년 12월 26일 한국에 주둔해 있는 미 육군을 “상황이 허락하는 만큼, 계속해서 감축”할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했고, 2개 사단을 철수시켰다.⁸⁾ 그러자 이승만은 미국이 동의한다면 공산주의 침략에 대항하는 라오스의 투쟁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군 1개 사단을 파병하겠다고 제안함으로써 통상전력으로서 한국군의 활용 가능성을 부각시키는 방식으로 한국군 증강의 당위성을 제기했다.⁹⁾

그러나 아이젠하워 행정부는 1953년 11월 20일, 이전의 NSC 118/1, NSC 156/1을 대체하는 NSC 170/1, “한국에서 미국의 목표와 행동 방침(U.S. Objectives and Courses of Action in Korea)”에서 표방했듯이 “한국군을 국내 안보에 충분하고 강대국의 공격이 아닌 국지적 도발을 막아낼 수 있는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시각을 견지했다.¹⁰⁾ 미 합참도 3월 31일 월슨 국방부장관에게 보내는 비망록을 통해 15~20개 사단을 추가 증설해달라는 한국 정부의 요구는 과도하며 현행 20개 사단이 대한민국 정

7) 손원일 국방부장관은 자신의 회고록에서 이 문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회고했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미국의 군사원조의 확대였다. 전쟁 중에는 우방군이 병력과 무기와 실탄을 가지고 와서 싸웠지만 그들이 물러간 후에는 우리 군의 전투력 증강은 우리 자신의 몫이었다. 국군의 장비가 원래 미약했지만 그간의 전투로 더욱 노후되었고 파손된 것들도 많았다. 군함의 부족은 물론 항공기도 신형 전투기도 없고 프로펠러기뿐이었다. 육군도 형편은 마찬가지로 탱크 한 대 없이 장갑차가 고작이고 중포도 없는 실정이었다.” (홍은혜 엮음, 1990, 『우리들은 이 바다 위해: 손원일 제독 회고록』 가인기획, 177쪽.)

8) “The Ambassador in Korea (Briggs) to the Department of State” (1953.12.31.), FRUS, 1952-1954, Korea, Volume XV, Part 2, Document 827.

9) “Memorandum by the Executive Secretary (Lay) to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1954.3.2.), FRUS, 1952-1954, Korea, Volume XV, Part 2, Document 875.

10) 도널드 스텐 맥도널드, 2001 『한미관계 20년사 (1945~1965년)』 한울 아카데미, 46~49쪽; “Report by the Executive Secretary (Lay) to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FRUS, 1952-1954, Korea, Volume XV, Part 2, Document 805.

부가 감당할 수 있는 최대 규모라는 점을 강조했다.¹¹⁾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6·25전쟁 휴전 이후 부상한 중국 문제와 인도차이나반도 문제에 대응하여 1954 회계연도의 전체 군사원조 총액 31억 8천만 달러 중 아시아 군사원조 비중을 1/3에 해당하는 10억 3,500만 달러 수준으로, 기존 10% 내외에서 크게 증가시킨 상태였다. 이와 함께 아시아에 대한 비(非)군사원조도 1953 회계연도의 총액 대비 15% 수준에서 50.7%로 세 배 이상 증가해 유럽에 대한 비(非)군사원조 비중인 32.4%를 넘어섰다.¹²⁾ 따라서 동아시아에서 어떻게 미국의 군사 및 경제 원조를 분배하고 동맹국의 통상전력을 강화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미국에게도 큰 고민거리가 아닐 수 없었다. 이에 대한 미 군부의 방침을 정리한 것이 1954년 4월 9일 합동참모본부 비망록으로, 월슨 국방부장관은 이를 4월 10일 NSC 5416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에 제출했다.¹³⁾

NSC 5416, ‘극동 군사력 발전에 대한 미국의 전략’에서 합참은 극동을 “하나의 전략적 실체(a strategic entity)”로 상정한 포괄적 정책이 부재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극동의 비(非)공산국가들에게 주요하고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것은 소련이 아니라 중국의 공격적 자세와 증강되고 있는 군사력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이를 억제하기 위해서 비(非)공산국가들의 통상전력을 강화시키고 그것을 통합사령부 지휘 하에서 통일적으로 운영할 것을 권고했

11) “Memorandum by the Executive Secretary (Lay) to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1954.4.7.), FRUS, 1952-1954, Korea, Volume XV, Part 2, Document 884.

12) 이동원, 2019 『이승만 정권기 미국의 대한(對韓) 군사원조 연구』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134~136쪽.

13) “Memorandum by the Secretary of Defense (Wilson) to the Executive Secretary of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Lay)” (1954.4.10.), FRUS, 1952-1954, East Asia and the Pacific, Volume XII, Part 1, Document 150.

다.¹⁴⁾ “미국 자원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 증가 없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극동의 비(非)공산국가들 사이에 포괄적인 지역 안보협정의 체결, 즉 지역적 안전보장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이때 합참이 지역적 안전보장체제의 중심으로 중시했던 국가는 일본으로, “일본 군사력의 점진적 발전을 촉진”하여 극동의 집단방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했다. 이와 함께 집단방위에 대한 ‘잠재적 기여자(prospective contributors)’로서 한국과 대만의 군사적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고 군사원조와 지원을 제공하고자 했다. 이러한 합참의 인식은 군사적 차원과 경제적 차원이라는 차이는 있었지만 스타센(Harold E. Stassen) 상호안전본부장이 주장했던 “지역별 중심 강화를 고려한 새로운 상호안전보장계획(Mutual Security Program, MSP)”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었고, 일본을 제외하고는 자국 군대에 적절한 보급지원과 전략적 이동성을 제공할 수 있는 나라가 없다는 현실을 고려한 것이기도 했다.¹⁵⁾

이런 맥락에서 아이젠하워 행정부는 한국과 일본, 대만, 필리핀 등 미국과 군사동맹 관계에 있거나 미국이 군사원조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는 동아시아 전체의 판세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었다. 우방국들에 군사원조를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우방국 현지

14) 李鍾元, *ibid.*, pp.24~26.

15) NSC 5416에서 미 합참은 극동의 우방국가들의 전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현재 극동지역 비(非)공산국가(미군을 제외한)들의 무장 병력은 육군 210만 명, 해군 11만1,000명, 공군 14만 3,000여 명이다. 그러나 이러한 수치들이 현재 이들 국가들의 종합적 군사 능력의 진정한 지표는 아님을 인식해야 한다. 효과적인 전투부대라는 측면에서, 버마,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군대는 비교적 낮은 수준이다. 일본을 제외하고 이 지역의 국가들은 그들의 군대에 적절한 물류 지원과 전략적 이동성을 제공할 수 있는 수단이 부족하다.” (“Memorandum by the Secretary of Defense (Wilson) to the Executive Secretary of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Lay)” (1954.4.10.), *FRUS*, 1952-1954, East Asia and the Pacific, Volume XII, Part 1, Document 150.)

군대의 강화와 함께 동아시아 주둔 미군의 재배치 문제와도 직결되었고, 이는 결국 극동지역뿐만 아니라 아시아, 나아가 세계 냉전전략과 연결되어 있었다. 이를 위해 아이젠하워는 군사원조특별사절단 파견을 결심했고, 자신의 미 육사 동기이자 6·25전쟁기 미 제8군 사령관을 지낸 밴 플리트를 단장으로 선택했다.

특히 이승만과 밴 플리트의 관계는 이승만과 맥아더의 관계 이상으로 특별한 것이었다. 이승만은 밴 플리트를 미국인 중 누구보다 신뢰했고, 개인 서신을 꾸준히 주고받으며 매우 사적인 문제까지 논의할 정도로 가깝게 지냈다.¹⁶⁾ 밴 플리트는 한국 부임 직후인 1951년 5월 ‘통천 상륙작전’을 입안하여 휴전회담 등의 정치적 해결보다는 군사적 해결을 지향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전쟁 중임에도 부산의 임시 수도를 서울로 환도(還都)하겠다는 이승만의 1952년 ‘3월 환도설’에 적극 동조했다. 그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무력에 의한 한국 문제 해결을 시사하며 이승만에게 ‘특별한’ 신뢰를 얻고 ‘친한파(親韓派)’ 미국인의 대표적 인물이 되었다.¹⁷⁾

이승만은 3월 22일 브릭스(Ellis O. Briggs) 주한미대사와의 면담에서도 미국의 6·25전쟁 제한전 정책을 비판하는 밴 플리트의 리더스 다이제스트(Reader's Digest) 기사에 매우 강한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다.¹⁸⁾ 1953년 3월 31일 전역한 밴 플리트는 “승리를 추구하지 않는 미국의 전략”을 비판했다. 그는 국방부, 특히 육군부와 합참의 장교들이 회유와 타협을 포함하는 “제한전” 군사전략을 채택한 점에 불만을 표했다.¹⁹⁾

16)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2012 『이승만 대통령 영문서한 번역집 I』 참고.

17) 이동원, 2019 『이승만 정권기 미국의 대한(對韓) 군사원조 연구』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149~152쪽.

18) “The Ambassador in Korea (Briggs) to the Department of State” (1954.3.22.), *FRUS*, 1952~1954, The Geneva Conference, Volume XVI, The Geneva Conference on Korea April 26~June 15, 1954, Document 28.

19) 폴 F. 브레임, 앞의 책, 426~427쪽.

결국 밴 플리트 사절단 문제는 1954년 4월 13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제193차 회의에서 레드포드 합참의장의 제안을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수락하면서 공식화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한국의 병력 증강 요구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현행 20개 사단 규모가 대한민국 정부가 감당할 수 있는 최대치라는 합참의 3월 31일자 국방부장관 보고를 지지하는 방향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다만 스미스(Walter B. Smith) 국무부차관이 지적했듯이 한국군 증강이 한국 정부의 제네바 회담 참석 문제와 결부되어 있었기 때문에, 레드포드 합참의장은 이 문제에 대해 유용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밴 플리트를 한국에 파견해 일정 기간 시찰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했다. 스미스 국무부차관도 이에 동의하며 밴 플리트가 시찰 결과에 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할 것을 제안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도 한국 정부의 요구에 대한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에 동의했다. 닉슨(Richard Nixon) 부통령은 국무부의 표현을 빌어 밴 플리트가 “이승만에게 던져주는 뼈다귀(a bone to Rhee)”로 완벽한 인물이라고 평가했다.²⁰⁾

따라서 아이젠하워가 극동 군사원조특별사절단 단장으로 밴 플리트를 지목한 것은 1954년 4월 26일 시작된 제네바 회담을 앞두고 회담에 반대하며 한국군 증강을 요구하는 이승만을 회유하고, 실제로 밴 플리트 사절단을 통해 극동의 군사원조 현실을 점검하는 정치적, 실용적 차원을 모두 고려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단기적으로는 동아시아 정세 변화에 대비하고, 장기적으로는 극동의 지역적 안전보장체제의 실현을 타진하는 것이 이 시기 미국의 정책 목표였던 것이다.

20) “Memorandum of Discussion at the 193d Meeting of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Tuesday, April 13, 1954”, (1954.4.13.), *FRUS*, 1952~1954, Korea, Volume XV, Part 2, Document 885.

3. 사절단 활동과 밴 플리트 중도 귀환의 의미

마셜 도서관(George C. Marshall Research Library)의 Van Fleet Papers를 활용한 밴 플리트 전기의 묘사에 따르면, 월슨 국방부장관은 전역 후 사업가로 변신하여 바쁘게 지내던 밴 플리트에게 수많은 전화통화 끝에 사절단을 이끌겠다는 승낙을 얻었고, 4월 7일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했다.²¹⁾

대통령께서는 밴 플리트 장군이 극동지역에서 미국의 군사원조프로그램에 관한 조사를 맡아 줄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밴 플리트 장군은 민간인 신분으로 대사급에 해당하는 대통령 특사로서 여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밴 플리트 장군은 미국의 군사원조고문단이 있는 극동국가들을 방문할 것이며, 조사 결과는 국방장관을 거쳐 대통령에게 수시로 보고될 것입니다. 여행기간 동안 그는 극동사령관 헐(John E. Hull) 장군과 태평양사령관 스템프(Felix B. Stump) 제독, 그리고 그가 방문하는 나라의 대사 및 대표단과 그의 조사활동에 대하여 협의할 것입니다. 밴 플리트 장군은 국방차관보 맥닐(Wilfred. J. McNeil)과 군인 및 민간인으로 구성된 소규모 참모진을 대동할 것입니다. 밴 플리트 장군과 그의 일행은 5월 1일 출국할 예정입니다.

4월 26일 월슨은 밴 플리트에게 서한을 보내 극동의 군사원조프로그램(Military Assistance Program, MAP)을 조사하는 사절단의 임무와 구성에 대한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전달했다. 여기서 아이젠하워는 밴 플리트가 상황을 완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이승만과

21) 폴 F. 브레이, 위의 책, 432~433쪽; 이동원, 2018 「‘전쟁영웅’의 이면, 밴 플리트의 대한 민간투자 유치 활동」, 『역사비평』 125, 124쪽.

그의 군사 고문들을 만나 협의할 것과, 헐(John E. Hull) 극동군사령관과 협력하여 한국군의 장래 규모와 편성, 예비군에 대한 한미연합 계획의 실용성에 대한 권고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그리고 이와 유사한 조사를 대만과 일본에서도 수행할 것을 요구하여 밴 플리트 사절단 파견의 첫 번째 과제가 한국 문제, 즉 이승만의 제네바 회담 반대와 무리한 한국군 증강 요구 해결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²²⁾

월슨의 서한에 따르면 사절단은 현지 군대의 규모, 구성, 장비, 훈련, 예비군, 그리고 이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에 대한 권고안을 대통령에게 제출해야 했고, 이를 위해 해당 국가가 그런 군대를 부양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재정적 자원이 있는지도 조사해야 했다. 따라서 사절단의 조사 범위는 해당 국가의 군사 문제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등 사실상 모든 문제를 대상으로 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는 곧 군사, 경제, 기술 원조를 포괄하는 극동의 상호안전보장계획(MSP) 전반에 대한 검토를 요구하는 것이었다. 게다가 권고안은 1955~1957 회계연도를 포괄하는 비교적 장기적 전망을 담아내야 했다.²³⁾

국방차관보 맥닐(Wilfred. J. McNeil)은 재정 전문가로서, 월슨 국방부장관이 밴 플리트를 수행하도록 지정한 유일한 인물이었다. 맥닐은 상호안전보장계획(MSP) 분석을 도와줄 전문가들을 자신의 수하 중에서 선정했고, 밴 플리트는 이 팀을 승인했다. 각 군에서는

22) 밴 플리트 사절단 파견 당시인 1954년 4월~7월은 한미합의의사록 체결 이전 시점이었지만 헐(John E. Hull) 극동군사령관은 한미합의의사록 체결 이후 유엔군사령관으로서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며 군사원조를 비롯한 미국의 대한원조 전반에 대한 통제권을 갖게 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이동원, 2018 「이승만 정권기 한미합의의사록의 체결과 개정」, 『역사와 현실』 107 참고.

23) 「From C. E. Wilson to James A. Van Fleet」, 『Report of the Van Fleet Mission to the Far East』, RG 341 Records of the Headquarters U.S. Air Force(Air Staff), Entry 335 Air Force Plans Decimal File 1942-1954, Korea, Box 881.

조사단 대표들을 지명해 두었지만 선발은 전적으로 사절단장인 밴 플리트의 권한이었다. 그는 육해공군에서 추천한 인물들을 대부분 받아들였으나 그의 옛 친구이자 군사훈련 전문가인 왈츠(Welcome P. Waltz) 예비역 대령과 그의 사위인 맥코넬(Edward T. McConnell) 중령을 사절단에 포함시켰다. 밴 플리트는 팀을 보강하기 위해 제 90사단 근무 시절 휘하에서 작전 장교로 근무한 스틸웰(Richard G. Stilwell) 대령을 선발해 사절단의 조정관으로 임명했고, 자신의 개인참모를 지냈던 슈메이커(Samuel E. Shoemaker) 중령과 매튜스(Lawrence G. Mathews) 소령이 스틸웰을 보좌하도록 했다.²⁴⁾

국방부가 추천한 인물들은 맥닐 차관보를 필두로 대부분 재정 전문가들이었고, 6월에 합류한 워렌(William C. Warren) 박사도 1935년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하고 1952년부터 1970년까지 컬럼비아대 로스쿨 학장을 지냈지만, 1947~1949년 재무부 장관의 세무 자문(tax consultant), 1949~1950년 일본 재정 사절단의 일원으로 활동한 인물이었다.²⁵⁾ 이에 비해 밴 플리트가 추천한 인물들은 대부분 육군 출신의 군사훈련 및 전투훈련 전문가들이었다. 다음은 밴 플리트 사절단의 구성을 표로 정리한 것이다.

24) 폴 F. 브레임, 앞의 책, 434쪽. 이 책에 따르면 원래 국방부는 이 사절단의 책임자로 맥닐 차관보를 추천했다고 한다. 그러나 워싱턴의 '내부 관계자들'은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조국에 대한 밴 플리트 장군의 공로를 인정하고, 오랜 동기생이었던 그에게 행정부 자리를 주지 못한 것에 대한 보상 형식으로 밴 플리트를 조사단 단장으로 임명했다고 보았다.

25) 「William C. Warren, Educator Philanthropist And Former Dean of Columbia Law School, Dies at 91」, 『Columbia University News』 Sept. 15, 2000.

〈표 1〉 밴 플리트 사절단의 구성²⁶⁾

성명	직위·계급	기간	임무
밴 플리트 (James A. Van Fleet)	대사		단장
맥닐 차관보 (Wilfred. J. McNeil)	재정 담당 국방차관보 (Assistant Secretary of Defense (Comptroller))		국방부장관 대리 MSP 재정 문제
워렌 박사 (William C. Warren)	컬럼비아대 로스쿨 학장	6.1~9.30	정책, 교육 문제 특별 자문
왓킨스 박사 (Ralph J. Watkins)	Dun & Bradstreet 연구소장	4.26~9.30	정책, 정치-군사 분석 특별 자문
왈츠 대령 (Welcome P. Waltz)	육군 예비역 대령	4.30~7.13	군사훈련 및 군사학교 특별 자문
퍼거슨 준장 (James Ferguson)	공군 준장	4.26~7.5	공군참모총장 대리
드가브레 대령 (Chester B. DeGavre)	육군 대령	4.26~7.15	육군참모총장 대리
쥬리카 주니어 대령 (Stephen Jurika Jr.)	해군 대령	5.1~6.26	해군참모총장 대리
맥도날드 대령 (David McDonald)	해군 대령	6.27~7.13	해군참모총장 대리
홀컴(John Holcombe)	국방장관실 유럽담당 부감사관	4.26~7.1	국방차관보실 재정 전문가
코리(Joseph Corie)		4.26~7.5	국방차관보실 재정 전문가
로스(Irving Roth)		4.26~7.5	국방차관보실 재정 전문가
모리스 대령 (Howard A. Morris)	육군 대령	4.26~7.5	국방차관보실 재정 전문가
래러(Max Lehrer)		4.26~7.5	국방차관보실 재정 전문가

26) 「Composition of Mission」, 『Report of the Van Fleet Mission to the Far East』, RG 341 Records of the Headquarters U.S. Air Force(Air Staff), Entry 335 Air Force Plans Decimal File 1942-1954, Korea, Box 881; 조성훈, 앞의 논문, 202쪽 참고.

성명	직위·계급	기간	임무
맥키니(Troy McKinney)		4.26~7.5	국방차관보실 재정 전문가
피치(John H. Fitch)		4.26~7.5	국방차관보실 재정 전문가
이튼 대령 (Dudley P. Eaton)	공군 대령	4.26~7.15	국방차관보실 재정 전문가
맥코넬 중령 (Edward T. McConnell)	육군 중령	4.26~7.15	전투 훈련, 군사학교, 현지군 구성(기갑부대)
슈메이커 중령 (Samuel E. Shoemaker)	육군 중령	4.26~9.30	사절단 부조정관
매투스 소령 (Lawrence G. Mathews)	육군 소령	6.1~7.25	전투 훈련, 군사학교, 현지군 구성(보병)
스틸웰 대령 (Richard G. Stilwell)	육군 대령	5.17~9.30	사절단 조정관

벤 플리트 사절단은 출발 전부터 한국인들의 주목을 받았다. 특히 동아일보는 “벤 장군의 방아(訪亞) 사명”이라는 제하의 5월 2일자 기사에서 “이 대통령이 벤 장군을 아(亞)주 동맹군을 훈련하는 지도자로 해달라고 한 대미요청이 화부(華府)에서 숙의될만한 시간이 경과한 뒤에, 그리고 델레스 장관의 동남아 동맹의 결성에 대한 적극적 의도가 발표된 뒤에” 사절단이 파견된 것이 시사하는 바가 있다면서 한미 관계에서 자신의 주도권을 과장하는 이승만 대통령 특유의 ‘정치 선전’에 힘을 실어 주었다. 그러면서도 “미국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안주스[ANZUS]의 확대에 대하여 영불 양국은 수부(壽府)회의의 결과 여하를 안 뒤에 그 여부를 결정하고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뱌씨를 파아(派亞)하는 것은 수부회의의 실패를 예견한 이의 선후책이라고 볼 수도 있는 동시에 수부회의를 성공으로 이끌기 위한 대공 협박적 제스처여로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하여 벤 플리트 사절단 파

견이 아시아 지역통합 및 공동 방위체 문제, 제네바 회담의 난항과 관련이 있다고 정확하게 추정했다.²⁷⁾

밴 플리트 사절단은 4월 28일 미 공군 특별기편으로 워싱턴 D.C.를 출발해 5월 1일 하와이의 호놀룰루에 도착해 스템프(Felix B. Stump) 태평양사령관 및 주요 참모진과 회담을 가졌다. 5월 3일에는 호놀룰루를 떠나 5일 도쿄에 도착했고 헐(John E. Hull) 극동군사령관과 예비회담을 가졌으며 보고서를 작성하고 업무를 볼 수 있는 숙소를 배정받았다.

밴 플리트의 첫 임무는 한국의 상황과 미국의 대한(對韓)군사원조 소요를 파악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그는 바로 다음날 사절단을 이끌고 서울로 향했으며 5월 11일까지 한국에 머물렀다. 7일에 테일러 미 제8군 사령관의 보고를 받고 이승만 대통령을 방문한 밴 플리트는, 8일 제5공군 사령부에서 타일러 우드(C. Tyler Wood) 경제조정관의 보고를 받았다. 9일에는 손원일 국방부장관 등 한국군 수뇌부와 회담을 갖고 다시 이승만 대통령을 방문했으며, 10일에는 광주에 보병학교를 점검했고, 11일에는 제2군단 지역을 시찰하고 제1군사령부를 방문했다.²⁸⁾ 6일 방한한 밴 플리트에 이어 7일 오후에는 미 예비군 사령관 렌 리차드 장군도 내한하여 9일 있었던 한국군 수뇌부와 회담에 참여하는 등 예비군을 포함한 한국군 증강 문제를 논의했다.²⁹⁾

27) 「밴 장군의 방아(訪亞) 사명」, 『동아일보』 1954.3.30. 1면.

28) 「Itinerary of Mission」, 「Report of the Van Fleet Mission to the Far East」, RG 341 Records of the Headquarters U.S. Air Force(Air Staff), Entry 335 Air Force Plans Decimal File 1942-1954, Korea, Box 881; 폴 F. 브레이, 앞의 책, 434~435쪽.

29) 「미 예비군 사령관도 내한」, 『동아일보』 1954.5.8. 1면; 「국군 증강책 속의」, 『경향신문』 1954.5.10. 1면. 경향신문 기사에 따르면 5월 9일 회의에는 밴 플리트 특사, 테일러 미 제8군 사령관, 맥닐 국방차관보 등 사절단 일행 12명과 손원일 국방부장관, 이호 국방차관, 정일권, 박옥규, 최용덕 육해공군 참모총장 및 김석범 해병대사령관, 이형근 연합참모부장, 신태영 민병대 총사령관, 그리고 각 군 고위 작전참모 전원이 참석했다.

밴 플리트 사절단은 5월 12일부터 15일까지 대만을 방문해 컨트리팀(country team)의 보고를 받고 장개석 총통과 회담을 가졌으며 국방부장관의 보고를 받는 등 대만에서도 군 수뇌부와 회담을 가졌다. 16일 다시 대구로 돌아온 밴 플리트는 17일 경무대에서 이승만 대통령을 만났고, 한국후방관구사령부(KComZ) 사령관, 군사고문단(KMAG), 육군참모총장의 보고를 받았다. 18일에는 한국의 육해공군 사관학교와 진해의 육군과 해군 훈련 시설을 시찰했다.

19일 부산에서 도쿄로 향한 밴 플리트 사절단은 20~21일 일본 수상 및 외무상, 극동군 사령관 및 주요 참모진과 회담을 가졌고, 22일에는 오키나와를 방문했으며 주요 시설을 시찰한 뒤 다시 대만으로 향했다. 그리고 23~28일에는 대만의 군사 및 행정 기관, 컨트리팀 구성원들과 강도 높은 회담을 진행했다. 그 사이 밴 플리트는 홍콩을 방문해 인도차이나 군사원조자문단장(Chief of MAAG, Indochina)과 회담을 갖기도 했다.³⁰⁾

밴 플리트 사절단이 약 한 달 동안 하와이를 거쳐 한국과 대만을 각 2회, 일본과 홍콩을 각 1회 방문하는 등 바쁜 일정을 소화한 것은 기본적으로 한국, 대만, 일본을 핵심으로 하는 동아시아 군사력과 군사원조 검토 및 재조정을 위한 것이었지만, 인도차이나 반도의 상황이 악화되는 가운데 대만 해협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는 등 아시아의 군사 정세가 요동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³¹⁾

30) 「Itinerary of Mission」, 「Report of the Van Fleet Mission to the Far East」, RG 341 Records of the Headquarters U.S. Air Force(Air Staff), Entry 335 Air Force Plans Decimal File 1942-1954, Korea, Box 881.

31) 「해공 전초전 치열」, 『동아일보』 1954.5.20. 1면; 「국공간 4차 공중전」, 『경향신문』 1954.5.21. 1면. 대만 국방부 브리핑에 따르면 대진(大陳)열도 북방 해상에서 치열한 해전이 있었고, 상해 남방 절강성 해안 상공에서 공중전이 벌어졌다. 5월 18일 대만 언론은 1500톤 급의 중공군 구축한 1척을 격침시켰고, 또 한 척의 경(輕)구축함형 함정을 미확인 격침하였으며, 대진열도 북방 상공에서 중공군 미그기 한 대를 격파했다고 보도했다. (「월슨 장관 대만 도착, 장 총통과 2차 회담 예정」, 『동아일보』 1954.5.21. 1면.)

이 때문에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5월 10일 덜레스 국무부장관, 윌슨 국방부장관, 레드포드 합참의장 및 고위급 외교·군사 고문들과 극비 회의를 가졌고, 윌슨 미 국방부장관도 5월 16일 오후 한국에 도착해 17일 브릭스 대사, 밴 플리트 특사, 헐 극동군사령관과 함께 경무대에서 이승만 대통령, 손원일 국방부장관, 조정한 외무부차관과 회담을 가졌다. 윌슨 장관은 18일 부산에서 밴 플리트 특사, 헐 극동군사령관, 손원일 국방부장관, 정일권 육군참모총장 등과 다시 회담을 가졌고, 밴 플리트가 일본으로 향한 19일 대만으로 먼저 출발했다. 윌슨은 대만에서 중국 남부 해안과 남중국해 해상에서 전개되고 있는 중국과 대만의 군사적 충돌에 대한 보고를 받았고, 20일에는 장개석 총통 취임식에 참석한 뒤 장개석 총통 및 군 수뇌부와 회담을 가졌다.³²⁾

윌슨 국방부장관과 밴 플리트 특사의 한국 및 대만 방문을 두고 한국 언론들은 이것이 한창 논의 중이던 동남아시아조약기구(SEATO)와 유사한 한국과 대만의 방위동맹 결성을 타진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 기사를 내기도 했다.³³⁾ 그러나 밴 플리트는 본인이 선발한 왈츠 대령과 스틸웰 대령을 대동한 채 5월 29일 돌연 워싱턴으로 귀환했다. 합동통신은 미확인 보도를 인용하며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특별 협의를 위해 그를 소환했다고 보도했는데, 밴 플리트 전기는 이것이 이승만 대통령의 강력한 정상회담 요청 때문이었으며 이 회담에 밴 플리트가 참석하도록 결정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³⁴⁾

32) 「동남아 긴박성 검토」, 『경향신문』 1954.5.12. 1면; 「윌슨 미 국방장관 동향 주목, 이 대통령과 요담」, 『동아일보』 1954.5.18. 1면; 「부산서 극비리 개최, 한미고위군사회담」, 『동아일보』 1954.5.20. 1면; 「윌슨 장관 대만 도착, 장 총통과 2차 회담 예정」, 『동아일보』 1954.5.21. 1면.

33) 「한, 중 방위동맹 타진, 장(蔣)·밴 3차 회담서 추구?」, 『동아일보』 1954.5.17. 1면; 「한, 중 방위동맹 추진? 밴·장(蔣) 3차 회담이 주목」, 『경향신문』 1954.5.17. 1면.

34) 「밴 장군 돌연 귀국」, 『경향신문』 1954.5.31. 1면; 폴 F. 브레이, 앞의 책, 436~437쪽.

그러나 실제 이승만과 아이젠하워의 정상회담은 7월 27일부터 시작되었다. 밴 플리트도 6월 2~7일 워싱턴에서 머물며 레드포드 합참의장, 윌슨 국방부장관, 아이젠하워 대통령과 회담을 한 뒤 6월 13~15일 다시 내한하여 이승만 대통령과 네 번째 회담을 가졌다. 밴 플리트는 6월 16~21일 일본을 방문한 뒤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고, 6월 22~23일 진해에서 이승만 대통령과 다섯 번째 회담을, 24~26일 서울에서 이승만 대통령과 마지막 회담을 가졌다. 이후 6월 28일~7월 3일 대만, 7월 6~7일 필리핀을 방문한 사절단은 9~12일 하와이에 들러 스타프 태평양사령관과 확대회의를 가진 뒤 7월 15일 워싱턴 D.C에 도착해 보고서 작성에 들어갔다.³⁵⁾

따라서 5월 말 밴 플리트의 갑작스러운 ‘중도 귀환’에는 다른 이유가 있었다고 추정된다.

첫 번째 가능성은 5월 10일 브릭스 주한미대사가 델레스 국무부장관에게 보낸 전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밴 플리트가 첫 번째 방한 기간 중인 5월 9일 손원일 국방부장관 등 한국군 수뇌부와 회담을 가진 바로 다음 날 작성된 것이다. 이 전문에서 브릭스 대사는 밴 플리트가 예산을 절감하고자 하는 국방부 지시를 전달받지 못한 것 같다면서, 미군 철수에 비례하여 한국군 전력을 강화시킬 것이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이승만 대통령과 회담을 진행하는 방식에 불만을 토로했다. 이는 구체적 수치를 제공해야 하는 미 제8군 실무진들과 정반대 방향이고,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 의심을 품게 만든다는 것이었다. 브릭스는 밴 플리트가 미군 1개 사단 철수 시 같은 비용으로 대략 한국군 5개 사단을 창설할 수 있으며 35개 사단까지 증강하고자 하는 한국인들의 희망에 협조해야 한다고 믿고

35) 『Itinerary of Mission』, 『Report of the Van Fleet Mission to the Far East』, RG 341 Records of the Headquarters U.S. Air Force(Air Staff), Entry 335 Air Force Plans Decimal File 1942-1954, Korea, Box 881.

있지만, 미 제8군과 타일러 우드 경제조정관은 그런 지시를 받은 바 없고 특히 타일러 우드는 한국군 증강이 인플레이션에 미칠 영향을 강조했다고 지적했다. 브릭스는 밴 플리트가 더 많은 원조를 약속하는 것은 이승만에게 양측 입장을 싸움 붙여 이득을 취하고, 추가 원조를 기대하며 제네바 회담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견지할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밴 플리트가 솔직하고 협조적이며 진실한 사람이지만, 세부적인 재정적 판단, 극동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측면, 미국의 전반적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³⁶⁾ 밴 플리트가 이승만 대통령에게 미국의 정책과 다른 잘못된 신호를 주고 오히려 그에게 이용당할 수 있음을 우려하는 현지 대사의 날선 비판은 델레스 국무부 장관과 아이젠하워 대통령에게 일종의 위기감을 제공했을 것이다.

두 번째 가능성은 5월 하순 제기된 이승만 대통령의 한미상호방위조약 수정 요구였다. 판문점 예비회담에서 미국 측 수석대표를 맡았고, 제네바 정치회담 논의를 위한 미 국무부 특사로 방한한 딘(Arthur H. Dean)과의 논의 과정에서 이승만은 갑자기 화제를 전환하여 한미상호방위조약 내용에 차별적인 내용이 있다고 주장하고 수정이 가능한지 문의했다. 이승만은 미 국무부가 조약 비준안을 교환하고 공포할 준비를 마쳤다는 주미한국대사관의 보고를 받고 그 중 두 가지 사안을 수정하고자 했는데, 하나는 미일안보조약과 유사한 파기조항이었고, 다른 하나는 공산주의 침략자들을 북쪽에서 몰아내는 한국의 군사 행동에 대한 미국의 지원을 포함하는 ‘침략자 조항’이었다. 이승만은 5월 29일 한미상호방위조약이 미일안보조약이 제공하는 수준의 안보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주장을 담은 서한을

36) “The Ambassador in Korea (Briggs) to the Department of State” (1954.5.10.), FRUS, 1952~1954, Korea, Volume XV, Part 2, Document 890.

딘에게 보냄으로써 이 문제를 공식화했다.³⁷⁾

여기서 이승만이 지적한 파기조항이란 1952년 미일안보조약의 4조로 추정되는데, 그 내용은 미일안보조약을 대신할 안전보장 조치가 발효되고 미국과 일본이 그것을 인정하는 경우 조약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것이었다.³⁸⁾ 또한 ‘침략자 조항’은 결국 한국군의 독자적 군사작전을 미국이 지원하는 조항을 추가하겠다는 것이었다.

이승만 대통령의 요청은 딘과의 논의 단계에서 이미 무리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딘 특사는 조약의 개정에 상원의 승인이 필요하며 이미 비준 단계에 있는 조약의 수정을 시도할 경우 비준이 연기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딜레스 국무부장관이 ‘침략자 조항’은 물론이고 파기 조항을 수용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실제로 딜레스는 브릭스 대사에게 보낸 5월 27일자 전문에서 한미상호방위조약의 파기조항은 호주, 뉴질랜드, 필리핀의 경우와 같이 일방에 의한 파기가 가능하지만 미일안보조약은 미국의 승인 없이 일본이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없는 것으로 일본에 불리한 조항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침략자 조항’과 관련해서도 미일안보조약이 미국에 의무를 부가하지 않고 일본에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점, 조약은 일본에 미군을 배치할 권리를 부여하고 특정 목적을 위해서만 이 병력을 활용하

37) “The Secretary of State to the Embassy in Korea” (1954.5.27.), FRUS, 1952~1954, Korea, Volume XV, Part 2, Document 895; “The Secretary of State to the Embassy in Korea”, (1954.6.2.), FRUS, 1952~1954, Korea, Volume XV, Part 2, Document 897.

38) 1952년 미일안보조약 4조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이 조약은 유엔 또는 기타에 의한 일본 구역에 관한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해 충분히 정석이 되는 유엔의 조치 혹은 이를 대신할 개별적 혹은 집단적 안전보장조치가 효력을 발생하고 일본 및 미합중국이 그것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언제라도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한다.” (소토가 히데토시·혼다 마사루·미우라 도시아키 지음, 진창수·김철수 옮김 2006 『미일동맹, 안보와 밀약의 역사』 한울 아카데미, 549~551쪽.)

며 일본이 미국 이외의 제3국에 군사기지를 제공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임을 상기시켰다. 덜레스는 이 내용을 이승만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했고 브릭스 대사는 6월 3일 서신을 통해 덜레스의 입장을 이승만에게 전달했다.³⁹⁾

이승만은 덜레스의 확고한 반대 입장을 전달받고 특별한 이견을 표명하지 않은 채 한국 문제에 변함없는 관심을 보여주어 감사하다는 형식적인 언사로 한미상호방위조약 수정 요구에서 한 발 물러섰다. 따라서 이승만이 미일안보조약과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비교하며 차별적이라고 주장했던 것은 내용을 오해했다기보다는 한미상호방위조약 비준 문제조차 한국군 증강과 군사원조 확대를 이끌어내는 협상 카드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일종의 ‘무력 시위’였다고 볼 수 있다.

사실 한미상호방위조약 비준과 관련하여 아이젠하워 행정부가 가장 우려했던 문제는 한국군의 지휘, 혹은 작전통제 문제였다. 덜레스 국무부장관은 6월 4일 브릭스 대사에게 보낸 전문에서 한미상호방위조약 가조인이 이루어졌던 1953년 8월 8일 이승만 대통령과의 공동성명을 거론하며, 그 성명서에는 “지금부터 상호방위조약이 발효될 것으로 예상되는 날까지 한국군은 유엔군사령부의 지휘 하에 있을 것”이라고 했지만 그 약속은 이미 3월 말경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었다고 보았다. 덜레스는 이 성명서에 “합의된 정치회담 기간에는 군사적 수단을 통해 한국을 통일하려는 독자적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도 있지만 이 역시 정치회담이 종료되면 무효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 국방부와

39) “The Secretary of State to the Embassy in Korea” (1954.5.27.), FRUS, 1952~1954, Korea, Volume XV, Part 2, Document 895; “The Ambassador in Korea (Briggs) to the Department of State” (1954.6.4.), FRUS, 1952~1954, Korea, Volume XV, Part 2, Document 898.

혈 유엔군사령관도 5월 20일 경 한미상호방위조약 발효와 함께 한국군을 유엔군사령부 휘하에 두겠다는 한국정부의 약속을 재확인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⁴⁰⁾

이런 맥락에서 밴 플리트의 5월 29일 귀환은 이승만 정부의 한국군 증강과 군사원조 확대 주장에 기울고 있던 그에게 아이젠하워 행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하도록 하고, 이승만과 한국군을 제어하기 위한 방안을 협의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밴 플리트는 6월 2일 워싱턴에 도착해 레드포드 합참의장과 회담을 가졌고 6월 3일에는 윌슨 국방부장관과 회담을 한 뒤 상원 군사 및 대외관계위원회(Senate Armed Forces and Foreign Relations Committees)에 출석하여 약 한 달간의 조사 결과를 반영한 예비보고서를 제출했다. 그리고 6월 7일에는 아이젠하워 대통령과 회담을 가진 뒤 다시 하와이와 일본을 거쳐 6월 13일 한국에 도착했다.⁴¹⁾

4. 밴 플리트 보고서와 한미 동맹관계의 구성

밴 플리트 사절단의 예비 보고서는 밴 플리트가 한국을 두 차례 방문한 이후인 6월 3일 제출되었다. 밴 플리트는 예비보고서에서 기존 수준에서 40% 증강된 100만 명 규모의 한국군 보유를 원하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소개하면서, 미국과 한국의 관료들 사이의 오해

40) "The Secretary of State to the Embassy in Korea" (1954.5.27.), FRUS, 1952~1954, Korea, Volume XV, Part 2, Document 895; "The Secretary of State to the Embassy in Korea" (1954.6.4.), FRUS, 1952~1954, Korea, Volume XV, Part 2, Document 899.

41) 「Itinerary of Mission」, 「Report of the Van Fleet Mission to the Far East」, RG 341 Records of the Headquarters U.S. Air Force(Air Staff), Entry 335 Air Force Plans Decimal File 1942-1954, Korea, Box 881.

가 양측의 노력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중립적’ 입장을 견지했다. 미국인들은 한국 정부가 문서화된 협정을 부인한다고 불평했고, 한국 정부는 미국이 합의한 공약(公約)에 부응하지 못해왔다고 주장한 것은 것이었다. 또한 미국의 원조가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미국 관료들은 한국 정부가 경제 정책 면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면서도 “국익보다는 국가 위신을 앞세우면서” 미국의 도움을 거부한다고 느끼는데 비해, 한국 정부는 미국이 한국의 외환과 국내 신용까지 세세히 통제하려고 한다면 이는 받아들이 수 없는 “외세의 개입”이라고 주장한다고 설명했다.⁴²⁾

한편 9월 30일 제출된 최종 보고서에도 한국 육군을 30개 사단으로 증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밴 플리트 사절단의 권고안이 담겼다. 이는 기존 육군 64만 5,300명을 약 80만 명 수준까지 증강하는 것으로 한국 정부의 요구 수준과 유사한 것이었다.⁴³⁾ 밴 플리트 사절단의 최종 보고서는 한국, 대만, 일본, 필리핀 등 4개국에 대한 개별적 군사 권고안을 포함하여 400매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이었지만 2매 분량의 결론으로 요약되었는데 이를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⁴⁴⁾

42) 「Preliminary Report of Van Fleet Mission to the Far East」, June 3, 1954, RG 341: Records of the Headquarters U.S. Air Force(Air Staff), Entry 335: Air Force Plans Decimal File 1942-1954, Korea, Box 881.

43) 「Report of the Van Fleet Mission to the Far East」, Sep. 30, 1954, RG 341: Records of the Headquarters U.S. Air Force(Air Staff), Entry 335: Air Force Plans Decimal File 1942-1954, Korea, Box 881.

44) 국무부 동아시아 담당 차관보 로버트슨은 1954년 10월 25일 밴 플리트 사절단 최종보고서의 결론 요약 부분을 더욱 간결하게 비망록으로 정리하여 델레스 국무부 장관에게 보고했다. 본고의 내용은 보고서 원문과 로버트슨의 비망록을 함께 참고하여 정리한 것이다.

(“Memorandum by the Assistant Secretary of State for Far Eastern Affairs (Robertson) to the Secretary of State”, FRUS, 1952-1954, East Asia and the Pacific, Volume XII, Part 1, Document 384.)

〈 밴 플리트 사절단 최종보고서 결론 요약 (1954.9.30.) 〉

1. 동아시아 자유국가들(한국, 대만, 일본, 필리핀)을 하나로 묶고 서로 지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동아시아에 대한 전체적인 정책 조정이 요구되며 이에 대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지지가 필요하다.
2. 미국은 공산 침략에 저항하기 위한 동아시아의 다국적 조직 (multi-national organization) 구성을 권장해야 한다. 동아시아 각국은 이 조직 내에서 각자의 역할을 분명히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3. 현지 군대의 장비, 훈련, 유지에 드는 비용은 같은 수의 미군에 필요한 비용보다 훨씬 저렴하다. 이들은 자국의 방위뿐만 아니라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서 작전을 할 수 있도록 훈련되어야 한다. 이들은 전투에서 자신들의 가치를 입증해 왔고, 따라서 이들 군대는 방위 목적을 능가하는 수준까지 증강되어야 한다.
4. 아시아의 우방국과 적국 모두 우리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 믿고 있다. 분명한 선언이나 행동을 통해 침략을 당할 경우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며, 다만 군사적 목표물만을 겨냥할 것임을 아시아 국가들에게 천명해야 한다.
5. 동아시아 우방국들 사이에 존재하는 다양한 정치적, 경제적 문제들은 미국의 리더십 하에서 해결할 수 있고 해결해야만 한다.
6. 태평양에 주둔하는 모든 미군 병력의 사령부 구조는 전 지역을 통할하는 단일 미군 사령부로 재조직되어야 한다. 또한 동아시아에서 수행되는 미국의 모든 비(非)군사 활동도 NATO 체제에 비견될 수 있는 하나의 지역통합조직(unified regional organization)으로 재조직되어야 한다. 이들 두 조직의 본부는 기획과 프로그램, 실행의 효과적 조정을 위해 같은 위치에 있어야 한다.
7. 한국과 일본에 주둔하는 미군의 재배치가 필요하다. 이러한 재배치를 위해 비슷한 규모의 현지 군대를 증강하고 이를 미국이 지원해야 한다. 재배치된 미군은 기동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좀 더 유리한 지역에 전략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8.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대표성을 강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 동아시아의 지도자들을 동반자로 받아들이고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

밴 플리트 사절단 최종보고서의 권고안 내용을 살펴보면, 최소한 한국, 대만, 일본, 필리핀이 포함된 동아시아 국가들의 다국적 조직 구성을 주장함으로써 아이젠하워 행정부의 뉴룩(New Look), 즉 지역통합전략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자국 방위를 넘어 다른 아시아 국가에 파병할 수 있는 수준의 현지 군대 증강, 핵무기 사용 가능성의 적극적 천명을 주장함으로써 좀 더 공세적인 지향을 드러냈다. 이와 함께 지역 통합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동아시아 국가 간 갈등, 특히 한일 간의 어업 및 청구권 분쟁과 일본-필리핀 간의 배상금 분쟁을 중재할 수 있는 권위 있는 중재자의 파견을 요청하는 등 직접적인 리더십의 발휘를 요구했고, 하와이에 사령부를 둔 태평양 통합사령부의 창설과 군사 및 비(非)군사 활동의 합동 통제, 미 지상군의 재배치 등 동아시아에서 미 군사력의 강화와 군사 및 경제원조의 효율성 증대를 촉구했다. 게다가 “동아시아의 지도자들을 동반자로 받아들이고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마지막 조항을 통해 이승만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밴 플리트 사절단의 최종 보고서가 제출되자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차원에서도 이를 참고하여 미국의 극동정책을 총괄한 NSC 5429 시리즈에 반영하고자 했다.⁴⁵⁾ 그러나 실제로 이것이 논의되었던 10월 28일 NSC 220차 회의에서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밴 플리트 사절단 최종보고서의 내용에 대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밴 플리트가 더욱 적극적인 아시아 정책으로의 이행을 주장한 것은 아이젠하워 행정부의 아시아 중시 정책과 궤를 같이 했지만, 한국, 대만 등 현지 군대의 전력증강 요구 수준이 과도했고 공산주의 침략에 대한 핵무기 사용과 태평양 지역 미군의 통합사령부 체계를 제안하는 등 애초에 밴 플리트 사절단에게 기대했던 범주 이상의 내

45) “Memorandum of Conversation, by the Counselor of the Department of State (MacArthur)”, FRUS, 1952-1954, East Asia and the Pacific, Volume XII, Part 1, Document 369.

용이 결론과 권고사항에 포함되었기 때문이었다.⁴⁶⁾

벤 플리트 사절단의 최종 보고서가 제출되기 전인 1954년 8월 20일, 아이젠하워 행정부는 NSC 5429/2를 통해 프랑스군의 디엔 비엔푸 전투 패배와 제네바 회담 이후의 대(對)극동 정책과 아시아 원조 규모를 이미 상당히 구체화했다. 이는 일본을 중심으로 한 지역경제의 강화를 핵심으로 하면서, 일본과 필리핀의 군사력을 증강하고 한국과 대만의 군사력 효율성을 증진시키며 앤저스 조약(ANZUS Treaty)을 유지할 것을 목표로 했다. 따라서 이 시기 미국의 극동 정책은 기본적으로 한국군을 기존 20개 사단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무기 현대화 등의 수단으로 효율성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근간으로 하는 것이었다.⁴⁷⁾

이 문서에 따르면 인도차이나에는 직접 군사지원(Direct Defense Support) 위주의 군사원조가 매년 약 11억 달러씩 총 22억 달러가, 공산중국을 방비하는 핵심 국가로 떠오른 한국, 일본, 대만에는 2년 총액 기준으로 약 9.1억 달러, 5.8억 달러, 4.3억 달러가 배정되었다. 이는 연방예산과 국방예산 등을 합산한 아시아 군사원조 총액을 약 42억 달러로 추산할 때 각각 52.4%, 21.7%, 13.8%, 10.3%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도차이나와 한국, 일본, 대만에 아시아 군사원조의 대부분을 투입했음을 알 수 있다.⁴⁸⁾

이처럼 NSC에서 벤 플리트 사절단의 최종보고서가 제출되기 전에 이미 아시아 군사원조의 윤곽을 결정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를

46) “No. 364, Memorandum of Discussion at the 220th Meeting of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Washington, October 28, 1954”, FRUS, 1952-1954, China and Japan, Volume XIV, Part 1, Document 364.

47) “Note to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by the Executive Secretary (Lay)”, FRUS, 1952-1954, East Asia and the Pacific, Volume XII, Part 1, Document 312.

48) 이동원, 2020, 「1953~1955년 아이젠하워 행정부의 상호안전보장계획(MSP)과 대한(對韓) ‘평시(平時) 군사원조’의 재개」, 『사림』 74 참조.

크게 초과하는 밴 플리트 사절단의 보고서는 주한미군을 재배치해야 한다는 제안 정도를 제외하면 아이젠하워 행정부 전반의 공감을 얻기 힘들었다. 게다가 주한미군 중 지상군 2개 사단을 재배치해야 한다는 밴 플리트 사절단의 권고안은 NSC 차원에서도 이미 3월부터 논의된 사안이었다.⁴⁹⁾

그러나 한국 문제를 중심으로 한 밴 플리트 사절단의 아시아 방문과 한국군을 30개 사단, 80만 명 수준까지 증강해야 하고 동아시아의 지도자들을 동반자로서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승만 대통령을 크게 고무시켰던 것으로 보인다. 밴 플리트와 이승만 대통령은 5월 중순부터 6월 말까지 여섯 차례나 만나며 보고서의 내용을 공유했고, 이는 최종보고서의 작성 시기에 진행되었던 한미간의 한미합의의사록 논의 과정에도 영향을 미쳤다.

1954년 7월 24일자 국무부 극동국의 파렐만-요스트 비망록에 따르면, 밴 플리트 사절단의 일원이었던 맥스 레러는 국방부가 20개 사단 규모의 한국군을 유지할 수 있도록 원조하는데 드는 연간 원조 총액으로 약 7억 5천만 달러를 상정했다. 이는 6·25전쟁 기간 중 한국군에 제공된 군용(軍用) 완제품(end-item) 원조인 MDAP 형식의 원조 추정치만 29억 달러였던 것에 비하면 나쁘지 않은 수치로 평가되었다. 레러는 이승만 대통령에게 위의 수치들까지 제공되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이승만은 이런 형식의 원조에 대해 현실적 이해를 하고 있다고 보았다.⁵⁰⁾

49) "No. 364, Memorandum of Discussion at the 220th Meeting of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Washington, October 28, 1954", FRUS, 1952-1954, China and Japan, Volume XIV, Part 1, Document 364.

50) 「General - Program Status Reports - MDAP 1950-1951-1952 - 2」, RG 59: General Records of the Department of State, Entry A1 1199: Records Relating to Economic Aid, 1948-1959, Box 2.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참조코드: AUS002_44_00C0020)

미국 군사원조의 ‘경제성’에 대한 이승만 대통령의 이해는 밴 플리트의 지지를 통해 더욱 힘을 얻었고, 한미합의의사록 체결을 위해 이루어진 1954년 7월 26~30일의 방미와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진통일’의 재천명과 이를 위한 병력 증강 요구로 표출되었다.⁵¹⁾ 그러나 아이젠하워는 “이승만의 한국군에 대한 관심이 군사적 공격을 목표로 한 것은 아님을 확신한다.”면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고,⁵²⁾ 한미합의의사록의 미국 측 초안에도 한국의 통일 방안과 관련하여 “미국은 모든 평화적 방법에 의한 한국 통일을 지지한다.”는 내용을 담아 이를 재확인했다.⁵³⁾

그러자 이승만은 미국의 ‘평화 통일 고수’ 원칙에 불만을 표하며 실무진들 사이에 합의를 이룬 초안에 서명하지도 않은 채 7월 31일 돌연 귀국했다.⁵⁴⁾ 브릭스 대사의 표현에 의하면 이승만 대통령은 귀국 후 “모두 미국의 이익에 반하는” 네 가지 대중운동을 이끌었다. 이 운동들은 주한미군 재배치를 ‘한국에 대한 포기’로 선전했고, 미국에서 실무진이 여전히 협상 중이었던 군사원조와 경제원조를 불충분한 것으로 기정사실화했으며, 타일러 우드 경제조정관을 퇴출시키고 그 자리를 유엔한국재건단(UNKRA) 단장 쿨터(Coulter) 장

51) “Hagerty Diary, July 27, 1954”, FRUS, 1952-1954, Korea, Volume XV, Part 2, Document 923. 해거티(James C. Hagerty)는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언론비서관으로 녹음과 기록을 위해 한미회담에 동석했다. 해거티에 의하면 아이젠하워는 회담 종료 후 어떻게 이승만이 한국에서 국지전 개시를 원할 뿐이라는 말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그런 소규모 전쟁이 전면전으로 급속히 확대될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하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52) “United States Summary Minutes of the Third Meeting of United States Republic of Korea Talks, July 29, 1954, 2:30 p.m.”, FRUS, 1952-1954, Korea, Volume XV, Part 2, Document 925.

53) 백두진, 1975 『백두진 회고록』 대한공론사, 235~236쪽.

54) “United States Summary Minutes of the Fourth Meeting of United States Republic of Korea Talks, July 30, 1954, 3 p.m.”, FRUS, 1952-1954, Korea, Volume XV, Part 2, Document 927; 백두진, 1975 『백두진 회고록』 대한공론사, 236~238쪽.

군이나 벤 플리트와 같은 ‘친한파’ 인물로 대체하고자 했다.⁵⁵⁾

그러나 이승만 귀국 이후 50일 가까이 이루어진 실무진 협의에도 불구하고 한미회담에서 7월 31일 도출된 합의사항의 큰 틀은 유지된 채로 합의의사록의 내용은 확정되었고, 이는 9월 27일 이승만에게 정식 전달되었다. 그러자 한국 정부는 10월 1일 유엔군 대여금지급을 중지함으로써 양측 실무진 합의 내용에 불만을 드러냈다.⁵⁶⁾

한국 정부의 유엔군 환화 대여 중지해에 대해 미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10월 6일 내부 논의를 진행했다. 여기서 델레스 국무부장은 이승만이 점점 더 불합리하고 성미가 고약해지고 있지만 결정적 순간에 이르면 결국 미국에 협력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윌슨 국방부장관과 스타센(Harold Stassen) 대외활동본부장도 잠시 지켜볼 것에 동의했고, 이승만 대통령의 행동은 미국보다는 한국에 더 큰 해를 끼칠 것이라고 전망했다.⁵⁷⁾

결국 아이젠하워 행정부는 한국 정부의 유엔군 환화 대여 중지해에 대응해 한국에 유류 출고를 중단함으로써 이른바 ‘유류 파동’을 일으켰다. 한미합동경제위원회 구호분과위원회에서 180 대 1 현행 환율에 의해 10월분 민수용 유류를 출고하도록 합의를 보았으나 직접 출고를 담당하는 한국후방관구사령부(KComZ) 유류장에서 이를 출고 중지하여 10월 중순부터 한국 내 유류가 고갈 상태에 이르렀던 것이다. 이 때문에 석유 값은 두 배로 폭등했으며 선박용 중유는 품절 상태로 각 항구의 어선은 운행을 중지할 지경이었다.⁵⁸⁾

55) “The Ambassador in Korea (Briggs) to the Department of State”, FRUS, 1952-1954, Korea, Volume XV, Part 2, Document 937.

56) “Editorial Note”, FRUS, 1952-1954, Korea, Volume XV, Part 2, Document 948.

57) “Memorandum of Discussion at the 216th Meeting of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Wednesday, October 6, 1954”, FRUS, 1952-1954, Korea, Volume XV, Part 2, Document 949.

58) 「한미 간의 타개책 시급, 국내 유류 고갈 상태에」, 『동아일보』, 1954.10.14. 2면.

한국 정부에게는 ‘유류 파동’에 대응할 마땅한 대안이 없었다. 유엔군사령부는 관리 하에 있던 수입 유류를 대한중유저장회사(KOSCO)에 인도하지 않음으로써 석유저장회사가 민수용 유류를 배급할 수 없게 만들었다. 유류 부족은 생산 활동에 큰 지장을 초래했고 한국 민간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쳤다.⁵⁹⁾ ‘유류 파동’ 이후 암시장 휘발유 가격은 5갤런 한 통에 200환에서 1,700환까지 폭등했고, 버스 운휴 등 교통마비 문제가 서울과 부산, 영남과 호남까지 전국적으로 심각한 사태에 이르렀다. ‘벼랑 끝 전술’로 미국을 여러 차례 곤란하게 만들었던 이승만 정부였지만 유류 고갈에 대해서만큼은 속수무책이었다.⁶⁰⁾ 결국 한국은 한미 합의의사록의 실무진 최종안을 거의 그대로 수용했고 11월 17일 이를 서울에서 정식 조인했다.

5. 맺음말

1954년 4월 26일, 극동의 군사원조프로그램(MAP)을 조사하는 사절단로서 구성된 밴 플리트 사절단은 한국, 대만, 일본, 필리핀을 방문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제를 아우르는 동아시아 정책에 대한 종합 보고서를 작성하여 9월 30일 제출함으로써 임무를 완수했다. 이 보고서는 아이젠하워 행정부의 지역통합전략과 궤를 같이 하면서도 자국 방위를 넘어 다른 아시아 국가에 파병할 수 있는 수준의

59) 백두진, 앞의 책, 243~244쪽.

60) 「출하증지 이전보다 3.5배 양등 유류, 부산시내 교통은 완전 마비 상태」, 『동아일보』 1954.10.25. 2면; 「휘발유 암가격 날로 양등, 교통마비 위험성, 유류 동결로 각종 차량 반수 운휴」, 『경향신문』 1954.10.25. 2면; 「등장할 대연(代燃)장치, 무연탄 발생로 시험」, 『경향신문』 1954.10.30. 2면; 「경북 300대 버스 기름 없어 총 스톱」, 『경향신문』 1954.11.4. 2면; 「버스 총 스톱, 전남도 내의 교통상」, 『동아일보』 1954.11.10. 2면.

현지 군대 증강, 핵무기 사용 가능성의 적극적 천명을 주장함으로써 더욱 공세적인 성격을 드러냈다.

밴 플리트는 6·25전쟁기 미 제8군 사령관을 역임했고 이승만 대통령과도 매우 가까운 사이였기 때문에 미국의 이해관계를 대변 하면서도 ‘아시아주의자’이자 ‘친한파’로서 미국과 한국의 이해관계를 절충하고자 했다. 따라서 밴 플리트는 한국 육군을 30개 사단으로 증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한국군 증강안을 제시했고, 이는 한국 정부의 요구 수준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것이었다.

밴 플리트 사절단 보고서는 미국의 극동정책을 총괄한 NSC 5429 시리즈에 반영될 예정이었으나, 10월 28일 NSC 220차 회의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밴 플리트의 권고안은 한국, 대만 등 현지 군대의 전력증강을 과도하게 요구했고 공산주의 침략에 대한 핵무기 사용과 태평양 지역 미군의 통합사령부 체계를 제안하는 등 애초에 사절단에 기대했던 수준을 넘어서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공식 정책에 반영되지 못함으로써 밴 플리트 사절단의 동아시아 구상은 좌절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한국 정부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밴 플리트의 보고서는 이승만 대통령을 크게 고무시켰고, 이는 비슷한 시기 한미 간의 가장 중요한 협상 과제였던 한미합의 의사록의 체결 과정에도 영향을 미쳤다. 한국군의 증강과 이를 뒷받침할 더 많은 원조, 한일 갈등에서 한국의 손을 들어줄 것을 요구하는 이승만의 일관된 주장에는 ‘믿는 구석’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아이젠하워 행정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7월 말 정상회담 시기부터 표면화된 한미 간의 갈등은 10월 1일 한국 정부의 유엔군 환화 대역 중지와 이에 대응한 미국의 유류 출고 중지로 절정에 이르렀다. 그러나 “결정적 순간에 이르면 결국 미국에 협력할 것”이라는 덜레스 국무부장관의 예측대로 이승만은 미

국 측 가이드라인을 크게 벗어나지 못한 채로 한미합의의사록 체결에 합의했다.

1954년 11월 17일 한미합의의사록이 체결됨으로써 한미상호방위조약이 발효되었고, 6·25전쟁 기간과 이후 한동안 미 국방부의 예산으로 제공되는 ‘전시(戰時) 군사원조’의 시대가 저물고 상호안전보장계획(MSP) 예산을 사용하는 ‘평시(平時) 군사원조’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한미합의의사록은 “대한민국 국군을 국제연합사령부의 작전 통제권 하에” 두었을 뿐만 아니라 1955회계연도에 총액 7억 달러에 달하는 경제 및 군사원조를 설정했고, 부록 A와 B를 통해 환율과 한국군의 규모 및 구성 등 원조의 구체적 내용과 운영을 미 군부의 지휘를 받는 유엔군사령관이 장악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벤 플리트 사절단 파견부터 한미합의의사록 체결에 이르는 1954년 시기 동아시아 냉전질서의 구성 과정과 그 속에서 나타난 이승만-아이젠하워 대통령의 갈등과 조율은 6·25전쟁 이후 새롭게 변화한 한미관계의 전형(典型)을 드러내는 과정이기도 했다. 한국은 “반쯤은 노예이고 반쯤은 자유인(half slave and half free)” 상태라고 느꼈고, 미국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Alice in Wonderland)”가 된 기분이었다.⁶¹⁾ 이제 70주년을 향해 가고 있는 한미동맹은 이처럼 우여곡절을 겪으며 기묘하고 불안하게 출발한 것이었다.

(원고투고일 : 2021. 7. 16, 심사수정일 : 2021. 8. 17, 게재확정일 : 2021. 8. 25.)

주제어 : 벤 플리트 사절단, 이승만, 아이젠하워, 한미상호방위조약,
한미합의의사록

61) “The Ambassador in Korea (Briggs) to the Department of State”, FRUS, 1952-1954, Korea, Volume XV, Part 2, Document 958.

〈참고문헌〉

1. 자료

미국 NARA RG 59, RG 330, RG 341 관련 자료

미 국무부, FRUS

『서울신문』, 『동아일보』, 『경향신문』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사자료집』 28~37권, (이승만 관계 서한 문서)

『이승만 대통령 영문서한 번역집 I』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2012

2. 단행본

폴 F. 브레임 지음, 육군교육사령부 자료지원처 번역실 옮김, 2002 『승리의 신념 : 밴 플리트 장군 일대기』 봉명

소토카 히데토시·혼다 마사루·미우라 도시아키 지음, 진창수·김철수 옮김, 『미일동맹, 안보와 밀약의 역사』, 한울 아카데미, 2006

남정옥, 『밴 플리트, 대한민국의 영원한 동반자』, 백년동안, 2015

3. 논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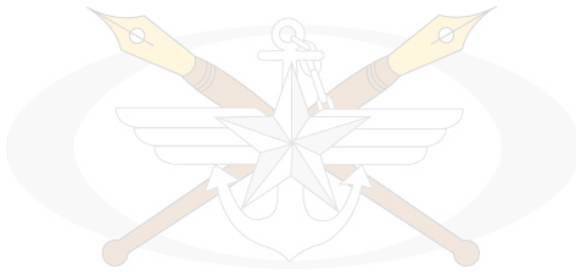
조성훈, 「1954년 밴 플리트 사절단 보고서와 미국의 독도 인식」, 『동양학』 46, 2009.8; 119-218,

<http://uci.or.kr/G704-000715.2009..46.009>

곽경상, 「해방 후 남한 석유시장의 개편과 울산 정유공장 건설 계획」, 『동방학지』 176, 2016.9; 153-183,

<http://doi.org/10.17788/dbhc.2016..176.006>

- 권혁은, 「5.16 군사정부가 미 대한원조정책의 성격과 AID-유습의 역할 - 초기 울산공업단지 건설과정을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 105, 2017.9; 113-149,
<http://doi.org/10.35865/YWH.2017.09.105.113>
- 이동원, 「이승만 정권기 한미합의의사록의 체결과 개정」, 『역사와 현실』 107, 2018.3; 449-490,
<http://doi.org/10.35865/YWH.2018.03.107.449>
- 이동원, 「‘전쟁영웅’의 이면, 밴 플리트의 대한 민간투자 유치 활동」, 『역사비평』 125, 2018.11; 123-153,
<http://doi.org/10.38080/crh.2018.11.125.123>



(Abstract)

The Design of Cold War Initiative for the region of East Asia and the Plan for Composition of Korea-U.S. Relations by the delegation of Van Fle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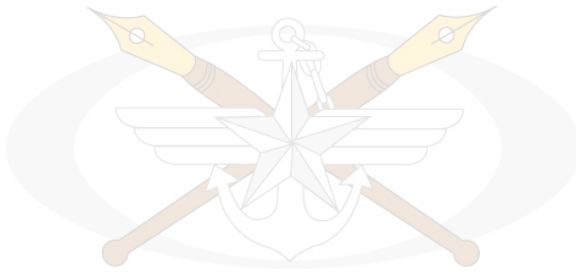
Lee, Dong-won

After the armistice of the Korean War, Eisenhower sent a special military aid delegation to East Asia in April 1954 headed by former Eighth U.S. Army commander Van Fleet, for the purpose of reviewing East Asian strategy and scale of military aid. Van Fleet delegation visited South Korea, Taiwan, Japan and the Philippines in turn and wrote a comprehensive report on East Asian policies covering political, economic and military issues as well as military aid and submitted it to President Eisenhower on September 30 at that year. Through the analysis of Van Fleet's report, this article will provide the understanding of the U.S. Cold War initiative in 1954 on East Asia, which was gradually gaining strategic value since the Korean War truce, the signing of the ROK-U.S. military alliance, and the rise of the Indochina Peninsula.

Van Fleet served as the head of the special mission with Eisenhower's robust trust even after his discharge from the military. Van Fleet was very close to President Sungman Rhee based on his experience as commander of the Eighth U.S. Army during the Korean War. Thus, Van Fleet's appointment as the head of the special military aid mission was due to the need of the U.S. but also at the request of President Rhee. Van Fleet represented the interests of the United States, but similarly expressed an "Asianist" aspect similar to MacArthur's, which led to a compromise between American interests and those of South Korea and other East Asian countries. Therefore, this study will be a historical case study that understands the process of establishing relation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East Asian countries, especially

Korea, and their mutual characteristics. At the same time, it will also be possible to see how General Van Fleet, who was called the "father of the Korean military," influenced the military aid issue and military enhancement in East Asia after his discharge.

Keywords : the Van Fleet Mission, Syngman Rhee, Dwight David Eisenhower, ROK-US Mutual Defense Treaty, Agreed Minutes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1, No. 120, pp.79-130
<https://doi.org/10.29212/mh.2021..120.79>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주월한국군의 중대전술기지 운용이 지닌 이상과 현실*

- 독꼬 전투(1966)를 중심으로 -



심호섭**

1. 머리말
2. 한국군 전쟁 수행과 중대전술기지의 운용
3. 독꼬 전투: 한국군 중대전술기지의 전술적 성공과
딜레마의 탄생
4. 한국군 중대전술기지의 이상과 현실
5. 맺음말

* 이 논문은 Hosub Shim, "The Forgotten Army: The Republic of Korea Forces' Conduct in the Vietnam War, 1965-1973," University of Kansas 박사 학위 논문, 2020, 103~123쪽(3장 2절)을 수정 및 보완하여 작성하였으며, 2021년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의 군사학술연구 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임

** 육군사관학교 군사사학과 조교수(shimhosub@gmail.com), 본 논문의 심사과정에서 귀중한 논평을 해 주신 네 분의 심사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 머리말

베트남 전쟁에서 한국군의 대표적이고 독특한 전략·전술개념 한 가지만 꼽자면 단연 중대전술기지일 것이다. 1966년 베트남-캄보디아 국경 지역에서 한국군 한 개 중대가 연대급 규모의 북베트남 정규군의 공격을 막아낸 독꼬 전투는 한국군 중대 전술기지 신화를 창조했다. 중대전술기지에 대한 선행 연구는 중대전술기지가 한국군 민사심리전의 기본 전술이자 평정작전¹⁾을 성공시킨 핵심 요소였다는 채명신 사령관으로 대표되는 주월한국군의 공식 견해를 충실히 따른다. 각각의 선행 연구는 분석 범위와 수준에는 차이가 있지만, 한국군의 전쟁 수행에서 중대급 기지의 운용이 갖는 의미를 모색했다는 점에 그 공통점이 있다.²⁾ 다만 기존 연구만으로는 중대 기지의 운용이 전쟁의 다양

1) 베트남 전쟁에서의 평정(pacification)은 남베트남 정부에 대한 주민의 지지를 얻는 전반적인 노력을 의미한다. 따라서 평정작전의 궁극적인 목표는 남베트남 정부가 북베트남과 베트남의 위협으로부터 남베트남 국민과 국가를 통제할 수 있게 하는 데 있었다.

2) 가장 먼저 최용호의 연구에서는 중대전술기지를 한국군의 민사심리전의 기본적인 전술로 꼽는다. 최용호, 「베트남전쟁에서 한국군의 작전 및 민사심리전 수행방법과 결과」,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박사논문, 2005. 한국군 파병 초창기 대대장이었던 박경석은 중대전술기지를 한국군의 독자적 전술로 손꼽으면서, 이를 통해 한국군이 미군과 달리 평정작전에서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박경석, 「베트남 전쟁시 한국군의 전술교리와 작전」, 『베트남전쟁 연구총서』 1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2), 159~240쪽. 한편 정지환의 연구 역시 중대전술기지가 한국군 평정작전 성공의 핵심요소였다는 주월한국군의 공식 견해를 따르면서, 한국군의 대게릴라전 수행을 위한 작전개념이 중대전술기지로 구체화 되었다고 평가한다. 정지환, 「베트남전쟁에서의 한국군의 대게릴라전 연구 - 중대전술기지를 중심으로」, 『군사연구』 129호(2010), 187~211쪽. 비교적 최근의 박상혁의 연구에서도 한국군의 성공적인 대반란전(Counterinsurgency, COIN)은 중대전술기지의 운용을 기반으로 수행됐음을 주장하면서 중대전술기지의 평가에 있어서 기존의 연구와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박상혁, 「베트남전쟁에서 한국군의 대반란전 전략과 중심」, 『군사연구』 137호(2014), 39~65쪽.

한 현실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이해하기 쉽지 않다. 특히, 실제 전장에서 기지가 어떻게 운용되었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한편 독꼬 전투에 대해서는 위태선의 연구가 유일하며, 여기서는 독꼬 전투를 수도사단 1개 중대가 북베트남군 1개 대대를 격퇴시킨 한국군의 대표적 전투로 평가한다.³⁾ 다만, 이 연구에서는 중대급 기지 운용이 전투에 미친 영향과 한국군의 승리요인과 같은 독꼬 전투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까지는 다루지 않는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군이 중대전술기지 운용을 통해 얻고자 했던 이상과 실제 전장에서의 현실의 차이를 중점적으로 분석한다. 이를 위해 중대전술기지의 우수성을 증명한 독꼬 전투 분석을 포함하여 한국군의 기지가 베트남 전쟁에서 어떻게 운용되었는지 살펴볼 것이다.

주월한국군 교리에 따르면 중대전술기지는 민사작전 위주의 평정작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적의 공격을 방어하고 공세를 위한 발판도 되어야 했다. 이는 어느 하나의 양상으로 규정짓기 어려운 베트남 전쟁의 성격과 밀접한 관계를 지닌다. 베트남 전쟁은 공산주의의 팽창과 이를 저지하려는 이데올로기의 충돌, 제국주의와 반제국주의의 대립, 민족해방 및 혁명전쟁과 같은 다양한 성격을 지니는 전쟁이었다. 그만큼 전쟁 양상도 복잡했다. 크게는 북베트남 정규군에 의한 정규전과 베트콩에 의한 비정규전이라는 두 가지 전쟁 양상이 공존했다. 따라서 남베트남과 그 동맹군에게 위와 같은 전쟁의 두 가지 양상 모두에 대비하는 작전 수행은 쉽지 않은 과업이었고, 특히 외국군으로서 주민의 마음을 얻어야 하는 비정규전 위주의 평정작전 수행은 쉽지 않았다. 미군의 실패가 이를 잘 보여준다.

중대전술기지의 운용을 통해 주월한국군은 정규전과 비정규전

3) 위태선, 「독꼬 전투의 고찰」, 『군사』 14호(1987), 27~55쪽.

모두에서의 성공을 추구하려 했다. 정규전 차원에서 한국군은 중대전술기지에 적의 공격을 방어하고 더 나아가 공세적인 전투작전을 위한 전초기지로서의 역할도 부여했다. 비정규전의 차원에서 주월사령부는 중대전술기지를 평정작전을 위한 발판으로 여겼다. 병력은 기지를 통해 현지에 주둔시켜서 민사작전과 소부대 전투를 수행하면서 평정 지역의 확장을 시도하려 했다. 평정 지역의 확장이 한국군 전쟁 수행의 전략이었기에 중대전술기지는 한국군의 대표적 전략적 수단이었다. 즉, 한국군에게 중대급 기지의 운용은 정규전과 비정규전 양상이 혼재하는 남베트남에서의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주월한국군은 전쟁 기간 동안 그 이상을 유지했던 것인가? 실제로는 위의 두 가지 목표 모두를 충족시킨다는 이상은 결코 달성하기 쉬운 일이 아니었다. 또한 파병이 장기화되고 전쟁의 상황이 달라져서 한국군의 전쟁 수행에도 변화가 있었다면, 그 변화가 한국군 기지의 운용에도 영향을 끼쳤는지 궁금해진다. 만약 중대전술기지가 전쟁에서 원래 이상대로 운용되지 못했다면, 한국군이 이의 운용을 통해 달성하고자 했던 근본적인 목표는 무엇이였을까? 더 나아가 본 논문에서는 중대전술기지로 대표되는 주월한국군의 전략·전술의 분석을 통해, 교리가 가진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교리를 운용하는 이들이 갖게 되는 고민을 이해해 보고자 한다.

2. 한국군 전쟁 수행과 중대전술기지의 운용

중대전술기지의 건설과 운용은 당시 한국군의 전략 및 작전개념을 달성하기 위한 가장 중요하면서도 독특한 전술로 알려져 있다. 주월한국군사령부는 중대전술기지 운용의 목적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전술 기지란 주월군의 기본 전략 개념인 분리, 섬멸 및 지역확대를 구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전술 개념이다. 이를 근거로 하여 지역 내의 적의 활동을 봉쇄하고 적을 포착섬멸하는 동시에 지역적인 안전을 제공하고 월남 정부의 평정 사업을 보호 지원하며 궁극적으로 정부 통제를 확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⁴⁾

마찬가지로 1969년의 『주월군 현황』에서는 전술 기지의 설치 운영이 “분리-섬멸-지역확대”라는 한국군 전략이 수행되는 것으로 이해한다.⁵⁾ 이처럼 중대전술기지는 한국군에 있어서 베트남 전쟁 수행의 근간이었다. 1965년 10월 한국군 전투부대가 베트남에 도착하면서부터 채명신 사령관은 예하 부대에 중대 규모의 기지를 구축하고 운용하라는 일반지침을 하달하였다.⁶⁾ 그 결과 각 소총 중대는 1966년 3월까지의 약 5개월 동안 책임 지역에 기지를 건설하고, 기지 주변을 수색 및 정찰 그리고 매복하는 형태의 소규모 전투작전을 지속했다.

4) 주월한국군사령부, 『월남전에서의 한국군 전술』 (사이공:주월한국군사령부), 1969, 109쪽.

5) 주월한국군사령부, 「주월군 현황」, 1969. 12. 31, DA1417325, 국가기록원.

6) 국방부, 『파월 한국군전사』 1-1(서울:국방부, 1978), 266쪽; 채명신, 『베트남전쟁과 나』 (서울 : 팔복원, 2006), 180쪽.

중대전술기지는 적의 어떠한 방향으로부터의 공격에도 방어할 수 있도록 편성된 지름 150m 정도의 원형 형태 기지이다. 기지는 외곽과 내곽의 2중 방어선으로 편성되어, 적의 위협이 증가되면 외곽 방어선에서 철수하여 내곽진지에서 계속 전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구축되었다. 외곽 방어선에는 두 명의 병사가 위치하는 참호진지가 구축되어 있으며, 이는 교통호를 통해 분대장과 소대장이 위치한 진지로 연결된다. 내곽 방어선에는 화기 소대가 위치하여 81mm 또는 4.2인치 박격포 1~2문으로 화력을 지원한다. 이러한 화력 계획과 함께 중대 기지는 특히 야간전투를 대비하여 철조망, 지뢰, 부비트랩과 같은 장애물의 지원을 받게 된다.⁷⁾

〈사진 1〉 수도사단 1연대 6중대 중대전술기지(촬영일시 미상)



* 출처: 『월남전과 한국』 웹사이트⁸⁾

7) 주월 한국군 사령부, 『월남전 종합연구』 (서울:주월한국군사령부, 1974), 715~730쪽.

8) http://www.vietvet.co.kr/technote/read.cgi?board=photo&x_number=1145407196&r_search=%C0%FC%BC%FA%B1%E2%C1%F6&nnew=1

전선의 이동이 빈번한 재래식 정규전과 비교해 볼 때, 베트남 전쟁에서 군사작전을 위한 기지(base)의 운용은 일반적이었다. 한국군뿐만 아니라 미군과 남베트남군을 비롯한 연합군 역시 작전 수행을 위해 기지를 운영했다. 전술 책임 지역을 부여받은 각 군대가 해당 지역의 평정을 위한 대반란전 또는 대게릴라전을 수행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미군은 그들의 기지를 화력 기지(Fire Base, FB) 또는 화력 지원 기지(Fire Support Base, FSB)로 불렀다. 소모전 전략 속에서 작전적으로는 공세를 취하려는 미 육군에게 기동력과 함께 화력은 아군의 피해를 최소화 하면서 적에게 최대한의 피해를 강요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었다. 따라서 미군 기지가 지닌 주요 목적과 기능은 ‘탐색격멸(Search and Destroy)’이라는 정규전 형태의 공세적 군사작전을 지원하는 것이었다. 통상 기지에는 155mm 포 6문을 보유한 한 개 포대가 위치하여 보병의 탐색격멸 작전에 포병 화력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했다.⁹⁾

또한 미군은 최초 기지 구축에 있어서도 효과적인 방어를 위해 기지를 견고하게 구축했다. 기지에는 최소 1개 보병 대대가 주둔하여 방어하며, 기지는 스스로 최소 3일 최대 14일까지 적의 공격에 지탱할 수 있어야 하며 상황에 따라서는 반영구적인 형태로 고안되었다.¹⁰⁾ 이처럼 미군의 기지 운용은 화력 지원과 기지 방어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대반란전의 수행에 있어서도 기지는 “적의 공격에 민간인 사상자를 줄이고 보안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 밀집 지역과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는

9) David Ewing Ott, Vietnam Studies: Field Artillery, 1954-1973 (Washington, D.C.: Department of the Army, 1975), pp.55-57.

10) Randy J. Kolton, “Anticipation and Improvisation: The Fire Base Concept in Counterinsurgency Operation,” (Master’s thesis, U.S. Army Command and General Staff College, 1990), p.13.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겼다.¹¹⁾

미군의 기지가 주로 공세적인 정규 작전 수행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것에 비해 한국군의 기지 개념은 정규전 방식의 전투 작전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았다. 오히려 한국군의 기지는 ‘분리’, ‘섬멸’, ‘지역확대’라는 한국군 자체적인 평정 전략과 이를 위해 작전의 우선순위에서도 적의 섬멸보다는 베트콩과 주민의 분리를 실현하는데 높은 비중을 둔 것에 그 독특함이 있었다.

여기서 한국군의 평정 전략이 연합군 전체의 전쟁 수행 전략 속에서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에 대한 간단한 검토가 필요하다. 연합군의 평정 전략은 탐색격멸과 같은 공세적 전투작전 수행과 함께, 소탕과 지역 확보 및 장악과 민사작전을 병행하면서 남베트남에서의 평정을 달성하는 것이었다.¹²⁾ 1965년 MACV(U.S. Military Assistance Command, Vietnam, 베트남군사원조사령부 혹은 주월 미군사령부) 사령관인 웨스트모어랜드(William C. Westmoreland) 대장은 남베트남 평정을 위한 군사작전을 ‘탐색격멸’, ‘소탕’, ‘확보’의 세 가지 유형 및 단계로 발전시켰다. 여기서 미 지상군의 병력이 늘어나면서 연합군 내에서도 미군이 탐색격멸 단계에 집중하고, 남베트남군은 주로 소탕 및 확보의 임무를 갖게 되었다.¹³⁾ 문제는 1965년 후반부터 주둔을 시작한 한국군이었다. 미군은 한국군이 미군과 마찬가지로 주로 탐색격멸 작전을 실시하기를 원했으나, 한국군은 이보다는 소탕 및 확보 작전에 초점을 맞추었고, 특히 한국군

11) Field Manual(FM) 90-8 Counterguerrilla Operations (Washington, D.C.: Department of the Army, 1986), pp.7-1~7-2.

12) William C. Westmoreland, A Soldier Reports (N.Y.: Doubleday, 1976), 186-188; George L. MacGarrigle, Combat Operations: Taking the Offensive, October 1966 to October 1967 (Washington, DC: Center of Military History, U.S. Army, 1998), pp.7~8, p.152.

13) Ulysses S. Grant Sharp and William C. Westmoreland, Report on the War in Vietnam, as of 30 June 1968 (Washington, DC: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69), p.91.

파병 초창기에 이러한 경향은 두드러졌다.

결국, 한국군의 기지 운용은 지역 평정을 위한 연합군 군사작전의 2, 3단계인 소탕 및 확보의 핵심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채명신은 미국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미군처럼] 탐색하고 격멸하는 것이 아니라 공격하고 머무른다”고 설명했다.¹⁴⁾ 이러한 의도에 따라 한국군은 미군처럼 대대급 이상이 아닌 중대급 규모의 기지를 구축했던 것이다. 각각의 중대는 기지를 운용함으로써 이를 중심으로 책임 지역에 대한 평정작전을 진행해 나갔다. 3개 소총소대와 한 개 박격포 소대의 총 175명의 병력으로 구성된 소총 중대는 전투의 기본 단위로서, 주월한국군사령부는 중대를 전술적 차원의 작전을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단위로 여겼다.¹⁵⁾ 따라서 부대를 중대 단위로 쪼개어 책임 지역에 배치한 것은 가능한 한 더 넓은 지역을 확보하고 통제하려는 주월한국군의 의도로 볼 수 있겠다.

이에 더해, 연합군의 평정 전략과는 별개로, 한국군의 중대전술기지 운용은 지역 평정을 위한 한국군 자체적인 전략 수단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한국군이 최소한의 희생으로 최대 성과를 달성한다는 내부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책임 지역 평정과 평정 지역의 확대를 전쟁 수행의 기본 전략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평정 전략이 분리-섬멸-지역확대로 이루어지기에, 주민을 베트콩으로부터 분리시키려는 목표를 가지고 중대 규모의 기지를 해당 책임 지역에 배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중대 기지는 정규전 위주의 전투작전보다는 평정작전 수행에 적합한 전략적 중요도가 높은 위치에 건설될 것이 요구되었다. 『베트남에서의 한국군 전술』은 “월남전에서 중요 지형 지물이란 감제고지보다는 도리어 인구 조밀 지역, 생산지, 교통 중

14) “Leading Teacher,” *Newsweek*, no. 69, 10 April 1967.

15) “Strength: ROK Forces in Vietnam,” 주월사, 『주월사병력수준』, 1966.3~1967.6, HB02019.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사료실.

심지, 중요 교량, 병참선 및 중요 군사, 공공 시설을 보호할 수 있는 지형이다”로 정의한다.¹⁶⁾ 또한 “월남전의 특수성을 고려, 반드시 감제고지를 택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고지 그 자체 점령은 아무 의의가 없으며 피아간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고 보았다.¹⁷⁾

평정작전을 위해 각각의 소총 중대는 전술 기지를 기반으로 전투작전과 민사작전을 함께 수행하였다. 여기서 전투작전은 기지를 중심으로 실시되는 주로 수색 및 매복과 같은 소규모의 작전을 의미한다. 기지는 마을로부터 가까운 곳에 건설하거나 마을로 가는 길목을 차단함으로써 지역 주민을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었다.¹⁸⁾ 이러한 이유로 주간에는 한 개 또는 두 개의 소대가 중대 책임 지역의 수색과 정찰을 실시했으며, 야간에는 통상 중대의 3분의 1 병력이 기지 밖에서 매복작전을 했다.¹⁹⁾ 무엇보다도 한국군 전술 기지는 민사작전의 거점이었다. 각각의 중대는 이웃 촌락에서의 민사작전을 수행했다. 이웃 마을과 자매 관계를 형성하기도 하면서, 각 중대는 정기적으로 마을을 방문해 농사나 가옥의 건설, 의료 및 식량 지원과 같은 민사작전을 수행하였다.²⁰⁾

미군은 그들의 전술과 다르다는 이유로 한국군의 기지 운용에 대해 물음표를 제기했다.²¹⁾ 좀 더 넓은 차원에서 이러한 의구심은 한국군이 베트남 전쟁에서 미군과 다른 형태의 전쟁을 수행하는 것에 대한 불만과 연결되어 있었다. 미군의 관점에서 한국군은 평정 전략 단계에서 탐색격멸보다 소탕 및 확보에 치중했

16) 『월남전에서의 한국군 전술』, 110쪽.

17) 앞의 책.

18) 육군본부, 『월남전의 전훈』 1 (서울: 육군본부, 1966), 18쪽.

19) 『월남전의 한국군전술』, 120쪽.

20) 『월남전의 전훈』 1, 18쪽

21) 주월한국군사령부, 『주월군 소개』 (사이공: 주월한국군사령부), 1967, 2장, 8쪽.

기에, 한국군의 기지 운용은 종종 베트남 전쟁에서 수동적이고 방어적인 한국군을 대표하는 전술로서 비판받았다. 여기에는 미군이 한국군은 미군과 마찬가지로 평정을 위한 1단계 작전인 적극적인 탐색격멸을 수행할 것을 원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군은 이를 잘 따르지 않았고, 중대전술기지는 한국군의 수동성을 보여주는 상징처럼 여겨지게 되었다.

한편 전술적인 관점에서 미군은 한국군의 기지가 적의 공격에 취약할 것으로 보았다. 중대급 규모의 전력은 적의 대규모 공격에 쉽게 고립되고 격멸될 가능성이 높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또한 중대 규모의 작전에는 효과적인 화력 지원이 제한되며, 중대 규모의 공격작전으로는 전투력 집중이 어려울 것으로 우려했다.²²⁾ 미군은 한국군에게 미군의 방식대로 적 부대 격멸을 위한 정규전 형태의 작전을 효과적으로 지원 가능할 수 있는 최소 대대급의 기지를 구축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채명신은 이와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중대가 가장 작은 전술 제대로서 적절한 준비와 방어 수단을 갖춘다면 훨씬 우세한 적의 공격을 충분히 막아낼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중대전술기지 운용은 한국전쟁에서의 경험과 교훈으로부터 도출된 채명신의 계산된 모험이었다. 중대 기지 설치와 운용에 대한 채명신의 일반지침은 다음과 같다.

1. 적의 연대규모 공격에 최소한 48시간 이상 지탱할 수 있도록 진지를 구축하고 소요되는 탄약과 식량을 비축한다.
2. 기지는 포병의 지원사정권내에 설치하며 기지간의 간격은 탐색과 야간매복으로 보강한다.

22) 채명신, 앞의 책, 180쪽; 채명신 증언, 1969년 8월 21일,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증언을 통해 본 베트남전쟁과 한국군』 1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1), 84쪽.

3. 기지는 모든 작전행동과 월남당국에 의하여 추진되는 「춘락재전」 계획을 지원하는 거점으로 활용한다.²³⁾

이처럼 중대 규모 기지의 도입과 운용은 평정작전을 지원하면서도 기지 자체방어에 충분한 최소한의 병력을 제공할 수 있는 방책이자, 전투와 민사작전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취한 최선의 선택이었다. 만약 중대보다 작은 소대나 분대 규모로 부대를 쪼개 기지를 구축한다면 더 많은 지역을 통제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겠지만, 소대나 분대급은 적의 공격으로부터 취약했기에 최소 중대급 규모를 채택했던 것이다.²⁴⁾ 따라서 한국군의 기지 운용은 주민의 마음을 얻기 위한 평정작전에 초점을 두면서도, 필요하다면 적과 싸워 기지를 방어해야 하는 두 가지 기능 모두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유연한 전술로 평가할 수 있겠다.

중대 기지를 운용한 지 10여 개월 뒤인 1966년 8월, 한국군 중대전술기지는 적의 전면 공격으로부터의 방어 능력을 증명했다. 베트남과 캄보디아의 국경 지역에 위치한 독꼬(Ducco) 지역에서 수도사단의 한 개 중대가 기지를 성공적으로 방어함으로써 연대급 규모의 북베트남 정규군의 공격을 격퇴시킨 것이다. 이어서 1967년 2월에는 한국군 해병 중대가 압도적 규모의 북베트남 정규군의 공격을 기지 방어를 통해 격퇴했다. 이 전투가 바로 짜빈동 전투이다. 위와 같은 연이은 성과를 통해 중대급 기지는 방어 면에서의 효용성을 증명할 수 있었고, 한국군 기지가 적의 대규모 공격에 취약할 것이라는 미군의 전술적 관점에서의 우려는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

1967년 9월 24일, 냐짱(Nha Trang)에서 열린 MACV 지휘관

23) 국방부, 앞의 책, 266쪽.

24) 채명신, 앞의 책, 180쪽.

회의에서, 미 제1야전군 사령관 로손(William B. Rosson) 중장은 한국군의 성공적인 기지 방어를 의미 있는 전투 사례로 여기면서, “한국군은 야전에서의 기지 방어에서 그들만의 독특함을 보여주었다”고 호평했다.²⁵⁾ 채명신은 이에 적극적으로 동의했고, 로손은 채명신에게 “다음 지휘관 회의에서 이[한국군 기지 방어-필자]에 대해 발표해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이에 12월 3일 한·미·월의 연합군 정기 회의에서 채명신은 중대 전술 기지가 한국군의 광범위한 전술 책임 지역을 안전하게 통제하고 있는 핵심 개념임을 피력할 수 있었다.²⁶⁾

이 자리에서 수도사단 기갑연대장 백명학 대령이 연합군의 지휘관 및 참모들에게 중대전술기지에 대해 발표했다. 백명학은 중대전술기지를 운용하는 한국군의 방식이야말로 베트남 전쟁 수행에 적합한 것임을 주장하였다. 그는 한국군 중대 기지가 정규전과 비정규전 형태의 반란전이라는 두 가지 전쟁 양상 모두를 고려하여 설계된 개념이며, “이 전쟁에서 이미 상당히 성공적임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백명학의 발표가 끝난 후 진행된 강평에서 채명신은 연합군의 지휘관들에게 다시 한번 한국군의 기지 개념을 홍보하면서, “나는 그의 발표가 여러분들에게 많은 지식을 제공했으며 여기서 제시된 자료들이 앞으로의 작전계획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를 희망한다”고 역설했다.²⁷⁾ 이에 이 자리에 있었던 미 고위급 장교들의 호의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²⁸⁾

25) Memorandum for Record, “MACV Commanders’ Conference 24 September 1967,” 12 October 1967, Reel 11, Papers of Westmoreland (microfilm), The Vietnam Center & Sam Johnson Vietnam Archive(VNCA), Texas Tech University, Lubbock, Texas.

26) 앞의 책.

27) The Tiger Division, “Company Tactical Base Concept,” 1967, 주월사, 『중대전술기지자료』, 1971. 1. 20, HB01685.

28) “MACV Commanders’ Conference 24 September 1967,” VNCA.

일련의 방어작전에서의 성공을 통해 중대 기지의 운용은 한국군의 독특한 전술로 인정받았다. 미 육군 라스무센(Ronald R. Rasmussen) 소령은 『Military Review』에 다음과 같이 한국군의 기지 전술을 소개했다.

한국군이 어떤 지역에 들어오면 그들은 그곳에서 일정 기간 머무르려고 했고, 즉각적으로 정교한 중대 기지를 구축했다. ... 중대기지라는 강점(strong point)으로부터 한국군은 넓은 지역에 대한 수색 정찰과 매복을 실시했으며 이는 주야간 지속되었다.²⁹⁾

동맹군인 미군뿐만 아니라 적군인 북베트남군조차 “한국군은 이틀에서 3일 만에 견고한 기지를 구축했다”며 중대 기지의 운용을 한국군의 전술적 장점으로 여겼다.³⁰⁾

독꼬 전투의 승리를 계기로 중대전술기지 신화가 탄생했고, 한국군 고위 장교단은 더 나아가 미군이 한국군 기지 개념을 채택했다고 주장했다. 1969년의 인터뷰에서 채명신은 미군의 화력 기지가 한국군의 기지 개념으로부터 유래했다고 말했다.³¹⁾ 수도사단 1연대 3대대장 박경석 중령 역시 위 주장에 동의한다. 그는 독꼬 전투 등에서의 성공 이후 한국군의 기지 운용 방식이 미군을 비롯한 연합군의 일반적인 베트남 전쟁 수행에 반영되었다고 말했다.³²⁾ 반면에, 미군의 한 문서에서는 “그들[한국군-필자]이 채택한 방어 전술은 독특한 산물이 아니며, 그들의 성공에는 어떠한 비밀도 없다. 그들이 한 것은 미군 고문단들로부터 배

29) Ronald R. Rasmussen, “ROK Operations in Central Vietnam,” *Military Review* 48, no. 1 (1968), p.54.

30) 『주월군소개』 1장, 19쪽.

31) 채명신 증언, 1969년 8월 21일,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앞의 책, 86쪽.

32) 박경석 인터뷰, 2018년 6월 2일, 자택, 대전, 대한민국.

운 것이며 우리의 교범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다”며, 한국군의 기지 운용이 독특한 개념은 아니라고 주장한다.³³⁾

중대전술기지에 대한 위와 같은 양측의 상반된 평가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 사실 미군의 위와 같은 주장에는 한국군 중대 기지가 방어에 효과적이었다는 인정이 담겨 있다. 다만 미국 측의 평가는 기지의 방어 능력이라는 전술적 수준에만 머물러 있으며, 평정작전의 효용성이라는 전략적 평가가 결여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미군이 한국군으로부터 기지 운용을 배워갔다는 한국 측의 주장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미군의 기지 운용은 본 논문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정규 군사작전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한국군의 개념과는 달랐다. 기지 운용의 시작 또한 한국군 전투부대의 베트남 전쟁 참전 이전인 미 지상군이 본격적으로 전쟁에 개입한 1965년 초반부터였다. 오히려 주월한국군이 강조했던 중대전술기지의 미군의 기지 운용 개념과의 진정한 차이는 책임 지역을 통제하고 안정화시키는 평정작전에 그 목적이 있다는 지점일 것이다. 한국군 중대 기지는 단순히 적으로부터 기지를 방어하거나 전투작전을 지원하는 전술적 차원 이상의 목적과 기능을 가져야 했다. 결국, 한국군과 미군은 그들의 전략 및 작전의 우선순위에 따라 서로 다른 방식의 기지 전술을 채택했던 것이다.

33) Headquarters, Department of the Army, *Military Operations Vietnam Primer: Lessons Learned*, 21 April 1967, 43-44, Folder 1, Box 1, Stephen F. Maxner Collection, VNCA.

3. 독꼬 전투: 한국군 중대전술기지의 전술적 성공과 딜레마의 탄생

한국군은 왜 그들의 책임 지역을 벗어나 베트남-캄보디아 국경지대인 독꼬까지 가게 된 것인가? 1966년 6월 24일 미 제1야전군 사령부(I Field Force, Vietnam)는 주월사령부에 미 제25사단의 폴 리버(Paul Revere, 1966년 4~6월 실시) 작전에 한국군 수도사단의 한 개 대대의 파견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³⁴⁾ 폴 리버 작전에서는 워커(Glenn D. Walker) 준장이 지휘하는 미 25사단 3여단이 캄보디아 국경 지역 동쪽에 위치한 뿔레이꾸(Pleiku)의 방대한 지역에서 북베트남 정규군과 베트콩에 대한 탐색격멸을 실시했다. 미군은 이 작전의 성공을 위해 더 많은 병력을 필요로 했다.³⁵⁾

당시 한국군 장교들은 미군의 한국군 부대 파견 요청이 단순히 전투력의 부족 때문은 아니라고 보았다. 한국군 측은 미군의 이번 파병 요청을 한국군이 북베트남 정규군과의 전투에서도 잘 싸울 수 있을 것인지, 한국군의 전투 능력에 대한 시험에서 비롯된 것으로 인식했다. 주월사 작전참모 손장래 대령은 미군의 의도는 한국군을 ‘은신처’ 밖으로 나오게 하여 한국군의 전투력을 시험해보고자 하는 것으로 여겼다.³⁶⁾ 비슷한 맥락에서 수도사단의 작전참모 김기택 중령은 “그 속셈에는 이른바 적의 성역에서 월맹군

34) 수도사단, 「전투상보 제41호: 독꼬 전투」 1966, HB00094.

35) John M. Carland, *Combat Operations: Stemming the Tide*, May 1965 to October 1966 (Washington, DC: Center of Military History, U.S. Army, 2000), p.289; 국방부, 『과월한국군전사』, 1-2권, (서울: 국방부, 1979), 363쪽.

36) 손장래 증언, 1968년 9월 2일,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앞의 책, 117쪽.

을 상대해 보고, 콧대가 낮아지면 중대전술기지 개념 자체를 뜯어고쳐, 미군 측에 좀 더 고분고분해지도록 만든다는 뜻도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³⁷⁾

여기에는 한국군이 미군의 작전 방식을 따르지 않고 대규모 전투작전에 소극적이라는 미군의 불만이 있었다. 실제로 당시 미 제1야전군 사령부는 한국군의 전쟁 수행에 대해 한국군이 전술 책임 지역 내의 평정작전에는 성공적이었지만 대규모 전투작전에 소극적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모든 것을 감안할 때, 한국군 한 개 부대의 전투 능력은 미군의 절반 정도로 판단된다. 한국군은 방어적인 강점을 구축하여 그들의 책임지역 내 기관과 도로 시설을 확보하는데 월등하다. 공세 행동에서 그들은 공격적이지 않고 전술적 호기를 포착하려고 하지 않는다. ... 그들은 남베트남과 협조하거나 또는 자체적으로 지역을 확보하거나 지역 내 베트콩을 소탕하는데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을 것이다.³⁸⁾

이에 더해 “한국군의 소극적인 모습이 지난 12월과 1월에 조금 개선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한국군이 적극적인 공격에 매우 소극적”임을 비판했다.³⁹⁾ 한국군 장교의 증언처럼, 미 제1야전사령부의 파병 요청은 단순히 병력의 부족 문제가 아닌 책임 지역 내에 중대 기지를 통해 방어와 평정작전에 치중하며 ‘다른 전쟁(other war)’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군에 대한 미군 측의 불만에서 비롯된 행동으로 볼 수 있겠다.

한편 미 제1야전사령관 라슨(Stanley R. Larsen) 중장⁴⁰⁾의

37) 김기택 증언, 1979년 6월 18일, 앞의 책, 375쪽.

38) Message from Nha Trang to COMUSMACV, “Evaluation of ROK Forces,” 25 January 1966, Folder 15, Box 2, Dale W. Andrade Collection, VNCA.

39) 앞의 책.

공식 파병 요청을 받은 채명신 사령관은 미군의 작전지역에 한국군 부대를 보내는 결정에 신중했다. 이 결정 과정에 대해 주월 사령부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당시 캄보디아 국경까지 1개 대대 병력을 파견한 경위를 말씀드리면, 한, 월, 미 연합작전의 필요성에 의하여 투입하게 되었으며 이 작전 지역이 캄보디아 국경선이고, 또한 월맹 정규군과 최초로 대처하는 작전임으로 만약의 경우 국제적으로 한국군의 위신을 손상케할 우려도 내포하고 있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관하여 사령부로서는 극히 신중을 기하였으며 현지를 답사하고 적정을 파악하여 희생없이 성공할 수 있다는 판단과 장차 동해안의 평정이 끝나고 제2단계로 국경선 일대에 배치할 경우를 예측하여 사전에 익숙하다는 의도하에, 이에 협조 이동하였든[딘-필자] 것입니다.⁴¹⁾

여기서 한국군이 미군과의 관계에 있어서 지닌 딜레마를 알 수 있다. 한국군은 최소 희생으로 최대 결과를 얻는다는 이면적 목표하에, 그들의 참전을 정당화할 수 있는 명분을 확보하면서도 미군과의 관계에서 실제 이익을 얻기를 지속해서 원했다. 다만 주월사령부는 많은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는 치열한 전투지역으로의 파견이라는 미군 측의 공식적 요청을 거절할 명분을 찾기 어려웠다. 한국군은 미국과 남베트남의 동맹국으로서 이들을 돕기 위한 명분으로 베트남에 온 것이며, 전쟁 수행에 있어서 전적으로 미군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채명신은 이러

40) 라슨 중장은 8쪽에 등장하는 로슨 중장의 전임자로서, 라슨 미 제1야전군 사령관의 재임 기간은 1965년 8월 1일부터 1967년 7월 31일이며, 로슨은 1967년 7월 31일부터 1968년 3월 1일까지 사령관 임무를 수행했다.

41) 주월한국군사령부, 「1966년도 주월한국군 작전개요 및 1967년도 전역계획 보고서」, 1967, HB02338.

한 상황에 대해 “작전지휘권 문제에 가장 강력한 반대 입장에서 절대적인 지지 입장으로 선회해 준 라슨 장군에 대해서는 그의 타당하고 정당한 요청에 대해 반대할 명분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입장이었다”고 밝혔다.⁴²⁾ 주월사령부는 미군으로부터의 요청과 압박 속에서 동맹국 군대로서 베트남 전쟁 수행에서의 명분을 확보하기 위한 체면치레 차원에서라도 캄보디아 국경 지역으로 일부 부대를 파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전투부대의 파견이 피할 수 없는 일임을 안 채명신은 미군으로부터 이에 상응하는 충분한 대가를 얻고자 하는 시도를 했다. 이와 같은 행동은 마치 베트남에의 파병이 불가피해지자 오히려 선제적으로 참전 의사를 타진하면서 참전의 대가로 미국으로부터 더 많은 국가 안보 및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고 했던 한국 정부의 노력과도 유사하다. 미군의 요청을 수용함으로써 채명신은 실리와 명분 두 마리의 토끼를 쫓고자 했다. 최초에 채명신은 라슨의 제안을 통신장비 등 장비 문제, 사단전술책임 지역 밖으로의 파병에 따른 보급 지원 및 작전 통제의 곤란 등의 이유를 들어 거절했다.⁴³⁾

이에 라슨은 미국 측이 새로운 통신장비와 AN/PRC-25 무전기를 제공하고 미 25사단이 한국군 부대의 보급과 군수 지원을 책임지는 대신, 미 3여단이 한국군 파견 부대를 작전 통제하는 것으로 제안을 해왔다.⁴⁴⁾ 결국 채명신은 이 수정안을 받아들였고, 최초 제안을 받은 지 10일 뒤인 7월 4일, 주월사령부는 미 1야전군 사령부에 캄보디아 국경지대에 한국군을 파견할 것을 최종적으로 통보했다.⁴⁵⁾ 이어서 7월 6일, 두 개의 포대와 한 개

42) 채명신, 앞의 책, 310쪽.

43) 국방부, 『과월한국군전사』 1-2(서울:국방부, 1979), 363쪽.

44) 앞의 책, 363쪽.

45) 앞의 책, 367쪽.

의 공병소대로 증강된 수도사단 기갑연대의 3대대가 파견 부대로 선정되어 출발 준비를 하게 되었다.⁴⁶⁾

비록 미군 측과 협조하기로 했으나, 채명신은 이 파전에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여 국내 여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을 우려했다. 이에 그는 한국군 부대를 미군의 작전 통제하에 두는 결정을 내린 이후에도 파견부대의 운용 계획에 깊숙이 관여하였다. 수도사단 작전과에서 근무한 서우인 소령은 채명신 사령관의 기준에 맞추어 부대 운용 계획을 수립하는 일이 무척 어려웠음을 회고한다. 미군과 한국군 참모들이 함께 기안한 파병 부대의 작전 및 통제 계획을 채명신은 수차례 승인하지 않았던 것이다.⁴⁷⁾ 채명신은 미군의 작전 통제하에서 미군과 연합작전을 수행할 예정인 한국군 부대에 주월사령부의 개념대로 중대전술 기지를 구축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는 주월한국군의 최소한의 희생으로 최대한의 목표를 달성한다는 내부 목표 중 최소한의 희생 만이라도 달성하기 위한 현실적인 판단에서 비롯됐을 것이다. 중대 기지의 방어 능력에 확신이 있었기에 채명신은 중대 기지를 운용함으로써 한국군 부대의 안전을 도모했다.

7월 9일 아침, 한국군 파견 부대는 그들의 주둔지인 꾸이년(Qui Nhon) 지역을 떠나 독꼬로 이동했다. 제61포병대대 3포대장 김진규 대위는 출발 당일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사실 나는 걱정으로 마음이 무거웠다. ... 사실 이번 Cambodia 국경으로의 출동은 여러 면에서 역사적이었다. 예상되는 상대가 월맹 정규군이라는 사실 말고도 240킬로미터의 차량 행군, 흔하지 않는 포대군 형성 등 의의 있는 일이 많았다. 무엇보다도 맹호 전우들의 기대는 물론 국내외 신문 보도를 통해 우리의 출동을 알고 있는

46) 수도사단, 「전투상보 제41호:독꼬전투」, 1966, HB00094.

47) 서우인 인터뷰, 2018년 5월 28일, 선우가(일식당), 서울, 대한민국.

동포와 자유 우방국민들의 기대와 주시는 우리에게 멋있는 솜씨를 보여 줄 것을 거의 강요하고 있었다.⁴⁸⁾

187대의 트럭과 미군의 최대 지원이 이루어진 행군장경(行軍長徑)만 16km에 달하는 19번 도로를 240km 이동하는 “엄청난 행군의 위용”에 대해, 김진규는 경외와 함께 걱정을 드러냈다. 그는 긴 행군의 길이에 “행군 중 만일의 경우 적절한 화력 지원이 가능할 것인지 몹시 마음이 쓰일 수밖에 없었다”고 회고했다.⁴⁹⁾ 이러한 우려와는 달리 한국군은 적의 공격을 받지 않고 무사히 독꼬에 도착할 수 있었다.

한국군 부대의 독꼬 파견은 여러 측면에서 베트남 전쟁에서 이루어진 최초의 본격적인 한·미 연합작전이었다. 이동 단계에서부터 파견 부대 지휘관인 3대대장 최병수 중령은 헬리콥터에서 부대 이동을 지휘 및 통제하였고, 미 1기갑사단과 한국군 수도사단 26연대는 전차를 동원하여 한국군 파견부대의 측방을 엄호했다. 행군 당일 09시부터 미 3여단이 뿔레이꾸에 도착한 한국군 3대대에 대한 작전 통제를 시작했다.⁵⁰⁾ 그리고 미 여단과 한국군 연대는 대대에 대한 원활한 작전 협조를 위해 상호 연락장교를 파견했다. 마지막으로 미 전차 소대가 3대대로 배속되었다.⁵¹⁾

한국군 파견 부대인 3대대에 주어진 책임 지역은 캄보디아 국경에서 독꼬 지역까지의 정면 13km, 19번 도로에서 아이퐁 계곡(이아드라 강의 일부)의 중심 13km에 이르는 정글 지대였다. 대대장 최병수 중령은 그의 원소속 사령관과 현 지휘관의 상이

48) 주월사, 「전투미담 및 전훈」, 1965. 10~1967. 11, HB02453.

49) 앞의 책.

50) 앞의 책; Carland, *Combat Operations*, pp.292~297.

51) 국방부, 앞의 책, 367쪽.

한 지시로 인한 어려움에 직면하였다. 이에 대해 그의 수기에서도 “본인이 출동 이전 채명신 사령관님으로부터의 지시 받은 작전지침은 이와[워커 장군의 지시와는-필자] 대조적으로 상이하였으니 현지 작전 대대장으로서는 적지 않은 고충이 많았던[많았던-필자] 것이다”고 털어놓았다.⁵²⁾ 미 3여단장 워커 준장은 3대대에 작전지역 내 적의 가능한 접근로를 차단하기 위해 4, 5명 단위의 감시초소를 연결해 차단선을 설정하고, 남은 병력으로 탐색격멸 작전을 실시할 것을 지시했다. 이를 통해 적 발견 시에는 한국군 부대가 포병 화력을 활용하여 적을 격멸하거나 중원부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적을 고착시켜 붙잡아두길 원했다.⁵³⁾ 이는 전형적인 미군의 탐색격멸 방식으로 이를 위해 한국군은 발견하는 적을 즉각적으로 타격하고 격멸할 수 있는 예비 부대를 운용해야 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채명신은 3대대의 출병 전 최병수에게 중대전술기지의 구축 및 운용, 점진적인 탐색 지역 확대, 그리고 각 기지가 72시간 이상 지탱할 수 있는 탄약과 식량을 확보할 것을 지시하였다.⁵⁴⁾ 즉, 한국군이 공격보다는 중대 기지의 구축을 통해 방어에 집중하면서 책임 지역을 통제할 것을 원했던 것이다.

독꼬 지역 도착과 동시에 3대대는 독꼬에서 8km 남쪽에 위치한 뿔래이 기라오 끌라 마을의 동쪽 부근에 방어진지를 구축했다. 제1야전군 사령관 라슨은 이 광경을 “[한국군] 대대는 도착하면서 세 개의 중대 기지(Outpost)로 쪼개져 기지(Base)를 바탕으로 모든 방향으로 소규모 단위의 정찰을 포함한 작전에 착수하였다”고 묘사하였다.⁵⁵⁾ 대대가 중대 기지를 건설하려고 하

52) 「전투상보 제41호:독꼬전투」, HB00094; 최병수 증언, 1978년 4월 28일,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앞의 책, 379쪽.

53) 앞의 책.

54) 앞의 책, 366쪽.

55) Stanley R. Larsen, *Vietnam Studies: Allied Participation in Vietnam* (Washington, D.C.: Department of the Army, 1975), pp.140~141.

자, 워커 여단장은 최병수에게 그의 지시에 따른 전투 임무 수행을 지시하였다. 미 지휘관의 지시에 대한 최병수의 결정은 “우선 우리 사령관님의 지침에 기준을 두고 여단장의 개념을 살펴보는 방향”으로서 이는 주월사령부의 “사단 전술개념을 근간으로 임무를 수행하되 작전통제권자와 충분히 협조하라”는 그의 애로사항 보고에 대한 사단의 회신을 반영한 결과였다.⁵⁶⁾ 이에 최병수는 먼저 감시초를 연결하는 차단선을 운용하는 대신에 세 곳의 다른 지역에 중대 기지를 건설하였다. 그리고 각 중대에 매일 두 개의 소대로 주야간 매복을 실시하고 종종 중대급 규모로 수색 및 정찰을 실시하라는 작전지침을 하달하였다.⁵⁷⁾ 매복작전을 통해 대대는 기지를 건설한 이후 각 중대가 지역 내에 감시초를 설치하는 것처럼 보이게 했다. 하지만, 실제로 이는 두 개 소대가 중대 책임 지역에 매복을 나간 것이었고, 이는 워커의 지시를 반영하고자 한 노력의 산물이었다.⁵⁸⁾ 동시에 한국군 중대는 워커의 탐색 명령에 의거 매일 정해진 구역에 대한 수색 및 정찰 활동을 실시하여 미군 측에 적을 찾아 격멸하려는 모습을 보이려 했다.

이는 채명신의 지시를 우선시하면서도 워커에 불복종하지 않으려는 최병수의 절충안이었다. 최병수는 중대 기지를 구축하면서 동시에 적을 찾기 위한 수색 및 정찰 활동을 지시했으며, 워커의 명령인 탐색격멸 작전을 따를 수 있게끔 준비했던 것이다. 이와 동시에 최병수는 워커로부터 기본 휴대량만을 비축할 것을 지시받았으나, 최소한 대대가 3일을 지탱할 수 있는 탄약과 보급 물자를 미군으로부터 획득하려고 노력했다. 예를 들어, 김진규 포대장은 미 여단의 기준량은 포 한 문에 150발이었기에 주월한국

56) 「전투상보 제41호:독고전투」, HB00094; 국방부, 앞의 책, 366쪽.

57) 「전투상보 제41호:독고전투」, HB00094.

58) 앞의 책.

군사령부의 기준량인 105mm 포에 대한 450발의 탄약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그럼에도 그는 두 가지 상이한 지침 사이에서 가능한 많은 포탄을 비축하기 위해 노력하였다.⁵⁹⁾ 결과적으로 3대대는 주월사령부의 지침에 맞는 충분한 탄약을 확보할 수는 없었지만, 미군의 지침보다는 많은 양을 확보할 수 있었고, 워커로부터 전투 개시 두 시간 안에 충분한 양의 포탄을 받을 수 있다는 약속도 얻어낼 수 있었다.

하지만 3대대는 한 달에 걸친 일일 수색 및 정찰 작전에서 적과 조우나 격멸이라는 성과를 내지 못했다. 사실 대대는 파견 이후 독꼬 전투 전까지 총 1,437회의 수색 정찰과 385회의 매복과 같은 소규모 작전을 실시했다.⁶⁰⁾ 성과없는 한국군에 대해 독꼬 지역을 순시하던 MACV 사령관 웨스트모어랜드 대장은 “[단지] 땅속으로 파고 들어가 캄보디아 국경일대에 머물고 있다”로 평가했다.⁶¹⁾ 3대대 9중대장 이춘근 대위는 그의 중대가 7월 27일 11중대와 교대해 독꼬로 전환된 이후 두 개 소대는 정찰과 매복을 보냈고 한 개 소대는 중대 기지를 강화했다고 말했다. 최초 이춘근은 3일 동안 기지 내에 엄체호를 구축하는 등 11중대로부터 인수한 중대 기지를 보강할 것을 지시하였다.⁶²⁾ 한국군은 주로 야전삽을 이용하여 기지 보강을 했으며, 이는 그들의 원래 책임 지역 내에서 공병의 지원을 받았던 것과는 다른 부분이었다. 이에 한 참전자는 “소대장님으로부터 방어 구역을 할당받았다. 비록 재료는 부족하고 도구는 없으나 지금까지 익혀온 기술을 최대한 발휘해서 멋진 진지를 구축하라는 소대장님의 지시를 머릿속에 되새이며 야전삽을

59) 「전투미담 및 전훈」, HB02453.

60) Carland, *Combat Operations*, p.297; 「전투상보 제41호:독꼬전투」, HB00094.

61) General Westmoreland's Historical Briefing, 17 July 1966, Reel 7, Papers of Westmoreland (microfilm), VNCA.

62) 「전투상보 제41호:독꼬전투」, HB00094.

들었다”고 회고했다.⁶³⁾

워커 준장 역시 성과를 내지 못하는 한국군의 기지 구축에 대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워커는 9중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한국군 중대가 본연의 임무인 수색 정찰을 소홀히 하면서 할 일이 없으니 한가하게 기지 구축이나 하고 있다며 이춘근 중대장을 꾸짖었다.⁶⁴⁾ 당시 3대대 11중대의 1소대장이었던 표명렬 중위는 9중대의 기지 안의 엄체호 건설은 기지를 계속 이동해야 하는 기동 작전이라는 군사적 관점에서 볼 때 이치에 맞지 않은 행동이었다며, 미군 병사들이 “호랑이(맹호부대)가 이빨이 다 빠져 두더지처럼 땅 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짓”이라고 비아냥거렸다고” 설명했다.⁶⁵⁾ 그러나 9중대의 전술 기지는 이윽고 벌어지는 실제 전투에서 그 가치와 효용성을 증명했다.

8월 10일 22:40분, 약 700명에 달하는 북베트남 정규군 부대가 9중대 기지를 공격했다. 최초 지뢰 폭발 소리를 중대원들은 이를 별로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고, 이춘근 대위는 경계병들의 발자국 소리가 들린다는 보고를 받고 나서야 배속된 미군 전차 소대에 소리가 들리는 방향으로 서치라이트를 비출 것을 지시하였다. 그제서야 중대는 적 부대가 아군의 기지를 습격해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⁶⁶⁾ 당시 이틀간 연속된 수색 정찰에 따른 피로로 대부분의 중대원들이 취침 중이었기에, 적의 공격은 한국군에게 있어서 예상치 못한 기습이었다. 실제로 독꼬 전투에서 발생한 아군 피해의 90퍼센트는 전투 시작 후 10분 동안의 혼란 속에서 주로 적의 박격포 공

63) 「전투미담 및 전훈」, HB02453.

64) 이춘근 증언, 1978년 11월 29일,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앞의 책, 384쪽.

65) 표명렬, “상식에 어긋난 ‘참호’가 병사들을 구하다.” 『오마이뉴스』, 2006년 9월 20일.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361161

66) 「전투미담 및 전훈」, HB02453. 미군의 탱크 소대 5대 전차는 1966년 7월 11일 중대에 배속되었다.

격에 의해 발생한 것이었다.⁶⁷⁾ 9중대원 김흥기 하사는 “이번엔 총성이 아닌 적의 중화기 박격포탄이 아군 진지에 난타되었다. 우리들의 가슴은 거의 마비상태가 되었었다”고 이야기했다.⁶⁸⁾ 적의 기습 공격에 대해 중대원들이 즉각적으로 전투 준비는 했지만, 9중대에서는 전투 공황이 발생했던 것이다.

최초 발생한 공황과 혼돈 속에서 중대를 구할 수 있었던 요인은 중대장을 비롯한 지휘자의 리더십과 평소 강한 훈련과 실전으로 단련된 중대원들의 정신과 육체적 준비상태에 있었다.

첫째, 대부분의 중대원은 기지 방어 전투에서 적의 공격에 맞서 결연하게 싸웠다. 특히 중대는 파월 제1진으로서 제대 단위로 파병을 왔기에, 그들은 엄격한 규율과 함께 강한 응집력을 지니고 있었다. 거기에 개개 중대원들 모두가 포병 화력유도 능력을 보유할 정도로 훈련이 잘되어 있었다.⁶⁹⁾ 한 예로 소총수인 박재형 병장은 적 포탄 때문에 다른 병사들이 참호 밖으로 나갈 수 없을 때 스스로 신속하게 포병 화력을 유도했다. 그의 화력유도는 포병 관측장교 한광덕 중위의 최초 요청보다 3분이나 빨랐던 것으로, 이에 따른 적에 대한 포병 화력의 타격은 “적의 최초 공격 기세를 약화”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는다.⁷⁰⁾

둘째, 이 전투에서 장교와 분대장 이상의 부사관은 그들의 리더십을 증명했다. 한 전투 수기는 이를 잘 묘사하고 있다.

그 뒤 별안간 요란한 기관총 소리에 눈을 부비며 총과 철모를 쓰고 진지 투입을 하는 순간 적의 박격포가 수없이 진내에 떨어져 몇

67) 「전투상보 제41호:독꼬전투」, HB00094.

68) 「전투미담 및 전훈」, HB02453.

69) 「전투상보 제41호: 독꼬전투」, HB00094.

70) 북극성동창회, 『화랑의 십자군』, 1967, 216쪽; 국방부, 앞의 책, 375쪽.

몇 전우들은 그 자리에 쓰러지고 그 외는 모두 두려움에 갈피를 못 잡을 때 소대장님은 적에게 사격을 해야한다고 고함을 벽력같이 질렀다. 정신을 가다듬고 소대장의 지휘에 따라 진지 배치를 완료했다. 그리고 적정을 살폈다.⁷¹⁾

또한, 전투 초반 중대장 이춘근 대위의 참호에서의 “싸울 수 있는 모든 대원들은 모두 나서라, 진지를 사수하라. 중대장 이하 모두가 육박전을 감행한다”와 같은 외침은 중대원들이 전투에의 결의를 다질 수 있었던 계기가 되기도 했다.⁷²⁾ 이처럼 지휘자들의 리더십은 중대가 초반의 공황을 잘 극복하고 싸울 수 있는 태세를 만드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최초의 혼란을 딛고 방어 태세를 갖춘 9중대는 북베트남군의 계속되는 공격을 격퇴했다. 대대의 포병 화력 지원 이외에도 배속된 미 전차 소대와 한국군의 박격포 및 기관총 소대 또한 전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최초 공격 후 거의 3시간이 지난 새벽 2시쯤에 북베트남군의 공격은 눈에 띄게 약화 되었고, 기지의 거의 모든 곳에서 교전은 잠잠해졌다. 5시 40분경 남쪽으로부터 2소대 지역으로 공격해 들어오는 적의 최후 기도를 좌절 시킴으로써 중대는 최종적으로 적의 공격을 물리쳤다.⁷³⁾ 전투 결과 한국군은 무려 5배나 많은 북베트남 정규군을 패퇴시켰다. 미국 공간사에 따르면 한국군은 최소 197명의 북베트남군을 사살한 반면 7명을 잃었을 뿐이었다.⁷⁴⁾

독꼬 전투는 한국군 기지가 비정규군인 베트콩이 아닌 북베트남 정규군의 습격을 받아 일어난 전투였다. 대규모 적의 야간 기

71) 「전투미담 및 전훈」, HB02453.

72) 국방부, 앞의 책, 376쪽.

73) 「전투상보 제41호:독꼬전투」, HB00094.

74) Carland, *Combat Operations*, pp.298~299.

습 공격에도 9중대의 전술 기지는 붕괴되지 않았고, 오히려 교전 기간 내내 적을 압도했다. 미군 역시 한국군의 엄청난 승리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전투 다음 날 아침 6시 10분, 워커 준장이 기지를 방문해 최병수 대대장에게 “이 어마어마한 전과를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라며 북베트남군의 시신을 묻지 말 것을 지시하였을 정도였다.⁷⁵⁾

독꼬 전투는 논란의 여지없이 한국군이 베트남 전쟁에서 거둔 가장 위대한 승리 중 하나로 여겨졌다.⁷⁶⁾ 그런데 승리의 핵심요인에 대해서는 한국과 미국 측에서 다소 상이한 관점을 제시했다. 미군은 화력지원, 한국군은 중대전술기지의 우수성을 주된 성공요인으로 꼽았던 것이다.

한국군 전투상보는 가장 먼저 “한국군 방어 개념의 우수성”을 제시하면서, “근본적인 성공 요인은 사단의 방침으로서 최초부터 강조 실시하여 온 방어 개념의 우수성에 있음”으로 설명한다.⁷⁷⁾ 다음으로 “가용한 방어 수단의 협조와 통합에 성공”, “조기 발견”, “우수한 포병 화력 운용”, “각개 병사의 과감성”을 성공 요소로 들고 있다. 이에 비해, 미국의 베트남 전쟁 공간사는 독꼬 전투를 “화력에 의한 확실한 승리”로 규정지으면서, “이 전투의 지원을 위해 미국과 한국군 기지로부터 포병의 고폭탄이 1,900발이나 발사되었다”고 강조한다.⁷⁸⁾ 물론 한국군 전투상보에서도 포병 화력 운용을 성공 요인의 하나로 여기고 있으며, “조명탄과 고폭탄이 적진에 명중하였고 조명탄으로 인해 격전지는 개미새끼라도 보일만큼 밝았다”와 같은 한 병사의 진술처럼 화력 지원과 야간 조명탄이 그들을 살려

75) 「전투미담 및 전훈」, HB02453.

76) 「맹호 240명에 무공훈장」 『동아일보』 (1996. 8. 25.); 「존슨이 달아주는 미 은성 무공훈장」 『경향신문』 (1966. 10. 28.). 독꼬 전투에 참가한 240여 명 전원이 무공훈장을 수여받았다.

77) 「전투상보 제41호:독꼬전투」, HB00094.

78) Carland, *Combat Operations*, pp.298~299.

줬다는 미군의 견해를 뒷받침하는 의견이 있었다.⁷⁹⁾ 실제로 압도적인 화력이 공격하는 적을 충분히 약화시켰기에 9중대는 두드러진 백병전 없이 적을 격퇴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독고 전투의 성공은 위의 모든 요소가 함께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미군 측의 한 문서에서 “작은 동맹국 부대[한국군-필자]가 단호하게 방어하는 동안 포병과 전차에 의한 계속된 화력이 적을 찢어놓았다”로 기술하듯, 한국군의 승리는 견고하고 끈질긴 기지 방어와 화력 지원이 함께 작용한 결과였다.⁸⁰⁾ 만약 한국군 전술 기지의 튼튼한 방어와 사전에 잘 준비된 화력 협조 개념과 계획이 없었다면, 전투에서 화력 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루어 질 수 없었을 것이다. 동시에 9중대원들도 위급한 혼돈의 상황에서 침착하게 대응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화력 지원이 충분하지 않았다면, 한국군 기지는 압도적인 적의 공격에 결국 버티지 못했을 것이다. 더 나아가 튼튼한 기지와 월등한 화력을 보유했다고 하더라도 각개 중대원들의 전투 의지와 공격 정신 그리고 평소 훈련과 실전으로 단련된 전투 준비가 없었다면 중대는 결국 패퇴했을 것이다.

그런데 한국군 방어개념의 우수성을 설파하면서도 한국군 전투상보는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너무나 기지 방어에 과중한 나머지 작전이 소극화하는 것은 필히 경계하여야만 될 일이나, 모든 군사작전의 첫 요건은 기지의 방호 및 확보라는 근본 원칙은 변함없는 것이며 더욱이 적정이 불명한 지역 내에서 견고한 기지의 중요성은 일층 더 뚜렷하게 되는 것임.⁸¹⁾

79) 「전투미담 및 전훈」, HB02453.

80) Project CHECO Southeast Asia Report, “Operation Paul Revere / Sam Houston,” 27 July 1967, a485207, Defense Technical Information Center(DTIC).

81) 「전투상보 제41호:독고전투」, HB00094.

이러한 서술에는 중대전술기지의 방어 능력에 대한 주월사령부의 우려가 담겨 있다. 비록 전투상보에서는 독고 전투를 한국군의 전투 능력을 만방에 과시한 중대 방어 전투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결론 짓고 있으나, 내부적으로는 이 전투 수행 간 발생한 문제점을 식별하여 제시하였다. 이를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적이 새벽 2시 이후에도 계속적인 파상공격을 감행했다면 9중대는 붕괴됐을 것이다. 한국군 포대의 보유탄약은 다 떨어져 갔고 미 3여단에 요청한 긴급 탄약 추진은 야간의 기상 상태로 불가능했으며, 9중대는 한계점에 다다르고 있었다. 둘째, 전투 당일 중대가 야간 매복과 청음초를 운용하지 않아서 적의 기습을 쉽게 허용했다. 셋째, 개인호에 새롭게 투입된 병사의 화기가 원래 배치된 병사의 화기와 다를 경우, 탄종의 차이로 인해 사격 임무를 수행하지 못했다. 넷째, 중대장은 서쪽으로 지향되고 있었던 적의 주공 방향을 남쪽으로 잘못 인식했다. 이는 전투 중에 소대장을 잃은 남쪽을 방어하던 2소대가 적 규모를 과장해서 보고했기 때문이었다. 마지막으로 각 소대 간의 협조가 원활하지 못했다.⁸²⁾

이처럼 전투 과정 간에 한국군에게도 문제점이 있었지만, 북베트남군은 더욱 많은 실수를 범했다. 전투상보에서는 한국군의 방어 상태와 지형을 놓고 볼 때 적의 주공 방향이 부적절했음을 지적했다. 적 주공 방향이 한국군의 사계가 가장 양호한 평탄한 개활지였기에 중대가 격퇴하기에 용이했다고 평가했던 것이다. 또한 북베트남군이 대전차 무기를 준비했음에도 한국군 중대에 배속된 전차를 제압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였다. 여기에 적 박격포 초탄 중 많은 양이 불발탄이었다. 마지막으로 전투상보는 북베트남군이 중대의 기지 방어를 뚫을 여러 차례의 기회를 놓쳤다고 보았

82) 앞의 책.

다.⁸³⁾

위와 같은 독꼬 전투에 대한 내부 분석과 평가를 고려해볼 때, 한국군의 성공은 결코 필연적이지 않았고, 여기에는 운이라는 요소도 있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성공의 여러 요소 중 어느 하나라도 잘못됐을 경우 중대전술기지는 적의 공격에 무너질 수 있었던 것이다. 전투상보는 북베트남군이 한국군이 수색 및 정찰 작전으로 기지를 비웠을 것이라는 예상하에 중대 기지를 공격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실제로 9중대가 기지를 비운 이틀 동안 대대의 예비였던 11중대의 한 개 소대와 9중대 배속의 박격포 그리고 기관총 소대가 기지를 지키고 있었다.⁸⁴⁾ 비록 적 습격 당일 9중대원 대부분이 취침 상태였지만, 운 좋게도 중대의 모든 인원이 추가적인 배속부대와 함께 기지 방어에 돌입할 수 있었다. 그날 밤 두 개 소대를 매복에 내보내지 않은 중대장의 규정을 어긴 독단적인 결정—증언에 따르면 이춘근 대위는 전투가 일어나던 당일 밤 매복을 보내라는 대대장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은 결과적으로 전투력 측면에서 기지 방어에 도움을 주었던 셈이다.⁸⁵⁾

이처럼 주월한국군사령부 내부에서 독꼬 전투는 그 결과에 있어서 100퍼센트 성공을 장담할 수 없었던 전투였다. 한국군의 ‘눈부신’ 성공은 중대 전술기지 개념에 대한 미군의 비판적인 평가처럼 자칫 ‘돌이킬 수 없는’ 실패로 끝날 수도 있었던 것이다. 역설적으로 독꼬 전투의 승리에는 중대전술기지의 자체적인 방어가 지닌 위험성과 한계가 도사리고 있었다.

83) 앞의 책.

84) 앞의 책.

85) 이춘근 증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앞의 책, 385쪽; 북극성동창회, 앞의 책, 216쪽.

4. 한국군 중대전술기지의 이상과 현실

가. 중대전술기지 운용이 지닌 딜레마

주월한국군은 중대전술기지를 운용하여 정규전과 비정규전 모두에서 성공을 추구했다. 하지만 현실은 이상과 달랐다. 전쟁 기간 동안 한국군은 중대전술기지의 실제 적용에 있어서 이상과의 괴리에 직면하였다. 전투부대 차원에서 방어를 준비하고 수행하면서 이와 동시에 중대 기지의 주요 기능인 평정작전을 실시하는 일이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중대전술기지의 운용은 한국군의 평정작전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전술이었다. 1967년에 작성된 지덕건 중령의 연구는 한국군 전술 중 가장 성공적인 것을 중대전술기지로 꼽고 있으며, “3만여 명의 전투병력으로 그 넓은 월남 땅을 확보 유지하고 그 많은 주민을 보호해 나가자면 불가피한 기지 개념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평가한다.⁸⁶⁾ 이를 위해 각 중대는 평정 노력을 위해 지역을 옮겨다녀야 했다. 한국군은 한 지역이 평정되면 그 지역을 남베트남의 민병대(PF, Popular Force)나 지역군(RF, Regional Force)에 넘기고 새로운 평정 지역으로 이동했던 것이다.⁸⁷⁾ 따라서 평정작전을 지향한다면 한국군의 중대전술기지는 주변으로부터 고립된 고지에 위치한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요새여서는 안됐다. 오히려 한 지역에 고정되지 않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고, II장에서 논의했던 것처럼

86) 합동참모대학 중령 지덕건, 「월남전에서의 한국군 전술의 타당성 여부」, 1967, HB02032.

87) 『월남전 종합연구』, 740~743쪽.

주민 통제가 용이하도록 마을과 충분히 가까운 위치에 구축되어야 했다. 이러한 방법으로 한국군은 책임 지역 내 평정 지역을 확장시킬 수 있었다. 실제로 한국군 책임 지역은 1965년에는 $1,535\text{km}^2$ 였던 면적이, 1966년에는 $4,470\text{km}^2$, 1967년 $6,800\text{km}^2$ 로 확장되었다.⁸⁸⁾

평정작전 지원이라는 전략적 목적에 부합하는 것에 더해서 중대전술기지는 적 연대급 규모 부대의 공격에도 스스로 지탱할 수 있는 튼튼한 기지가 되어야 했다. 게다가 기지에는 적을 기지로 유인해서 격멸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역할까지도 요구되었다.⁸⁹⁾ 이에 따라 중대전술기지는 언제든지 적의 공격에 대응 및 방어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어야 했다. 당시 각 중대의 이상적인 방어 지역 넓이는 중대가 보유한 81mm 박격포의 사정거리를 고려하여 16km^2 였으며, 상급부대의 105mm 포병 화력의 지원을 고려하여 최대 90km^2 까지 가능하다고 보았다.⁹⁰⁾

문제는 많은 중대가 그들의 방어 가능 지역 이상의 전술책임 지역을 부여받은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이다. 주월사령부에서 합동참모본부로 보낸 문건은 9사단 소속 대부분의 중대가 능력 이상의 전술책임지역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⁹¹⁾ 1967년 8월 9사단의 각 중대는 가장 넓은 곳 166km^2 , 가장 좁은 곳 13km^2 , 평균적으로는 44km^2 의 면적을 책임져야 했다.⁹²⁾ 여기에 폭이 좁고 도로에 연하여 길게 펼쳐져 있는 9사단의 전술 책임 지역은 그 중심이

88) 책임지역 내의 주민 수 역시도 1965년 310,000명, 1966년 970,000명, 1967년 1,200,000으로 증가했다. 주월한국군사령부, 『주월군 전투제원』 (사이공:주월사), 1969, 1쪽; 『월남전 종합연구』, 151쪽.

89) 「월남전에서의 한국군 전술의 타당성 여부」, HB02032.

90) 「전술책임지역 넓이에 대한 자료」, 1967. 8. 26., 주월한국군사령부, 『주월사 교리 발전 자료』, 1967, HB01684.

91) 앞의 책.

92) 앞의 책.

매우 길었기에 적의 침투에 따른 방어에 매우 취약했다. 손장래 대령은 “우리의 240km라는 지역을 확보하고, 주민을 안정시키고, 1번도로를 개통시켜서 물건들이 남북으로 왕래하려면 많은 군인이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 했다.⁹³⁾ 따라서 “최소한도 1개 중대가 10km [중심을-필자] 지켜야” 됐던 것이다.⁹⁴⁾

소총 중대를 포함한 각 예하 부대가 방대한 지역을 책임지고 담당해야 했기에 평정과 방어를 동시에 수행하는 일은 부담되는 과업이었다. 제9사단이 1966년 후반에 베트남에 도착하면서, 주월 한국군의 총병력이 1967년에 49,000여 명에 이르렀지만, 전체 한국군의 병력 증가에도 각 중대가 담당하는 책임 구역은 여전히 방대했다. 그만큼 한국군이 담당하는 전체 책임 지역 역시 확장됐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중대전술기지는 매우 넓은 지역의 방어를 담당하고 있었고, 전체 한국군을 놓고 봤을 때 이는 “1개 전투 중대가 70여 평방km의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셈”이었다.⁹⁵⁾ 지덕건은 그의 논문에서 “현재 한국군의 전술책임지역은 청룡, 맹호, 백마의 전투 병력만으론 한계에 달할 만큼 넓어졌다”며, 기지의 능력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⁹⁶⁾

더욱이 독고 전투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적이 기지에 대해 준비된 공격을 가할 경우, 성공적인 방어는 교전에서의 승패를 결정하는 어느 한 가지 요소에 의해서만 결정될 수는 없었다. 여기에는 지형의 이점, 기지의 튼튼함과 화력의 지원, 방어계획, 병력의 교육과 사기, 훈련 정도, 전투 의지, 그리고 지휘자들의 리더십 등 다양한 요소가 고려되어야 했다. 따라서 보다 넓은 지역을 책임지고,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 마을과 가

93) 손장래 증언, 1968년 9월 2일,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앞의 책, 114~115쪽.

94) 앞의 책, 115쪽.

95) 「월남전에서의 한국군 전술의 타당성 여부」, HB02032.

96) 앞의 책.

갑거나 도로를 통제할 수 있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에 기지를 구축한 나머지 방어를 위한 지형적 이점을 포기하거나, 병력이 기지를 떠나 소규모 전투작전을 하여 기지를 지킬 방어 능력이 부족해지는 등, 중대가 평정작전에 초점을 맞출수록 기지의 방어는 자연스럽게 취약해질 수밖에 없었다.

중대전술기지가 적의 공격을 받아 심각한 피해를 입은 사례도 발생했다.⁹⁷⁾ 한국군의 가장 성공적인 대규모 소탕작전으로 평가받는 오작교 작전(1967. 3. 8 ~ 5. 31) 중 발생한 두 가지 실패 사례가 그것이다. 1967년 4월 10일, 9사단 28연대 11중대는 적의 기습 공격으로 12명의 전사자를 포함해 34명의 사상자를 냈다. 한 달여 뒤인 5월 16일, 수도사단 26연대 2중대는 적의 공격에 18명의 전사자 포함 58명의 사상자를 냈으며, 기지가 적에게 유린됐다.⁹⁸⁾ 비록 이 사례는 당시 세간에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주월한국군사령부 내부적으로는 이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주월사령부는 가장 먼저 중대원들의 해이해진 규율과 전투에 대한 준비 부족을 실패 요인으로 여겼다. 두 기지 모두 한국군의 자만과 방심에서 유린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국방부 공간사에서는 오작교 작전을 포함한 연속적인 성공 속에서 한국군은 베틀쿱이 감히 한국군을 공격해 오지 못할 것으로 여기며 적을 과소평가했다고 설명한다. 최초 파병 왔을 때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과 긴장이 사라지고 병사들의 규율이 느슨해진채 그동안의 승리에 취해 있었다고 본 것이다. 즉, 한국군은 병사들의 사기와 규율의 문제를 이번 실패의 주요인으로 여겼다.⁹⁹⁾

그러나 이 시기 한국군은 병사들의 사기와 규율 또는 군기로

97) 『월남전 종합연구』, 740~743쪽.

98) 국방부, 『과월한국군전사』 2(서울:국방부, 1981), 499쪽.

99) 앞의 책, 508~509쪽.

상쇄시키기 어려운 중대 기지 개념의 취약점에 직면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지가 도로나 마을 근처와 같은 전략 지향적인 위치에 건설되어 전술적 이점을 포기할 경우 방어에 취약할 수 있다. 둘째, 사전에 정보나 경고가 없을 경우 적의 기습 공격을 받기 쉽다. 셋째, 한 개 중대가 방대한 지역을 통제하기 쉽지 않다. 넷째, 중대전술기지가 자주 이동하게 되면, 기지 내의 참호나 진지가 잘 구축되지 못하고, 상급 부대의 지원이 충분치 않은 경우가 발생한다. 한편, 반대로 한 곳에 오래 머무르게 되면 적에게 기지를 공격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다는 문제를 야기시키기도 했다.

두 교전을 조사했던 주월사령부 교리 발전부의 김치호 대령은 중대전술기지 운용에 문제를 제기하였다. 첫째, 전체적으로 경계 소홀을 한국군 중대의 실패 요인으로 꼽으면서, “경계가 소홀한 상태 하에서, 우리 병사 모두가 잠을 자고 있었으니까”로 평가했다. 둘째, 11중대의 실패 요인에 대해서 경계 소홀 이외에도 중대전술기지의 위치가 부적절했음을 지적하였다. 그는 “평지에 중대 기지가 있었고 도로가 기지 가운데로 통과하였으며, 도로 옆에는 망루 하나만 세워놓고 통행자를 내려다보고 있는 실정이었으니, 기습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중대기지 내의 상황을 훤히 볼 수 있어 기습에 용이했다”고 평가했다.¹⁰⁰⁾ 이어서 김치호는 “2중대는 11중대 기습 때보다 비참했다. ... 제2중대는 사람들이 송장같이 자고 있는 집에 들어와서 설치는 것처럼, 베트공이 호 속에, 병커 안에까지 들어와 수류탄을 던지고 설치됐다. 병커 안에까지 들어왔으니 말로 표현하지 못할 지경으로 당했다”며 기지의 유린에 대한 처참함을 회고했다. 김치호는 결론적으로 이 사건으로 주월사령부가 크게 당황했으나 병사들의 사기 문제도

100) 김치호 증언, 1980. 7. 18.,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앞의 책, 142쪽.

있고 해서 문제를 많이 감추었으며, 성공한 것은 상세히 잘 기록되어 있으나 실패는 감추어진 부분이 많다고 회고했다.¹⁰¹⁾

주월사령부는 이 일을 계기로 예하 부대의 중대전술기지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은 중대 기지의 방어 능력에 초점을 두고 진행됐다. 기지 점검 결과는 중대전술기지의 실태를 보여주었다. 예를 들면, 1967년 5월, 9사단의 중대 기지 점검 보고서는 “방문 부대 중 대부분의 중대 기지는 내륙에 위치해 있었으며, 이들 기지는 주민과 지역의 보호보다는 적의 침투를 봉쇄하는 것을 주 목표로 하고 있었음”으로 결론내렸다.¹⁰²⁾ 사실 이는 중대전술기지는 평정작전을 위해 마을 가까이 위치해 있어야 하고 고지와 같은 전술적 이점이 전략적 고려사항보다 위치 선정에 우선시는 안된다는 주월한국군 전술 교범의 지침과는 맞지 않는다. 현실적으로는 “사단 내에 있는 총 24개의 전술 기지 중 12개는 평지에 12개는 고지상에 설치”되어 있었던 것이다.¹⁰³⁾ 보고서는 각 중대 기지가 방어에 적합한 위치에 있고, 조기 경보, 장애물 설치 및 화력 지원 같은 방어 수단을 잘 갖추고 있는지, 그리고 축성 상태와 병사들의 군기와 사기와 같은 기지의 방어 능력에 초점이 맞추어져 작성되었다. 결국, 기지 점검의 목적은 중대전술기지의 평정 노력보다는 기지의 방어 능력을 평가하는 데 있었던 것이다.

중대전술기지에 대한 방어는 주월한국군에게 민감하고 심각한 사항이 되었고, 특히 지휘관에게는 지휘 부담으로 다가오는 현실적인 문제였다. 1967년 한 달 전에 큰 피해를 입은 11중대의 상급부대장인 3대대장으로 부임한 서우인 중령은 당시 11중대는

101) 앞의 책, 142~143쪽.

102) 「중대 전술 기지 방문 결과」, 1967. 5. 23.~25., 주월사, 『중대전술기지자료』, HB01685.

103) 앞의 책.

방어의 실패로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으며 대대의 사기 역시 크게 저하되어 있었기에, 대대원들의 전투 의지를 회복시키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회고했다. 또한 서우인은 지휘관 입장에서 예하 중대가 그들의 기지를 성공적으로 방어할 것이라고 백퍼센트 확신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¹⁰⁴⁾

결론적으로, 중대전술기지가 평정작전에 초점을 두면서 방어 임무까지 수행하는 두 가지 기능 모두를 달성하고 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다. 두 가지 기능의 유지에는 그에 상응하는 위험이 동반됐기 때문이다. 최소 희생으로 최대 성과를 달성한다는 주월한국군의 이면적 목표에 비추어 볼 때, ‘최대 성과’는 중대전술기지를 운용함으로써 성공적인 평정작전을 수행하여 성과를 내는 것이었기에 이는 참전의 명분 및 정당성 확보에 가까웠다. 더 나아가 해당 지휘관 입장에서 평정작전의 성과와 그 노력을 측정하는 것은 손에 잡히지 않는 추상적인 성격의 것이었다. 이에 비해 한국군의 내부 목표 중 ‘최소 희생’은 기지를 잘 방어함으로써 불필요한 사상자를 초래하지 않을 때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이는 지휘관에게 있어서 지역 주민에 대한 성공적인 평정작전을 수행하여 최대 성과를 거두는 것보다 더욱 현실적이고 민감한 사항이 될 수밖에 없었다. 한국군의 중대 기지 운용은 평정작전보다는 기지 방어 임무에 더 민감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구조에 놓여 있었던 것이다.

여기에 주월한국군은 연합군이 대규모 전투작전을 활발히 펼쳤던 1967년부터 중대전술기지의 공세적 성격을 대외적으로 홍보했다. 이는 기지가 공격적이고 적극적 목표를 지닌 정규전 형태에도 적합한 전술이라는 주장이었다. 16개의 미군 관찰단(observer) 팀이 각각의 한국군 중대에 파견되어 전투 수행을 관찰했던 오작교

104) 서우인 인터뷰, 2018년 5월 28일, 선우가(일식당), 서울, 대한민국.

작전에서 한국군 전술과 소규모 전투기술이 미군에 의해 높은 평가를 받으면서, 한국군은 중대 기지를 공세에 효용성 있는 전술로서 홍보할 수 있었다.¹⁰⁵⁾ 1968년 1분기 주월사령부 훈령에서는 “이 개념은 근본 의의가 공세적이며 방호를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중대전술기지의 성격을 명시했다.¹⁰⁶⁾ 이어서 1969년 1분기 훈령은 전술기지의 목적에 가장 먼저 “공세 작전의 기지”를, 마지막인 다섯째로서 “적의 주력을 유인 섬멸하기 위한 기지”로 제시했다.¹⁰⁷⁾ 중대전술기지가 공세 작전의 기반이 될 수 있고, 적이 기지를 공격하게끔 유도하여 적을 격멸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여겼던 것이다.¹⁰⁸⁾ 이에 따라, 한국군 기지는 적의 전면 공격에도 충분히 버틸 수 있을 만큼 견실해야 했다. 결국, 중대전술기지의 운용에 있어서 기지의 성공적인 방어가 평정 노력에 기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현실적인 문제가 될 수밖에 없었다.

나. 베트남 전쟁의 베트남화와 중대전술기지의 요새화

1969년은 미국이 주도했던 베트남 전쟁의 전환기였다. 미국은 이미 1968년 중반부터 전쟁의 명예로운 종결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1968년 1월 31일 시작된 북베트남 정규군과 베트콩의 구정 공세(Tet Offensive)는 비록 미군과 연합군의 반격에 전술적으로는 실패했지만, 북베트남은 미 국민과 정부의 전쟁 의지를 꺾는 전략적 대성공을 거두었다. 국내의 강력한 전쟁 반대 여론에 직면한 미 존슨(Lyndon B. Johnson) 행정부는 MACV 사령

105) I Field Force Vietnam, "Tactics and Techniques used by Republic of Korea Forces in Vietnam, 3 May 1967, AD390963, DTIC.

106) 주월사, 「훈령」, 1968. 1., HB02153.

107) 주월사, 「훈령」, 1969. 1., HB02154.

108) 「월남전에서의 한국군 전술의 타당성 여부」, HB02032; "MACV Commanders' Conference 24 September 1967," VNCA.

관 웨스트모어랜드(William C. Westmoreland) 대장의 20만 추가 병력 파병 요청을 거부했고 결국 확전을 포기했다. 같은 해 5월 10일, 미국 정부는 북베트남을 상대로 프랑스 파리에서 베트남전의 종식을 위한 평화회담을 시작하였다.

베트남 전쟁의 ‘베트남화’는 1969년 초 닉슨(Richard Nixon) 행정부의 미군 철수 정책으로 본격화되었다. 베트남화는 그 명칭이 의미하는 바와 같이 미군을 철수시키면서 남베트남인이 전쟁의 주역이 되게 하는 것이었다. 베트남 전쟁 실패의 여파로 존슨 대통령이 재선 출마를 일찌감치 포기한 상황에서, 베트남 전쟁의 조기 종결을 주된 선거공약으로 내세웠던 닉슨이 1969년 미국의 새 대통령이 되면서 주월 미군의 단계적인 철수가 시작되었다. 이에 1968년 최대 54만 8천여 명이었던 병력이, 1969년 말에는 47만 5천, 1970년 말에는 34만 4천, 1971년 말에는 15만 6천, 1972년 말에는 2만 9천 명으로 감축되었다.¹⁰⁹⁾ 미군의 철수는 앞으로의 전쟁 수행의 주체가 미군에서 남베트남군으로 변화됨을 의미하였다.¹¹⁰⁾ 따라서 베트남화의 성공은 남베트남군이 자기 힘으로 자국을 방어할 수 있는 군대가 될 수 있느냐에 있었다. 다만 미국이 이전보다 줄어드는 노력과 자원을 남베트남군의 재건과 전력 증강에 쏟아 보니, 한국군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

109)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월남 참전 통계」 1972, HB01620; Guenter Lewy, *America in Vietnam*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78), p.147; James H. Willbanks, *The Battle of An Loc* (Bloomington, IN: Indiana University Press, 2005), p.10; Graham A. Cosmas, *The Joint Command in Years of Withdrawal, 1968-1973* (Washington, D.C.: U.S. Army Center of Military History, 2006), p.167.

110) 미 지상군이 단계적으로 철수하면서 1971년에서 1972년 사이에 기존의 남베트남군의 한 개 군단이 주둔하던 군단 책임 지역(Corps Tactical Zone, CTZ)이 두 개 군단도 주둔 가능한 군사지역(Military Region, MR)으로 그 명칭이 변경되고, 철수하는 미 지상군을 대신하여 남베트남군이 군사지역의 핵심 전력이 되었다. 합참 작전국, 「주월사 수시보고」, 1970, HB01854.

로 감소될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베트남 전쟁 후반부 전쟁의 베트남화가 진행되면서 한국군의 전쟁 수행 역시 더욱 소극적이고 수동적으로 변화하게 된다. 1969년 5월 새롭게 주월 사령관으로 취임한 이세호 중장은 선제공격을 강조하면서 휴전을 앞둔 시기에 소극적으로 변할 수 있는 군의 태도를 경계하고 저하되는 군기와 사기를 막고자 했지만, 이는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었다. 미군을 비롯한 다른 연합군의 철수와 이에 따른 한국군 작전에 대한 지원의 감소 속에서, 큰 전투 없이 소강상태가 지속되는 전황에서 한국군 작전 역시 방어적이고 소극적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1970년 6월부터 1년간 베트남에서 수도사단 작전부사단장으로 근무했던 오윤영 준장은 전쟁의 베트남화 시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1969년도부터 미국은 닉슨 독트린에 의거, 월남에서 군대를 점차적으로 철수하기 시작하여 어느 나라 군대나 결정적인 전투를 회피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한국군도 희생을 강요하면서까지 작전을 할 필요성이 없어졌고, 자체방어에 치중하였습니다.”¹¹¹⁾

특히 참전으로 인한 이득을 취하면서 동시에 희생자를 줄이라는 한국 정부의 방침은 주월한국군의 소극적인 작전 수행에 영향을 미쳤다. 1970년 4월 9일 청와대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이세호에게 태극무공훈장을 수여하면서 “지금까지 거둔 성과를 더욱 증진하고 장병들의 인명피해를 보다 더 줄이도록 최대한 힘쓰라고 당부했다.”¹¹²⁾ 그러면서 현재의 전쟁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임기응변하는 새로운 전술 개발에 계속 노력하라고 지시했다.”¹¹³⁾ 이에 이세호는 1970년 9월 이세호는 언론에 “많은 소부대로 분산, 매복작전을 중점적으로 전개하는” 방식으로 주월 한

111) 오윤영 증언, 1983. 2. 17., 군사편찬연구소, 앞의 책, 713~714쪽.

112) 「박 대통령, 이 사령관에게 새 전술 개발 지시」 『동아일보』 (1970. 4. 9.), 1면.

113) 앞의 신문.

국군이 대규모 작전을 지양하고 소규모 작전을 수행하는 전술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시에 “새로운 전술변경으로 작전을 전개”한 지난 한 달 동안 종전보다도 26퍼센트의 희생 감소와 30퍼센트의 전과 향상을 이루었다고 강조했다.¹¹⁴⁾

1971년 1월에는 정부가 한국군 철수계획을 발표했고, 실제로 1971년 12월 해병여단이 철수했다.¹¹⁵⁾ 철수를 앞둔 한국군은 추가적인 희생 없이 전력을 온전히 보전하며 주둔해야 했다. 주월한국군의 1971년 작전방침에는 “책임지역 내 적 침투 및 적 도발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지역방어 책임체제에 입각한 소부대 작전을 강화한다”는 문구를 추가했다.¹¹⁶⁾ 또한 1971년 5월 5일 주월한국군사령부 방문 시 심흥선 합참의장은 적은 희생으로 최대의 결과를 얻으라는 서울의 지침을 재차 하달했다.¹¹⁷⁾

소극적 작전수행은 중대전술기지 운용에서 평정작전 보다는 기지 방어에 초점을 두는 경향을 더욱 두드러지게 했다. 특히 정부의 주월한국군 단계적 철수계획과 함께 작성된 1971년도 1분기 주월사령부 훈령은 이전의 훈령과는 달리 “전술기지는 전면 방어의 한 형태로서 적의 활동 중심지를 장악하여 적의 활동을 견제하고 책임지역내로의 적의 침투를 봉쇄하고 적 연대 규모 공격에도 지탱할 수 있도록 준비된 진지이며 우군의 포병 지원 거리내에 설치된 작전 기지”로만 기술한다. 중대전술기지의 두 가지 목적 중 하나인 평정작전 부분이 결여된 것이다.¹¹⁸⁾

다만 이를 가지고 중대전술기지의 평정작전 목표가 사라졌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1971년의 『작전예규』에서는 중대전술기지

114) 「주월 한국군 분산 타격의 새 전술」, 『동아일보』, 1970년 9월 16일, 5면.

115) 「연초기자 회견」 (1971. 1. 11.), 대통령 비서실, 『박정희 대통령 연설문집 제8면 1월편』, 대통령 기록관.

116) 주월한국군사령부, 「훈령」, 1971년 1분기, HB02156.

117) 이세호, 『한길로 섬겼던 내 조국』 (서울: 대양미디어, 2009). 469쪽.

118) 주월사, 「훈령」, HB02156.

의 첫 번째 기능을 공세 작전의 기지로 제시했으며, 위치 선정의 구비조건으로 ‘자체방어’에 초점을 둘 것을 명시하고 있다. 전술 기지의 성격으로서 첫째, 공세 작전의 기지, 둘째, 수색 정찰 및 대복 작전의 기지, 셋째, 정보 수집 활동의 기지, 넷째, 민사 심리전 활동의 기지, 다섯째, 적의 주력을 유인 섬멸하기 위한 기지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1969년과 1970년의 훈령과 비교하여 달라진 것이 없다.¹¹⁹⁾ 결국 1971년 훈령과 작전예규를 종합해볼 때, 평정작전의 목표 자체가 사라졌다기 보다는 이전에 비해 낮은 우선순위를 지니게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중대전술기지의 운용 목표에 있어서 평정작전의 중요성이 감소되었던 것이다.

1965년부터 1966년까지 파월 1진의 중대장으로서 전쟁을 경험했던 수도사단 1연대의 작전 참모 이재태 중령의 1971년 10월 18일자 일기의 내용은 이 시기 중대전술기지 운용의 현실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

요즈음의 기지는 영구정착개념으로 만들고 있다. 도저를 수 십 일 동안 투입해서 기지 주변에 방벽을 쌓고 그 많은 인력과 자재를 들여 규모 있게 만든 진지... 과연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옛날 우리들이 처음 왔을 때는 정착개념이 아니다. 지역을 평정하면 이동하고 이동해서는 또 평정한다. 나의 경우 중대장 12개월 동안에 8회나 옮겼다.¹²⁰⁾

이처럼 과거에 평정작전의 수단으로서 운용되던 중대전술기지가 이 시기 주로 기지와 부대원에 대한 방어 목적으로 운용되었다. 1971년 수도사단에서 작성한 전술기지 점검 보고서에는 당시 기지

119) 주월사, 「작전예규」, 1971, HB01554.

120) 이재태, 『기슴을 뚫고 간 적탄, 군복은 붉게 피로 물들고』 (서울: 전통족보 문화사, 2014), 389쪽.

가 운영되던 현실이 잘 드러난다. 첫째, 점검의 목적은 “현재 중대 전술기지의 전술적 운영 및 견고성을 검토하여 취약점을 발견, 이를 보완하는데” 있었다. 둘째, 방침은 기지의 “자체방어능력(견고성)”을 확인하고, 소규모 기지는 “편성의 적합성”, 기지 강화에 필요한 “추가적인 자재의 필요성 여부”에 있었다.¹²¹⁾ 점검 사항의 전반적인 내용에 비추어볼 때, 점검은 기지의 방어 능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베트남 전쟁의 후반부에 한국군의 중대전술기지는 이동하지 않는 영구적인 요새가 되어갔다. 물론 한국군은 이 시기 한국군 지역은 100퍼센트 평정이 되었기에 더 이상 평정작전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한국군이 베트남에 싸우러 오지 않고 그들의 책임 지역만 방어만 하러 왔다는 초창기 미군의 비판이 전황이 변한 이 시기에 현실화되었다.

5. 맺음말

중대전술기지의 운용은 베트남 전쟁의 정규전과 비정규전 모두에 대비하기 위한 한국군의 독특한 전술로 이해된다. 기지는 베트콩과 민간인을 분리하고 민사작전을 위한 한국군 평정 전략의 핵심 개념이고, 동시에 우세한 적으로부터의 방어와 함께 공세 작전의 발판도 되어야 하는 전투 능력도 보유해야 했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위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논했다. 주월한국군은 중대전술기지 운용에서 이상적으로는 평정과 기지 방어 두 가지 목표를 함께 달성하고자 했지만, 현

121) 수도사단 작전과, 「전술기지공통점검사항」, 1971, HB02013.

실적으로는 기지 방어를 우선시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중대전술기지의 실제 효용은 주월한국군의 전쟁 수행에 몇 가지 함의를 던져준다. 중대전술기지는 한국군에게 전술적 수단으로서 그 효용성이 있었다. 이를 통해 한국군이 책임 지역의 평정과 평정 지역의 확대라는 연합군의 목표와 동일한 전략 목표 하에, 그 방법에서는 미군의 탐색격멸과는 다른 소탕 및 확보의 개념으로 군사력을 운용할 수 있었던 것이다. 미군은 미군과는 다른 한국군의 전쟁 수행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지만, 한국군의 추가 파병 등 한국군이 꼭 필요한 전황 속에서 미군과는 다른 한국군의 방법을 용인할 수밖에 없는 딜레마에 처해 있었다. 위 상황에서 한국군이 독고 전투를 통해 기지의 전술적 효용성을 증명해보임으로써, 중대전술기지가 한국군의 대표적인 전술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중대전술기지가 단순히 최대한의 성과를 얻기 위한 전술로 운용된 것만은 아니었다. 여기에는 파병을 통한 국가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려는 정부의 목표에 따라 최소한의 희생으로 최대한의 성과를 거두면서 참전의 명분과 실리 모두를 챙기기 위한 주월한국군의 이면적 목표가 있었다. 다만, 전쟁의 상황에 따라 현실적으로는 명분보다는 실리가 우선시될 수 있었다. 명분과 실리 두 마리의 토끼를 쫓고자 한국군 부대를 미군의 작전지역으로 파견한 독고 전투에서의 승리는 대외적으로는 기지 방어전의 성공사례였지만 한국군 내부적으로는 중대전술기지 방어의 어려움을 인식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또한 한국군은 평정작전에 집중할수록 그만큼 기지의 방어가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기지 운용의 딜레마에 직면하였다. 따라서 결과를 측정하기 어려운 평정작전을 통한 최대한의 성과달성보다는, 기지 방어에 실패하지 않음으로써 정치 및 군사적으로 더 민감하고

중요한 희생을 최소화하는 현실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 명분 달성을 위해서 한국군은 제한된 평정작전을 통해 한국군 지역은 잘 통제되고 있다는 성과를 보여주면 됐다. 그러나 그마저도 전쟁의 베트남화 이후 참전의 명분이 사라지고 전쟁 수행이 변화하는 상황에서는 그 의미가 퇴색되었다. 결국, 전쟁의 후반부에 중대전술기지는 평정보다는 기지 방어를 위한 요새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한국군의 베트남 전쟁 수행 전체를 조망해볼 때, 중대전술기지의 운용은 한국군이 처한 정치적, 전략적, 군사적 상황 속에서 취할 수 있었던 최선의 방안이었다. 물론 본 논문에서 논한 것처럼, 중대전술기지의 운용이 항상 원래의 이상대로 운용된 것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한국군이 베트남 전쟁의 적극적인 주체로 남아 있던 동안, 중대전술기지는 한국군의 가장 중요하고 독특한 전술로 변함없이 유지되었다.

(원고투고일 : 2021. 7. 4, 심사수정일 : 2021. 8. 17, 게재확정일 : 2021. 8. 25.)

주제어 : 베트남전쟁, 주월한국군, 중대전술기지, 두코전투, 평정작전,
전략 및 전술

〈참고문헌〉

1. 사료

1) 국방구 군사편찬연구소 사료실

-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월남 참전 통계」 1972, HB01620.
 주월한국군사령부, 「전투미담 및 전훈」, 1965. 10~1967. 11, HB02453.
 _____, 「주월사병력수준」, 1966.3~1967.6, HB02019.
 _____, 「1966년도 주월한국군 작전개요 및 1967년도
 전역계획 보고서」, 1967, HB02338.
 _____, 「훈령」, 1971. 1, HB02156.
 _____, 「작전예규」, 1971, HB01554.
 _____, 「중대전술기지자료」, 1971. 1. 20, HB01685.
 수도사단, 「전투상보 제41호: 독꼬 전투」, 1966, HB00094.
 수도사단 작전과, 「전술기지공통점검사항」, 1971, HB02013.
 합참 작전국, 「주월사 수시보고」, 1970, HB01854.
 합동참모대학 중령 지덕건, 「월남전에서의 한국군 전술의 타
 당성 여부」, 1967, HB02032.

2) The Vietnam Center & Sam Johnson Vietnam Archive(VNCA), Texas Tech University, Lubbock, Texas.

- Message from Nha Trang to COMUSMACV, "Evaluation
 of ROK Forces," 25 January 1966, Folder 15,
 Box 2, Dale W. Andrade Collection, VNCA.
 General Westmoreland's Historical Briefing, 17 July 1966,
 Reel 7, Papers of Westmoreland (microfilm), VNCA.
 Headquarters, Department of the Army, Military Operations
 Vietnam Primer: Lessons Learned, 21 April 1967,
 43-44, Folder 1, Box 1, Stephen F. Maxner Collection,
 VNCA.

Memorandum for Record, “MACV Commanders’ Conference
24 September 1967,” 12 October 1967, Reel 11,
Papers of Westmoreland (microfilm), VNCA.

3) 기타

북극성동창회, 『화랑의 십자군』, 1967.

「연초 기자 회견」, 1971. 1. 11. 대통령 비서실, 『박정희 대통령
연설문집 제8면 1월편』, 대통령 기록관.

육군본부, 『월남전의 전훈』 1, 1966.

주월한국군사령부, 『주월군 소개』, 1967.

_____, 『주월군 전투제원』, 1969.

_____, 『월남전에서의 한국군 전술』, 1969.

_____, 「주월군 현황」, 1969. 12. 31, DA1417325,
국가기록원.

_____, 『월남전 종합연구』, 1974.

Field Manual(FM) 90-8 Counterguerrilla Operations.
Washington, D.C.:Department of the Army, 1986.

Project CHECO Southeast Asia Report, “Operation Paul
Revere / Sam Houston,” 27 July 1967, a485207,
Defense Technical Information Center(DTIC).

Sharp, Ulysses S. Grant and Westmoreland, William C.,
Report on the War in Vietnam, as of 30 June
1968. Washington, DC: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69.

2. 연구서

국방부, 『파월 한국군전사』 1-1, 국방부, 1978.

_____, 『파월한국군전사』 1-2, 국방부, 1979.

_____, 『파월한국군전사』 2, 국방부, 1981.

- 박경석, 「베트남 전쟁시 한국군의 전술교리와 작전」, 『베트남전쟁 연구총서』 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2, 159~240쪽.
- 박상혁, 「베트남전쟁에서 한국군의 대분란전 전략과 중심」, 『군사연구』 137호, 2014.
<http://doi.org/10.17934/jmhs..137.201406.39>
- 위태선, 「독코 전투의 고찰」, 『군사』 14호, 1987.
<http://uci.or.kr//G901:A-0001378923>
- 이세호, 『한길로 섬겼던 내 조국』, 대양미디어, 2009.
<http://uci.or.kr//G901:A-0006245432>
- 이재태, 『가슴을 뚫고 간 적탄, 군복은 붉게 피로 물들고』, 전통족보문화사, 2014.
- 정지환, 「베트남전쟁에서의 한국군의 대계릴라전 연구 - 중대전술기지를 중심으로」, 『군사연구』 129호, 2010.
<http://doi.org/10.17934/jmhs..129.201006.187>
- 채명신, 『베트남전쟁과 나』, 팔복원, 2006.
<http://uci.or.kr//G901:A-0006122906>
- 최용호, 「베트남전쟁에서 한국군의 작전 및 민사심리전 수행방법과 결과」,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박사논문, 2005.
<http://uci.or.kr//G901:A-0005285433>
- Carland, John M. *Combat Operations: Stemming the Tide, May 1965 to October 1966*. Washington, DC: Center of Military History, U.S. Army, 2000.
- Cosmas, Graham A. *The Joint Command in Years of Withdrawal, 1968-1973*. Washington, D.C.: U.S. Army Center of Military History, 2006.
- Ewing Ott, David, *Vietnam Studies: Field Artillery, 1954-1973*. Washington, D.C.: Department of the Army, 1975.
- Kolton, Randy J., "Anticipation and Improvisation: The Fire Base Concept in Counterinsurgency Operation," Master's

- thesis, U.S. Army Command and General Staff College, 1990.
- Larsen, Stanley R., Vietnam Studies: Allied Participation in Vietnam. Washington, D.C.: Department of the Army, 1975.
- Lewy, Guenter. America in Vietnam,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78.
- MacGarrigle, George L., Combat Operations: Taking the Offensive, October 1966 to October 1967. Washington, DC: Center of Military History, U.S. Army, 1998.
- Rasmussen, Ronald R. "ROK Operations in Central Vietnam," Military Review 48, no. 1, 1968.
- Westmoreland, William C., A Soldier Reports. N.Y.: Doubleday, 1976.
- Willbanks, James H. The Battle of An Loc, Bloomington, IN: Indiana University Press, 2005.

3. 인터뷰 및 신문기사

- 박경석 인터뷰, 2018년 6월 2일, 자택, 대전, 대한민국.
- 서우인 인터뷰, 2018년 5월 28일, 선우가(일식당), 서울, 대한민국.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증언을 통해 본 베트남전쟁과 한국군』 1, 2001.
<http://uci.or.kr//G901:A-0006018350>
- "Leading Teacher," Newsweek, no. 69, 10 April 1967.
- 『경향신문』, 『동아일보』, 『오마이뉴스』.

(Abstract)

The Ideal and Reality in Employing and Operating ROKFV's Company Level Tactical Base during the Vietnam War – Focusing on the Battle of Duc Co(1966) –

Shim, Ho-sub

Based on ROK's actual conduct during the Vietnam War, employing company level tactical bases was not a strategical feature in itself, rather it was a tactical one that followed ROKFV's strategic emphasis on its conduct of the pacification(stabilization) operations and the reality of the war. Although this tactical strategy was not always employed following its original ideal, which focused more on a strategic or operational level of the pacification, the company base as ROK's most important and unique tactical method remained so unabated for as long as ROKFV remained an active participant in the war.

ROKFV had to pursue success in both unconventional and conventional war by adopting company tactical bases. However, it was not that easy for the troops to maintain a balance between the company base's main function of supporting pacification operations while at the same time conducting defensive operations centered on the tactical base. Despite the brilliant victory at Duc Co battle between Tiger Div. and North Vietnamese army, ROKs, internally, realized a limitation and risk of the self-defense of the company base. Considering the ROKFV's internal goal of maximum results with minimum casualties, not causing unnecessary casualties by defending the base well was more realistic and sensitive to the Korean troops than achieving maximum results by successfully pacifying local populations. As a result, a successful defense became a more important and realistic matter than a success in pacification efforts in terms of operating company bases. This tendency became more prevalent as the Vietnam War progressed and bases, indeed, became permanent fortifications in this period.

Keywords : The Vietnam War, Republic of Korea Forces in Vietnam(ROKFV),
Company Base, The Battle of DucCo, Pacification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1, No. 120, pp.131-171
<https://doi.org/10.29212/mh.2021..120.131>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러일전쟁 이후 러시아 극동의 방위계획과 재무상과 육군상의 정책대립

— 안중근의 하얼빈의거와 관련하여 —



최덕규*

1. 서론
2. 전후 러시아의 재정위기와 대외정책의 방향전환
3. 러시아 코코프초프의 극동시찰과 안중근의 하얼빈의거
4. 러시아의 대일접근과 한러정보협력 구상의 좌절
5. 결론

1. 서론

러시아 재무상 코코프초프(В.Н.Коковцов, 1853-1943)는 극동시찰 과정에서 안중근의 하얼빈의거(1909.10.26.)를 현장에서 목도하

*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고 사태 수습을 주도했던 인물이었다. 그는 수습과정에서 일본정부와 언론의 반응에 최우선의 관심을 두었다. 이는 안중근의 의거가 러일관계를 악화시키거나 분쟁의 단초가 되지 않도록 하고자 하였던 때문이었다. 그가 안중근의 신문과정에서 한국인으로 밝혀지자 재판 관할권을 일본에 넘기기로 결정하고 일본영사들이 러시아경찰의 입회하에 하얼빈의 한인거류지에 대해 수색할 수 있도록 지시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

코코프초프가 안중근을 일본측에 이관한 것에 대해 내부적 문제제기가 있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코코프초프는 파그라니츠나야(Пограничная) 관구(管區)법원 검사의 동의를 받고 안중근을 일본측에 넘겼다고 외무성에 통보했던 반면, 관구검사 밀레르(К.Миллер)는 러시아측에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실질적인 문제해결 방식이라고 판단했다. 밀레르는 이 사건이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사전음모에 의한 사건임을 직감하였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그는 현지 경찰력을 보유한 러시아가 이를 수사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그렇다면 코코프초프가 정상적인 법절차에 따라 해결하지 않고 서둘러 안중근의 재판관할권을 일본에 이관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러일전쟁 이후 본격화된 러시아의 대일협력 외교로의 방향 전환과 관련이 깊다. 이는 러시아 대외정책의 무게중심이 러일전쟁 이후 동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이동하면서 극동의 방위가 차선택으로 밀려났음을 의미했다. 러시아정부가 쓰시마해전(1905)에서 괴멸된 발트함대 재건계획은 수립하였지만, 태평양함대의 복원계획이 없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¹⁾

러시아가 유럽의 정치무대로 복귀한 배경에는 러일전쟁 직후 차르정부가 직면한 재정위기가 있었다. 패전과 혁명의 소용돌이 속에서 재정파탄에 직면한 차르정부를 기사회생시킬 처방은 외국차관이

1) Щацилло КФ *От Портсмутского мира к Первой мировой войне*, М. 2000, С.95-101.

었다. 프랑스와 영국이 대리차관 제공의 주역이었다. 이들이 러시아의 파국을 원치 않았던 이유는 신흥 제국주의 세력으로 부상한 독일제국을 견제하기 위함이었다. 따라서 러시아의 동맹국 프랑스와 일본의 동맹국 영국이 체결한 영불협상(Anglo-French Entente: 1904.4.8.)을 토대로 여기에 러시아를 가담시켜 4국(英佛露日)협상(Quadruple Entente)체제가 완성(1907.8.31.)된 것도 대독(對獨)포위망 구축의 일환이었다.

러일전쟁 이후 프랑스와 영국의 대리 차관은 러시아의 국방력 재건사업의 토대가 되었다. 영불의 차관에 의존하던 러시아가 이들의 재원을 유럽이 아닌 극동의 방위에 투입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러시아 경제가 정상화될 때까지 영불의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는 유럽지역에서 러시아의 국방력을 증강시켜야했다. 반면 극동의 방위는 일본과의 외교적 타협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러일전쟁 이후 블라디보스토크를 중심으로 전개된 한국독립운동 역시 러시아의 대일접근정책의 영향을 받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국내의 안중근 관련 연구는 해방이후 2019년까지 약 450편의 논문이 발표되었을 정도로 양적, 질적 발전을 이뤄왔다. 그 특징은 다음과 같이 양분할 수 있다. 하나는 안중근의 사상(동양평화론), 종교, 법정투쟁 등 개인의 영웅적 서사에 초점을 맞춘 연구와 다른 하나는 항일독립운동의 시각에서 하얼빈의거를 다룬 연구들이다.²⁾

2) 조광, 「안중근에 관한 최근연구의 현황과 과제(2010~2019)」,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재조명 III-안중근의 동양평화론』, (동북아역사재단, 2020). pp. 12~36. 최근 10년간 안중근 관련 가장 많은 연구가 산출된 주제는 그의 "동양평화론"이었다. 안중근 관련 연구논문이 해방이후 2009년까지 200여 편이 발표되었던 반면, 최근 10년간(2009~2019) 150여 편의 관련 논문이 산출되면서 괄목할만한 양적 성장을 이루었다. 이는 2009년 안중근 의거 100주년, 2010년 안중근 순국 100주년을 계기로 안중근 관련 연구가 활기를 띠었기 때문이었다. 그 결과 최근 10년간 150여 편의 업적 가운데 안중근의 동양평화론에 대한 연구는 약 22%에 해당하는 33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최근 주목되는 일본 논문은 아사다 마사후미(麻田雅文)의 「日露關係から見た伊藤博文暗殺-兩國關係の危機と克服」, 『東北アジア研究』

이는 안중근의 하얼빈의거 관련 기존의 연구들은 한국의 관점에서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안중근 연구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하얼빈의거에 대한 보다 거시적이고 국제적인 시각의 접근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러일전쟁 이후 유럽의 국제관계 변화가 노령(露領)에서의 한국독립운동과 어떻게 연동되었는지를 밝히는데 그 목적이 있다. 왜냐하면 노령에서의 항일운동은 차르정부의 反日대결정책 지속과 제2차러일전쟁 가능성에 성패가 달렸음에도, 차르정부는 대일타협 정책으로 선회했기 때문이었다. 이는 전후 러시아의 극동지역 방위를 둘러싼 재무상과 육군상의 의견대립이 전자의 승리로 종결되는 과정과 깊은 관련이 있었다.

본 연구는 다음의 순서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제1장 “전후 러시아의 재정위기와 대외정책의 방향전환”에서는 차르정부가 러일전쟁의 패배와 혁명의 혼란 속에서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프랑스와 영국의 차관을 도입하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英佛주도의 국제차관(1906)은 러시아의 대외정책이 극동에서 유럽으로 방향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었다. 제2장 “코코프초프의 극동시찰과 안중근의 하얼빈의거”에서는 재무상의 극동시찰이 러일전쟁 이후 국방개혁을 둘러싼 재무상과 육군상간의 갈등에서 비롯되었음을 밝히하고자 한다. 이는 안중근의 하얼빈의거가 일본과의 우호관계를 중시한 코코프초프의 입장에서 처리된 주요원인이었기 때문이었다. 제3장 “러일우호관계 수립과 한러정보협력 구상의 좌절”에서는 안중근의 하얼빈의거가 차르정부의 극동방위정책과 노령에서의 한국독립운동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러시아역사문서관(РГИА) 소장 코코프초프의 극동시찰

16號(2012)인바, 이 논문은 러시아 아카이브를 활용하여 이토의 저격에 대해 일본 측이 러시아에 책임을 묻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러일관계 진전에 기여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관련 자료들을 활용하였다.³⁾ 아울러 본 연구가 한일역사문제에 한정되어 있던 안중근 연구의 범위를 글로벌히스토리(Global History)의 차원으로 확대하여 고찰하는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2. 전후 러시아의 재정위기와 대외정책의 방향전환

1909년 가을 러시아 재무상 코코프초프의 극동시찰은 러일전쟁 이후 극동지역의 방위력 재건사업의 현황파악이 그 목적이었다. 이는 극동지역 방위력 재건을 위한 재정지원이 억제되고 있다는 육군상의 상주와 블라디보스토크 요새화 공사를 독촉하는 연흥룡강주 총독의 탄원서가 제출되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코코프초프에게 부여된 과제는 극동의 방위력 재건사업이 왜 지지부진한지 원인을 파악하여 그 해법을 제시하는데 있었다.

러일전쟁 이후 러시아의 대외정책은 동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했다는 특징이 있다. 이는 차르정부가 러일전쟁 이후 극동지역의 방위력 재건사업에 전력을 기울이지 못한 이유이기도 했다. 그 원인은 다음의 두 가지였다. 첫째, 차르정부가 러일전쟁 패전과 혁명의 혼란 속에서 재정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프랑스와 영국이 제공한 차관(1906)때문이었다. 둘째, 러시아는 이 차관을 극동방위 재건과 군사력증강 보다는 영불의 관심지역인 유럽지역의 군비재건과 발트함대의 복원에 우선적으로 투입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프랑스와 영국이 패전국 러시아를 지원했던 이유는 신흥제국 독일과의 유럽패권 경쟁에 대비하기 위함이었다. 러시아와 동맹관계에

3) 러시아역사문서관(Россий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Исторический Архив, РГИА) 문서군(Фонд) 560번, 문서파일(Дело) 416-424번이 활용되었다.

있었던 프랑스는 독일이 러시아의 혼란과 쇠락에 대한 유일한 수혜자가 되는 것에 우려하고 있었다. 프랑스는 영국으로부터 모로코(Morocco)를 자국의 세력권으로 인정(1904)받았음에도 독일의 빌헬름 2세(Wilhelm II)의 모로코 문제 개입에 속수무책이었다. 독일은 1905년 3월 러시아가 만주에서 열세를 면치 못하는 상황을 틈타 모로코에 개입함으로써 동맹국 러시아가 없는 프랑스에게 위기감을 조성했기 때문이었다.

프랑스가 러일전쟁의 조기종전을 위해 대러차관 제공을 거부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 전비조달 통로를 단절시킴으로써 러시아의 장기전 의지를 꺾고자했다. 1905년 3월 만주의 봉천(奉天)전투 직후 “순전히 재정적 시각에서 전쟁의 지속은 우리를 더욱 더 곤란하게 만들것”이라는 재무상 코코프초프(В.Н.Кокочев)의 상주(上奏)는 프랑스의 대러차관 중단과 깊은 관련이 있었다.⁴⁾

러시아가 만주에서 열세를 면치 못하는 상황을 틈타, 독일의 빌헬름 2세(Wilhelm II)가 모로코에 개입함으로써 동맹국 러시아가 없는 프랑스에게 독일은 결코 용이한 상대가 아니었다. 프랑스 외상 델카세(Theophile Delcassé)가 독일은 프랑스뿐만 아니라 영국과도 전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침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각료들을 설득했음에도 프랑스의 루비에(Maurice Rouvier) 수상이 수긍하지 않은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 “영국함대는 파리를 구해 주러 올 바퀴가 달려있지 않다”는 것이 그 논거였다.⁵⁾

러일전쟁의 봉천전투(1905.2.20-3.10.)와 연동된 모로코 사건은 러시아의 패전이 유럽의 국제관계에 미칠 영향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었다. 모로코 문제가 독일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국제회의 소집을 통해 해결하기로 결정(1905.6.6.)된 것은 러일전쟁에서 러시아의

4) ОН Кузенцова Дальний Восток и развитие русско-французских отношений в 1902 -1905 гг., *Вопросы истории* №3, 2009. С.39-40.

5) 위의 논문. С.42.

파국이 유럽에서 프랑스의 입지 약화로 연동되었기 때문이었다.⁶⁾ 따라서 모로코 문제 해결을 위해 스페인의 알제시라스에서 국제회의(Algeciras Conference, 1906.1.16-4.7.)를 소집하기로 한 결정은 프랑스의 완전한 외교적 패배를 의미했다.⁷⁾

러시아의 패전의 여파는 유럽에서 동맹국 프랑스의 입지약화에 국한되지 않았다. 독일이 프랑스를 공격할 경우, 영국은 자국군대를 프랑스로 파병할 계획을 수립해야했다. 1905년 겨울부터 영국 참모본부에서는 독일이 벨기에(Belgium)의 중립을 유린할 경우, 영국 육군이 유럽대륙에 상륙하여 프랑스 육군과 공동작전 수행을 계획하였다.⁸⁾ 프랑스 역시 러시아로부터의 지원은 혁명의 위기 속에서 불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영국 육군과의 군사협력 계획에 호응했다. 영국이 해전을 중시했던 전통적인 전쟁방식을 포기하고 육군원정대(British Expeditionary Force)의 유럽 대륙파전까지 준비한 상황은 역설적이게도 러시아의 전후 복구에 프랑스와 영국이 가장 적극성을 보인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러일전쟁 이후 러시아의 국방력 재건사업은 프랑스와 영국의 대러 재정 지원 규모와 밀접하게 맞물리게 되었다.

6) John C.G.Röhl, *Wilhelm II Into the Abyss of War and Exile, 1900-1941*, pp.418-436. 스페인의 알제시라스(Algeciras)에서 개최된 국제회의(1906.1.16.-4.7.)는 1905년의 프랑스와 독일의 모로코 위기를 해결할 목적에서 개최되었다. 이 위기는 독일이 독립국가인 모로코를 보호국화 하려는 프랑스의 팽창정책에 반대하면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영불협상의 결속력 역시 약화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14개국(독일,러시아, 오스트리아-헝가리, 프랑스, 영국, 미국,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네덜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오스만 투르크, 모로코)이 참가한 회의에서 러시아가 프랑스를 적극 지지하고 나섬에 따라 독일은 외교적으로 고립되는 결과를 자초했다.

7) Olga Crisp, *The Russian Liberals and the 1906 Anglo-French Loan to Russia, The Slavonic and East European Review*, 1961, Vol.39, No. 93, p.506.

8) William J. Philpott, *The making of the Military Entente, 1904-1914: France, the British Army, and the prospect of War, The English Historical Review*, Oct. 2013, Vol.128, No.534, pp.1155-1156.

프랑스와 영국의 대리차관은 패전국 러시아를 기사회생시킬 비책이었지만 제공 여부는 알제시라스 회의 결과와 연동되었다. 이 회의에서 러일전쟁 이후 러시아의 대외정책 방향이 친불정책을 유지할 것인지 혹은 대독접근으로 선회할지를 결정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알제시라스회의는 러시아의 차관도입뿐만 아니라 대외정책 방향을 확정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러시아를 구원하기 위한 차관도입과 프랑스에 대한 강력한 지지의사를 전달할 임무는 전임 재무상 코코프초프(В.Н.Коковцов)가 맡았다. 그를 천거했던 사람은 시베리아철도 부설사업을 주도했으며 포츠머스 강화회의 러시아 측 전권수석을 담당했던 비테(С.Ю.Витте)였다.⁹⁾ 따라서 구원투수로 등판한 코코프초프에게 부여된 차관도입의 임무는 러시아를 소생시키기 위한 지상의 과제가 되었다.

코코프초프가 프랑스로 출발하기에 앞서 황제를 알현한 사실은 외자유치 성사 가능성을 고조시켰다. 왜냐하면 니콜라이 2세는 코코프초프에게 “러시아의 재정형편을 소상히 알리고 차관이 없으면 러시아의 파국은 불가피함을 통보”토록 훈령했기 때문이었다. 아울러 러시아는 모로코 문제와 관련한 알제시라스 회의에서 프랑스를 지지할 것임을 암시하라고 지시했다.¹⁰⁾ 따라서 코코프초프는 모로코 문제에 대한 러시아의 프랑스 지원이라는 지렛대를 휴대하고 차관도입 교섭을 위해 1905년 12월 30일 파리로 출발했다.

러시아 정부 대표 코코프초프와 프랑스, 영국,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은행들로 구성된 컨소시엄의 대표들이 파리 주재 러시아 대사관에서 모인 것(1906.4.16.)은 알제시라스 회의가 독일의 빌헬름

9) В.Н.Коковцов Из Моего Прошлого Воспоминания 1903-1919, Т.1, Париж 1933, С.118-119.

10) В.Н.Коковцов Из Моего Прошлого С.119. 코코프초프의 회고록에 따르면, “황제는 프랑스에 대한 러시아의 지지의사를 외무성이나 주불대사를 통해 전달하기 보다는 황제의 특사 코코프초프가 직접 프랑스 정부에 전달하는 것이 신뢰를 더함으로써 차관을 성사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덧붙였다”고 한다.

2세의 외교적 실패로 막을 내린(1906.4.7.) 직후의 일이었다. 이 회동에서 러시아는 패전과 혁명의 소용돌이 속에서 기사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되었다. 22억 5천만 프랑의 전례 없는 대규모 대러 차관(연리 5%)의 제공 계약이 체결되었기 때문이었다.¹¹⁾

1906년 대러 차관의 주축은 프랑스 자금이었으나 영국이 대러차관의 1/4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는 각별한 의미가 있었다. 영국은 독일의 방해로 이 차관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재정위기에 몰린 러시아의 운명이 유럽의 국제관계에 끼칠 영향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1906년 대러차관은 영국이 프랑스의 중재로 러시아와 관계개선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¹²⁾

영러협상(英露協商)의 체결(1907.8.31.)은 1906년 대러차관 성사 이후 당연한 수순이 되었다. 또한 러시아가 일본에 제의한 동아시아 문제 관련 외교적 타협안 역시 러일협약 체결(1907.7.30.)로 귀결되었다. 러시아와 일본은 한국과 남만주를 일본의 이익권으로, 외몽골과 북만주는 러시아의 이익권으로 비밀리에 상호 인정한 이 협약을 체결함으로써¹³⁾ 러시아는 일본의 한국병합을 견제하거나 저지하기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¹⁴⁾ 이는 블라디보스토크를 중심으로

11) В.Н.КОКОВИЦОВ, *ИзМоегоПрошлого*, С.162. 러시아의 파리주재 재무관 라팔로비치(A. Rafalovich)는 1906년 1월부터 대러 차관 계약일까지 프랑스 언론에 대한 지원금 규모를 20만 프랑으로 증액할 것을 요청했다. 포츠머스강화조약 체결 후, 프랑스 언론에 대한 러시아의 지원금 규모를 10만 프랑으로 축소하자 파리 언론들은 대러 차관 제공에 대해 비판적인 논조를 보임으로써 이를 회유하기 위함이었다.(J.W.Long, Russian Manipulation of French Press, 1904-1906, *Slavic Review*, Vol.31-2, pp. 352-353.)

12) Olga Crisp, The Russian Liberals and the 1906 Anglo-French Loan to Russia, *The Slavonic and East European Review*, Vol. 39, No. 93, p.508. 이 차관은 1907년 아시아 대륙 전반을 둘러싼 영국과 러시아의 오랜 대립을 종식시키고 페르시아, 중앙아시아, 티베트에 대한 영러간의 타협을 이룰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

13) Masato Matsui, The Russo-Japanese Agreement of 1907: Its Causes and the Progress of Negotiations, *Modern Asian Studies*, Vol.6, No. 1(1972), p.33.

14) 러일협약은 2개조의 공개 조항과 4개조의 비밀조항이 있다. 비밀조항 제2조에 따

전개되던 한국의 항일독립운동의 방향과 성격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었다. 러시아와 일본이 영국과 프랑스가 원하고 있는 종래의 대립관계에서 벗어나 협력을 강화한다면 露領지역 한인독립운동에 대한 러시아 당국의 입장 역시 변모될 것이 틀림없었기 때문이었다.

코코프초프는 1906년 차관도입을 계기로 재무상에 임명(5.8.)된 후¹⁵⁾ 1914년까지 러시아의 재정을 관장했다. 패전과 혁명의 혼란기에 누구도 중책을 맡지 않으려한 상황에서 그가 재무상에 장기 복무하게 된 배경에는 국내외적인 호의적인 여건이 조성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¹⁶⁾ 대내적으로 황제의 전폭적인 신뢰가 있었고 국제적으로 프랑스와 영국 주도의 대러 차관 제공이 안전판 역할을 하였다. 아울러 외교적으로도 러불(露佛)동맹이 영불러일(英佛露日)의 4국협조체제(Quadruple Entente, 1907)로 발전함으로써 평화적인 대외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코코프초프가 러일전쟁 이후 러시아 경제를 조속히 정상화시킬 수 있었던 배경에는 대독견제 역할의 대가로 제공된 영불차관이 있었다. 그럼에도 차관은 상환해야 할 부채였다. 부채의 상환을 위해

르면, 러시아는 현존하는 한일 정치관계의 발전을 저해하지 않기로 하고 있었다. John A. White, *Transition to global rivalry: alliance diplomacy and the Quadruple Entente, 1895-1907*,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5. pp. 304-306.

15) В.Н.Коковцов, *Из Моего Прошлого Воспоминания* С.171-173, 1903년 대러차관 계약을 누구보다 반겼던 인물은 황제 니콜라이 2세였다. 차르는 "귀하는 어려운 상황에서 서도 러시아와 짐에게 잊을 수 없는 커다란 기여를 했다. 귀하가 개인적으로 보고하기를 기다리겠다"고 코코프초프에게 타전한 후, 그를 재무상으로 기용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코코프초프는 건강상의 이유로 고사했지만, 결국 러시아 최초의 근대적 의회(Дума) 소집 전날(1906.5.8.) 그에게 전달된 봉투는 황제의 재무상 임명장이었다.

16) Переписка В.Н.Коковцова Э.Д.Нецлину, 28 Июля(10 Aug.)1906 г. *Красный Архив*, (이하 K.A.로 약함)1923. Т. 4. С.133. 네슬린 역시 새로운 내각의 재무상에 코코프초프가 임명된 것이 프랑스 투자자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최선의 보장책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무상은 새로운 세원(稅源)발굴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국방예산을 절감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따라서 러일전쟁 이후 러시아의 국방재건계획은 시종일관 재무성과 긴장관계에 놓이게 되었다.

코코프초프가 대리차관(1906)에 근거하여 수립한 1907년 예산의 편성원칙은 균형재정이었다.¹⁷⁾ 이를 위한 방책으로 그는 새로운 예산소요는 입법부의 승인을 받은 후, 예산에 편성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그럼에도 러시아 국내 상황은 적자 없는 균형예산을 편성하기가 쉽지 않았다. 왜냐하면 재정지출의 토대인 국고수입이 매우 열악한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지출을 최소화하는 조건에서만 균형재정이 가능하였기 때문이었다.

코코프초프의 균형재정론에 대한 또 다른 복병은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군비재건사업이었다. 육군성은 러일전쟁 이전 보다 증강된 병력을 유지하고자 하였기 때문이었다. 왜냐하면 육군상 레디게르(А.Ф. Редигер)는 러일전쟁 패전의 원인이 병력과 장비부족에서 비롯되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레디게르가 1906년 10월 육군 전투력 재건을 위해 134,000명의 상비군 증강을 위한 2억1천500만 루블의 예산안을 각료회의에 제출한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¹⁸⁾

육군성의 이같은 요구에 코코프초프가 택한 방위비 억제 방안은 국가의회(두마: Д у м а)에 예산안 심의를 위임하는 것이었다. 입법

17) Переписка ВНКокцовов Эд.Нецлину, 14(27) нояб. 1906 г. К.А., 1923 Т. 4, С.143-146. 코코프초프는 네츨린에게 “내년도에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재의 수입규모에 만족해야한다. 새로운 조세수입을 위한 과세 계획안을 의회에 상정하바 있으나 의회는 해산되고 말았다. 여타 새로운 과세안들은 의회가 새로 소집될 경우 심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1907년 예산편성에 활용할 수 없는 형편이다. 게다가 나의 과세입안이 의회에서 언제 심의될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과세안은 결국 1908년 이후에야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가능하리라 본다”고 알렸다.

18) Шацилло К.Ф. *От Портсмутского мира к Первой мировой войне*. М., 2000, С. 126-127. 러시아 육군은 병역의무자 138,100,000명의 1%를 평시병력으로 운용함으로써 1900년 1월 1일 기준 육군 병력은 1,385,061명이었다.

부의 힘을 빌려 군부의 방위비 증액을 견제하려는 계획이었다. 재무상이 입법부의 승인을 얻은 합법적인 예산소요만을 지출한다는 원칙을 견지했던 이유도 과도한 국방예산에서 비롯된 적자재정을 회피하기 위함이었다. 국가의 신용도를 높여 지속적인 차관도입을 위해서는 재정균형이 필수였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육군성의 방위비 증액요구는 의회의 동의를 거친 국채발행을 통해서만이 실현 가능한 까다로운 절차가 추가되었다.

러일전쟁 이후 러시아에서 재무성과 육·해군성의 격렬한 대립이 야기된 원인도 예산통제권을 장악한 의회제도의 도입 때문이었다. 이는 재무상이 군부의 국방비 증액 요구에 맞서 방위비 예산을 입법부의 승인을 거쳐 지출하는 구조를 마련한 것과 깊은 관련이 있었다. 재무성에 대한 육군상 레디게르(1905-1909), 해군상 비리료프(А.А.Бирилев:1905-1907), 디코프(И.М.Диков: 1907-1909)의 예산증액 압박이 심해질수록 재무상 코코프초프는 이에 정면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코코프초프가 군부의 자체적인 예산절감 방안을 제안하고 나선 이유도 세수증대를 위한 추가적인 세원발굴이 곤란한 형편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육군성이 새로운 추가예산을 요구할 경우, 한정된 예산에서 이를 감당할 수 있는 해법은 구조조정밖에 없었다. 이는 병력을 감축하여 그 절감비용으로 새로운 방위력 증강사업에 투입한다는 고육책이기도 했다.¹⁹⁾ 이에 각료회의에서 육군성의 추가예산 배정요구를 거부하기로 한 결정은 1909년 3월 육군상 레디게르가 사의를 밝힌 표면적인 이유에 불과했다. 평시의 상비군 병력을 감축하고 군부대 재조

19) МВЗайцев Путешествие из Петербурга во Владивосток: К Вопросу о противоречиях в правительстве России по поводу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вооруженных сил накануне перв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Изв. Саратов. университета. Нов. История. Международные отношения. 2017. Т. 17, вып. 4. С.447-449. 1909년 육군성의 예산은 4억7천만 루블인바, 이는 국가예산의 1/4에 해당하는 규모였다.

직 계획안 제출을 요구한 것이 보다 본질적인 원인이었다.

수호믈리노프(В.А.Сухомлинов)신임 육군상은 전임 레디게르의 정책을 계승한다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국방예산을 둘러싼 육군성과 재무성의 갈등은 지속되었다. 그는 코코프초프가 편성한 1910년도 예산안 검토를 위한 특별각료회의(1909.6.22.)에서 병력감축은 절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러시아 육군은 가상적국의 전투력에 준하는 규모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인바, 국경선의 길이, 수비해야 할 영토의 방대함과 거주인구의 희소성 그리고 교통상황을 고려할 경우, 평시의 병력도 과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족한 실정이라는 것이 그 논거였다.²⁰⁾ 따라서 국방예산을 둘러싼 양대 부처간의 이 같은 입장차는 1909년 가을 블라디보스토크 요새화 문제와 관련한 코코프초프의 극동시찰 시기까지 지속되었다.

블라디보스토크 요새화 공사의 필요성은 연흑룡강 군관구(軍管區)사령관 운테르베르게르(П.Ф.Унтербергер)의 정책건의에 근거하고 있었다. 이는 블라디보스토크를 요새화하고 그 외곽에 육상과 해안 방위설비를 구축함으로써 일본군의 상륙과 후방공격을 격퇴한다는 작전계획에 따른 것이었다. 그는 일본 및 청국과 새로운 분쟁이 발발할 경우, 연흑룡강 군관구는 유럽러시아의 증원군이 도착할 때까지 극동러시아를 사수한다는 작전계획을 세운바 있었다.²¹⁾ 따라서 작전계획이 수립되었음에도 블라디보스토크 요새화 공사가 착수조차 되지 않은 상황은 재무상의 현지시찰을 통하여 해법모색이 절실히 요구되는 국정과제가 되었다.²²⁾

육군상이 사업의 지연책임을 재무성에 전가하는 보고서를 차르에

20) Особый Журнал Совета Министров, 6 июня 1909 г.

21) Р.С. Авилов, По Транссибу на Восток. Визит Министра Финансов В.Н.Коковцова в Приамурский Военный округ, *Вестник Томского гос.уни.*, № 405. 2016, С.38-49.

22) ВИКалинин, НБАюшин, Крепость Владивосток, *Россия и АТР*, № 4. 2000. С.112- 121.

게 올리면서 블라디보스토크 요새화 문제가 수면위로 떠올랐다. 육군상은 전후 복구가 시작된 지 3년이 지났음에도 러시아의 극동지역이 무방비상태에 놓이게 된 주요 원인을 예산지출 승인을 하지 않았던 재무성 탓으로 돌렸기 때문이었다. 블라디보스토크 방위강화를 위한 예산을 재무성으로부터 받지 못했다는 것이 상주(上奏)의 요지였다.

코코프초프는 육군상의 책임전가에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그가 최근 3년간 블라디보스토크 방비강화를 위한 예산을 한 푼도 깎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예산서류들을 제출했다. 더욱이 이 서류들은 이미 3년 전에 육군성에 배정된 예산조차 전혀 집행되지 않은 채 남아있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재무상의 주장에 따르면, 불용(不用)예산이 쌓여있음에도 육군성에 새로운 예산 배정을 반대하지 못한 것이 재무성의 유일한 과오라는 것이었다. 따라서 재무상이 수호믈리노프의 예산요청에 대해 육군성 자체예산 가운데 집행되지 못한 불용예산을 활용할 것을 제안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²³⁾ 그렇지 않을 경우, 긴급한 현안사업을 위한 예산이라고 하더라도 절차와 시간이 필요한 의회의 승인을 요구하는 방법밖에 없었기 때문이었다.²⁴⁾

코코프초프의 극동시찰은 블라디보스토크의 방비 강화를 위한 예

23) К.П.Пацилло. Последние военные программы Российской империи. *Вопросы истории* №78, 1991. С.224-233. 극동지역 방위력 강화문제는 러시아의 군대의 근대화작업의 일환이었다. 러일전쟁에서 제1차 세계대전까지 러시아 군장비의 근대화 사업에 18억 루블이 책정되었으나 실제로 1914년까지 집행된 예산은 1/5에 해당하는 376,500,000루블에 불과했다. 이는 예산이 부족했거나 코코프초프 개인적인 문제라기보다는 러시아 행정부, 특히 육군성과 해군성의 비효율적인 관료제의 산물이었다. 이들은 러시아군수산업과 마찬가지로 낮은 생산성으로 인해 당면한 예산수요를 적기에 충족시키지 못해 역부족이었다.

24) М.В.Зайцев. Путешествие из Петербурга во Владивосток 449-450. 1908년 러시아헌법(4.23.)의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입법부가 등장함으로써 행정부서의 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하는 과정은 부처별로 다양한 충위를 드러냈다. 특히 육군성은 예산 획득에 가장 큰 곤란을 겪고 있었다. 차르의 재가를 받아 예산을 집행했던 전통에 익숙했던 군부 특히 육군성은 의회의 역할을 중시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산을 지원했음에도 왜 작업이 진척되지 않았는지를 밝히는 것이 제 1의 과제가 되었다. 재무상 역시 지난 3년간 국채를 발행하면서까지 극동방위를 위한 예산을 한 푼도 깎지 않고 지원했었기 때문이었다.²⁵⁾ 이는 차르 니콜라이 2세가 재무상을 직접 극동에 파견한 이유이기도 했다.

3. 러시아 재무상 코코프초프의 극동시찰과 안중근의 하얼빈의거

1909년 가을 러시아 재무상 코코프초프의 극동시찰 계획이 수립되었을 당시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와 하얼빈 회동은 예정에 없었다. 코코프초프는 1909년 9월 22일 동청철도(東清鐵道: Chinese Eastern Railway)와 하바롭스크 및 블라디보스토크 시찰계획에 대한 차르 니콜라이 2세의 재가를 득했다.²⁶⁾ 재무상의 극동시찰은 1910년도 예산편성 작업을 마무리하는 바쁜 일정 속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시찰기간과 장소는 극히 제한되었다.²⁷⁾

5주의 시찰기간에 동청철도 구역을 벗어나지 않기로 하였기 때문에 북경주재 러시아 공사 코로스토베츠(И.Я.Коростовец)는 재무상을 만나기 위해 하얼빈으로 와야 했다.²⁸⁾ 코코프초프는 1909년 봄

25) МВЗайцев Путешествиеиз Петербурга во Владивосток, С. 448-449.

26) РГИА, Ф.500, Оп.28, Д.416, Л.6-8. Всеподданнейший доклад министра финансов 9 сентября 1909 г.

27) Переписка.Н.Коковцов Эд.Нещлину, 2 сентября 4 октября 1909 г. К4 1909 Т. 4, С.155-156. 코코프초프는 1909년 10월 4일 극동으로 출발하면서 대러차관을 위한 프랑스은행건소사업의 책임자 네슬린에게 편지를 보냈다. 그는 러시아의 대외신용도에 영향력을 가진 프랑스 언론에서 러시아의 1910년도 예산편성 자료에 관심을 보이자 자료를 송부했음을 알렸다.

부터 일본정부의 訪日 제안을 받았음에도 도쿄방문 계획은 그의 일정에 없었다. 따라서 하얼빈에서 이토와의 회동은 코코프초프가 극동시찰 여정에 오른 후에 결정된 사안이었다.

코코프초프는 1909년 10월 1일 극동시찰 여정에 올랐다. 그가 시베리아 철도와 동청(東淸)철도의 분기점이었던 만주리(滿洲里)역에 당도(10.11.)했을 때, 극동시찰의 최대 고비가 될 결정을 해야 할 기로에 서게 되었다.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가 고토 신페이(後藤新平)를 통해 하얼빈에서 회동이 가능한지를 문의했다고 주일 러시아 상무관 빌렌킨(Г.А. Вилекин)이 타전해왔기 때문이었다.²⁹⁾

같은 날(10.11.) 주일러시아대사 말렙스키-말레비치(Н.А. Малевский-Малеви́ч)는 이토의 만주시찰여행 계획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외무성에 보고했다. 그 요지는 다음의 3가지였다. 첫째, 이토의 만주시찰 여정은 대련-심양-하얼빈-블라디보스토크이며 약 8명의 수행원이 동행예정이다. 둘째, 이토는 공식직함을 갖고 있지 않지만 친러 인사라는 평판을 얻고 있으며, 하얼빈에서 코코프초프와 회동을 원한다. 셋째, 동청철도와 남만주철도간의 접속 문제와 극동문제 전반에 걸친 러일 양국간의 관계강화를 원한다는 것이었다.³⁰⁾

이틀 후(10.13.) 주일대사는 이토의 만주여행에 대해 상세한 보고를 해왔다. 이를 요약하면 첫째, 이토의 하얼빈 방문은 코코프초프를 만나 최근에 체결(1909.9.4.)된 청일(淸日)협약³¹⁾과 관련한 협의

28) РГИА, Ф.560, Оп.28, Д.416, Л.9. Копия телеграммы равления Общества КВЖД в Пекине от 10 сентября 1909 г. на имя Коростовца.

29) РГИА Ф.560, Оп.28, Д.416, Л.44. Телеграммы Велинкина изТокио на имя Министра Финансов от 28 сентября 1909 г.

30) Там же. Л.16. Секретная елеграмма Малевского-Малеви́ча 28 сент / 11 октябры 1909 г.

31) Там же. Л.77-78. Текстсекретной телеграммы Товарища МПД на имя Коростовца, 30 сент. 1909 г.

가 목적이며 둘째, 러일 상호간의 만주에 대한 이해를 조정하기 위한 토대 구축을 모색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동청철도와 남만철도의 화물 환적(換積)에 관한 협약체결을 마무리하고, 러일전쟁 전후처리 과정에서 일본이 거부한 러시아의 요구사항에 대한 해결책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했다. 따라서 러시아는 이토의 하얼빈 방문 목적이 청일협약으로 불거진 미일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대러(對露)접근책을 모색하는데 있다고 판단하였다.

주일상무관 빌렌킨이 코코프초프에게 보낸 기밀보고서(1909.10.14.)는 이토가 사전 협의 없이 급히 만주로 출발하게 된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³²⁾ 빌렌킨은 이토가 만주시찰 목적을 기분전환 겸 오랫동안 못가 본 장소에 다시 가고 싶다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으나, 본연의 목적은 만주문제를 둘러싸고 악화된 미일관계의 타개책을 찾는 데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는 이토의 출장지역이 최근 미일간의 논란이 되고 있는 만주임에 주목, 이토의 만주시찰은 분명한 목적을 가진 실무적 출장으로 파악했다. 왜냐하면 문제의 지역은 청국이 '만주의 광산과 철도 관련 청일협약'(1909.9.4.)³³⁾을 통해 무순(撫順)탄광과 안동-봉천철도 보강공사구간의 광산채굴권을 일본에게 양여했던 지역이기 때문이었다.

이토가 '만주의 광산과 철도 관련 청일협약'(1909.9.4.) 체결 직후 코코프초프를 만나고자 했던 이유는 이 협약이 미일갈등의 단초가 되었기 때문이었다. 왜냐하면 미국은 이 협약이 만주의 문호개방과 기회균등의 원칙을 명시한 “루트-다카히라(The Root-Takahira Agreement of 1908)”³⁴⁾ 협정을 위반하였다고 문제를 제기했기 때

32) РГИА, Ф.500, Оп.28, Д.421, Л.7-15, Доверительное письмо Виленикина Коковцову от 1 октября 1909 г.

33)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09, pp. 118-120, Japanese-Chinese Agreement concerning Mines and Railways in Manchuria.

34) 『共立新報』 1908년 12월 16일, “論美日協商, 미국과 일본이 서로 협상한 것을 의론함”. 이승만은 공립신보에 기고한 “루트-다카히라 협상”에 대한 분석 글에서 이

문이었다. 요컨대 미일갈등의 요체는 러일전쟁의 전리품으로 획득한 남만주에 대한 독점권을 주장한 일본과 “문호개방(Open door)과 기회균등”의 슬로건으로 만주시장 진출을 도모한 미국의 이해 대립에 있었다.

빌렌킨은 이토의 하얼빈 방문의 숨은 공로자로 만철(滿鐵)총재를 역임했던 고토 신페이를 꼽았다. 그는 재무상의 극동시찰 소식을 접하고 도쿄방문을 성사시키고자 했으나 불가능해 보이자 가츠라(桂太郞)수상을 통해 이토의 만주시찰을 설득했기 때문이었다. 그 결과 이토는 주일러시아대사 말렙스키-말레비치를 방문하여 하얼빈 회동을 제안했고, 고토 신페이를 통해 빌렌킨에게 이 제안을 재무상에게 타전하도록 하였던 것이다.

말렙스키-말레비치 대사는 이토의 하얼빈 회동 제안을 일본측의 우호적인 대리 접근의 표현으로 평가했다. 그는 일본정부가 이 회동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에게 러일 양국이 만주에서 이해를 일치시키고 연대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청국의 지속적인 양보를 이끌어내려 한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일본은 러일간의 협력관계를 과시함으로써 만주의 문호개방과 청국의 영토보전을 약속한 루트-다카히라 협정을 무력화하는 대신 만주에서 행동의 자유를 획득하고자 하였다.

그렇다면 일본이 대리접근을 위해 제시할 수 있는 카드는 무엇일까? 핵심은 러일전쟁 당시 일본이 나포한 러시아 선박의 반환 문제였다. 이는 러시아 언론의 반일여론 조성을 위한 빌미가 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에 러시아는 러일전쟁의 전후처리 과정에서 미결 과제로 남겨진 동청철도회사 소유의 증기선 3척 [만추리아(Маньчжурия)號, 아르군(Аргун)號, 묵텐(Мукден)號]의 무조건적인 대리 반

협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미부여를 한바 있었다. “우리의 소견으로 말할진대 이 협상이 양국의 시비를 막은 것도 아니오 물린 것도 아니오 시비를 준비하는 시작이라 하노라.”

환 문제를 하얼빈 회동의 의제로 삼고자했다.³⁵⁾ 빌렌킨이 동청철도 회사 소유의 선박(1,759,000루블 상당) 반환문제가 만족스럽게 해결 될 것으로 기대했던 이유도 일본이 남만주철도와 동청철도의 화물환 적에 관한 협정 체결을 원하고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이토의 회동제안에 대해 코코프초프가 자신의 하얼빈 체류 일정을 통보함으로써 회동준비가 본격화되었다. 블라디보스토크로 가는 여정의 3박4일(10월 24-27일) 혹은 상행선의 2박 3일(11월 7-9일) 가운데 택일할 수 있는 선택권이 이토에게 주어졌다.³⁶⁾ 이토는 주일러시아대사 말렙스키-말레비치를 직접 방문(10.11.)하여 코코프초프가 10월 25일 하얼빈에 도착한다는 주러 일본대사관의 보고를 재 확인하고 하얼빈 회동에 대한 간절한 희망을 전달했다.³⁷⁾

주일상무관 빌렌킨은 코코프초프가 하얼빈 회동에 동의했음을 일본에 통보하자, 이토의 하얼빈 도착날짜가 10월 26일로 확정되었음을 기밀 보고(10.14)하였다. 이후 빌렌킨은 이토의 수행원 명단과 함께 그의 하얼빈 도착일정에 대한 최종 보고(1909.10.16.)하였다. 따라서 러시아 당국은 이토 일행이 관성자(寬城子)에서 하얼빈으로 10월 25일 밤차로 출발예정임을 알게 되었다.³⁸⁾

35) РГИА, Ф.560, Оп.28, Д.416, Л.132-133. Телеграмма Управления дороги Директору Канцелярии Министра Финансов, 9 октября 1909 г. 동청철도 이사회의 보고에 따르면, 묵덴호는 1904년 1월 24일(서력 2.7.)부산에서, 아르군호는 1월 25일(2.8.) 대한해협에서, 만추리아호는 2월 4일(2.17.) 나가사키에서 일본 해군에 나포되었다.

36) РГИА, Ф.560, Оп.28, Д.421, Л.2. Телеграмма Коковцова Виленинскому, 28 сентября 1909 г.

37) РГИА, Ф.560, Оп.28, Д.421, Л.3-3 об.: Копия секретной телеграммы Малевского-Малеви ча, 11 октября 1909 г. 주일러시아대사 말렙스키-말레비치는 이토의 만주여행에 대해 대련주재 러시아영사, 북경주재 러시아공사 그리고 연흥룡강주 총독에게 통보(10.11.)했다.

38) Там же. В 706. Письмо Виленикина Коковцову 3 октября 1909 г. 빌렌킨의 보고서에는 이토를 수행할 인사들의 명단도 첨부되어 있었다. 수행원은 9명이었으나 모두 동행할지는 미지수라고 보고했다. 그 명단은 다음과 같다: 1) 나카무라(中村是公) 滿鐵 의장, 2) 무로타(室田義文), 이토의 친구이자 전 멕시코대사 3)

러시아황제는 코코프초프가 이토와의 하얼빈 회동에 동의했음을 보고한 상주서에 “중립지역에서 그러한 회동은 유익할 것이다”라고 재가(10.15.)하였다.³⁹⁾ 하얼빈은 러시아 혹은 일본의 영토가 아니었기 때문에 외부의 영향력과 간섭이 배제된 채 양국의 관심 사안을 논의할 수 있는 최적지로 간주되었다. 러시아 부외상 사조노프(С. Д. Сазонов)가 하얼빈 회동을 러일전쟁 전후처리의 미결과제 해결의 기회로 간주한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 그는 일본정계 거물이 노구를 이끌고 만주로 러시아 재무상을 찾아오게 한 정황은 결코 러시아에게 불리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빌렌킨이 코코프초프에게 이토의 하얼빈 도착 일정을 보고(10.16.) 함으로써 하얼빈 회담 준비가 본격화되었다. 코코프초프가 파악한 이토의 일정은 10월 25일 밤 관성자를 출발하여 10월 26-27일까지 하얼빈에서 체류하다 10월 27일 밤에 블라디보스토크로 출발하는 여정이었다. 이에 코코프초프는 연흥룡강주 총독 운테르베르게르에게 이토와 하얼빈 회동 이후 하바롭스크를 경유하여 블라디보스토크로 갈 예정이지만,⁴⁰⁾ 정확한 날짜를 예정할 수 없다고 타전(10.24.)할 수밖에 없었다. “이토와 회동이 나를 얼마나 붙잡아둘지

오우치, 관동총독부 외무처장 4) 후루야(古谷久綱), 이토의 개인비서 겸 황실 의전국장, 이토의 오른팔 이자 무로타의 사위 5) 테이, 외무성 관리, 중국통이자 만주와 청국관계 전문가 6) 마츠키, 참모부 소령으로 러일전쟁사 전문가이자 이토에게 만주의 군사적 측면에서 역사적 장소들을 설명하기 위해 임명 7) 타츠이-남만주철도 총비서 8) 모리, 황실장관의 개인 비서이자 일본현대사의 대가이자 이토의 친구의 자격으로 동행 9) 고야마, 황실청 산하의 의사.

39) Там же. Л19. Телеграмма тайного советника Вебера Коковцову, 4 октября 1909 г. “Такая встреча на нейтральной почве может быть полезна”

40) Там же. Л21. Телеграмма Приамурского Генерал-Губернатора Коковцову, 4 октября 1909 г. 운테르베르게르는 이토가 하얼빈 회동 이후 블라디보스토크를 거쳐 귀국하는 일정을 통보받고 코코프초프에게 하바롭스크를 거쳐 그곳에서 블라디보스토크로 함께 출발하자고 제안하였다. 이는 이토가 먼저 블라디보스토크를 거쳐 일본으로 귀국한 이후, 현지에 도착하는 것이 블라디보스토크 시찰에 보다 편리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전혀 알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⁴¹⁾ 따라서 당초 1909년 10월 24일 저녁 6시 하얼빈에 도착하여 10월 28일 오후에 블라디보스토크로 출발예정이었던 코코프초프는 10월 25일부터 이토와의 회동을 준비하게 되었다.⁴²⁾

안중근의 하얼빈 의거 직후(1909.10.26.) 사고수습에 나선 현장의 최고위직 인사는 코코프초프였다. 그가 최우선으로 파악하고자 했던 문제는 책임 소재였다. 러시아 조차지 하얼빈에서 발생한 한국인이 일본의 정치가를 저격한 사건에 대한 책임 소재의 핵심은 러시아측의 경호 소홀인지 아니면 입장객의 신분 확인을 하지 않은 하얼빈 주재 일본 총영사관의 책임인지 판별하는 문제가 관건이었다.

코코프초프가 경호문제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을 정리하여 외무부 상 사조노프(И.Д.Сазонов)에게 전달한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 러시아 철도당국이 환영객에 대한 예비검속이 부족했다는 평가가 있을 경우, 그 대처요령은 다음과 같았다 “모든 환영객들은 특별한 이 름표를 가지고 역에 들어갈 수 있었다. 동청철도 운영진은 이틀간 일본총영사에게 일본국적자들 가운데 누구에게 표를 보내야하는지 알려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영사는 어떤 표도 없이 자유롭게 일본인들의 출입을 허용해줄 것을 요구했다. 저격범의 외관은 전형적인 일본인 모습을 하고 있었고 일본인들 사이에 있었다. 일본인들도 그를 조금도 관심 있게 보지 않았다. 일본총영사가 일본인들의 자유로운 출입을 허용해줄 것을 요청한 사실은 일본영사관 서기가 나에게 확인해주었다.”⁴³⁾ 요컨대 코코프초프는 사건의 책임이 입장객 단속을

41) Там же, Л.27, Телеграмма Коковцова Унгербергеру, 11 октября 1909 г. из Харбина.

42) РГИА, Ф.560, Оп.28, Д.418, Л.56; Программа.

43) РГИА, Ф.560, Оп.28, Д.421, Л.38-38 об. 주청러시아공사 코로스토베츠의 기밀서신[1909.10.14(27)]에 따르면, 러시아 당국에서는 하얼빈역에 군중들의 입장을 제한하기 위하여 유럽과 중국인들에 대한 조치를 취했으나 일본인들은 일본영사의 희망에 따라 제한 없이 입장시켰다. 코로스토베츠는 이러한 경솔한 판단이 군중 속에서 안중근에 대해 주의하지 못한 원인으로 진단했다.(АВПРИ, Ф.150, О

철저하게 준비하지 못한 일본영사관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코코프초프가 책임소재 파악과 더불어 사태수습을 위해 주목한 또 다른 문제는 하얼빈의거에 대한 일본 언론 및 일본정부의 평가였다. 하얼빈 의거는 요인 경호와 관련하여 일본인 환영객들에게 비표를 사용하지 않았던 일본총영사관의 책임도 있었지만, 러시아 관할구역에서 발생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러시아도 결코 책임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동청철도 수비대장 호르바트(П. П. Хорват) 장군과 주청러시아공사 코로스토베츠가 이토의 사체를 실은 운구열차를 관성자까지 호송할 만큼 최대한의 예의를 갖춰 사태를 수습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⁴⁴⁾ 따라서 러시아 재무상은 패전과 혁명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있는 가운데 일본과 재차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을 우려함으로써 이 사건에 대한 일본의 반응에 촉각을 세우고 있었다.

코코프초프가 안중근에 대한 처분권을 일본측에 이관하기로 한 결정은 일본의 여론을 의식한 교육책이었다. 그는 저격범이 한국인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밝혀졌고 한국의 사법권은 일본에 귀속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서류들은 일본영사관에 이관될 것임을 외무성에 통보했다. 이는 러일전쟁을 마무리하는 포츠머스 강화조약이 체결되었음에도 제2차 러일전쟁 발발 가능성에 대한 소문이 끊이지 않았던 것도 고려해야했기 때문이었다.⁴⁵⁾ 아울러 이토 저격사건을 미연에 방지하지 못함으로써 야기될 러일간의 갈등의 빌미를 주지 않으려는 의도도 있었다.

또한 코코프초프는 러시아 헌병이 채가구(蔡家溝) 역에서 조도선과 우덕순을 체포한 사례를 이토 저격을 사전에 방지 못한 책임에

п.493,Д.1279,Л.44-47 о б.: Секретное письмо Коростовца 14 окт. 1909 г.)

44) АВПРИ.Ф.150.О п.493,Д.1279,Л.44-47 о б.

45) РГИА.Ф.560.Оп.28,Д.421,Л.6-6 о б.: Русско-Японское Сближение.

서 벗어날 수 있는 증거로 간주했다.⁴⁶⁾ 그 근거는 첫째, 이들로부터 압수한 권총의 탄알이 안중근의 것과 동일한 탄두가 갈라진 파열탄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공범관계에 있었고 둘째, 안중근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하얼빈까지 단독으로 이동하여 역사에서 밤새도록 있었다는 진술을 반박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이는 주청러시아공사 코로스토베츠가 “우리가 경호에 만전을 기하지 못했다거나 사전예방조치의 미흡함을 자책할 필요가 없다. 저격사건은 운명적인 우연이었다.”고 평가했던 이유이기도 했다.

코코프초프가 러일관계 개선과 일본과의 분쟁재발 방지라는 정치적 맥락에서 안중근을 일본측에 이관하는 방식으로 해결한 것에 대해 관구검사 밀레르(К.Миллер)는 동의할 수 없었다. 그는 러시아의 치외법권이 인정되는 하얼빈에서 발생한 사건의 재판은 러시아 사법부가 담당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⁴⁷⁾ 하얼빈 현지에서 수사를 위해 증거품들을 압수할 수 있는 권리와 경찰력을 보유하고 있던 측은 러시아였기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하얼빈 의거 당시 러시아측 희생자가 없었다는 사실은 역설적이게도 밀레르 검사가 이 사건을 일본에 이관하는데 끝까지 반대하지 못한 실질적인 이유였다. 안중근과 그 동지들이 러시아인들의 살상을 피하기 위해 파열탄을 장전하여 이토를 저격한 것은 이 사건을 일본에 이관하는 빌미가 되었다. 관구검사 밀레르가 지적한 바와 같이, 총알이 관통하여 인접한 인물에게 충상을 입히지 않

46) 하얼빈주재 일본총영사 카와카미 도시히코(川上俊彦)도 이토 환영식을 위해 일본인들에게 자유통행권을 발급한 사실은 영사관이 강력히 요구했던 일이라고 확인해주었다. 이에 대해 관구검사 밀레르는 하얼빈 역에는 이토 뿐만 아니라 러시아 재무상이 있었음을 지적하고, 그것은 일본측이 환영식을 조직할 때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는 증거라고 비난했다. РГИА, Ф.560, Оп.28, Д.422, Л.41-45. Прокурора Пограничного Округа Суда Миллера Господину Прокурору Иркутской Судебной Палаты, 14 октября 1909 г.

47) РГИА, Ф.560, Оп.28, Д.422, Л.23-23об. Записка Прокурора Пограничного Округа ВД

기 위하여 파열탄을 사용하였지만, 러시아인들이 상해를 입지 않게 됨으로써 러시아 측에서 피의자들을 수사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사라졌기 때문이었다.⁴⁸⁾ 따라서 안중근이 러시아인의 인명피해가 없도록 정확하게 이토와 그 수행원들만 저격하였음에도 이 사건은 법리가 아닌 정치적 판단에 의해 처리되고 말았다.⁴⁹⁾

안중근의 하얼빈의거에 대해 러시아와 일본이 공동협력의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한 것은 러일관계를 고려한 코코프초프의 결정에 따른 것이었다. 러시아는 실제적인 경찰력을 보유하고 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하얼빈의거 관련자들을 압수수색하여 증거품을 찾고 조사자료를 일본에 넘기는 방식으로 일본에 협조했다.⁵⁰⁾ 그 결과 사건수사를 위해 수립된 러일 공조체제는 밀레르가 수사결과 물들을 일본의 관동도독부 검찰관 미조부치 다카오(溝淵孝雄)에게 넘겨주었던 1909년 11월 3일까지 유지되었다.⁵¹⁾

48) РГИА.Ф.560.Оп.28.Д.422.Л.41-45. Прокурора Пограничного Округа Суда Миллера Господину Прокурору Иркутской Судебной Палаты 14 октября 1909 г. 관구법원 검사 밀레르가 이르쿠츠크 법원에 보고한 문서에 따르면, “파열탄은 총을 쏘 때 부상자 몸 속에 박히게 되며, 파열탄이 아니었다면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이토는 관통상만 당하고 옆에 걸어가던 재무상 코코프체프가 부상을 당했을 것”이라고 보고했다.

49) РГИА.Ф.560.Оп.28.Д.422.Л.23-23об. Записка Прокурора Пограничного Округа Б/Д.

50) РГИА.Ф.560.Оп.28.Д.422.Л.24-28об. Ход События относящихся к убийству Князя Ито после 14 октября 1909 года. 하얼빈의거 이후 러시아당국이 수사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0월 29일 이르쿠츠크 헌병대에서 이르쿠츠크 지역을 수색한 결과에 대한 전보를 보내왔다. 또한 이르쿠츠크 헌병대의 보고에 의거, 10월 30일 하얼빈의 한인거류지에 대한 압수수색은 러시아경찰의 참관하에 일본영사관이 수색을 담당했다. 하얼빈 한인회장 김티혼(Ким Тихон: 김성백)의 집에서 안중근이 의거 전날 묵은 것으로 밝혀졌으나, 김성백이 저격을 준비했다거나, 의거에 연루되어 있다는 충분한 증거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풀려났다. 그러나 한인 9명이 체포되어 일본측에 넘겨졌다.

51) Там же. 러시아측의 수사협조에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밀레르 검사를 만난 사람은 여순 지방법원의 미조부치 검찰관이었다. 11월 1일 군복을 입은 미조부치는 밀레르 검사에게 세 가지를 요구했다. 첫째, 밀레르가 그 살인사건을 직접 보고 느낀 것에 대하여 직접 수기로 작성하여 줄 것과 둘째, 하얼빈역의 평면도와,

4. 러시아의 대일접근과 한러정보협력 구상의 좌절

코코프초프가 도쿄를 방문하여 이토의 장례식 참석까지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은 이토의 운구열차를 관성자까지 호송하고 돌아온 코로스토베츠의 건의에 따른 것이었다. 주청러시아공사는 이토가 노구를 이끌고 만주까지 찾아왔음에도 “우리 땅”, 즉 러시아 조차지인 하얼빈에서 처단된 일은 러일관계 악화요인으로 이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얼빈의거가 일본에 대한 러시아의 적대적 입장을 표출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완화시킬 대책을 제안했던 것이다. 따라서 코로스토베츠에 의해 코코프초프가 조문사절로 천거된 이유는 그가 황제의 신임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책임 있는 임무를 수행할 능력을 겸비했기 때문이었다.⁵²⁾

그럼에도 하얼빈에서 대일조문 계획이 논의되었을 무렵, 차르 정부차원에서 일본과의 우호관계 회복을 위한 진정성을 보여주는 조치가 취해졌다. 러시아황제 니콜라이 2세가 일본천황에게 이토 히로부미의 피격에 대한 애도의 전문을 보냈기 때문이었다.⁵³⁾ 이 전문은 하얼빈의거로 야기된 러일간의 오해와 불신을 봉합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당시의 인원배치상황 및 안중근과 가와카미 총영사 그리고 코코프초프 재무상의 위치를 알려줄 것 셋째, 이토가 의장대를 돌아서기 전 밀레르 검사와 마지막으로 악수를 했는데 이토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당시의 상황을 알고 싶어했다. 그 결과 밀레르는 11월 3일 관련 자료들을 미조부치에게 넘겨주게 되었다.

52) АВПРИ.Ф.150.Оп.493.Д.1279.Л.44-47об. Секретное письмо Д.С.С. Коростовцева. 코로스토베츠는 코코프초프의 弔問이 러시아의 만주정책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있는 중국인들에게도 러일관계의 굳건함을 보여주는 징표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53) РГИА.Ф.560.Оп.28.Д.422.Л.2-2об.: Телеграф О-ва Китайской Восточной железной дороги 14 окт. 1909 г.

하얼빈의거에 대해 일본측은 러시아의 경비소홀의 배경에 대해 의심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러시아철도경찰이 채가구(蔡家溝)역에서 수상한 한국인 2명을 감시하고 이들을 역내에 억류시켰음에도 이미 하얼빈으로 이동했던 안중근의 행사장 진입을 막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⁵⁴⁾ 따라서 카츠라 수상으로부터 이토의 피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충격에 빠졌던 천황에게 러시아 차르가 보낸 조전(弔電)은 사태를 수습국면으로 전환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양국간에 사건발생에 대한 책임소재를 따지고 상호 비방하는 과정은 이어지지 않았다.

차르의 조전을 계기로 일본 역시 러시아와의 관계개선에 적극성을 보였다.⁵⁵⁾ 일본정부는 이토의 피격을 빌미로 러시아에 대한 과격한 대응보다는 당초 기대했던 러일 협력강화에 집중하고자 했기 때문이었다. 주일대사와 상무관 빌렌킨이 고토 신페이로부터 받은 전보에 따르면, 일본정부는 러시아에 어떠한 유감도 갖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일본 언론 역시 러시아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음을 인정하고 있는 분위기였다. 더욱이 고토는 이토 피격사건이 향후 러일간의 관계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언급함으로써 양국 관계개선 의지를 적극 피력하였다. 따라서 코코프초프는 조문특사 자격으로 일본을 방문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판단(10.28.)하고 계획된 여정에 따라 극동시찰을 속개하기로 결정하였다.⁵⁶⁾

54) РГИА.Ф.560.Оп.28.Д.421.Л.29-33. Телеграмма Коковцов Послу в Токио, 13 окт. 1909 г. 코코프초프가 사건 당일 주일대사에게 보낸 전문에 따르면, “음모는 조직적인 것이 분명하며, 어제 채가구역에서 러시아 경찰이 브라우닝 권총을 소지한 3명의 한국인들을 검거하였다”고 타전했다. 우리는 러시아헌병이 2명(조도선, 우덕순)을 3명으로 잘못 보고하였는지, 아니면 3명을 검거 후 안중근을 의도적으로 방면한 것인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55) РГИА.Ф.560.Оп.28.Д.421.Л.142. Телеграмма Коковцова Веберу, 15 октября 1909 г.

56) Там же. Л.124. Копия письма Американского консула в Харбине на имя Российского Генерал Консула 14

코코프초프는 극동시찰을 마치고 차르가 머물고 있던 흑해의 리바디아(Ливадия)궁을 방문(1909.11.30.), 시찰보고서를 상주하였다.⁵⁷⁾ 그의 상주서는 다음의 3부로 구성되어 있었다. 첫째, 동청철도의 현황과 철도수비대 상황에 대한 보고와 둘째, 블라디보스토크의 자유무역항 지정 폐지가 극동의 경제에 끼친 영향 분석 셋째, 러시아 극동지역의 방위상황 시찰관련 보고로 이루어져 있었다. 당초 극동시찰계획에 이토 히로부미와의 회동은 없었기 때문에, 상주서에는 하얼빈의거와 안중근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상주서의 특징은 철도와 국방 전문가로서의 견해보다는 재무상의 입장에서 경제적 효율성을 중시하고 있었다. 이에 최소의 재정지출을 통해 러일전쟁 이후 극동의 안보와 경제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정책들이 제시되었다.

코코프초프가 밝힌 동청철도회사에 대한 재정원칙은 독립채산제의 구현이었다. 이는 만주를 관통하는 노선을 운영하는 동청철도회사와 같이 외국에서 운용되고 있는 사업에 러시아국고에서 재정지출을 할 수 없다는 가이드라인을 밝힌 것이었다. 러일전쟁 이후 차관에 의존하여 경제를 지탱해나가는 형편에서 외국에서 운영중인 회사에 국고를 지원하는 일은 누구의 동의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이 그 논거였다. 따라서 재무상은 동청철도 회사를 러시아에 이익을 가져다주는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октября 1909 г. 하얼빈주재 미국영사(Garden Paddock)가 이토의 사망에 대한 애도보다는 코코프초프가 무사한 것을 축하하는 편지를 하얼빈주재 러시아총영사에게 보낸 것은 만주문제를 둘러싼 미러일 3국 관계를 반영하고 있었다. 그의 편지는 “코코프초프와 다른 러시아 관리들이 어제 비극적 사건에서 무사한 것에 진정한 기쁨을 표하고자 하며 그러한 위험한 곳에 있던 그들이 천우신조(providential)로 살아남은 것에 대해 경축”하였다.

57) РГИА.Ф.560.Оп.28.Д.422.Л.1-42. Всеподданнейший доклад Министра Финансов по поездке на Дальний Восток осенью 1909.

그렇다면 29,000명의 자아무르 군관구 소속의 철도수비대의 보호를 받고 있는 동청철도가 독자생존하기 위한 방책은 무엇인가? 코코프초프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국경수비대 유지비용을 절감하고 동청철도의 영업이익을 증대시키기 위해 제시한 방책은 바로 남만주철도와 호혜적인 협약체결이었다. 여순에서 하얼빈 이남의 채가구까지 운행하고 있는 남만주철도를 상호 연결함으로써 러시아의 동청철도와 일본의 남만주철도가 상생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계획이었다. 따라서 코코프초프는 동청철도 회사 비용으로 하얼빈의 공공기관을 운영해야 한다는 규제를 철폐하여 이 회사를 자율적인 조직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⁵⁸⁾

극동시찰의 원인이 되었던 국방력증강 문제 역시 재무상은 예산 절감의 시각에서 접근했다. 그는 블라디보스토크 요새강화작업과 같은 극동의 방위력증강 문제는 과도한 위기의식이 현지 사회여론에 반영된 결과로 진단했다. 그는 이 위기감이 “만주와 간도 관련 청일 협약(1909.9.4.)”에서 일본이 획득한 길회(吉會)철도 부설권에서 비롯되었다고 판단했다. 이는 일본이 길회철도 부설을 통해 블라디보스토크를 배후에서 공략해 올 수 있다는 공포감을 고조시켰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코코프초프는 이러한 사회여론은 올바른 정세판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들의 불안심리가 안보요구를 강화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코코프초프는 러일전쟁 이후 극동에서 요구하는 국방력 증강 문제는 심리적인 요인에서 비롯된 것으로 진단함으로써 그 해법 역시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군비증강보다는 지역여론의 안정화를 도모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에 그는 변경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안정감을 갖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왜냐하면 주민들은

58) Там же. Л.5-506. 코코프초프는 하얼빈의 공공기관 운영비를 현지 거주 외국인 을 포함한 주민들에 대한 조세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정적인 정치환경 속에서만이 활기찬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재무상은 동청철도와 마찬가지로 극동의 방위력 증강 문제 역시 가장 바람직한 해법은 바로 일본과의 우호관계 수립에 있다는 생각을 굳히게 되었다.⁵⁹⁾

한편 코코프초프의 극동시찰 이후 육군상 수호믈리노프는 다른 차원에서 연해주 방위에 접근했다. 이는 재무상의 극동시찰이 블라디보스토크 요새화 사업과 방위증강을 위한 예산증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코코프초프가 극동거주민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우호적인 러일관계 수립에 방점을 찍었다면, 수호믈리노프는 보다 극동의 방위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강구하고자 하였다.

재무상이 극동방위력 증강을 위한 예산배정에 소극적이라면 육군상이 구상한 극동방위력 개선조치는 무엇이었을까? 만일 차르정부의 경제가 유럽차관에 대한 의존을 지속함으로써 극동방위 예산이 축소된다면, 극동지역을 장기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지켜내야 할 것인가? 결국 반일(反日)이라는 공감대를 가진 협력자들과 공조체제를 구축한다는 구상이 제기된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

수호믈리노프는 스톨리핀(П.А.Столыпин) 총리에게 보낸 기밀서신(1910.5.24.)에서 일본과 충돌할 경우를 대비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⁶⁰⁾ 육군상은 일본이 간도협약을 통해 획득한 길회(吉會)철도 부설권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다. 그는 러일전쟁 당시 러시아의 여순(旅順)요새를 일본해군이 해상에서 봉쇄하고 육군이 압록강을 건너 후방에서 공격해왔던 선례를 반복하고 싶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블라디보스토크 요새 역시 일본해군이 해상을 봉쇄하는 동

59) РГИА.Ф.560.Оп.28.Д.422.Л.1-42. Всеподданнейший доклад Министра Финансов по поездке на Дальний Восток осенью 1909.

60) РГИА. Ф.1276. Оп.6.1910г. Д. 514. Л.1-2. Секретное письмо Сухомлинова Столыпину, 11 мая 1910 г.

안 육군이 간도지역에서 블라디보스토크 후방으로 압박해 들어갈 수 있다고 보았다. 육군상이 여순 요새의 함락 시나리오가 블라디보스토크 요새에서도 재현될 가능성을 우려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

육군상이 러시아의 한국의병에 주목한 이유는 안중근의 하얼빈 의거를 통해 표출된 강고한 항일의지를 주목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한국의병과 반일연대를 구성할 경우, 예상되는 장점을 평시와 전시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한국의병은 평시의 경우, 일본군이 의병 진압을 위해 병력과 자원을 분산시킬 뿐만 아니라 주한일본군에 대한 정보수집과 방첩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전시에는, 일본군대의 후방인 한국에서 반일봉기를 일으킴으로써 양동작전을 펼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수호믈리노프는 극동 방위의 난제를 해결할 새로운 대안으로 한국의병을 활용한다는 구상을 갖게 되었다.

러시아 육군상의 이같은 구상의 근거는 연흑룡강 군관구 군영(軍營)본부로부터 입수한 연해주 정보장교 엔켈(О.К.Энкель) 중령의 보고서였다.⁶¹⁾ 수호믈리노프가 “논리정연하다”고 평가한 이 보고서는 총리에게 보낸 기밀서신에 동봉됨으로써 연해주에서의 한국독립운동을 러시아 정부의 최고위층에 전파하는데 기여했다. 그가 대일 정보수집과 방첩분야에 한국인들을 적극 활용할 것을 건의한 것도 이토 저격 사건이 한국인들에게 조국해방의 희망을 심어주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엔켈 중령의 보고서는 2년간 이상설(李相高)과 정재관(鄭在寬)을 필두로 노령지역 한인들로부터 일본관련 정보수집에 도움을 받았던 경험에 근거하고 있었다. 주지하는바와 같이 한러간의 대일정보협력

61) РГИА Ф1276 Оп.6, 1910 г. Д. 514. Л3-6: Копия докладной записки, полученной в Главном Управлении Генерального Штаба.

의 원형은 러일개전과 더불어 주한러시아공사 파블로프(А.И.Павлов)가 조직했던 상하이정보국(Шанхайская агентура)이었다.⁶²⁾ 상하이정보국 한국분과의 핵심요원들은 관립러시아어학교 출신의 윤일병(尹一炳), 강한택(姜漢澤)을 포함한 9명의 국비 러시아유학생들이었다. 이들은 러일전쟁 기간 러시아군에 배속되어 일본군 정탐과 관련된 한러정보협력 임무를 수행한 바 있었다. 이들의 지휘관은 관립러시아어학교 교사를 역임했던 동부시베리아 포병여단 대위 출신의 비류코프(Н.Н.Бирюков)였다. 따라서 비류코프가 러일전쟁 이후 청진(淸津)주재 영사로 부임(1907)한 것은 러시아 군부가 주목했던 한국북부 특히 간도지역의 일본군에 대한 한러정보협력의 재건을 의미하였다.⁶³⁾

비류코프가 한국인 정보원들을 통해 획득한 정보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활동중이던 러시아 정보장교 엔켈 중령과 블라디보스토크 요새사령부의 부드베르그(Барон А.П.Будберг) 중령이 공유하였다. 부드베르그 중령과 이상설 및 한국 황실의 연결고리 역할은 현상건(玄尙健)이 수행했다. 현상건에게 소개장을 써주어 부드베르그와 연결시킨 역할은 러일전쟁 이후 상하이정보국을 재건했던 러시아재무성 상무관 고이에르(Лев Викторович Гойер)가 맡았다.⁶⁴⁾ 따라서 이들 모두의 관여와 역할의 집결체가 안중근의 하

62) 최덕규, 「고종황제의 독립운동과 러시아 상하이정보국(1904-1909)」, 『한국민족운동사연구』 81호, 2014. pp.43-84.

63) ГАРФ Ф88 Оп1 Д64 Л48-50 Письмо Плансона Извольскому, 14 мая 1907 г.; 1907년 5월 27일 상하이주재 상무관 고이에르가 외무상 이즈볼스키(А.П. Извольский)에게 “일본군이 두만강 연안에서 후퇴하고, 한반도 북부를 방대한 중립지대로 설정하는 것에 동의할 경우에만, 그들의 평화애호의 修辭에 대해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보고한 것은 간도문제가 제2차 러일전쟁을 거당한 일본측의 사전포석이라는 판단에서 비롯되었다. 왜냐하면 1907년 8월 18일 일본정부가 통감부 간도임시파출소 개설을 청국에 통보하고 8월 19일 초대파출소장 사이토를 회령에서 용정으로 파견하였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고이에르는 파블로프의 귀국(1905.11.30.)후 중단되었던 상하이정보국을 재가동하여 함경북도와 간도 그리고 블라디보스토크를 연결하는 정보망을 재건하였다.

얼빈 의거라 할 수 있다.⁶⁵⁾

그럼에도 육군상의 한국의병을 러시아 국방에 활용하자는 의견은 정책으로 구현되지 못했다. 스톨리핀 총리가 부정적인 입장을 취한 논거는 다음의 두 가지였다. 첫째, 러시아는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도모하고 있다는 것이다. 외몽골은 러시아, 한국은 일본의 특수이해 지역으로 상호인정한 제2차 러일협약 체결(1910.7.4.)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둘째, 러시아 극동지역으로 황인종의 유입을 방지한다는 정부결정이 있었다. 러일전쟁 이후 농업개혁을 주도한 스톨리핀은 시베리아와 원동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러시아 농민들의 이주를 장려했기 때문에 한국인들의 연해주 이주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던 것이다.⁶⁶⁾ 따라서 러일전쟁 이후 연해주 방위력 강화를 위한 육군성의 대부분의 정책들은 유럽중심의 4국협조체제의 틀 속에서 미완의 과제로 남게 되었다. 요컨대, 제정러시아를 회

64) РГИА. Ф. 560. Оп. 28. Д. 300. Лл. 379-387. Письмо Гойера Военному Агенту в Китае, 14 ноя. 1907 г.

65) 하얼빈의거는 블라디보스토크의 대동공보 사무실에서 비류코프의 제자이자 블라디보스토크 요새사령부의 통역관으로 활동했던 윤일병, 블라디보스토크 헌병대장을 역임하고 휴직중 대동공보사 발행인을 맡았던 미하일로프(К.П.Михайлов, 1872-1929)중령 그리고 안중근과 그의 동지들이 함께 모여 기획하였다. 러시아측 자료에 따르면, 미하일로프 중령은 러시아 귀족자제들이 다녔던 오를로프 중등군사학교(Орловский кадетский корпус, 1890)와 콘스탄티노프스크 사관학교(Константиновское военное училище)를 졸업(1892)하고 바르샤바 주둔 러시아근위대 장교로 복무했던 엘리트였다. 그는 1904년 러일전쟁 초기 블라디보스토크 헌병대장으로 부임하였다.[Сергей Волков, *Штаб-офицеры и генералы белых армий. Энциклопедический словарь участников Гражданской войны*, Центрполиграф, 2019. p.86.] 그를 대동하여 블라디보스토크에 온 통역장교는 러시아에서 유학중이던 관립러시아어학교 졸업생 윤일생(尹一炳)이었다. 미하일로프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일본군에 대한 정찰임무를 담당했을 당시, 윤일병 또한 비류코프의 지휘하에 일본군 동향에 대한 정보수집 임무를 수행하였다. 따라서 한국과 러시아는 러일전쟁 초기부터 대일정보협력의 경험을 축적하였다.

66) РГИА. Ф.1276. Оп.6. 1910 г. Д. 514. Лл.14-14об.: Секретное письмо П.Столыпина Унтербергеру, 8 июня 1910 г.

생시키는데 기여한 대리차관 제공국(프랑스, 영국)들은 러시아의 국방력이 유럽에 집중되기를 원했던 것이다.

결국 코코프초프의 극동시찰 이후에도 러시아의 극동의 방위상황은 개선되지 못했다. 이는 1911년 봄 수호믈리노프가 극동시찰을 다녀온 후, 육군성과 재무성간의 책임공방으로 재연되었다. 쟁점은 예산불용액이었다. 재무성은 블라디보스토크 방위력 증강을 위해 최선을 다해 재정 지원했다는 입장이었고, 육군성은 예산집행의 경직성 때문에 불용예산 소진의 곤란함을 지적했다. 이에 재무성은 육군성의 예산불용액은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반면 육군성은 회계연도 말까지 집행하지 못한 예산잔액을 사전에 예견하지 못한 다른 긴급 방위 소요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헌법 98조에 의거, 결국 잔액을 국고에 반납할 수밖에 없다는 예산집행상의 문제를 제기했다.

러일전쟁의 패배와 러시아 혁명 이후 러시아 사회 전반에 요구되었던 개혁요구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했던 부서는 육군성이었다. 육군성은 의회의 예산심사를 거쳐 확정된 예산을 해당 사업에만 지출하도록 규정한 헌법 96조의 경직된 해석에 따라 국방개혁에 필요한 사업예산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⁶⁷⁾ 여기에는 연해주와 블라디보스토크의 방위력 강화를 위한 예산의 미집행도 포함되어 있었다. 육군성은 예산요구액 가운데 국고에서 충당하지 못한 3년간(1907-1909) 부족분 1억 4천만 루블을 연리 5%의 국채를 발행하여 22억8천6백만 루블을 배정하였음에도 88백만 루블이 집행되지 못한 불용예산으로 남아있었다. 이는 불용 예산을 위해 연리 5%의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예산낭비의 전형적인 사례가 되었다.

이에 쟁점은 다시 헌법 96조의 해석으로 옮겨갔다. 육군성은 이

67) РГИА, Ф.560, Оп.28, Д.422, Л.13-32. По некоторым вопросам Всеподанныйшего доклада Министра Финансов 1909 года.

조항의 본연의 목적이 불용 예산잔액을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방위 소요에 활용할 가능성을 제거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반면 재무성은 헌법 96조를 육군성이 예산의 자유로운 처분권으로 해석하는 것을 지지할 수 없고 그럴 권리도 없음을 밝혔다. 그 결과 러일전쟁 종식 직후부터 제기되었던 극동의 방위력 재건과 블라디보스토크 요새화 작업은 제1차 세계대전까지 미완의 상태로 남아있게 되었다.

5. 결론

상술한 바와 같이 러일전쟁 이후 러시아극동의 방위력 재건 사업은 차르정부의 대외정책 기조변화와 연동되었다는 특징이 있었다. 선발제국주의 국가인 영국과 프랑스는 유럽의 패권에 도전하는 신흥제국 독일을 견제하기 위해 재정위기에 처해있던 차르정부에 대규모 차관을 제공함으로써 러시아의 유럽복귀를 도모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러일전쟁 이후 차르정부는 유럽우선주의를 추구함으로써 발트함대를 러시아함대 복원의 1순위로 설정했던 반면 태평양함대는 재건되지 못했다. 그 결과 극동의 방위수요는 재정부족으로 인해 미완의 상태에 머물게 되었다.

차르정부는 러일전쟁 이후 유럽차관에 의존한 재정을 운용함으로써 극동의 방위력 재건사업은 유럽러시아에 비해 그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뒤쳐졌다. 그 대안으로 차르정부는 극동의 안전을 우호적인 대일관계 수립을 통해 해결하고자 했던 반면 한국의 독립운동가들은 연해주의 블라디보스토크를 거점으로 항일투쟁을 전개하고자 하였다. 이에 러시아에서의 한국독립운동은 러일협력을 중시한 차르정부의 대외정책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 그 결과 러시아는 러일개전

시기부터 축적해온 대일정보협력의 경험이 있었음에도 하얼빈 의거를 단행한 안중근의 재판관할권을 일본에 이관하고 말았다.

이에 각장별 주요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1장 “러시아의 재정위기와 대외정책의 방향전환”에서는 차르정부가 러일전쟁의 패전과 혁명의 혼란 속에서 1906년 프랑스와 영국의 대러차관을 제공받음으로써 대외정책의 무게중심이 기존의 극동에서 유럽으로 이동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1906년 차관은 프랑스의 중재로 영국과 러시아가 관계개선을 모색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함으로써 영러 양국은 아시아 대륙 전반을 둘러싼 그레이트 게임을 종식시킬 수 있었다. 그 결과 1907년에 체결된 영러협상(Anglo-Russian Entente)을 매개로 러일협상과 불일(佛日)협상이 성립됨으로써 4개국 양탕트(Quadruple Entente)체제가 구축되었다. 그 결과 러시아와 일본이 영국과 프랑스가 원했던 대립관계에서 벗어나 협력을 강화한다면, 露領지역 한인독립운동에 대한 러시아 당국의 입장 역시 변모될 것이 틀림없었다.

제2장 “코코프초프의 극동시찰과 안중근의 하얼빈의거”에서는 전후 러시아의 경제가 유럽차관에 구조적으로 종속됨으로써 그것이 러시아의 극동방위력 재건사업과 대일관계에 끼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러시아는 전후 유럽중심의 대외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극동의 안전은 방위력 재건보다는 대일우호관계 수립에 초점을 맞췄다. 따라서 코코프초프가 하얼빈의거 직후 안중근의 재판관할권을 일본에 이관하도록 지시한 것도 러일협력 관계 수립을 중시했기 때문이었다. 그 결과 러시아 사법부는 러시아의 치외법권이 인정되는 하얼빈에서 안중근 의거를 수사할 경찰력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수사자료 일체를 일본에 넘겨주어야 했다.

제3장 “러시아의 대일접근과 한러정보협력 구상의 좌절”에서는 안중근의 하얼빈의거가 러일간의 분쟁으로 비화하지 않고 평화적으

로 해결되는 과정과 그것이 러시아에서의 한국독립운동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살펴보았다. 러시아황제 니콜라이 2세가 일본천황에게 애도전문(1909.10.27.)을 보내면서 안중근의 하얼빈의거로 위기에 봉착했던 러일관계는 회복되기 시작했다. 이에 극동지역 군비강화를 위한 예산획득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한 러시아 육군성은 연해주 방위를 위해 한국독립의군을 활용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그럼에도 대일정보수집과 방첩분야에 노력에서 활동하던 한국인 요원들을 활용한다는 육군상의 의견은 정책으로 실천되지 못했다. 러일관계를 훼손할 수 있다는 반대에 부딪혔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러일전쟁 이후 연해주 방위력 강화를 위한 육군성의 정책들은 제1차 세계대전까지 미완의 상태로 남아있게 되었다.

그 결과 러시아의 극동지역과 블라디보스토크의 방위는 대일 외교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러일전쟁 이후 노령에서의 한국독립운동을 제약하는 요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볼셰비키 혁명 이후 일본군의 시베리아 출병(1918-1922)의 동기가 되었다. 차르정부는 제3차러일협약체결(1912)을 통하여 일본과 동맹수준으로 관계를 강화하면서 극동의 방위에 대한 일본의 협력을 기대했다. 그럼에도 일본은 차르정부의 비밀외교를 전면 부정한 볼셰비키 정권이 수립되자, 거의 무방비상태에 있던 극동과 시베리아 점령을 단행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러시아 육군상이 제안했던(1910)바와 같이, 한인빨치산부대들이 소비에트 군대와 시베리아에서 일본군을 축출하기 위해 협력한 역사는 별도의 연구에서 다루고자 한다.

아울러 본 연구를 통해 안중근의 하얼빈의거는 러일전쟁 이래 축적되어온 한러정보협력의 산물이었음을 밝힐 수 있었다. 이는 대동공보사에서 하얼빈의거를 주도적으로 기획(1909.10.10.)했던 미하일로프(К. П. М и х а й л о в) 중령이 러일전쟁 초기 블라디보스토크의 헌병 대장으로 부임하여 대일정보업무를 담당하였던 정보장교

였기 때문이었다. 그는 1904년 러시아에서 유학중이던 관립노어학교 졸업생 윤일병(尹一炳)을 통역장교로 블라디보스토크에 데리고 왔다. 윤일병을 포함한 관립노어학교 출신 러시아 유학생 9명은 러일 전쟁 기간 러시아정보당국과 대일정보수집을 위한 협력의 경험을 축적하였다. 따라서 하얼빈의거 계획은 양국 정보관계자들 사이에서 사전에 공유되었던 사인이었다.

다만 하얼빈의거는 차르가 천황에게 애도의 조전을 보냄으로써 정치적으로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 배후와 책임 소재를 가리는 조사는 진척되지 못했다. 따라서 하얼빈의거 계획에 대해 러시아 당국이 어느 선까지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고, 어느 선까지 관여했는지 밝히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원고투고일 : 2021. 7. 2 심사수정일 : 2021. 8. 17, 게재확정일 : 2021. 8. 25.)

주제어 : 러일전쟁, 유럽차관, 발트함대 복원, 코코프초프, 극동시찰,
안중근, 하얼빈의거, 한러정보협력, 러시아에서의 한국독립운동

〈참고문헌〉

1. 자 료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09. Japanese-Chinese Agreement concerning Mines and Railways in Manchuria, Россий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Исторический Архив: РГИА Ф.560. Оп. 28 Д.416; 417; 418; 420; 421; 422; 423; 424, Ф.1276 Оп.6, 1910 г. Д. 514.
К переговорам Коковцова о займе, Красный архив, Т.3(10), 1925

2. 도서 및 논문

조광, 「안중근에 관한 최근 연구의 현황과 과제(2010~2019)」,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재조명 III-안중근의 동양평화론』, (동북아역사재단, 2020).

최덕규, 「고종황제의 독립운동과 러시아 상하이정보국(1904-190)」, 『한민족운동사연구』 81호, 2014.

<http://uci.or.kr//G704-000827.2014..81.003>

麻田雅文, “日露關係から見た伊藤博文暗殺-兩國關係の危機と克服”, 『東北アジア研究』 16號, 2012.

Edward E.W. The Japanese Alliance and the Anglo-French Agreement of 1904, *History*, Vol.42, No 144, 1957.

John C.G.Röhl, Wilhelm II Into the Abyss of War and Exile, 1900-1941, *Cambridge Uni. Press*, 2014.

White, John A. Transition to global rivalry: alliance diplomacy and the Quadruple Entente, 1895-1907,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5.

- Masato Matsui, The Russo-Japanese Agreement of 1907: Its Causes and the Progress of Negotiations, *Modern Asian Studies*, Vol.6, No. 1, 1972.
- Crisp, Olga, The Russian Liberals and the 1906 Anglo-French Loan to Russia, *The Slavonic and East European Review*, Vol.39, No. 93, 1961.
- William J. Philpott, The making of the Military Entente, 1904-1914: France, the British Army, and the prospect of War, *The English Historical Review*, Vol. 128, No. 534, 2013.
- А в и л о в Р.С По Транссибу на Восток Визит Минстр Финансов В.Н.Коковцова в Приамурский Военный округ, Вестник Томского гос. университета №405, 2016.
- Коковцов, В.Н Из Моего Прошлого: Воспоминания 1903-1919, Т.1, Париж 1933.
- Кузенцова О.Н Дальний Восток и развитие русско-французских отношений в 1902-1905 гг., Вопросы истории. № 3, 2009.
- Щацкило К.Ф. От Портмутского мира к Первой мировой войне, М. 2000.

(Abstract)

Russia's Far East defense plan after the Russo-Japanese war and a policy confrontation between minister of Finance and minister of the Army

— Focusing on An Jung-geun's patriotic deed at Harbin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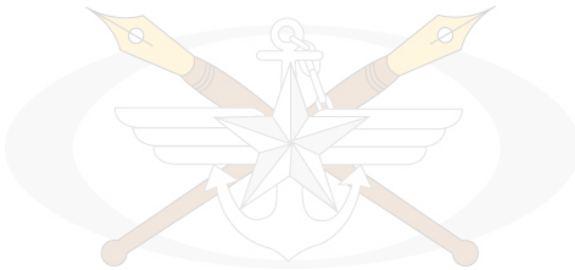
Choi, Deok-kyoo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s of changes in European international relations after the Russo-Japanese War on the defense plan of the Russian Far East and the Korean independence movements in the Primorsky province. It was characteristic that the Russian Far East's defense reconstruction project after the Russo-Japanese war was linked with a change in the Tsar government's foreign policy that was the first priority of European region. The Tsar government's focus of foreign policy shifted from Far East to Europe caused by offering large loans to the Russia from Britain and France, which tried to keep Germany in check against European imperialistic hegemony. Thus, the Tsar government set the Baltic Fleet in reconstructing the Russian Navy by pursuing European priorities after the Russo-Japanese war, while the Pacific Fleet remained not rebuilt. As a result, The Project for defence enhancement in the Russian Far East remained unfinished till the outbreak of World War I.

After the Russo-Japanese War, Tsar government's defense of the Far East had to rely on diplomacy with Japan. This policy not only limited the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in Russia, but also motivated the Japanese intervention of Siberia (1918-1922) after the Bolshevik Revolution. Therefore, the plan (1910) of the Russian minister of Army to cooperate with Korean independent movements troops to defend the Maritime Province led to the history of Korean partisan units cooperating with Soviet army

to oust Japanese troops from Siberia.

Keywords : V.N. Kokovtsov, Ahn Jung-geun, Russian loan of 1906, fortification of Vladivostok, Russo-Korean intelligence cooperation. Russo-Japanese agreement of 1910.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1, No. 120, pp.173-224
<https://doi.org/10.29212/mh.2021..120.173>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조선후기 충청도 안흥첨사의 위상과 재임실태

문광균*

- 
1. 머리말
 2. 안흥진 연혁과 안흥첨사의 위상 변화
 3. 안흥첨사의 재임실태와 특징
 4. 맺음말

1. 머리말

지방통치의 중요성은 고금을 막론하고 간과된 적이 없다. 조선시대 지방통치는 각 도의 관찰사를 중심으로 군현의 수령이 담당하였다. 목사, 부사, 군수, 현령, 현감 등으로 분류되는 목민관은 수령칠사라는 본원적 임무를 부여받아 백성을 실질적으로 통치하였다. 전국을 팔도로 나누어 각 도의 최고통치자를 파견한

*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선임연구원

관찰사제와 군현제는 중앙의 통치구조와 연계되어 조선왕조의 지배 질서를 구축하였다. 이러한 통치체제 아래 조선왕조는 500년이 넘도록 존속하였다.

이런 까닭에 조선시대 지방통치는 많은 연구자의 관심 대상이었고, 그 결과 방대한 양의 연구결과가 축적되었다. 관찰사제의 성립과정과 지방관의 통치행정과 업무 기능 등 기본적인 지방통치제도를 밝힌 연구¹⁾를 비롯하여 향촌사회의 내부 지배구조의 변화²⁾와 이서들의 존재 형태 등을 밝힌 굵직한 연구³⁾들이 선행되었다. 또한 수령의 업무지침서라 할 수 있는 牧民書에 대한 연구도 꾸준히 진행되었고,⁴⁾ 군정 운영, 형정, 진휼 등 수령의 기본적인 업무⁵⁾와 함께 수령의 선정 여부를 밝히거나⁶⁾ 19세기 수령과 이탈에 의한 수탈체제를 비판하는 연구⁷⁾ 등이 제출되었다. 한편 사례연구로서 관찰사와 주요 수령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재임실태⁸⁾나 그들이 추진한 시책⁹⁾ 등도 연구되었다. 이와 같이 조선

1) 장병인, 1978, 「朝鮮初期의 觀察使」, 『한국사론』 4; 이수진, 1989, 『조선시대 지방행정사』, 민음사; 이준희, 1990, 『朝鮮時代 地方行政制度 研究』, 일지사; 이희권, 1999, 『朝鮮後期 地方統治行政 研究』, 집문당.

2) 고석규, 1998, 『19세기 조선의 향촌사회 연구-지배와 저항의 구조』, 서울대출판부; 김인걸, 2017, 『조선후기 향촌사회 지배구조의 변동』, 경인문화사.

3) 이훈상, 1990, 『朝鮮後期の 郷吏』, 일조각; 권기중, 2010, 『조선시대 향리와 지방사회』, 경인문화사.

4) 김선경, 2010, 「조선의 목민학 전통과 牧民心書」, 『조선시대사학보』 52; 김용흠, 2010, 「18세기 “牧民書”와 지방통치-牧民政을 중심으로-」, 『한국사상사학』 35.

5) 구완희, 1992, 「조선후기 軍役釐整의 方向과 守令」, 『조선사연구』 1; 심재우, 1998, 「조선후기 牧民書의 편찬과 守令의 刑政운영」, 『규장각』 21; 문용식, 1999, 「조선후기 수령자비곡의 설치」, 『조선시대사학보』 9.

6) 임용한, 2007, 「조선 후기 수령 선정비의 분석-안성·죽산·과천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사학보』 26; 구완희, 1991, 「朝鮮後期の 收取行政과 守令의 ‘要譽’ : 17세기 중엽에서 18세기 말까지를 중심으로」, 『복현사림』 14.

7) 권기중, 2013, 「조선후기 수령의 업무 능력과 부세 수취의 자율권」, 『호서사학회』 67; 2014, 「조선후기 수령의 지방재정 운영과公私관념-경상도 암행어사 서계를 중심으로-」, 『사림』 48.

8) 김양수·김양식, 2004, 「조선후기 충청감사와 청주수령의 출신성분과 재임실태」,

시대 지방통치와 관련된 연구는 연구사정리 그 자체가 힘들 정도로 많은 연구성과가 제출된 상태이다.

하지만 조선시대 지방통치가 관찰사와 수령들에 의해 이루어진 것만은 아니다. 국왕으로부터 지역 군사방어의 임무를 부여받았지만, 일정한 영역 내에서 독자적으로 백성들을 지배했던 병사, 수사, 변장이 바로 그들이다. 첨사, 만호라 불리는 변장들은 지리적으로 특정 군현 내부에 주둔하였지만, 수령과 별개로 鎭을 형성하여 독자적으로 鎭民을 지배하였다. 즉, 근대적 관점에서 보면 무관 장수에게는 군사적 기능과 역할만 주어졌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이들도 감사, 수령과 별도로 독자적인 통치영역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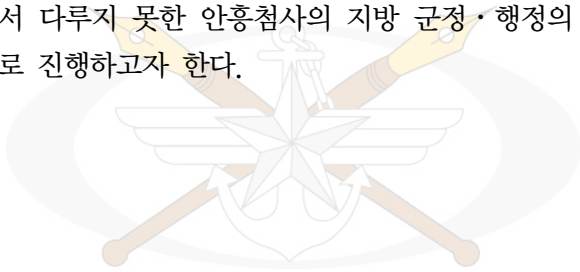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본 연구에서는 충청도 태안에 巨鎭 지휘관으로 존재했던 안흥첨절제사(이하 안흥첨사)를 살펴보고자 한다. 충청도 안흥은 서해 최고 관방지이자 수로 교통의 핵심지로 고려시대 이후 중앙정부로부터 주목받던 곳이다. 안흥 지역 연구가 꾸준히 축적된 것도 안흥진이 지닌 위상 때문이다.¹⁰⁾ 앞

『한국사연구』 125; 이선희, 2009, 「조선시대 8도 관찰사의 재임실태」, 『한국학논총』 31; 박정민, 2018, 「한경도 『관찰사선생안』의 명단 검토와 재임 실태」, 『전북사학』 52.

- 9) 조원래, 1985, 「18世紀初 順天府의 地方行政動態: 府使 黃翼再의 改善行政事例」, 『남도문화연구』 1; 노혜경, 2004, 「안정복과 황윤석의 대민정책 비교-목천현을 중심으로」, 『한국사상사학』; 2005, 「18세기 후반 수령-향리의 갈등양상-木川縣 鄉吏 非理 사건을 중심으로-」, 『고문서연구』 26; 김경숙, 2013, 「안정복의 民願政策과 官民疏通」, 『고문서연구』 43; 문광균, 2016, 「순암 안정복의 잡역 운영론과 그 실제-충청도 목천현감 재임 시기(1776~1779)를 중심으로-」, 『성호학보』 18; 2019, 「18세기 중엽 전라도 臨陂縣의 부세운영과 縣令 趙社命의 시책」, 『한국사연구』 184.
- 10) 서정석, 1999, 「泰安 安興鎭城에 대한 一考察」, 『역사와 역사교육』 3·4; 김경옥, 2008, 「조선후기 태안 안흥진의 설치와 성안마을의 공간구조」 『역사학연구』 32; 탁태운, 2011, 「朝鮮後期 安興鎭의 設置와 軍餉 運用」,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서태원, 2013, 「朝鮮後期 忠淸道 安興鎭의 設置와 變遷」, 『역사와 실학』 50; 2013, 「조선후기 충청도 安興鎭의 구조와 기능」, 『역사와 실학』 51; 진호신, 2019, 「태안 안흥량(安興梁) 일대 역사유적의 현황과 활용방안」, 『해양문화재』 12; 문경호, 2020, 「태안 안흥진성의 역사적 위상과 가치」, 『해양문화재』 130; 박

서 언급한 문제의식, 즉 군사기관의 지방통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안흥진에 대한 정부의 정책, 안흥첨사의 위상과 재임 실태, 안흥첨사의 군정·행정의 실상 등의 연구가 다층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지방 군사지휘관의 임명과 지방통치의 실상에 대하여 천착한 연구를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군사기관의 지방통치에 대한 선행연구로 정부의 對안흥정책과 안흥첨사의 재임실태를 중점적으로 살피고자 한다. 비록 안흥진이 조선왕조의 군사진을 대별한다고 할 수 없지만, 이 연구가 그간 관심을 받지 못했던 군사시설의 지방통치 일면을 밝히는 사례연구, 기초연구로서 길잡이가 되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본고에서 다루지 못한 안흥첨사의 지방 군정·행정의 실상은 후속 연구¹¹⁾로 진행하고자 한다.



범, 2020, 「17~18세기 안흥진 운영의 제도화 과정과 한계」, 『해양문화재』 13; 유현재, 2020, 「태안 안흥진성의 교육적 활용」, 『중등교육연구』, 경성대학교 교육연구원; 심정보, 2020, 「안흥진성의 축조와 이설」, 『문물연구』 38; 서정석, 2021, 「안흥진성의 축조 시기에 대한 검토」, 『호서고고학』 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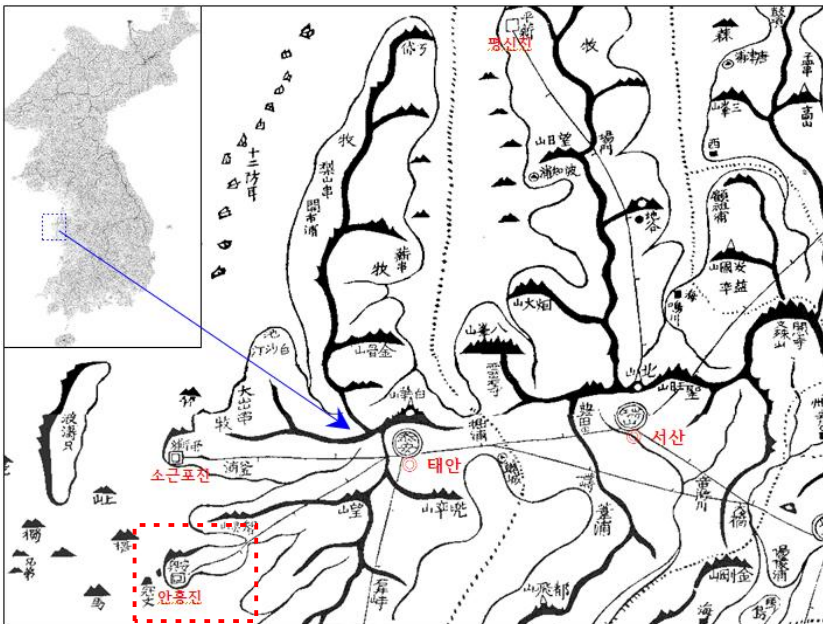
- 11) 성균관대 존경각(청구기호 B06B-0071)에는 안흥첨사의 지방행정 실상을 살필 수 있는 『牒報選集』이 존재한다. 이 자료는 1848~1849년 안흥첨사로 재임했던 徐典輔가 작성한 공문서이다. 이 자료에는 안흥첨사가 군향곡 관리, 진상물 조정, 군정 수팔 등 안흥진에 부여된 업무를 추진하면서 진내 마을이나 인근 고을 수령에게 보낸 문서들이 수록되어 있다. 19세기 중엽 안흥진의 운영 실상을 담고 있는 자료로써 그 사료적 가치가 매우 크다.

2. 안흥진 연혁과 안흥첨사의 위상 변화

가. 안흥진 연혁¹²⁾

태안 안흥진은 고대 이래로 해로 교통의 중심지였다. 고려시대에는 해로를 통해 입국하는 송 사신을 접대하기 위한 객관들이 설치되었는데, 安興亭 역시 그 중 하나였다.

〈그림 1〉 조선시대 충청도 안흥진의 지리적 위치



12) 안흥진의 역사와 변천과정에 대해서는 서태원, 2013, 앞의 논문, 『역사와 실학』 50에 자세하다. 여기서는 그의 연구내용을 기반으로 하되 필요한 부분을 추가로 서술했음을 미리 밝혀둔다.

특히 성종대 조운제도의 성립으로 충청, 전라, 경상도의 세곡이 선박을 통해 개경으로 상납되기 시작하면서 안흥지역은 조운선이 반드시 거쳐야 할 핵심 경유지가 되었고, 이는 조선시대로 이어졌다. 또한 안흥지역은 고려 말 왜구의 침입이 성행하던 곳으로 해양방어의 요충지였다. 1352년(공민왕 1)에 內府少尹 金暉南이 전선을 이끌고 왜적을 물리친 곳도 이곳이었다.¹³⁾

이러한 안흥지역의 지리적 중요성으로 말미암아 태안반도 서쪽 끝자락에는 安行梁萬戶鎭이 설치되었다. 안행량만호진이 설치된 시기는 명확히 알 수 없다. 다만 1404년(태종 4) 안행량만호 李生年이 왜적과의 전투에서 패전했다는 사실을 통해 볼 때 조심스럽지만 고려 말부터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조선초기 안행량만호진의 존속 시기는 길지 않았다. 『세종실록지리지』에 따르면 충청도에는 水軍都安撫處置使 아래 7곳에 만호진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안행량만호진은 이미 헐려진 상태였다. 그 결과 조선전기 안흥지역은 소근진의 병사가 나누어 지키는 分防處의 역할만 담당하였다.

소근진의 분방처로 존재하던 안흥량수는 임진왜란 직후 만호진으로 복설되었다. 안흥만호진의 복설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이순신의 문집인 『이충무공전서』와 『선조실록』을 통해 그 대강을 짐작할 수 있다. 먼저 『이충무공전서』를 보면 1594년(선조 27) 3월 충청수사 구사직이 충청수영 전선 3척과 함께 결성대장 서복천, 소근포첨사 박윤, 마량첨사 강응호, 서천포만호 소희익, 비인대장 안훈, 안흥대장 최대관, 서천대장 김홍 등이 각각 판옥선 1척을 거느리고 삼도수군통제사 이순신 휘하에 집결한 적이 있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사실은 다른 진과 달리 안흥의 경우 代將이 전선을 지휘하였다는 점이다. 代將은 만호나 첨사 등의 수군지휘관이 없는

13) 『고려사절요』 권26, 공민왕 원년 3월.

곳에 배치된 전선에 탑승하여 수군을 지휘하는 사람이다. 이를 통해 보면 1594년(선조 27) 3월까지 안흥은 만호진으로 복설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선조실록』의 1595년(선조 28) 6월 6일 기사에는 안흥만호 許售가 토지가 비옥한 지령산 근처를 개간하였으나 힘이 부족하고 그 일에 전념하지도 않아 크게 경작하지 못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즉, 1595년 6월 이전에 안흥만호진이 이미 복설되어 안흥만호가 파견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선조실록』의 허수 관련 기사에서 주목되는 점은 둔전이다. 둔전은 영이나 진 등 군사기관을 설치할 때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토지이다. 이러한 정황을 고려하면 허수는 신설된 안흥만호진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령산 인근에 둔전을 만들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두 사료를 종합해 볼 때 안흥만호진은 1594~1595년 사이에 복설되었다고 생각된다.

만호진이 설치된 이후 안흥의 위상은 점차 높아졌다. 임진왜란 발발 이후 명군의 파병과 훈련도감 창설 이후 휴전상태가 고착화되자 조선정부는 수많은 군량을 필요로 했다. 이때 전국 각지의 둔전이 조성되었는데,¹⁴⁾ 1595년(선조 28) 안흥만호 허수도 지령산 일대에 둔전을 만들어 군량미를 확보한 다음 선박을 통해 조달하였다.¹⁵⁾ 조선 수군이 칠천량전투에서 대패한 직후에는 일본 수군의 침공을 막아낼 방어기지로 안흥량과 견내량을 지목했고, 선조를 비롯한 일부 관료들은 안흥량에 전선을 모아 일진을 만들고자 했다.¹⁶⁾ 그리고 선조 말엽 서산의 파지도진과

14) 송양섭, 2006, 『조선후기 둔전 연구』, 경인문화사, 21~31쪽 참조.

15) 『선조실록』 권64, 선조 28년 6월 6일(정미); 『선조실록』 권85, 선조 30년 2월 25일(병술).

16) 『선조실록』 권90, 선조 30년 7월 29일(무오); 『선조실록』 권91, 선조 30년 8월 15일(계유).

당진의 당진포진이 폐지되면서 안흥진 군사적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었다. 그 결과 1609년(광해군 1) 안흥만호진은 巨鎭인 안흥첨절제사진(이하 안흥첨사진)으로 승격되었다.¹⁷⁾

1636년(인조 14)에 발발한 병자호란과 이후 효종의 즉위는 안흥첨사진에 큰 영향을 주었다. 전쟁 패배 이후 조정에서는 유사시 국왕이 피난갈 수 있는 보장처를 만들어 방어체계를 강화하고자 했는데, 그 핵심지가 강화도였다. 강화도의 전략적 중요성이 부상함에 따라 이곳을 중심으로 서해안 방어체계를 개편하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었는데 인조대 奇宗獻과 李敬輿가 대표적인 인물들이었다. 강화도는 한성에서 가까울 뿐만 아니라 물산이 풍부하고, 경기, 황해, 충청, 전라 등의 수군진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외적 방어에 유리한 곳이었다.¹⁸⁾

강화도의 군사적 중요성은 일찍부터 인정되어 인조대 경기수영을 화랑에서 교동으로 이전하고 교동에 삼도통어영을 설치하였으며, 효종대에는 청의 감시가 상대적으로 덜한 경기, 충청도, 전라도를 잇는 서남부 해안 일대에 강화도를 후원하는 거점을 두어 보장처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했다. 이 과정에서 1653년(효종 4) 남양부에 있던 영종만호진을 자연도로 이전하였고, 같은 해 태안반도에 있던 안흥첨사진을 신진도로 옮기고, 기존의 진터에 육군을 배치하고 안흥산성을 개축하여 군항곡을 비축하였다. 1655년(효종 6)에는 전라도 격포도 강화도를 후원할 거점으로 인정되어 성을 쌓아 유사시 감사가 수성하는 방안이 거론되기도 했다.¹⁹⁾

17) 『호서읍지』, 「태안」.

18) 송양섭, 2002, 「17세기 江華島 방어체제의 확립과 鎭撫營의 창설」, 『한국사학보』 13, 222~224쪽

19) 육군본부, 2012, 「제4장 북벌론과 군사력 강화」, 『한국군사사』 7, 경인문화사, 391~399쪽

안홍첨사진의 신진도 이전은 李厚源에 의해 주도되었다.²⁰⁾ 1652년(효종 3) 9월 그는 강화를 방비할 방안으로 남쪽에 위치한 충청도 안홍에 군량을 비축하고, 첨사보다 지위가 높은 무신을 차정하자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안이 효종의 승인을 받지 못하자 이듬해 그는 다시 경기의 선비 金石堅의 상소를 인용하며 재차 기존 첨사진과 달리 충청감영의 행영을 만들고자 했다. 그의 의견에 대신들이 동의하면서 1653년(효종 4) 3월 새로운 안홍진, 즉 新鎭이 설치되었다. 신진은 바다를 두고 안홍산성을 마주보고 있는 서쪽 섬으로 본래 花亭島로 불렸다.²¹⁾ 이 섬은 선조의 부마이자 영의정 申欽의 아들인 申翊聖[東陽尉]가 절수 받은 곳으로 기존 안홍진에서 가까울 뿐만 아니라 높은 곳에서 적의 형세를 살펴보는데 이로운 지형이었다.

화정도에 신진이 설치되자, 이후원은 이곳에 산성을 쌓고 유사시 필요한 군향곡을 비축하고자 했다. 비록 舊鎭에 성이 있었지만 임진왜란을 겪은 후 이미 제 기능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퇴락한 상태였다. 이를 위해 이후원은 직접 1655년(효종 6) 4월 안홍에 도착하여 신진과 구진 두 곳의 형세를 살펴보았다. 그런데 5월 효종을 만난 자리에서 그는 신진이 아닌 구진에 성을 쌓아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신진은 물을 얻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축성시 많은 인력과 물력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1655년(효종 6) 5월 안홍진성 수축공사가 승인되자, 충청감사 權梶의 지휘아래 안홍첨사 李枝遠과 소근첨사 黃士誠이 축성을 감독하였다. 안홍산성 수축공사는 1656년(효종 7) 10월에 마무리되었다.

안홍산성 설치 이후 안홍진의 지휘체계에 문제가 발생했다.

20) 이하 안홍첨사진의 신진 설치와 안홍진성 축성, 방어영과 충청수영 행영의 변천 과정은 서태원의 연구를 기반으로 작성했음을 미리 밝혀둔다(2013, 『朝鮮後期 忠淸道安興鎭의 設置와 變遷』, 『역사와 실학』 50).

21) 『대동지지』 권5, 「충청도」, 태안.

안흥첨사가 머무르는 주둔지[新鎭]와 유사시 방어해야 하는 산성[舊鎭]의 위치가 달랐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충청감사가 自辟으로 선발한 中軍을 守城將으로 삼아 안흥산성을 지키도록 하고, 안흥첨사는 신진에 설치된 안흥진에 주둔토록 하였다. 그 결과 안흥진과 안흥산성은 각각 수군의 안흥첨사와 감영중군의 지휘아래 이원적으로 운영되었다.

그러나 안흥첨사가 신진에서 머무는 일은 그리 쉽지 않았다. 섬 안에서 물을 구하기 어려웠을 뿐 아니라 수군들이 섬을 왕래하기가 불편했기 때문이었다. 신진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형성되자 1669년(현종 10) 鄭太和, 許積, 沈之源 등 대신들은 신진을 폐기하고, 첨사가 안흥산성으로 들어가 방어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그리고 안흥산성을 주관하던 감영중군을 혁파하고, 그가 담당하던 군항곡 관리는 태안군수가 담당하도록 결정하였다. 이로써 결국 신진은 설치된 지 16년 만에 그 기능을 상실하였다.

17세기 후반 이후 안흥진은 안흥첨사가 지휘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안흥진에 부여된 해방, 조운호송, 산성방어, 군항곡 관할 등의 업무로 인해 안흥진은 총 16차례의 변화가 있었다. 그 중 안흥산성에 안흥첨사가 주둔하기 시작한 1669년(현종 10) 이후 한말 지방군제가 개편될 때까지 11차례 바뀌었다.

그 중 눈에 띄는 것은 防禦營의 설치이다. 방어영은 종2품 방어사가 파견된 군사기관이다. 방어사는 중국 당나라의 제도로 우리나라에서는 고려 문종대 정착된 제도이다. 고려시대 양계뿐 아니라 남방의 큰 고을에도 방어사가 설치되었으나, 조선시대 들어 오면서 폐지되었다. 1510년(중종 5) 삼포왜란 때 다시 설치되었다가 임진왜란 전후 경기의 수원, 광주, 장단(이후 파주), 강원 의 회양(이후 철원), 평안도의 강계, 삼화, 함경도의 길주(이후 성진) 등지에 병마방어영이 설치되었고, 평안도 선천과 삼화, 황

해도의 소강에도 수군방어영이 설치되었다.²²⁾

〈표 1〉 조선시대 안흥진의 변천과정

시기	진명	지휘관	소재지	비고
1404년(태종 4) 이전	안행랑만호진	안행랑만호	舊鎭	
1454년(단종 2) 이전	폐진	-	-	
1594년(선조 25)	안흥랑만호진	안흥랑만호	舊鎭	안흥만호진 복설 추정
1609년(광해 1)	안흥랑첨사진	안흥랑첨사	舊鎭	
1653년(효종 4)	안흥랑첨사진	안흥랑첨사	新鎭	감영종군 구진 주둔
1669년(현종 10)	안흥랑첨사진	안흥랑첨사	舊鎭	
1675년(숙종 1)	안흥방어영	태안군수겸 안흥방어사	邑城	안흥진첨사 신진 주둔
1680년(숙종 6)	안흥랑첨사	안흥랑첨사	舊鎭	
1706년(숙종 32)	태안방어영	태안부사겸 방어사	邑城	안흥진첨사 신진 주둔
1711년(숙종 37)	안흥방어영	안흥랑첨사겸 수군방어사	舊鎭	
1712년(숙종 38)	안흥랑첨사진	안흥랑첨사	舊鎭	
1779년(정조 3)	충청수영 행영	충청수사	保寧	안흥진첨사 폐지
1785년(정조 9)	충청수영 행영	충청우후	舊鎭	안흥진첨사 폐지
1790년(정조 14)	안흥랑첨사진	안흥랑첨사	舊鎭	
1866년(고종 3)	태안방어영	태안부사겸 호서수군방어사	邑城	안흥진첨사 폐지
1885년(고종 22)	안흥랑첨사진	안흥랑첨사	舊鎭	
1895년(고종 32)	폐진	-	-	

22) 차문섭, 1990, 『朝鮮後期 兵馬防禦營 設置考』, 『국사관논총』 17.

안흥첨사진이 방어영으로 승격된 횡수는 총 4회로 시기별 해양방어를 중시해야 한다는 입론이 국왕의 의도와 부합하면서 방어영으로 승격되었다. 그 중 3회는 태안군수[태안부사]가, 나머지 1회는 안흥첨사가 방어사를 겸임하면서 안흥진과 안흥산성을 관할하였다. 그런데 태안군수가 방어사를 겸임한다고 하더라도 1675년(숙종 1)·1706년(숙종 32)과 1866년(고종 3)의 사례가 다르다. 1675년(숙종 1)·1706년(숙종 32) 시기에는 태안의 수령이 방어사를 겸임해도 안흥첨사진이 존치되어 신진도에 주둔했으나, 1866년(고종 3) 시기에는 안흥첨사진이 혁파되었다.

4차례 방어영이 설치되었음에도 營衛門으로서의 기간은 상당히 짧다. 이는 방어사와 수사의 불편한 관계에서 비롯되었다. 안흥첨사진은 본래 충청수사의 지휘를 받아야 했으나, 방어영으로 승격되면서부터 독립적인 지휘권을 부여받았다.²³⁾ 방어사는 종2품이었으므로 감사와 병사의 품계와 같았다. 다만 감사는 巡察使의 직임을 띠고 있으므로 상관으로 대우해야 했다. 수사는 정3품 당상관으로 비록 방어사에 비해 품계는 낮지만, 통상 방어사를 역임한 이후에 병사와 수사 등 閫帥의 직임에 추천될 수 있었으므로 그 지위가 결코 방어사보다 낮지 않았다.²⁴⁾ 그러므로 방어영 설치 이후 방어사와 수사 사이에 불편한 관계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1712년(숙종 38) 대사헌 李晩成의 상소에서 알 수 있다.

한 번 安興의 名號를 (방어영으로) 올린 후부터 水營에서는 반드시 저지하고자 하는데, 그 까닭이 있습니다. 대저 屬邑이 나누어지면 재원을 판출할 곳이 많지 않고, 軍卒이 적어지면 거두는

23) 이하 방어사와 감·병·수사의 관계, 방어영과 행영시기에 발생하는 제문제에 대한 서술은 서태원, 2013, 앞의 논문, 130~144쪽에 자세하므로 여기서는 생략한다.

24) 『속대전』, 「병진」, 외관직, ‘節度使 以曾經邊地守令及防禦使者 通擬’.

것이 또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 저 帥臣(수사)이 매우 싫어하는 바가 단지 권한이 나누어지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 가을에 거만스레 보고를 올린 것입니다.²⁵⁾

방어사는 수사와 동등한 지휘권을 보장받을 뿐 아니라 수영의 속읍이었던 군현과 수군의 일부를 이속받았다. 수사는 수영의 규모와 재원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여 방어영 설치에 매우 비판적이었다. 이런 불편한 관계는 태안현감 사이에서도 연출되었다. 방어영 설치 이전에는 태안현감이 안홍첨사를 업신여기고 안홍진 소속의 백성을 침탈하기도 했으나,²⁶⁾ 방어영 설치 이후에는 반대로 1개면 정도의 호구와 전결을 안홍에 넘겨줘야 했다.

첨사진이 독진인 방어영으로 승격하기 위해서는 일정정도 행정구역이 필요했다. 방어영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재원을 판출하기 위해서이다. 안홍방어영이 설치되면서 태안의 근서면 5리가 편제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경우 태안현의 행정 및 경제적 영향은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충청수사는 수영의 병력 부족, 지휘체계의 혼란, 해안방어의 허술함 등을 이유로, 태안현감은 관할행정의 불편함을 이유로 안홍방어영 혹은 태안방어영을 폐지하려고 노력했다. 이러한 그들의 주장이 관철되면서 4차례 방어영이 설치되었음에도 그 존속기간은 총 30년에 불과했다.

한편 안홍첨사진은 충청수영의 行營으로 승격되기도 했다. 충청수영을 안홍으로 이전하자는 논의는 일찍부터 제기되었다. 海防論이 한창이던 1706년(숙종 32) 충청감사를 역임했던 金演은 안홍량의 지세가 험준하고 바다를 보는데 막힘이 없을뿐더러 삼남의 세곡이 모두 이곳을 경유하는 사실을 근거로 충청수영을 이곳으로 옮기자

25) 『숙종실록』 권51, 숙종 38년 6월 4일(병진).

26) 『비변사등록』 189책, 정조 23년 12월 13일.

고 건의하였고, 1711년(숙종 37)에는 호서순무사 李晩成, 영조 1년 (1725)에는 무신 申命仁이 지속적으로 건의하였다.²⁷⁾ 이 논의는 충청수군의 主鎭인 충청수영을 쉽게 바꿀 수 없다는 반대에 계속 무산되었다. 그러다 1779년(정조 3) 영의정 金尙喆은 충청수영이 海口 안으로 깊숙한 곳에 위치하고 있어 조수가 많지 않으면 배를 움직일 수 없다면서 안흥에 행영을 설치하고, 풍화시(3~8월)인 6개월 동안 행영에서 근무하자고 주장하였다.²⁸⁾ 그 의견에 훈련대장 具善復과 수어사 徐命膺이 동의하자 안흥에 행영이 설치되었고, 종래 있던 안흥첨사진은 폐지되었다.²⁹⁾ 그리고 1785(정조 9)부터는 충청수사 대신 수군우후가 안흥의 충성수영 행영을 관할하였다.

충성수영의 행영 설치는 1779년(정조 3) 정조의 江都 방어체계 기획과 연결되어 있다. 정조는 강화유수, 통어사, 영종방어사 등이 복잡다단하게 관할하던 강화의 군사지휘체계를 강화유수 중심으로 일원화했는데, 이와 연계하여 강화와 가까운 안흥량에 충청수영 행영을 설치했던 것이다. 정조가 주도한 강도 방어체계는 1789년(정조 13) 통어영의 강화 이속에 대한 반론이 거세지면서 원상복구되었다.³⁰⁾ 이에 따라 안흥의 충청수영 행영도 통어영이 강화유수에서 분리된 이듬해인 1790년(정조 14), 충청수영과 안흥 행영의 거리가 먼 것에서 비롯되는 행영에 소속된 영리와 백성들의 불편함, 수사의 행차에 따른 접대 부담 등 내부적인 문제와 결부되면서 폐지되었다.³¹⁾

27) 『비변사등록』 57책, 숙종 32년 4월 14일; 『비변사등록』 77책, 영조 1년 3월 5일.

28) 『가고수영』에 따르면 충청수영의 無浮日 즉, 한달 동안 배가 뜰 수 없는 일수는 5일, 안흥진의 무부일은 2일이다(김명래, 2019, 「충청 수군營鎭과 연해郡縣의 船所 연구」, 『해양문화재연구』 12, 194쪽). 유사시 전선이 출전하기 위한 지리 환경적 조건은 안흥진이 충청수영보다 좋았다.

29) 『비변사등록』 160책, 정조 3년 3월 29일.

30) 송기중, 2019, 『조선후기 수군 연구』, 역사비평사, 284~285쪽.

31) 『비변사등록』 176책, 정조 14년 2월 22일; 『비변사등록』 176책, 정조 14년 4월 14일.

행영이 폐지되면서 안홍에는 다시 첨사가 임명되었다. 이때 복설된 안홍첨사진은 서구 열강의 이양선이 자주 출몰하던 1866년(고종 3) 태안방어영의 설치로 도로 폐지되었으나, 1885년(고종 22)에 다시 복설되었다. 하지만 1895년(고종 32) 지방군제 개혁으로 인해 결국 廢鎮되고 말았다. 폐진 이후 안홍진성은 남양조씨 무덤의 이장처로 사용되었고,³²⁾ 성내 남아 있던 공해는 동학농민운동 이후 소실된 태안군 관아를 복원하거나 개항 이후 신설된 옥구항사무소를 만드는데 필요한 자재로 활용되었다.³³⁾ 이로 인해 20세기 문턱에서 안홍진의 옛 모습은 사라지고 말았다.

나. 안홍첨사의 久勤・履歷・邊地窠

조선후기 종3품직인 안홍첨사에게 부과된 역할은 매우 중요한 것이었다. 안홍첨사가 강화의 군향곡을 관리하는 管餉使, 안홍산성 지휘관인 守城將, 안홍량에서 조운선을 점검하는 協守將 등의 직함을 겸직하던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안홍첨사는 상기 업무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야 했고, 국왕은 책임자를 찾아 이곳에 배치해야 했다.

그렇다면 17세기 이후 안홍첨사의 위상은 어떠했을까? 이는 1653년(효종 4) 특진관 이일상과 효종의 발언에서 엿볼 수 있다.

신이 安興의 일 때문에 명을 받들고 가서 영상(정태화)과 의논했더니, 영상이 말하기를 ‘의당 武臣 가운데 闔帥가 될 만한 사람을 가려서 첨사에 제수하여야 하는데 土兵이 반드시 적을 것이니 그 결의 鎭浦에 있는 군사들을 옮겨 지급해 주어야 하며, 군량의

32) 경자일기(규장각 소장 古4254-44).

33) 『서산읍지』, 공문편안(규장각 소장 奎18154); 『옥구항보첩』(규장각 소장 奎17868).

저축도 반드시 부족할 것이니 남쪽에서 올라오는 漕運穀을 유치시켜 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³⁴⁾

이 시기는 북벌론이 본격적으로 대두되면서 중앙 및 지역의 방어체계가 정비되고 있던 때였다. 당시 안홍진에는 이후원의 건의로 산성이 증축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이일상은 영의정 鄭太和가 무신 중 곤수 즉, 兵使나 水使에 적합한 사람을 골라 안홍첨사에 임명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하였다. 효종은 정태화의 생각에 적극 동조하면서 병조에게 분부하라고 지시하였다. 안홍첨사를 병·수사에 의망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무관으로 제수하도록 한 것은 그만큼 안홍진이 중요했음을 의미한다. 실제 종3품의 안홍첨사직에는 정3품의 무관들이 주로 임명되었는데, 이러한 사실은 '안홍첨사에 적당한 인사가 없으면 禁軍將에서 차출하여 제수한다'는 『승정원일기』의 여러 사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³⁵⁾

안홍첨사직에 대한 인사규정은 영조대 추진된 안홍항 방조제 공사³⁶⁾가 실패로 돌아간 1737년(영조 13)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되었다. 그 해 12월 우의정 宋寅明은 안홍진, 백령진, 만포진 등이 해상 및 육로방어의 요충지지만, 첨사의 봉록이 적고 먼 섬에 있기 때문

34) 『효종실록』 권10, 효종 4년 3월 18일(갑신).

35) 『승정원일기』 399책, 숙종 27년 9월 14일; 『승정원일기』 449책, 숙종 35년 7월 26일; 『승정원일기』 701책, 영조 6년 2월 12일; 『승정원일기』 864책, 영조 13년 12월 3일; 『승정원일기』 994책, 영조 21년 11월 24일.

36) 1728년(영조 4)과 1731년(영조 7) 두 차례 해난사고로 조선정부는 총 130척의 조운선이 침몰되었다. 그 중 상당수의 배는 안홍항에 모래가 많이 쌓여 있던 까닭에 외항에 정박해두다가 풍랑을 만나 사고를 당했다. 당시 우의정 조문명은 안홍항에 모래가 쌓이는 것을 방지하고자 石築 즉, 방조제 공사를 제안했다. 방조제 공사는 안홍첨사 이선의 주도 아래 1733년(영조 9) 3~4丈을 쌓는 성과를 보였지만, 박문수 등 주요 관료의 반발에 부딪혔다. 그 사이 공사의 주창자 조문명이 사망하고, 실제 공사책임자였던 이선이 군향곡 비리에 연루되면서 이 사업은 1737년(영조 13) 실패로 돌아갔다(안홍항 방조제 공사에 대해서는 문광균, 2019, 『조선후기 경상도 재정연구』, 민속원, 260~261쪽 참조).

에 첨사 대상자들이 모두 기피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邊地窠로 만들어 줄 것을 제안하였다.³⁷⁾ 『경국대전』에 따르면 무신들이 절도사[병사나 수사]에 임명되기 위해서는 방어사를 역임했어야 했다. 그러나 18세기 이후 방어사 외에 승지나 변지의 수령을 역임해도 절도사에 추천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았다. 여기서 말하는 변지란 강계, 위원, 초산, 벽동, 창성, 삭주, 의주 등 평안도의 강변 7읍과 함경도의 부령, 회령, 종성, 온성, 경원, 경흥 등 6진, 그리고 무산, 삼수, 갑산 등 북방 변방이었다. 변지 수령과 별개로 변지의 첨사직을 역임해도 절도사에 의망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었다. 이를 변지첨사라고 하는데 18세기 중엽 변지첨사는 아이, 성진, 혜산, 고령, 장진, 훈융, 고군산, 다대포 등이 있었다.³⁸⁾

변지과와 달리 履歷窠 첨사도 있었다.³⁹⁾ 이력과는 邊地履歷이라고도 부르는데, 변지를 역임하지 못한 무신의 경우 이력과를 역임하면 방어사에 의망된 후 절도사가 될 수 있었다.⁴⁰⁾ 즉, 이력과는 변지과와 마찬가지로 정3품 관직으로 갈 수 있는 루트인 셈이다. 이력과는 방어영이 설치되어야 하지만, 형세가 그렇지 못해 독진의 형태로 만든 진의 관직으로 보인다. 이 사실은 ‘안흥에는 방어사를 두어야 하나, 방어영을 설치하는데 형편이 미치지 못하므로 영구히 첨사를 변지이력으로 만들자’라거나, ‘법성진을 독진으로 만들어 변지이력의 자리를 삼고, 지별과 전정이 있는 무신을 임명하여 당상으로 옮겨가는 자리로 삼으라’는 정조와 충청

37) 『비변사등록』 102책, 영조 13년 12월 9일.

38) 『典律通補』, 「兵典」, 外官職.

39) 무반의 인사 규정을 담고 있는 『西銓政格』에는 첨사를 邊地, 履歷, 久勤, 自辟 등으로 나누고, 각각에 해당되는 진을 기록해두었던 사실을 통해 변지과와 이력과는 명확히 구분되었다. 『西銓政格』 자료에 대해서는 정해은, 2003, 「조선후기 西班 人事 규정집 『西銓政格受教筵奏輯錄』의 검토」, 『장서각』 10, 참조.

40) 『大典通編』, 「兵典」, 外官職.

감사의 발언을 통해 엿볼 수 있다.⁴¹⁾

이력과 첨사진은 방어영이 되지 못했지만, 그만큼 중요한 곳이었으므로 독자적인 행정구역이 필요했다. 이는 1789년(정조 13) 법성진과 군산진을 이력으로 만드는 사례에서 엿볼 수 있다. 이해 호조판서 徐有隣과 선혜청당상 李在簡은 법성창과 성당창 등 조창이 있는 법성진과 군산진을 변지이력으로 만들고자 요청했다. 이때 이들은 영광군의 진량면을 법성창에, 옥구의 북면을 군산진에 각각 이속해주면 獨鎭으로서 운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 제안에 좌의정 李性源, 우의정 蔡濟恭, 훈련대장 李柱國, 어영대장 李邦一, 총융사 李漢豐 등의 논의 끝에 결국 두 진은 모두 이력과가 되었다.⁴²⁾

다시 송인명의 발언으로 돌아가서, 그는 변지첨사가 임명되는 지역의 예대로 안흥, 백령, 만포를 변지과로 전환하면 능력있는 무신들이 제수될 것으로 기대했던 것이다. 이 의견에 대해 대신과 판서들은 백령진과 만포진은 변지과로 전환하는 것이 합당하지만, 안흥진은 그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결정하였다.⁴³⁾ 1739년(영조 15) 11월 병조판서 金聖應도 안흥진과 부산진도 백령진·만포진의 예대로 변지첨사 자리로 만들어줄 것을 주장했으나 안흥진은 또다시 배제되었다. 안흥진은 서울과 가깝고 해로도 멀지 않다는 이유였다. 부산진은 이때 변지과로 전환되었다.⁴⁴⁾

한동안 잠잠하던 안흥진의 이력과 설치 논의는 1790년(정조 14) 4월 안흥진이 복구되자 재개되었다. 이 논의는 정조의 전교에서 비롯되었다.

41) 『비변사등록』 178책, 정조 13년 윤5월 23일; 『비변사등록』 178책, 정조 15년 1월 4일.

42) 『비변사등록』 174책, 정조 13년 윤5월 23일.

43) 『비변사등록』 102책, 영조 13년 12월 9일.

44) 『비변사등록』 102책, 영조 15년 11월 6일.

安興에 첨사를 도로 두는 데 대한 일에 이르러서는 關防이란 것보다도 백성들이 고통스럽게 여기는 고질적 폐단을 생각지 않을 수 없다. 연전에 대신의 회계에 나누어 설치할 것으로 요청한 것은 所江鎭의 관방을 모방할 것만 생각하고 백성들에게 폐단이 되는 것은 미처 두루 생각지 못한 것 같다. 오늘에 이르러서는 이렇다저렇다 하는 혐의는 가볍고 懷保하는 정사는 중요한 만큼, 한마디로 말해서 이전대로 두어야 하겠다. 그러나 이와 같은 요충과 이와 같은 사세로 보아 鎭將의 책임자를 얻지 못하면 폐단을 바로잡으려다가 도리어 폐단을 끼치게 될 것이니 하지 않는 것만 못하다. 앞서 차임해 보낸 사람들은 늙어서 제대로 일을 보살피지 못하거나 무능하여 소임을 감당하지 못한 사람이 아니면, 대개 세력이 없고 하등의 평가를 받아 허물을 씻고자 방어사의 길에 올라 있는 자들로서 조세 운반을 호송하는 일에는 명실이 부합되지 않으므로 수시로 교체되었다. 만약 群山鎭의 邊地窠를 이곳에 옮기지 않을 것이라면 별도로 방어사 한 자리를 설치하는 것도 불가하지 않다. 방어사 자리는 본래 적지만 지형이 永宗鎭보다 못하지 않기 때문에 변경 방어사의 이력으로 쳐주는 자리를 설치하려는 것이다. 다만 좀 망설이는 이유는 防禦營을 설치하려면 특별한 경비에 대해 유의할 만한 무슨 문제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이니 경들은 또한 자세히 더 헤아려보고 품의하여 처리하라. 경연에 올라 주달하고 답변하고 할 때에는 늘 말로써는 의사를 다 표출하지 못하므로 글로 자세히 써서 覆奏하는 것이 제일 낫다. 묘당으로 하여금 이 점을 알도록 하라.⁴⁵⁾

정조의 말에 따르면 종래 안흥첨사는 늙어서 제대로 일을 보살피지 못하거나 무능하여 소임을 감당하지 못한 사람이 대부분이었다. 그렇지 않는 경우 인사고과에서 받은 하등의 평가를 일소하고자 부임해오는 사람들이었다. 이로 인해 막중한 조운선 호송업무에 차질

45) 『정조실록』 권30, 정조 14년 4월 7일(정사).

이 생겼고, 첨사가 수시로 교체되어 민폐가 심하였다. 이를 해결하고자 정조는 군산진의 邊地履歷窠⁴⁶⁾를 안흥진으로 옮겨오거나, 변경 방어영의 이력과로 만들고자 했다. 하지만 방어영 설치는 재정문제를 수반하게 되므로 정조는 비변사 신료들에게 각각의 의견을 개진하도록 했다. 이를 후 좌의정 蔡濟恭은 안흥의 형세가 해안가에 있는 조그마한 제비집 같아서 대장이 절제할 수 있는 곳이 아니므로 애초 방어영의 기지로 부적합하다고 보았다.

다만, 정조는 안흥첨사자리를 이력과로 만드는 것은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하여 우의정 金鍾秀도 방어영은 많은 재원을 소모한다는 이유로 설치에 부정적이었다.⁴⁷⁾ 안흥진의 설치와 名號 문제는 10일이 지난 후 재차 논의되었다. 이때 정조는 이력과의 첨사진으로 설치하면 좋겠다는 입장을 표명했고, 채제공도 방어영 보다는 변지이력과가 낫다고 했으며 김충수도 방어영 설치에 반대하였다.⁴⁸⁾ 이후 논의는 알 수 없지만 이때 안흥진첨사는 이력과로 결정되었다.

그러나 1년이 채 안되어 첨사직 규정에 대한 논의가 일어났다. 병조는 근래 오랫동안 근무한[久勤] 무신 중 외방 변장으로 나갈 사람이 많지만 자리가 부족하니 邊地窠, 履歷窠, 遞付窠 중 아이진, 가덕진, 신광진, 평남진 등 4진을 모두 久勤窠로 만들어 주기를 요청하였다. 구근과는 조선후기 중앙군문에서 적체된 대기자들을 관직에 수용하는 시스템이었다. 구근은 『大典通編』의 「兵典」 京官職條에 따르면 ‘각 營門에서 久勤한 사람에 대해서는 45개월을 채운 후, 부지런히 근무한 사람을 보고하여 邊將

46) 정조는 군산첨사직을 변지과로 발언하고 있으나, 이 시기 편찬된 『典律通補』에는 군산은 履歷窠로 명기되어 있다.

47) 『승정원일기』 1667책, 정조 14년 4월 16일(계축).

48) 『승정원일기』 1677책, 정조 14년 4월 16일(계축).

으로 추천하여 차출한다'⁴⁹⁾라고 명문화되어 있다. 즉, 중앙군문에서 45개월⁵⁰⁾ 동안 근무한 노고에 대한 보상으로 지방의 변장 즉, 첨사로 승진할 수 있었던 것이다. 병조가 제시한 이 안에 채제공이 동의하면서 4진은 구군과로 변경되었다. 정조는 여기에 안홍진과 고군산진도 추가로 구군과로 전환하도록 했다.⁵¹⁾ 이력과는 당상관직으로 갈 수 있는 자리였다면, 구군과는 장기근무 무신에 대한 예우 차원의 자리였다. 따라서 이력과의 구군과 전환은 일종의 안홍첨사 직급의 강등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안홍진을 이력과에서 구군과로 전환하는 조치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 이는 충청감사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1791년(정조 15) 5월 충청감사 鄭存中은 안홍의 군사적 중요성을 고려하면, 안홍진을 변지이력첨사진으로 영구히 정하고, 속읍을 통제할 수 있는 무신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였다.⁵²⁾ 안홍첨사는 수성장을 겸임하고 있었으므로 城操[군사훈련]시 홍성, 서산, 태안, 당진, 해미 등 5읍 수령들을 절제해야 했으나 구군첨사는 변지이력첨사에 비해 지위와 위세가 낮았으므로 이들을 통제하기 어려웠기 때문이었다.⁵³⁾ 그러나 정조와 비변사는 구군과 전환을 결정한지 한 달이 채 안된 시점에서 쉽게 바꿀 수 없으니, 城操시에만 수영 우후가 수성장을 겸하여 수령들을 지휘하도록 했다.⁵⁴⁾ 충청감사를 역임한 우의정 朴宗岳 역시 '안홍첨사를 구군한 사람으로 임명하여 보내기 때문에 호령이 엄하지 않고 가림주구가 심하여 비웃음을 주고, 폐단을 끼치는 것이

49) 『大典通編』, 「兵典」, 京官職, '各營門久勤 滿四十五朔後 始報勤仕 擬差邊將'

50) 구군은 본래 30개월이었지만, 1710년(숙종 36)에는 60개월로 늘어났다가 1723년(경종 3) 45개월로 고정되었다(정해은, 2003, 앞의 논문, 93쪽).

51) 『승정원일기』 1683책, 정조 14년 11월 23일(기해).

52) 『비변사등록』 178책, 정조 15년 1월 4일.

53) 『비변사등록』 178책, 정조 14년 1월 25일.

54) 『비변사등록』 178책, 정조 15년 1월 4일.

한 가지가 아니다'라면서 다른 도의 이력과 교환할 것을 요청하였다.⁵⁵⁾ 이번에도 그의 의견은 채택되지 못했다.

정조와 중앙 관료들이 안홍첨사 이력과 전환에 대하여 부정적인 이유는 壯勇營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정조대 국왕 호위와 화성행궁 방어를 위해 설치된 장용영에는 많은 정관직 무관들이 있었다.⁵⁶⁾ 이들 중 일부는 장기 근무 후 지방 변장으로 승진해야만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수의 구군첨사진이 필요했고, 안홍진도 그 중 하나로 지목되었다. 구군과 문제가 가라앉지 않자 1799년(정조 23) 12월 정조는 安興·加德·古群山·阿耳 등 4진의 첨사는 문관의 시종신, 무관으로 별군직 혹은 변지 이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차출하고, 그 후임은 다시 구군과첨사로 보내도록 지시하였다.⁵⁷⁾ 즉, 구군과와 문신·이력가를 절충하여 교대로 임명하는 방식이었다.

안홍첨사직을 둘러싼 구군·이력 논쟁은 정조 사후 1802년(순조 2) 장용영이 혁파되면서 비로소 해결되었다. 그 운을 댄 사람은 병조판서 李秉鼎이었다. 그는 1799년(정조 23) 정조의 하교를 언급하면서, 지금 장용영이 혁파되어 장기근무가 없어졌으므로 구례에 따라 이력으로 만들자고 했다. 이에 대하여 영의정 심환지는 안홍, 가덕, 고군산, 아이 등 4진이 모두 관방과 관계되어 先朝도 간간히 문무관의 이력이 있는 사람으로 차송한 적이 있다는 전례를 들면서 이병정의 의견에 동의하였고, 우의정 李時秀 역시 현재 중앙군문의 구군 장교 중 반드시 합당한 사람이 많지 않을 것이므로 이력의 첨사자리로 만들어 임명하는

55) 『비변사등록』 180책, 정조 16년 3월 15일.

56) 장용영의 군제에 대해서는 김준혁, 2005, 「正祖代 壯勇營 설치의 政治的 推移」, 『사학연구』 78과 박범, 2018, 「正祖代 壯勇營의 軍制와 財政 運營」,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참조.

57) 『비변사등록』 189책, 정조 23년 12월 13일.

것이 좋은 방안이라고 했다.⁵⁸⁾ 순조가 이들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1802년(순조 2) 6월 안홍첨사는 이력과로 변경되었다. 이력첨사는 국왕에게 사조할 때 殿內에 들어서서 인사할 수 있었으며, 국왕으로부터 마필을 별도로 제공받았다. 이력과로 전환된 안홍첨사직은 19세기 전반 일반첨사로 강등되었으나, 1861년(철종 12) 다시 변지이력과로 陞作되었다.⁵⁹⁾

3. 안홍첨사의 재임실태와 특징

가. 안홍첨사의 제수와 재임 실태

조선시대 첨절제사는 전국 각 진의 군사시설에 설치된 종3품 서반직이다. 『경국대전』에 따르면 첨절제사는 ‘무예를 시험 본자로 차출하되 무과급제자, 겸사복, 내금위는 이러한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즉, 기본적으로 무예를 통해 선발하는 것을 하되, 무과급제자나 겸사복, 내금위 등 국왕을 호위하는 무관은 예외를 두도록 했다. 이들의 임기는 가족을 데리지 않고 가는 경우 900일 즉, 30개월이었고, 첨절제사와 만호를 지낸 자는 수령을 역임하지 않아도 승진할 수 있도록 규정해두었다.⁶⁰⁾

17세기 이후 첨사에 대한 인사규정은 보다 세밀해졌다. 邊將에 해당하는 첨사는 파직에 해당하는 죄라도 후임 첨사를 대면 후에 교체되었고, 변지에 있는 첨사는 1년 이내에 다른 관직에 의망

58) 『승정원일기』 1854책, 순조 2년 6월 10일.

59) 『승정원일기』 2642책, 철종 12년 7월 25일.

60) 『經國大典』, 「兵典」, 外官職.

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한 강계·삼수·감산에 있는 첨사와 만호는 宣薦人, 즉 무과급제자와 한량 중 명망 있는 집안의 인사로 선전관에 천거될 수 있는 사람으로만 임명하였다.⁶¹⁾ 조선후기 정부는 국경 일대에 배치된 첨사와 만호에 대한 인사규정을 강화했는데 이는 정묘·병자호란을 겪으면서 경험한 국경방어선 붕괴에 따른 위기의식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1609년(광해군 1)에 설치된 안흥첨사에 대한 임명과정과 재임실상은 어떠했을까? 이 사실을 부록에 있는 안흥첨사 역대 명단⁶²⁾을 통해 살펴보자. 현재까지 파악한 안흥만호와 안흥첨사는 총 152명이다. 이 수치에는 사료상의 한계로 선조, 광해군, 인조대의 만호와 첨사가 일부 누락되어 있다. 하지만 효종 즉위 이후, 다시 말해 안흥진성이 개축된 이후로는 거의 모든 첨사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통계자료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위해 효종대 이후 첨사를 지낸 140명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다음 표는 효종~고종대까지 안흥첨사로 부임한 인물들의 직전 관직과 품계이다.

61) 정해은, 2001, 「조선후기 선천(宣薦)의 운영과 선천인의 서반직 진출 양상, 『역사와 현실』 39.

62) 현재 안흥첨사 선생안은 전하지 않는다. 다만,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비변사등록』, 『일성록』 등 연대기사료를 비롯하여 읍지, 개인문집, 고문헌 자료 등의 자료를 활용하면 안흥첨사 역대 명단을 거의 복원할 수 있다. 19세기 중엽 이후에는 사료의 부족으로 안흥첨사 역대 명단을 확보하기 어려워 복원하기가 어려웠으나, 다행히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소장 중인 『外案』(K2-571)에는 1830년(순조 30) 金履協부터 1894년(고종 31) 崔敬國까지 총 37명의 안흥첨사가 수록되어 있어 많은 도움이 되었다. <부표>의 안흥첨사 역대 명단에 결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안흥첨사의 명단과 재임실태를 파악하는데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표 2〉 조선후기 안흥첨사 제수 직전 직위와 품계

구분	경관직				외관직															합계
	정3	종4	종9	미상	정3					종3		종4		종5		종6		종9	미상	
	오위장 등	훈국파총	훈국초관		수사	영장	우후	중군	목사	첨사	부사	만호	군수	현감	판관	현령	찰방	권관		
효종											2		1		1				2	6
현종	2					2					3			1						8
숙종	7	1			1	3	1			2	7		1	1		1				25
경종						2							1							3
영조	15							2	2	3	9			3						34
정조	2		2	2						1	1	1						1		10
순조	16		1					2		1										20
헌종	6									1	1						1			9
철종	8			1							1								4	14
고종	4						1							1					5	11
합계	60	1	3	3	1	7	2	4	2	8	24	1	3	6	1	1	1	1	11	140

〈표 2〉에서 알 수 있듯이 전체 인원 140명 중 약 절반에 해당하는 68명[오위장, 수사, 영장]이 정3품 상계인 절충장군 관직을 역임한 후 안흥첨사에 제수되었다. 68명의 인물 중 대다수인 60명은 京官職으로 근무 중 제수되었는데, 주로 오위장, 우림장, 내금위장, 금군장 등으로 국왕 숙위부대장을 지낸 인물들이었다. 이 중에는 전라좌수사를 역임하고, 안흥첨사로 부임한 사례[朴宣興] 등 上職에 있다가 좌천된 경우도 있었다. 다음으로 정3품 당하관을 역임하다가 안흥첨사에 제수되었던 인물은 8명이다. 그 중 6명은 중군, 우후 등의 西班職였고, 2명은 목사를 지낸 인물이었다. 종3품 이하

에서 안홍첨사에 제수되는 경우는 50명이다. 이들은 대부분 지방 수령이나 진장을 지내다가 안홍첨사로 옮겨왔다. 그 중 부사와 첨사 등 같은 官階로 넘어온 사람이 33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군수, 현령, 현감 등 하위 관직에서 승진된 경우도 적지 않았다.

안홍첨사 임명에서 주목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수령이나 진장을 지낸 후 바로 안홍첨사로 제수되는 경우가 급격히 줄어든다는 점이다. 19세기 이전만 하더라도 외관직으로 있다가 안홍첨사로 제수되는 사례가 많았으나 19세기 이후에는 그 경향이 계속 줄어들었다. 이를 반대로 생각하면 오위장, 우림장, 내금위장, 금군장 등 중앙의 군직에서 안홍첨사로 제수되는 경향이 점차 확대되는 것을 뜻한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이 서반 인사체계의 변화에서 비롯된 것인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다른 하나는 종9품직에서 안홍첨사로 제수되었다는 점이다. 이들이 안홍첨사에 제수된 시기는 1790~1802년이다. 이 시기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履歷窠였던 안홍첨사직이 久勤窠로 전환되었던 때이다. 물론 그 이전에도 간혹 오래 근무한 인물의 적체를 해소하기 위하여 안홍첨사에 임명한 경우[崔台耆]도 있었지만,⁶³⁾ 구근과로 전환된 직후 정조는 검칙장교 呂從周, 장용영 기패관 申德龍, 어영청 행수교련관 王漢佐, 훈련도감 초관 李運祥, 노량진 별장 張忠賢 등을 우대하기 위한 조치로 안홍첨사에 제수하였다.

그렇다면 조선후기 안홍첨사로 부임한 무관들의 출신과 연령대는 어떠할까? 다음 <표 3>을 통해 살펴보자.

63) 『승정원일기』 962책, 영조 19년 8월 9일, ‘上曰 崔台耆如何耶 宗玉曰 安興姑無大段可爲之事 而台耆最久勤 故欲爲疏滯而擬望矣’.

〈표 3〉 조선후기 안홍첩사 중 역대 무과급제자 나이

구분	15~ 20세	21~ 25세	26~ 30세	31~ 35세	36~ 40세	40~ 45세	급제(%)	급제 불명	합계
효종			2				2 (33.3%)	4	6
현종			1	1	1		3 (37.5%)	5	8
숙종		6	1	5	1	1	14 (56%)	11	25
경종				1			1 (33.3%)	2	3
영조		3	6	2	2		13(38.2%)	21	34
정조			1				1 (10%)	9	10
순조		1	1	1	5		8 (40%)	13	21
한종			2				2 (25%)	7	9
철종	3	1	3				7 (53.8%)	6	13
고종							0 (0%)	11	11
합계	3	11	17	10	9	1	51(100%)	89	140

효종대 이후 부임한 140명 중 인물 중 무과에 급제한 사람으로 확인된 경우는 51명이다. 그 중 숙종과 영조대 급제자가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순조와 철종대이다. 고종대는 현재 정보가 부족하여 과거 급제 여부를 알 수 없다. 정조대와 고종대는 안홍진이 혁파된 적이 있었고, 경종은 재임기간이 짧아 급제자 수가 1명이거나 없다. 무과 급제시 나이는 평균 30세이다. 이들은 무과 급제 후 안홍첩사에 부임하기까지 약 28년의 시간이 걸렸다. 그 기간 동안 여러 관직을 거쳤는데, 다음의 몇몇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산진첩사 최세규가 엮드려 직과 성명을 아뢰었다. 임금이 이력을 묻자, 세규가 대답하기를, ‘무과에 급제[1693년 급제]하고, 선전관에서 감찰로 옮긴 후 자급이 올라 봉산군수, 안홍첩사에 제수되었습니

다'라고 하였다.⁶⁴⁾

김해부사 신명윤이 나아가 엎드려 직과 성명을 아뢰었다. 임금이 이력을 묻자, 명윤이 대답하기를 '신미년(1691) 무과 출신으로 참하 무검으로 처음 입사하여 선전관에 이배되었습니다. 훈련원주부로 출륙[6품으로 승진]한 후 도총부 도사, 전라좌수영 우후, 훈련도감 첨정, 도청부 경력, 황해병사 우후, 대구영장을 지냈습니다. 당상관(정3품 상계)이 된 후 금군장, 칠곡부사, 나주영장, 부령부사, 안흥첨사, 부산첨사, 단천부사를 지냈고, 지금 본직에 임명되었습니다'라고 하였다.⁶⁵⁾

안흥첨사 양현익이 나아가 엎드렸다. 임금이 직과 성명을 묻자, 현익이 아뢰기를, '소신은 안흥첨사 양현익입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이력을 묻자, 현익이 아뢰기를, '소신은 기묘년(1699) 무과 출신으로 부장, 무검선전관, 훈련도감 판관, 양화첨사를 역임하다가 褒啓로 가져되어 오위장, 산산첨사, 국별장, 자산부사, 평안감영 중군을 지냈고, 지금 임명되었습니다'라고 하였다.⁶⁶⁾

최세규, 신명윤, 양현익은 각각 1706년(숙종 37), 1721년(경종 1), 1728년(영조 4)에 각각 안흥첨사에 제수된 인물이다. 이들은 1693년, 1691년, 1699년에 무과에 급제했는데, 이를 통해 보면 각각 첨사에 제수되기까지 사환경로를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무과 급제→선전관→중앙 서반직→지방수령 및 변장 등의 과정을 통해 안흥첨사에 제수되었음을 알 수 있다. 무과 급제부터 안흥첨사가 되기까지 최세규, 신명윤, 양현익은 각각 13년, 30년, 29년의 시간이 걸렸다. 가문의 영향력과 개인의 능력에 따라 편차가 있겠지만, 안흥첨사에 제수되기까지의 과정이 녹록치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무과 급

64) 『승정원일기』 599책, 영조 1년 8월 19일.

65) 『승정원일기』 628책, 영조 2년 12월 1일.

66) 『승정원일기』 657책, 영조 4년 3월 4일.

제자 출신 51명의 평균 부임시 연령은 약 56세였다. 서해안 최전선에서 왜구와 황당선을 막아내고, 조운선을 점검하며 막대한 군향곡을 관리하는 장수로서는 적지 않은 나이였다. 정조가 한때 ‘앞서 역임한 자들이 늙어서 살피지 못하고, 몽매하여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명분을 내세워 안흥첨사를 邊地窠나 防禦使로 승격하고자 했던 것⁶⁷⁾도 이 때문이었다.

〈표 4〉 조선후기 안흥첨사 재임기간

구분	1~6 개월	7~12 개월	13~18 개월	19~24 개월	25~30 개월	31~36 개월	37~42 개월	미상	합계
효종		2	1	1	1			1	6
현종	1		2	3	1			1	8
숙종	3	6	2	3	9	2			25
경종	1					2			3
영조	6	10	6	4	7	1			34
정조	3	1	2	2	2				10
순조	2	2	5	4	6		1		20
헌종		2	3	3	1				9
철종	4	5	1	1	3				14
고종	1	2	5		1			2	11
합계	21	30	27	21	31	5	1	4	140

안흥첨사의 재임기간은 법적으로 30개월로 정해져 있었다. 병사, 수사, 영장, 중군, 우후 등 정3품 이상은 拜辭日 즉, 국왕에게 사조하는 날부터 근무일수에 포함되었지만, 그 첨사와 만호 등은 근무지에 도입한 직후부터 계산되었다.⁶⁸⁾ 변지의 무관과 영장은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체직을 도모하는 경우 이력[근무경력]으로 인정해주

67) 『비변사등록』 176책, 정조 14년 4월 14일.

68) 『兩銓便攷』, 卷2, 「兩銓簡滿」.

지 않았기 때문에 최대한 재임기간을 채우고자 했다. 다만, 사고를 만나 정해진 달수를 채우지 못한 자는 이력으로 인정해주었다.⁶⁹⁾

조선후기 140명 안흥첩사의 평균 재임기간은 약 17개월 5일이다. 파직, 사망, 유배 등으로 임기를 채우지 못한 수령을 제외하면 약 19개월이다. 왕대별로 평균 재임기간을 계산하면 경종대가 1명당 20개월 18일로 가장 길고, 순조와 헌종대가 각각 19개월 10일, 숙종대 19개월 5일 순서이며, 정조대가 철종대가 14개월 정도로 제일 짧다.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25~30월까지 근무한 안흥첩사는 전체 23.5%에 해당하는 31명, 7~12개월은 20.5%인 27명, 13~18개월은 19.6%인 26명, 1~6개월과 19~24개월은 각각 15.9%인 21명, 31~36개월은 3.7%인 5명이다. 연임으로 인해 순조대 40개월을 근무한 첩사[심우상]도 있다. 이러한 안흥첩사의 재임실태가 당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는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다만, 邊地窠인 다대포첩사의 경우 1인당 평균 재임기간이 17개월 18일이었던 점⁷⁰⁾을 통해 볼 때 첩사의 평균 재임기간이 이 정도 수준이었으리라 조심스레 짐작해본다.

나. 안흥첩사의 이임과 교체사유

140명의 첩사 중 유배, 충군, 파직, 미상인 자 49명을 제외한 91명은 중앙과 지방으로 관직으로 다시 제수되었다. 91명 중 60명은 경관직에 제수되었고, 약 40%는 부호군이 되었다. 부호군은 五衛都總府의 종4품 관직으로 임기를 마친 별도의 보직이 없는 무신들에게 내려주는 직첩이다. 이 자리는 무신들이 다음 관직에 임명되기 전까지 대기하는 관직으로 활용되었다. 문관뿐만 아니라 고위

69) 『大典通編』, 「兵典」, 外官職

70) 이원균, 1984, 「朝鮮時代의 水使와 僉使의 交遞實態」, 『부산수산대학교논문집』 33, 210~214쪽.

무관직에 대한 인사적체가 심했음을 알 수 있다.

〈표 5〉 조선후기 안흥첨사의 이임 현황

구분	경관직			외관직									파 직	정 배	충 군	미 상	합계
	정3		총4	정3					총3		총4	총6					
	오 위 장 등	기 사 장 등	부 호 군	수 사	영 장	우 후	중 군	목 사	부사	첨 사	군 수	현 감					
효종	1							1	1				1		2		6
현종	2	1	2		1	1							1				8
숙종		1	6	5	2				2	3	1		4	1			25
경종			1		1								1				3
영조	7		9					1	2	1	1		12			1	34
정조	1		4										5				10
순조	4	1	10		1								4				20
헌종	2		3	1		1							2				9
철종		1	1			2				1			5			4	14
고종		3					1					1	1			5	11
합계	17	7	36	6	5	4	1	2	5	5	2	1	36	1	2	10	140

경관직 60명 중 오위장, 겸사복장 등의 정3품 절충장군 당상의 관직으로 임명되는 경우는 24명이다. 오위장 등의 자리에서 첨사를 지내고 다시 오위장 등의 자리로 되돌아가는 경우가 적지 않았는데, 안흥첨사의 경우 8명이 이 사례에 해당되었다. 한편 일부는 중앙 군문의 천총으로 제수받기도 했지만, 19세기에는 주로 친군별영이나 통어영의 기사장에 임명되었다.

외관직으로 나간 사람은 31명이다. 그 중 상직인 정3품 절충장군 당상관인 충청수사, 전라수사, 영장으로陞敍된 인물은 11명이었다.

李立身, 韓根, 韓樞, 申鍵, 朴宣興, 李熙章 등이 인물이 대표적인데, 이들은 전원 무과 급제자라는 공통점이 있다. 한편 우후, 중군, 목사 등 정3품 당하관으로 승서된 인물도 12명이다. 이들은 부임 전 부사, 현감, 군수 등을 지내다가 안흥첨사를 거쳐 승서되었다. 안흥첨사를 역임하고 동계인 부사와 첨사로 옮겨간 이들도 있다. 총 10명으로 이들은 대부분 감산부사, 무산부사, 영종첨사, 백령첨사, 해산첨사 등 변지 수령과 변지 첨사였다. 이들과 달리 직위가 낮아진 경우도 있는데, 주로 군수나 현감 등 지방수령으로 나갔다.

〈표 6〉 조선시대 안흥첨사의 파직 사유

구분	조운호송	군향곡관리	안흥향굴향	이양선정탐	부세행정	금송작별	산성보수	대변선개조	기사환국	미상	합계
효종										1	1
현종										1	1
숙종		1							1	2	4
경종		1									1
영조	2		2	1	1	1				5	12
정조	2	1					1	1			5
순조	1	3									4
헌종	2										2
철종	3	1		1							5
고종					1						1
합계	10	7	2	2	2	1	1	1	1	9	36

상당수의 안흥첨사는 재임 중 파직되었다. 그 인원은 36명으로 전체 첨사의 27.6%를 차지한다. 최소 4명 중 1명 이상은 파직되어 교체된 셈이다.

〈표 6〉은 왕대별 파직 사유를 정리한 것이다. 먼저 시대순으로 보면 영조대가 12명으로 가장 많다. 재위기간이 긴 탓도 있겠지만, 이 시기는 전국적으로 조운문제가 심했던 시기였던 결과 그 영향이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 다음은 정조와 철종대로 각각 5명이고, 숙종과 순조대는 각각 4명이다. 시기적으로 보면 효종~중종대까지는 파직자가 적었지만, 영조~순조대 이르러 대폭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안흥첨사가 파직된 주요 원인은 조운선 호송과 군항곡 관리에서 비롯되었다. 조선왕조는 ‘量入爲出’의 재정이념 아래 전세, 공물, 신공, 잡세 등으로 확보된 재원을 토대로 관료의 급료를 비롯하여 왕실과 각사의 운영비, 군사, 외교부문에 지출하였다. 그러므로 안정적인 세곡운송은 국가정책의 성패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 업무였고, 조운의 성공여부는 초미의 관심사였다. 김육과 정약용이 조운에 대하여 ‘國事之最重者’⁷¹⁾, ‘國之大政’⁷²⁾이라 표현한 것은 이러한 연유였다. 정부는 국초부터 선박의 안정적인 운항을 위해 ‘정부는 선박이 지나가는 각 군현의 嶼草 주위에 긴 나무를 세워 ‘某官 某嶼草’라고 크게 글씨를 쓰도록 하고, 해로를 잘 아는 사람이 길을 인도’하도록 명문화하였고,⁷³⁾ 첨사나 만호 등을 보내 호송토록 하였다. 조운선을 안전하게 이끌고 오는 압력차사원의 경우 논상의 대상이 되었지만, 호송하는 일에 마음을 쓰지 않은 수령, 첨사, 만호는 파출의 대상이 되었다. 충청수영 우후와 안흥첨사는 각각 원산도와 안흥량에서 조운선을 점검했는데, 정조대 행영이 설치된 시기에는 안흥진에서만 조운선 점검이 이루어졌다.⁷⁴⁾

71) 金堉(1580~1658), 『潛谷遺稿』 卷6, 「疏劄」, 論泰安漕路劄.

72) 丁若鏞(1762~1836), 『與猶堂全書』 1集, 「詩文集」 卷9, 策問, 漕運策.

73) 『大典續錄』, 「戶典」, 漕轉.

74) 『大典通編』, 「戶典」, 漕轉.

안흥첨사가 막중한 조운 호송과 점검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음에도 이곳은 지리적 특성상 조운 호송이 쉽지 않았다. 1667년(현종 8) 충청도 면천 유학 李滉의 상소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신이 살피건대 안흥진의 古名은 難行梁인데, 선박이 운항하기 어려운 탓에 美名을 빌려 고친 것이 이것입니다. 白華山의 一脈이 가로질러 돌출되어 있는데, 서쪽으로는 서해로 들어가 있고, 큰 바다에 가서야 그칩니다. 가파른 거대 암석이 삐죽하게 그 아래 서 있습니다. 하늘로 솟은 뾰족한 돌이 사면을 둘러싸고 있고, 水勢가 쓸어버리듯 흐르니 배가 돌에 치여 부딪힙니다. 그러므로 왕래하는 선박 중 뒤집혀 침몰하는 것이 10척 중 7~8척에 이르고, 호남 조운도 반드시 이곳을 지나가는데 멀고 무거운 짐을 실은 선박이라 더욱 많이 침몰합니다. 1년에 침몰하는 것이 적어도 20척 이하로 내려가지 않고, 바람을 만나 치패가 많으면 혹 40~50척에 이르기기도 합니다.⁷⁵⁾

안흥량의 본래 지명은 ‘難行梁’이었으나 선박의 원활한 통행을 염원하는 목적에서 ‘安興’으로 개명하였다. 이와 같이 안흥량은 선박의 왕래가 쉽지 않았던 곳이다. 이표의 상소가 비록 과장되었을지는 모르나 한해 이곳에서 침몰하는 선박만 20척 이상에 달했다. 이 선박이 모두 세곡선이라고 단정할 수 없지만 상당수의 선박이 이곳에서 난파되었고, 안흥첨사의 교체는 잦을 수밖에 없었다. 정조 스스로도 ‘안흥첨사가 자주 교체되는 것은 전적으로 세곡선을 호송하는 것에서 비롯된 일이다’⁷⁶⁾라고 평가할 만큼 조운선의 호송 임무는 쉬운

75) 『승정원일기』 201책, 현종 8년 윤 4월 9일, ‘臣謹按安興鎮 古名難行梁 而以其行船之難 假借美名 改今名者 是也 華山一脈 奔突而西入于西海 而外洋勒止之 巉巖巨石 櫛立其下 天塹石劍 環繞四面 水勢蕩滴 船石舂撞 故往來行船之覆敗者 十常七八 而湖南漕運 亦必過此 則致遠負重之船 尤爲多敗 一年致敗 少不下二十餘隻 值風多敗 則或至四五十隻’.

76) 『비변사등록』 177책, 정조 14년 12월 7일.

일이 아니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역대 안흥첨사 중 조운선 호송 문제로 10명이 파직되었다. 이로 인해 정조대 이후로는 조운선 침몰 원인의 경중에 따라 과실이 적으면 파직하지 않고, 충청감영에서 곤장을 맞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군향곡 관리 미비로 파직된 첨사도 있다. 안흥진에 군향곡이 비축된 시기는 안흥진성이 축조된 이듬해인 1654년(효종 5)이었다. 안흥진성의 축조 목적이 보장처인 강화를 보호하기 위함이었으므로 이곳에도 초기 1만석이라는 군향곡이 비축되었고, 안흥첨사는 管餉使를 겸임하게 되었다. 이후 숙종대 남한산성의 군향곡이 이전되어 2만 2천석으로 총량이 늘었으나 충청수영의 재정 적자를 보전해주기 위하여 약 1만석을 이전해주면서 다시 줄어들었다.⁷⁷⁾ 하지만 점차 군향곡 총량이 늘어나면서 19세기 초반에는 약 2만 3천석으로 증가하였다.⁷⁸⁾ 군향곡은 장기간 보관하면 부패하므로 매년 改色해야 했는데, 그 대상 지역은 충청도 37개 고을이었다. 군향곡은 진흥재원으로도 활용되었으나, 안흥진성의 재정원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다보니 안흥첨사가 ‘私的’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발생하기도 했고, 안흥진성에서 먼 군현에 산재해 있는 군현에서는 흥년이라는 이유로 군향곡을 납부하지 않기도 했다. 이를 무마하고자 虛簿를 작성하는 행위도 있었다.

이러한 군향곡 관리 미비 문제는 비단 안흥진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군향곡을 비롯한 환곡 관리에 쇄신을 기하고자 법조문을 만들었다. ‘정해진 수량대로 거두지 못한 자로서 성적이 꼴찌인 자는 營門에서 杖을 치고, 꼴찌에서 두 번째인 자는 추고하며, 꼴찌에서 세 번째인 자는 논죄하지 않는다.’ 라거나 ‘虛錄하거나 反作한 경우에는 엄하게 처벌한다’ 조문이

77) 탁태운, 2011, 앞의 논문, 18~22쪽.

78) 『萬機要覽』, 「財用篇」 6, 還摠, 公忠道.

그것이다.⁷⁹⁾ 이 규정이 명문화되면서 관향사였던 안흥첨사의 상당수는 법전의 규정대로 영문에서 곤장을 맞거나 파직되었던 것이다. 이외에도 안흥항의 방축공사, 이양선 보고 대처 미비, 군포 징수 및 산성보수 등의 이유로 파직된 첨사도 있었다.

파직보다 重罰에 해당하는 유배와 충군의 사례도 있었다. 金元瑋, 朴弘錦, 李埏 등이 그들이다. 金元瑋는 1687년(숙종 13) 안흥첨사에 부임했으나 1689년(숙종 15) 남인이 정권을 잡자 경신환국 이후 남인을 포함한 金煥의 숙부라는 이유로 정배되었다. 김환은 金錫胄, 金益勳 등의 사주를 받아 남인들이 반역을 꾀한다고 무고하여 許璽, 許瑛, 李德周 등을 처형, 閔黯, 權大運의 핵심인사를 파직 또는 유배시키는데 일조한 인물이다.⁸⁰⁾ 기사환국으로 이 사건이 무고로 밝혀지면서 김환은 처형되었고, 김원위는 정배형에 처해졌다. 그러나 김원위는 유배를 가기도 전에 의금부 관원에게 장살되었다.⁸¹⁾

효종대 박홍금과 이저는 충군형에 처해졌다. 박홍구는 어사의 서계로 인해 홍주목사 洪瑱, 소근포첨사 趙鉉와 함께 삭탈관직된 후 공주로 충군되었고, 이저는 충청수사가 안면도 거주민을 내쫓고 목재를 벌목하는 실상을 고발했다는 이유로 충군되었다.⁸²⁾ 이저의 행위는 지금의 공익제보이지만, 당시에는 上官告訐罪로 적용되어 처벌되었다. 하지만 4개월이 지나 직첩을 환수 받았고, 이후 상주영장, 만포첨사, 부산첨사 등을 지냈다.

이들과 달리 17세 초반 이래 안흥첨사를 지낸 인물 중 치적을 남긴 인물도 있었다. 1828년 부임한 李義午, 1831년의 李義薰, 1853년의 賈行健, 1889년의 朴東鎭 등이 대표적이다. 전자의 두

79) 『大典通編』, 「戶典」, 倉庫.

80) 이상식, 2005, 「朝鮮後期 肅宗의 政局運營과 王權 研究」,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78~79쪽.

81) 『숙종실록』 권27, 숙종 20년 6월 10일(병오).

82) 『승정원일기』 135책, 효종 6년 6월 25일; 『승정원일기』 136책, 효종 6년 7월 14일.

명은 『승정원일기』에서⁸³⁾, 후자의 두 명은 현재 남아있는 선정비⁸⁴⁾를 통해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공교롭게도 모두 19세기의 인물이지만, 그들은 다른 첩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장기간 [평균 20개월 15일] 재임하면서 선정을 베풀었다.

각각의 인물의 치적에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눈에 띄는 업적이 있다. 바로 ‘賑政’ 즉, 기민 구제였다. 이희오는 ‘진구함에 넉넉히 하였고, 죽과 밥, 술과 고기를 스스로 마련하여 별도로 공제하였고[賑救之優厚 粥羹酒肉之自備別饋]’, 이희명은 ‘기민을 구휼함에 넉넉하게 했으며[賑饑之從厚]’, 박동진은 ‘매번 흉년을 당할 때마다 두루 빈민을 살피며 구휼하였다[每值歉荒 周窮恤貧]’이라 하여 이들이 안홍산성에서 진휼정책에 주력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가행건은 ‘3년을 있으면서 백성을 덕으로써 사랑하고, 백성을 의로써 교화[愛民以德 教民以義]한 까닭에 이임할 때 진민들이 비석을 세워 그의 공덕을 기리었다.

요컨대 조선시대 법전에서 규정하고 있는 첩사의 품계는 종3품이다. 그러나 안홍첩사는 막중한 임무를 띠고 있었으므로 정3품 당상관의 무관이 제수되는 사례가 많았다. 이는 안홍첩사가 이력첩사직이 된 것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17세기 중엽 이후 안홍첩사로 부임해 온 인물들은 평균 약 17개월을 재임하면서 조운호송, 안홍산성 군향곡 관리, 이양선 정탐, 부세 행정, 소나무 관리, 산성 보수 등 여러 임무를 수행하였다. 임무가 다양했던 만큼 많은 첩사들이 파직되는 불운을 겪었지만, 한편으로 원활한 진휼행정으로 선정을 베풀은 첩사도 있었다. 이와 같이 조선후기 안홍첩사는 군사지휘관으

83) 『승정원일기』 2248책, 순조 29년 12월 7일; 『승정원일기』 2291책, 순조 33년 6월 15일.

84) 태안군 관내에는 태안읍성과 안홍진성 서문 앞 육모정에 비석군이 형성되어 있다. 태안읍성에는 주로 영의정, 충청감사 및 태안부사(검방어사)가 있고, 육모정에는 가행건과 박동진의 선정비 3기가 세워져 있다. 태안군의 비석에 대해서는 박춘석, 1999, 『태안의 석조문화』, 태안문화원 참조.

로서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동시에 지방통치의 일선에서 서 있었다.

4. 맺음말

태안반도 서쪽 끝에 위치한 안흥량은 고대 이래 외교적, 군사적, 경제적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장소였다. 조선시대는 안흥량의 자연지리적 환경을 고려하여 조선초기부터 이곳에 안행량만호를 설치하고 왜구의 침략을 방어하는 전초기지로 삼았다. 안흥량에는 1609년(광해군 1) 수군첨절제사진이 설치되었고, 이후 일부 시대적 상황에 따라 방어영, 행영 등이 설치되는 등 변화를 보였다. 이는 조선정부의 핵심 보장처인 강화도의 방어체계에 따른 결과이며, 내부적으로는 충청수영과 태안군의 군사 및 행정체계의 변화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안흥첨사진은 방어영으로 약 30년, 충청수영의 행영으로 11년 존속한 것을 제외하고는 조선후기 내내 첨사진으로서 서해 해양방어, 조운선 호송, 군항곡 관리 등 수 많은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 기간 동안 안흥첨사의 지위와 위상이 동일했던 것은 아니다. 본래 안흥첨사는 정3품 당상 무관이 올 정도로 격이 높았던 자리였으나 정조대 중앙군문에 오랫동안 근무하던 무신을 대우하기 위해 구군과로 잠시 전환되기도 했다. 하지만 구군과가 전환된 이후 부임해 오던 안흥첨사들은 품계와 위상이 낮아서 안흥진 및 속읍 수령을 통제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런 이유로 순조 초반 兵使와 水使 승진의 지름길인 이력과로 바뀌면서 그 위상이 다시 격상되었다.

조선후기 안흥첨사의 임기는 법적으로 30개월이었으나, 실제 부

임한 이들의 평균 재임기간은 약 17개월이었다. 무과급제자 기준으로 볼 때 약 50대 후반에 안홍첩사로 부임하였고, 임기가 끝난 이후에는 부호군으로 잠시 있다가 다시 경관직과 외관직 등 여러 방면으로 관직생활을 이어나갔다. 경관직으로는 오위장, 겸사복장, 어영청기사장 등으로, 외관직으로는 목사, 군수나 첨사 등으로 제수되었다. 그 중 상직인 수사로 승진한 사람도 일부 있었고, 반대로 군수와 현감 등 관직이 낮아진 경우도 있었다.

전체 안홍첩사의 약 28%는 파직, 정배, 충군 등 불명예를 안았다. 그 중 사료에서 확인되는 파직자는 무려 36명에 달한다. 이들의 대다수는 조운선 관리 및 호송 불찰, 군향곡 관리 미비 등으로 파직되었다. 그 외에도 안홍항 굴항 실패, 이양선 보고 대처 미흡, 과도한 부세 징수 및 산성 보수 문제 등도 그들이 파직된 이유였다.

이들과 달리 안홍첩사 재직시 선정을 베풀어 이름을 남긴 첩사들도 있었다. 이희오, 이희명, 가행진, 박동진 등이 대표적인 인물이다. 19세기에 재직한 이들은 여타 첩사보다 장기간 안홍진에 근무하면서 진민의 삶을 안정시키고자 노력했다. 특히, 이들은 진흥정책에 주력하여 기민과 빈민을 구제하였다. 이는 안홍첩사가 일반 수령과 같은 지방통치의 일선에 있었음을 보여준다.

본고는 조선후기 안홍첩사의 위상과 재임실태를 밝히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논문의 한계점이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는 안홍첩사의 구체적인 지방통치 실상이 그려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안홍첩사의 출신과 관력에 대한 부분이 피상적으로 서술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부분은 추후 연구로 남겨둔다.

(원고투고일 : 2021. 6. 22, 심사수정일 : 2021. 8. 17, 게재확정일 : 2021. 8. 25.)

주제어 : 총청수영, 지방통치, 안흥진, 안흥첨사, 무관인사



〈부표〉 역대 안흥첩사 명단

순번	이름	왕력	제수연월	재직 기간	전력	후력	출사	파직 여부
1	허수 (許售)		1595(?)					
2	유흠 (柳洽)							
3	장후완 (蔣後完)						무과	
4	이은종 (李殷宗)		1615(?)				무과	
5	오신남 (吳信男)		1616.1				무과	
6	남응민 (南應敏)	인조 2	1624					
7	이준 (李俊)	인조 7	1629.7					
8	박정건 (朴挺健)	인조 14	1636.7				무과	
9	황효원 (黃孝元)	인조 16	1638(?)					
10	박진립 (朴振立)							
11	노유민 (盧惟敏)							
12	박정민 (朴廷敏)	인조 26	1648.12					
13	박홍금 (朴弘錦)	효종 2						충군
14	양정지 (梁廷祉)	효종 3	1652.7	9				파직
15	이저 (李埈)	효종 4	1653.5	24	풍천부사		무과	충군
16	이지원 (李枝遠)	효종 6	1655.7	16	안동판관	숙천부사	무과	
17	유탄연 (柳坦然)	효종 7	1756.12	28	갑산부사	파주목사		
18	이정옥 (李廷沃)	효종 10	1659.4	7	진도군수	내금장		
19	유정 (柳聖)	현종 즉위	1659.12	30	여산영장	훈련도정		
20	백홍성 (白弘性)	현종 3	1662.6		금군장	오위장		
21	정시심 (鄭時諱)	현종 8	1667.7	4	창성부사			
22	성민달 (成晩達)	현종 8	1667.12	16	오위장			

순번	이름	왕력	제수연월	재직 기간	전력	후력	출사	파직 여부
23	이립신 (李立身)	현종 10	1669.4	20	안변부사	통영우후	무과	
24	홍유량 (洪有量)	현종 12	1671.3	22	나주영장	오위장	무과	
25	김부영 (金阜榮)	현종 13	1672.1	20	칠원현감	안동영장	무과	
26	이화악 (李華岳)	현종 15	1674.4	14	김해부사			파직
27	한근 (韓根)	숙종 1	1675.7	16	태천현감	갑산부사	무과	
28	이립신 (李立身)	숙종 3	1677.12	24	용천부사	충청수사	무과	
29	이송로 (李松老)	숙종 5	1679.1	28	우림장	위도첨사	무과	
30	조시형 (趙時亨)	숙종 7	1681.6	7	박천군수		무과	정배
31	유성위 (柳星緯)	숙종 8	1682.2	24	우림장		무과	
32	한근 (韓根)	숙종 10	1684.3	2	구성부사	전라좌수사	무과	
33	한주 (韓樞)	숙종 10	1684.6	12	훈련도감파총	충청수사	무과	
34	한협 (韓浹)	숙종 11	1685.7	10	남병우후			
35	김원휘 (金元埤)	숙종 13	1687.12	15	소강첨사			파직
36	신건 (申鍵)	숙종 15	1689. 4	25	경주영장	전라우수사	무과	
37	박선흥 (朴宣興)	숙종 18	1691.8	28	선천부사	전라좌수사	무과	
38	서문진 (徐文鎭)	숙종 20	1694.1	7	오위장	영종첨사	무과	
39	이행성 (李行成)	숙종 20	1694.9	28	내금장	봉산군수	무과	
40	박선흥 (朴宣興)	숙종 23	1697.2	27	전라좌수사		무과	
41	홍하창 (洪夏昌)	숙종 25	1699.6	26	백령첨사		무과	파직
42	안근 (安根)	숙종 27	1701.9	26	경산현령	금위영천총		
43	최진한 (崔鎭漢)	숙종 29	1703.12	31	장단부사			파직
44	조유춘 (趙維春)	숙종 32	1706.8	3	내금장	백령첨사	무과	
45	신명윤 (申命尹)	숙종 32	1706.12	30	전주영장	나주영장	무과	
46	이언연 (李彦孺)	숙종 35	1709.7	23	내금장			
47	신명인 (申命仁)	숙종 37	1711.7	34	무산부사	경주영장	무과	
48	유문수 (柳文遂)	숙종 40	1714.6	25	철산부사			파직

순번	이름	왕력	제수연월	재직 기간	전력	후력	출사	파직 여부
49	이영 (李泳)	숙종 42	1716.8	12	우림장			
50	한주 (韓楬)	숙종 43	1717.7	5	춘천부사		무과	
51	이명하 (李鳴夏)	숙종 44	1718.1	11	상주영장	하동부사	무과	
52	정문빈 (鄭文彬)	경종 1	1721.1	5	충주영장	부호군		
53	최세규 (崔世珪)	경종 1	1721.7	29	오위장		무과	파직
54	김구령 (金九齡)	경종 4	1724.1	28	진도군수	공주영장		
55	이여택 (李汝澤)	영조 2	1726.6	10	철산부사			
56	서행진 (徐行進)	영조 3	1727.5	32	자산부사	내금장	무과	
57	양현익 (楊憲益)	영조 4	1728.2	23	평안감영중군	무산부사		
58	이선 (李潏)	영조 6	1730.2	12	겸사복장			파직
59	김전 (金殿)	영조 7	1731.3	11	우림장		무과	파직
60	이선 (李潏)	영조 8	1732.3	28	안흥첩사			파직
61	남익엽 (南益堧)	영조 12	1736.8	15	해미현감			
62	허봉 (許逢)	영조 13	1737.12	10	해미현감			
63	유봉장 (柳鳳章)	영조 14	1738.11	5	오위장		무과	파직
64	조원석 (趙元錫)	영조 15	1739.5	27	우림장			파직
65	홍우평 (洪禹平)	영조 17	1741.9	23	내금장	내금장	무과	
66	최태구 (崔台耆)	영조 19	1743.9	25	금위영천총			
67	이희하 (李喜夏)	영조 21	1745.11	15	우림장		무과	
68	김중만 (金重萬)	영조 23	1747.3	25	칠곡부사		무과	
69	윤종대 (尹宗大)	영조 25	1749.5	22	금군장	겸사복장	무과	
70	윤봉정 (尹鳳廷)	영조 27	1751.4	29	내금장			
71	이현승 (李顯升)	영조 29	1753.10	5	우림장		무과	
72	안상오 (安相五)	영조 30	1754.8	19	성진부사		무과	
73	이백령 (李柏齡)	영조 32	1756.4	9	백령첩사	겸사복장	무과	
74	이의복 (李宜復)	영조 33	1757.2	15	내금장			

순번	이름	왕력	제수연월	재직 기간	전력	후력	출사	파직 여부
75	안윤문 (安允文)	영조 34	1758.6	12	오위장			파직
76	김영수 (金永綬)	영조 35	1759.7	1	죽산부사		무과	파직
77	이희집 (李喜集)	영조 35	1759.9	6	성진첨사			파직
78	전명좌 (全命佐)	영조 36	1760.4	12	풍천부사		무과	파직
79	이석유 (李碩儒)	영조 37	1761.5	18	죽산부사	길주목사		
80	유희철 (柳暉喆)	영조 38	1762.12	29	대흥산성중군	용천부사		
81	유춘암 (柳春菴)	영조 41	1765.6	17	숙천부사	충익위장		
82	신익문 (申翊文)	영조 43	1767.12	15	충장위장	혜산첨사		
83	유언지 (俞彦摯)	영조 45	1769.4	12	홍주목사		무과	파직
84	구세인 (具世仁)	영조 46	1770.5	25	내금장	태안군수	무과	
85	김한엽 (金漢楫)	영조 48	1772.7	5	우림장	총사장		
86	서필수 (徐以修)	영조 49	1773.1	12	풍덕부사			파직
87	박성환 (朴聖煥)	영조 50	1774.4	2	능주목사			파직
88	조경진 (趙慶進)	영조 50	1774.7	10	고창현감	오위장		
89	서택선 (徐宅善)	정조 즉위	1776.6	19	충익위장			
90	윤면구 (尹勉矩)	정조 2	1778.2	13	남양부사	오위장		
91	이언풍 (李彦豐)	정조 14	1790.12	4	강구권관			파직
92	여종주 (呂從周)	정조 15	1791.5	7	검칙장교		무과	파직
93	신덕룡 (申德龍)	정조 16	1792.1	16	장용영기패관			파직
94	왕한좌 (王漢佐)	정조 17	1793.6	25	어영청행수 교련관			
95	이운상 (李運祥)	정조 19	1795.8	27	훈련도감초관		무과	파직
96	조화 (趙畹)	정조 21	1797.12	5	오위장			
97	피성린 (皮聖麟)	정조 22	1798.6	5	가덕첨사			파직
98	이한두 (李漢斗)	정조 22	1798.12	22	발포만호			
99	장중현 (張忠顯)	순조 즉위	1800.11	28	노량별장			
100	김치오 (金致五)	순조 3	1803.4	7	총사장	오위장		

순번	이름	왕력	제수연월	재직 기간	전력	후력	출사	파직 여부
101	정호남 (丁好南)	순조 4	1804.12	29	우림장			
102	조명집 (曹命集)	순조 7	1807.4	15	어영청천총			파직
103	한근형 (韓根馨)	순조 8	1808.6	15	성진첨사	순천영장		
104	이종로 (李宗魯)	순조 9	1809.12	19	총장위장			
105	조운상 (趙雲祥)	순조 11	1811.8	28	내금장	천총		
106	이익현 (李翼鉉)	순조 14	1814.1	6	수원중군			파직
107	이방영 (李邦榮)	순조 14	1814.8	3	총위장	화령전수문장	무과	
108	심우상 (沈禹相)	순조 14	1814.12	40	경상중군			
109	유형원 (前迴源)	순조 18	1818.5	19	오위장			
110	손응호 (孫應虎)	순조 20	1820.1	19	총익위장		무과	
111	홍장환 (洪章煥)	순조 21	1821.9	15	검사복장	검사복장	무과	
112	이득수 (李得秀)	순조 23	1823.1	7	어영청천총			파직
113	김이만 (金履萬)	순조 23	1823.9	26	오위장		무과	파직
114	윤응렬 (尹膺烈)	순조 25	1825.12	28	우림장		무과	
115	이희오 (李羲午)	순조 28	1828.5	21	오위장		무과	
116	김리협 (金履協)	순조 30	1830.3	16	총융청천총	검사복장		
117	이희명 (李羲眞)	순조 31	1831.7	18	오위장		무과	
118	임이송 (林以松)	순조 33	1833.12	28	오위장		무과	
119	허윤 (許潤)	헌종 2	1836.5	24	오위장	총익위장		
120	성재소 (成載沼)	헌종 4	1838.6	23	총익위장		무과	
121	위중민 (魏鍾敏)	헌종 6	1840.6	19	찰방	총장위장		
122	이병권 (李秉權)	헌종 7	1841.6	7				
123	윤득엽 (尹得楫)	헌종 8	1842.2	12	죽산부사			
124	조진달 (趙鎭達)	헌종 9	1843.3	26	어영청기사장			파직
125	이희장 (李熙章)	헌종 11	1845.6	16	어여청천총	전라우수사	무과	
126	이종응 (李鍾應)	헌종 12	1846.11	18	가덕첨사			파직

순번	이름	왕력	제수연월	재직 기간	전력	후력	출사	파직 여부
127	서전보 (徐典輔)	헌종 14	1848.6	17	총의위장	남병영우후		
128	이초영 (李初永)	철종 즉위	1849.12	11	오위장	남병영우후	무과	
129	유의상 (柳宜祥)	철종 1	1850.12	29	오위장		무과	
130	가행건 (賈行健)	철종 4	1853.6	25	오위장			파직
131	유정렬 (劉正烈)	철종 5	1854.12	8				
132	민택호 (閔宅鎬)	철종 6	1855.8	6	오위장			파직
133	김순근 (金順根)	철종 7	1856.3	8	총융청천총			파직
134	이제 (李睟)	철종 7	1856.12	13	오위장	북병영우후		
135	이재찬 (李載贊)	철종 9	1858.2	2				
136	가중영 (賈中永)	철종 9	1858.5	28	어영청기사장			
137	이유행 (李儒行)	철종 11	1860.10	4			무과	
138	임상현 (林家鉉)	철종 12	1861.3	3	장단부사		음무	파직
139	이희완 (李熙完)	철종 12	1861.7	11	금위영천총	영종첨사	음무	
140	이문영 (李文永)	철종 13	1862.7	12	선전관		음무	파직
141	유상신 (柳相旻)	철종 14	1863.8	22		천총	음무	
142	정제봉 (鄭濟鳳)	고종 2	1865.7	13	금위영기사장	해미현감		
143	백경석 (白景錫)	고종 4	1867.4	39				
144	이흥주 (李興周)	고종 5	1870.7	?				
145	박형빈 (朴馨彬)	고종 22	1885.1	28		친군별영기사장		
146	최현룡 (崔顯龍)	고종 23	1886.1	16				
147	이인성 (李寅聲)	고종 24	1887.6	16	오위장	전라중군		
148	김병수 (金炳朱)	고종 25	1888.11	2	창녕현감	통어영기사장		파직
149	박동진 (朴東鎭)	고종 26	1889.2	18		통어영기사장		
150	남궁탁 (南宮鐸)	고종 27	1890.9	18		통어영기사장		
151	전순기 (全舜基)	고종 29	1892.7	28				
152	최경국 (崔敬國)	고종 33	1894.7	12				

〈참고문헌〉

1. 원전자료

『經國大典』, 『續大典』, 『大典通編』, 『典律通補』, 『兩銓便攷』, 『萬機要覽』, 『조선왕조실록』, 『고려사절요』, 『비변사등록』, 『승정원일기』, 『일성록』, 『연려실기술』, 『신증동국여지승람』, 『潛谷遺稿』, 『與猶堂全書』, 『대동지지』, 『湖西邑誌』, 『가고수영』, 경자일기(규장각 소장 古4254-44), 『牒報選集』, 『공문편안』(규장각 소장 奎18154), 『옥구향보첩』(규장각 소장 奎17868)

2. 저서 및 단행본

고석규, 『19세기 조선의 향촌사회 연구—지배와 저항의 구조』, 서울대출판부, 1998

<http://uci.or.kr//G901:A-0008480577>

권기중, 『조선시대 향리와 지방사회』, 경인문화사, 2010

<http://uci.or.kr//G701:B-00093243943>

김인걸, 2017, 『조선후기 향촌사회 지배구조의 변동』, 경인문화사

노혜경, 2004, 「안정복과 황윤석의 대민정책 비교—목천현을 중심으로」, 『한국사상사학』

<http://uci.or.kr//G901:A-0002003602>

문광균, 2019, 『조선후기 경상도 재정연구』, 민속원

<http://uci.or.kr//G701:B-00101012751>

박 범, 2018, 「正祖代 壯勇營의 軍制와 財政 運營」,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박춘석, 1999, 『태안의 석조문화』, 태안문화원

- 송기중, 2019, 『조선후기 수군 연구』, 역사비평사
<http://uci.or.kr/I410-ECN-0111-2021-000-001498036>
- 송양섭, 2006, 『조선후기 둔전 연구』, 경인문화사
- 이남석·서정석, 1995, 『安興鎭城』, 공주대학교박물관
- 이상식, 2005, 「朝鮮後期 肅宗의 政局運營과 王權 研究」,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수진, 1989, 『조선시대 지방행정사』, 민음사
- 이존희, 1990, 『朝鮮時代 地方行政制度 研究』, 일지사
- 이호경 외, 2014, 『泰安 安興鎭城-2차 발굴조사 보고서』,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 이훈상, 1990, 『朝鮮後期の 郷吏』, 일조각
- 이희권, 1999, 『朝鮮後期 地方統治行政 研究』, 집문당
- 장병인, 1978, 「朝鮮初期의 觀察使」, 『한국사론』 4

3. 일반논문

- 구완희, 1991, 「朝鮮後期の 收取行政과 守令의 ‘要譽’ : 17세기 중엽에서 18세기 말까지를 중심으로」, 『복원사림』 14
<http://uci.or.kr/G901:A-0000858562>
- _____, 1992, 「조선후기 軍役釐整의 方向과 守令」, 『조선사연구』 1
- 권기중, 2013, 「조선후기 수령의 업무 능력과 부세 수취의 자율권」, 『호서사학회』 67
<http://uci.or.kr/G704-001545.2013..67.006>
- _____, 2014, 「조선후기 수령의 지방재정 운영과公私관념-경상도 암행어사 서계를 중심으로-」, 『사림』 48
<http://uci.or.kr/UCI : G704-001587.2014..48.006>
- 김경숙, 2013, 「안정복의 民願政策과 官民疏通」, 『고문서연구』 43
<http://uci.or.kr/10.21027/manusc.2013.43..006>

- 김경옥, 2008, 「조선후기 태안 안흥진의 설치와 성안마을의 공간구조」 『역사학연구』 32
<http://uci.or.kr//G704-001257.2008..32.008>
- 김선경, 2010, 「조선의 목민학 전통과 牧民心書」, 『조선시대사학보』 52
<http://uci.or.kr//G704-000303.2010..52.007>
- 김양수·김양식, 2004, 「조선후기 충청감사와 청주수령의 출신성분과 재임실태」, 『한국사연구』 125
<http://uci.or.kr//G704-000361.2004..125.001>
- 김용흠, 2010, 「18세기 “牧民書”와 지방통치-牧民攷를 중심으로-」, 『한국사상사학』 35
<http://uci.or.kr//G704-SER000002074.2010..35.002>
- 김준혁, 2005, 「正祖代 壯勇營 설치의 政治的 推移」, 『사학연구』 78
- 노혜경, 2005, 「18세기 후반 수령-향리의 갈등양상-木川縣 鄉吏 非理 사건을 중심으로-」, 『고문서연구』 26
<http://uci.or.kr//G704-000717.2005.26..001>
- 문광균, 2016, 「순암 안정복의 잡역 운영론과 그 실제-충청도 목천현감 재임 시기(1776~1779)를 중심으로-」, 『성호학보』 18
- _____, 2019, 「18세기 중엽 전라도 臨陂縣의 부세운영과 縣令 趙祉命의 시책」, 『한국사연구』 184
<https://doi.org/10.31791/JKH.2019.03.184.243>
- 문용식, 1999, 「조선후기 수령자비곡의 설치」, 『조선시대사학보』 9
- 박 범, 2020, 「17~18세기 안흥진 운영의 제도화 과정과 한계」, 『해양문화재』 13
<https://doi.org/10.22882/nrimch.2020..13.141>
- 박정민, 2018, 「한경도 『관찰사선생안』의 명단 검토와 재임 실태」, 『전북사학』 52
- 서정석, 1999, 「泰安 安興鎭城에 대한 一考察」, 『역사와 역사교육』 3·4
- _____, 2021, 「안흥진성의 축조 시기에 대한 검토」, 『호서고고학』 48

- 서태원, 2013, 「조선후기 충청도 安興鎭의 구조와 기능」, 『역사와 실학』 51
<http://uci.or.kr//G704-002032.2013..52.008>
- _____, 2013, 「朝鮮後期 忠淸道 安興鎭의 設置와 變遷」, 『역사와 실학』 50
- 송양섭, 2002, 「17세기 江華島 방어체제의 확립과 鎭無營의 창설」, 『한국사학보』 13
<http://uci.or.kr//G704-000690.2002.13..009>
- 심재우, 1998, 「조선후기 牧民書의 편찬과 守令의 刑政운영」, 『규장각』 21
- 심정보, 2020, 「안흥진성의 축조와 이설」, 『문물연구』 38
- 유현재, 2020, 「태안 안흥진성의 교육적 활용」, 『중등교육연구』, 경성대학교 교육연구원
- 육군본부, 2012, 「제4장 북벌론과 군사력 강화」, 『한국군사사』 7, 경인문화사
- 이선희, 2009, 「조선시대 8도 관찰사의 재임실태」, 『한국학논총』 31
<http://uci.or.kr//G704-SER000013600.2009.31..007>
- 이원균, 1984, 「朝鮮稱代의 水使와 僉使의 交遞實態」, 『부산수산대학교논문집』 33
- 임용한, 2007, 「조선 후기 수령 선정비의 분석-안성·죽산·과천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사학보』 26
<http://uci.or.kr//G704-000690.2007..26.005>
- 정해은, 2001, 「조선후기 선천(宣薦)의 운영과 선천인의 서반직 진출 양상」, 『역사와 현실』 39
- 조원래, 1985, 「18世紀初 順天府의 地方行政動態; 府使 黃翼再의 改善行政事例」, 『남도문화연구』 1
- 진호신, 2019, 「태안 안흥량(安興梁) 일대 역사유적의 현황과 활용방안」, 『해양문화재』 12
<https://doi.org/10.22882/nrimch.2019..12.203>
- 차문섭, 1990, 「朝鮮後期 兵馬防禦營 設置考」, 『국사관논총』 17
- 탁태운, 2011, 「朝鮮後期 安興鎭의 設置와 軍餉 運用」,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Abstract)

Actual Conditions and Characteristics of Special Army Officers of Anheung, Chungcheong-do Province in the Late Joseon Dynas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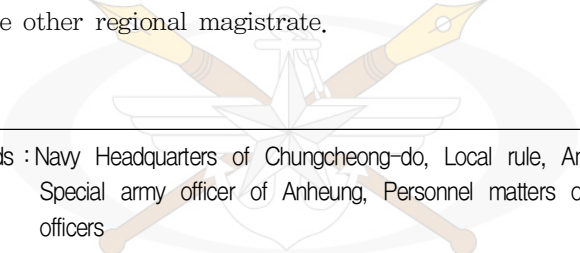
Moon, Kwang-kyun

This study paid attention to special army officer of Anheung, one of naval commanders in Chungcheong-do to examine one aspect of regional political rule done in military territories. For this, the study examined special army officers of Anheung's actual conditions of holding office as preliminary work and a case study for the study on Anheungjin Camp's regional political rule.

In this study, Special army officers of Anheung which was analyzed, was targeted at 140 people who had been appointed since King Hyojong. Special army officers of Anheung's term in office was legally 30 months. But the average period that special army officers of Anheung were in office in the reigns of Hyojong of Joseon to Gojong of Korea was about 17 months. Special army officers of Anheung who were termed out of office continued public office in various fields including capital and local officials. About 40% of the total number of officers except the people who dismissed from office belonged to Buhogun to wait for personnel appointments, about 26% was appointed commanders of the senior grade of third rank including commanders of Five Military Commands and commanders of Concurrent Royal Stables. The rate to be promoted to local officials was about 20%. Among them, the rate to be promoted to naval commanders, the high rank of the naval forces was just 6.5% and the case of being promoted to garrison commanders, army inspectors, chiefs of staffs, and county

magistrates was 13%.

On the other hand, 27.8% of the whole special army officers of Anheung were disgraced as they dismissed from office, were exiled, or were forced into the army. Among them, the people who dismissed from office found from historical records were 36 people. The majority of them dismissed from office because of careless management and transportation of cargo vessels and imperfect management of military food. In addition, the failure of the oyster port of Anheung Port, insufficient reports and management of handover lines, excessive collection of taxation, and matters to repair the mountain fortress led to their dismissal from office. This shows that special army officers of Anheung was conducting Local Magistrates, such as the other regional magistrate.



Keywords : Navy Headquarters of Chungcheong-do, Local rule, Anheungjin, Special army officer of Anheung, Personnel matters of military officers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1, No. 120, pp. 225-242
<https://doi.org/10.29212/mh.2021..120.225>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서평] 국제관계의 구조 속에서 임진전쟁을 재조명하다

— 김문자 저, 『임진전쟁과 도요토미 정권』 —

김경태*

1. 전쟁은 왜 일어났는가

임진전쟁하면 떠오르는 인물은 누구인가? 여러 사람이 떠오를 수도 있겠지만 한중일 삼국으로 범위를 넓혔을 때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이는 바로 도요토미 히데요시일 것이다. 전쟁을 일으킨 자는 바로 그이며, 그의 죽음으로 인해 전쟁이 끝났기 때문이다. 임진전쟁을 다룬 저작은 무수히 많지만, 적어도 한국의 연구서에서 도요토미 히데요시, 혹은 그 정권을 부각한 예는 많지 않다. 이를 감안하면 이 책은 제목에서부터 이 전쟁을 국제적이고 구조적인 시각에서 바라보고자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저자는 「책을 내면서」에서 전쟁 중에 전개된 강화교섭에 대해

* 전남대 역사교육과 조교수

아직 불분명한 점이 많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외교사적 측면에서 전쟁의 실체를 분석하는 데 중점을 두었음을 밝히고 있다. 세 나라 사이에 강화교섭이 진행되고 파탄에 이르는 과정을 통해 전쟁이 어떻게 발발했으며, 왜 교섭이 성공하지 못하고 재침략으로 이어졌는지 살피고, 나아가 전쟁이 끝난 후의 국교 재개 문제와 전쟁이 남긴 상처가 어떠했는지도 검토하고자 했다는 것이다. 저자가 임진전쟁을 넓고 길게 조망하고자 했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다.

이 책은 임진전쟁 연구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저자가 임진전쟁에 관해 저술한 총 17편(서장과 종장 포함)의 글을 실고 있다. 서장은 「히데요시는 왜 전쟁을 일으켰을까」라는 문제제기를 비롯하여 임진전쟁 연구의 동향과 관련 일본자료의 소개로 이루어져 있다. 이어서 1부 「전쟁의 서막과 강화교섭」에서는 전쟁 직전의 교섭에서 전쟁 발발 후 이루어진 교섭의 전말을 다루고 있다. 2부 「자연재해와 정유재란」에서는 정유재란이 발발하게 된 원인에 대한 다면적인 연구를 실고 있다. 3부 「전쟁 종결과 국교 재개」는 전쟁 이후 조선과 일본의 새 정권인 에도 막부의 국교재개, 그리고 이를 통해 만들어진 새로운 동아시아 국제질서에 관해 살피고 있다. 4부 「전후 처리와 전쟁의 상처」에서는 전쟁사 서술에서 자칫하면 지나칠 수 있는 존재들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종장 「명분 없는 전쟁의 종결」을 통해 저자가 이 전쟁을 어떻게 자리매김하려 했는지 알 수 있다.

기존에 출간된 임진전쟁 관련 저작들은 일부 비전문적인 저술을 제외하고, 전쟁의 시작부터 종결까지 완결성을 갖춘 경우가 많지 않았다. 한정된 문제의식, 한정된 사료에 입각해서는 전쟁 전체를 조망하기 어려운 법이다. 그러나 이 책은 전쟁 원인론에서부터 강화교섭의 전말과 전쟁의 종결, 그리고 전쟁 이후 양국

관계와 후대의 인식까지 다루고 있다. 따라서 시대사적으로도 완결성을 갖추었다는 면에서 높은 의미를 지닌다. 또한 연구사적으로 가장 최근 단계의 연구가 종합되어 하나의 서적으로 나왔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역사는 인과를 밝히는 학문이기도 하다. 어떤 사건에서 원인과 결과를 따지는 것은 역사학의 의무이다. 임진전쟁의 원인과 결과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존재했고 현재도 논의가 진행 중이다.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해당 분야가 살아있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이론에 반론 가능성이 막혀있다면, 혹은 더 이상 논의가 진전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문제일 것이다. 아쉽게도 한국에서는 전쟁 원인론에 대해 내부의 불만을 외부로 돌리기 위한 것이라는 정도의 막연한 해석이 일반적이었고, 전쟁의 결과론도 일종의 자학 논리에 묻혀 있었다.

전쟁은 다양한 국내외적 배경이 집적된 후, 한 번의 방아쇠가 당겨져 발생하는 것이다. 전쟁 원인론은 보다 넓은 시야에서 전쟁을 바라보기 위해 중요한 주제이며, 따라서 가설과 논의의 폭이 넓어질 필요가 있다. 근래에는 임진전쟁을 국제적인 시야에서 바라보려는 연구자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한국학계에서 그러한 경향을 이끈 연구자 중 한 명이 바로 이 책의 저자이다. 이 책의 서장에서도 임진전쟁 원인론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저자는 한일 양국학계의 여러 원인론을 소개한 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쟁이라는 군사적인 긴장 조건 속에서 군역동원을 통해 자신의 기반을 공고히 하려 했던 것”을 핵심적인 원인으로 꼽고 있다. 그리고 히데요시가 침략에 이르기까지 어떤 조치를 취했고 어떤 준비를 했는지 시간 순으로 꼼꼼히 짚어주고 있는데, 이를 통해 그의 침략이 망상에서 비롯된 선언적인 것이 아

나라 치밀한 준비 과정을 거친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¹⁾ 요컨대 전쟁을 누가 일으켰는지, 그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그가 그러한 계획을 세우게 된 시대적 배경이 무엇인지, 침략에 이르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살펴보는 것이 전쟁사 연구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환기해 주고 있는 것이다.

2. 임진전쟁 연구와 사료의 문제

전통시대 국제관계 연구에서 학계 간 교류가 항상 활발한 것은 아니다. COVID19 이후 여러 나라의 학자들이 직접 만나 교류할 기회는 당분간 사라지게 되었다. 물론 만남의 빈도와 교류의 실효성이 반드시 정비례하는 것은 아니다. 서로의 연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진정한 교류는 이루어질 수 없다. 교류의 다리로서 언어가 중요하며, 역사학에서는 상대의 사료를 해독하는 소양이 필수적이다. 특히 전쟁사와 같은 관계사는 어느 한쪽의 사료만으로 완결성을 가질 수 없다. 그러나 전쟁 자체가 첨예한 갈등의 장이었던 만큼 자칫하면 특정 사료만을 근거로 하여 한쪽으로 치우친 해석만이 난무할 가능성이 높다. 임진전쟁사는 “민족의 치욕”이자 “국난극복”을 상징하는 역사로서, 일국사적 해석이 각광받는 추세 속에 한정된 사료만으로 완결성을 갖추고자 하는 “지적 게으름”이 다소 관측되었던 분야 중 하나이다. 물론 서로 다른 이야기를 보여주는 여러 사료를 동시에 분

1) 저자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발언에서 목격되는 공명심과 명예욕이라는 요소들을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았다. 공명심과 명예욕은 전국시대를 거치며 무력으로 일본을 장악한 히데요시의 일종의 자신감의 표현이었다는 것이다.

석하고 그 사이에서 역사적 사실을 찾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다. 그러나 해당 분야를 전공하는 연구자라면 그 어려움을 돌파해야만 한다.

이 책은 서장에서 「임진전쟁 관련 일본 자료」라는 별도의 장을 구성하여, 임진전쟁 연구를 위한 일본자료를 현존 현황 및 분류부터 활용방법까지 차근차근 짚어주고 있다. 저자는 일본의 사료를 사용하여 임진전쟁 연구를 본격적으로 진행한 최초의 연구자 중 한 사람이다. 이후 한국학계의 젊은 연구자들이 일본의 사료를 확인하고 이해하는 데, 그리고 일본 학계의 동향을 파악하는 데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였다. 본 서평을 쓰고 있는 필자 역시 많은 도움을 얻었다. 이 책에서는 이외에도 여러 글에서 임진전쟁 연구에서 일본 자료를 어떻게 사용하는 지, 그 실제 활용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 그의 이러한 노력은 사료에 둔감한 관련 연구자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다. 물론 이 경종은 조선 사료를 이용하지 않는 일본 연구자들의 위에도 울려야 할 것이다. 다만 앞으로는 일부 연구자들에 의한 개별적 연구를 넘어, 학계 차원에서 한국과 일본, 중국의 사료를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방대한 사료의 정리 작업은 소수의 연구자들의 노력으로만 가능한 일이 아니다. 이 책을 계기로 사료 정리 사업의 첫 걸음이 옮겨지기를 바란다.

3. 국제관계사로서의 임진전쟁 연구

- 전쟁의 다른 면, 강화교섭

이 책은 임진전쟁이라는 명칭에서부터 이 전쟁을 일국사적 시

각이 아닌 국제적인 시야에서 보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저자는 ‘왜란’이라는 용어는 동아시아 질서를 뒤흔든 이 전쟁의 본질을 명확히 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임진전쟁’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고 이는 ‘동아시아에 새로운 국제질서를 만든 국제전쟁’이라는 시각이 담겨있다고 하였다.

역사적 사건을 살펴볼 때는 그 사건과 관련한 모든 배경을 확인해야만 한다. 저자는 이 전쟁의 실제 전투 기간은 1년 6개월에 불과하고, 나머지 5년여는 강화교섭이 전개되었음을 강조했다. 그렇다면 과연 강화교섭은 그저 전투가 벽에 부딪혔기 때문에 임시방편으로 시작했던 것일까. 교섭의 배경에는 무엇이 있고, 교섭을 담당한 인물은 어떤 이력을 지닌 이들이었을까. 제1부는 그에 대한 구체적인 대답이다. 여기서는 전쟁 기간 동안 벌어졌던 강화교섭을 다양한 주체의 시각에서 살펴보고 있다. 그리고 이 각각의 면이 모여 하나의 입체적인 실체를 구성하고 있다.

첫 번째 글에서는 시마이 소시쓰라는 인물이 등장한다. 그는 임진전쟁을 전후한 시기 규슈 지역에서 활동하던 상인이다. 일본의 상인이 왜 갑자기 등장한 것일까? 전쟁에서는 항상 전투와 교섭이 교차한다. 임진전쟁 직전부터, 전쟁 기간, 전쟁 이후에 이르기까지 교섭은 항상 존재했다. 교섭의 맨 윗줄에는 나라가 존재한다. 그러나 나라의 공식적인 입장을 전달하고, 두 나라 사이의 입장 차를 메우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이를 조율할 사람들이 필요하다. 현장에서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눈 이들 중에는 바로 시마이 소시쓰와 같은 상인들도 있었다. 이 글에서는 시마이 소시쓰가 통신사 파견을 위한 해적 송환 문제에 관여하였고, 이후에도 전쟁을 늦추기 위해 노력했던 점을 부각했다. 이와 같이 일본의 사료를 사용하여 일본 인물에 접근한 연구를 통해 우리

는 조선이 1590년 통신사를 일본에 파견하기까지 어떤 교섭이 이루어졌는지, 나머지 절반의 진실에 접근할 수 있다.

전쟁 중의 강화교섭은 공식적으로 명과 일본 사이에서 진행되었다. 조선은 당초 강화교섭 반대 의사를 표했으나, 결국 교섭에 개입할 수밖에 없었다. 두 번째 글에서 저자는 조선이 일관되게 교섭을 반대했다는 견해에 반론을 제기한다. 즉 조선이 필사적으로 전투에 임하면서도 강화교섭이 전쟁을 유리하게 종결시키는 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조선은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교섭에 대처했고, 그 배경에는 백성을 구제해야 한다는 대의명분과 함께 선조의 정치적 의도도 깔려 있었다고 하였다.

세 번째 글은 조선이 독자적인 방식으로 교섭에 참여하는 장면 중 하나를 보여준다. 의승장이었던 사명당 유정과 가토 기요마사의 교섭이다. 사명당 유정은 세 차례나 기요마사와 직접 만나 교섭을 하였고, 임진전쟁 이후에도 일본에 가서 도쿠가와 이에야스와 만났던 인물로, 일반적으로는 설화적인 에피소드로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설화적인 면을 소거하더라도 그의 활동은 분명 놀라운 지점들이 많다. 저자는 왜 그러한 장면이 만들어졌는지에 관심을 두고 이에 합리적으로 접근하여, 왜 관인이 아닌 그가 교섭에 나섰는지, 그리고 교섭의 결과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짚었다. 사명당 유정의 파견은 일본의 수뇌부를 분열시키는 것이 일차적인 목적이었으나 이 부분은 성공하지 못했다. 그러나 명과 일본 사이에 진행 중이던 강화교섭의 진행 과정을 파악하여 조선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는 데 기여했다. 그리고 이러한 활약에 힘입어 전쟁 후 조선과 에도막부의 강화회담에 적임자로 선발되어 두 나라의 국교가 맺어지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고 보았다.

1부의 마지막은 강화교섭 전개와 파탄에 관한 글이다. 강화교섭이 시작된 이후, 히데요시는 전쟁을 처음 계획했을 때와 같이 원대한 목표를 가질 수 없었다. 따라서 교섭이 진행되면서 조건을 축소할 수밖에 없었다. 논의의 핵심은 그가 최종적으로 제시한 조건이 무엇이며, 무엇에 만족하지 않아서 다시 전쟁을 일으켰는지에 있다.²⁾ 현재 학계에서는 히데요시가 조선의 영토를 원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기에 재침을 감행했다는 학설이 대표적이다. 이 ‘영토론’에서는 그 영토가 조선 전역인지, 일부인지, 간접적인 방법으로 요구한 것인지가 관건이다. 그 외에 학설로 조선의 왕자를 인질로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 무역 장악 욕구 등이 있다.

저자는 명측이 일본군을 조선에서 모두 철수하라고 요구하여 히데요시가 교섭을 결렬시켰다는 견해, 즉 영토에 중점을 두는 입장이다. 그러나 기존의 영토론과는 차이를 보인다. 즉 히데요시는 당당하게 시작한 침략전쟁이 수포로 돌아가고 국내의 정세도 불안정한 상황에서 정권을 유지하기 힘든 상황에 직면했다. 그러나 당시의 전력으로는 전라도 지역을 비롯한 조선 남부 지역을 장악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부산 등 경상도 일부만이라도 차지하여 이를 발판으로 해외 무역을 주도하려 했던 것이라고 하였다.³⁾ 임진전쟁을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히데요시의 조건이 축소·변형되는 양상을 면밀히 추적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한편 일본 학계에서 제기되고 있는

2)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교섭 초기 제시했던 과대한 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자신을 일본 국왕으로 책봉하는 데 그친 것에 분개하여 재침을 시도했다는 설은 에도시대의 창작물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사실과는 거리가 멀다. 저자 역시 이를 지적하면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명의 책봉을 받은 것을 분명한 사실로 규정했다.

3) 기존의 연구에서는 히데요시의 재침이 전라도 지역을 점령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한 경우가 많은데, 저자는 이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 일본의 전력상 전라도를 포함한 조선 남부 4도를 점령하기는 어려웠다는 것이다.

‘왕자론’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여러 사료를 통해 볼 때 조선의 왕자가 오지 않았다는 것은 부차적인 이유 내지 핑계에 불과했다는 것이다.⁴⁾ 이 글에서도 드러나듯이 저자는 전쟁을 동아시아 국제질서라는 구조적인 측면에서 바라보고 해석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강화교섭은 저자의 전공분야이다. 학계에서는 하나의 학설을 만들어 낸 연구자가 이후 자신의 연구를 더 이상 진전시키지 않고 묵혀두는 사례를 간혹 목격한다. 그러나 저자는 새로운 연구 성과와 사료를 결코 지나치지 않았다. 이처럼 최신의 연구경향을 반영하여 끊임없이 학설을 보완하고 있다는 점 역시 후학들의 귀감이 된다.

4. 다시 일어난 또 다른 전쟁, 정유재란

제2부는 정유재란에 대한 세편이 글과 전쟁 중 정보전달에 대한 보론을 싣고 있다. 정유재란에 비중을 두었다는 사실에는 다

4) 본 서평의 필자가 정유재란 발발의 원인으로 ‘왕자론’을 제시했다는 데 대해서는 다소의 부연설명 내지 해명이 필요할 것 같다. 필자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미 실력으로 조선의 영토를 요구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음을 전제했다. 히데요시는 이러한 현실을 인정하고 조선의 통신사 파견을 받아들일 생각이었다. 왕자가 오지 않는다는 사실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본다. 그러나 지진이 발생하여 전쟁 종결을 위한 ‘무대’인 후시미성이 파괴되고, 조선에서 보낸 통신사의 관직이 낮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히데요시는 자신의 체면이 떨어졌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조선에 대한 요구를 ‘왕자’로 변경했다는 것이다. 다만 명분상으로는 그가 줄곧 왕자를 요구했던 것처럼 비추어질 필요가 있었다. 교섭 결렬의 내막을 잘 알고 있는 고니시 유키나가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조선의 왕자가 오지 않아 교섭이 파탄에 이르렀다는 히데요시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요컨대 필자의 견해는 히데요시가 처음부터 조선의 왕자를 원했으나 왕자가 오지 않아서 재침을 명령했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짚어두고자 한다.

시금 주목해야 할 것이다. 과거의 연구에서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허황된 요구에 대해 명은 책봉이라는 전통적인 방식을 고수했고, 그 사이의 간극을 명과 일본의 교섭 담당자들이 거짓으로 메웠다고 보았다. 그러나 바로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현대의 연구에서는 강화교섭에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강화교섭 파탄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있다면 다시 일어난 전쟁에 대해서도 새로운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똑같은 전쟁이 아니었던 것이다.

다행히 최근의 임진전쟁 연구에서는 정유재란이 각광을 받고 있다. 이 전쟁에서 나타난 이전과 다른 양상을 밝혀내는 과정에서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제2장 「전쟁 재개와 야나가와 시게노부柳川調信의 협상」에서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1596년 9월 강화교섭 결렬 선언을 한 이후, 조선과 일본을 오가며 전쟁 재개를 막기 위한 교섭을 했던 야나가와 시게노부의 활동을 재구성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일본의 사료와 조선 사료를 노련하게 사용하고 있다. 한편 이 글에서는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히데요시의 재침 선언 직후, 전투 준비가 행해지는 동시에 그 이면에서는 여전히 교섭이 진행 중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결과가 ‘실패’였다고 할지라도 과정을 살펴봐야만 한다는 점이다. 인과관계의 증명이 역사학의 의무라는 당연한 사실 외에도, 그 과정 자체가 사건의 앞뒤 시기와 연결되기 때문이다. 요컨대 야나가와 시게노부는 강화교섭 기간은 물론, 전쟁 이후에도 조선과의 교섭에서 일선에 위치했다. 그의 행동, 나아가 쓰시마와 일본의 언행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퍼즐 조각 중 하나인 정유재란 직전 그의 활동을 확인해야만 하는 것이다.

임진전쟁은 예상하기 어려웠던 전쟁이었다. 수십만의 일본군이 바다를 건너 아무런 잘못이 없던 조선을 침략하리라는 예상을 과연 할 수 있었을까. 이처럼 이전에 없었던 일을 예측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그러나 정유재란은 달랐다. 강화교섭 내내 교섭 결렬과 전쟁 재발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었고, 강화교섭이 파탄에 이른 이후에는 언제라도 전쟁이 재개될 수 있었다. 강화교섭 결렬에서 전투 개시에 이르는 기간 동안, 사람들은 전쟁이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를 알기 위해 정보수집에 힘을 기울였다. 정보를 얻기 위한 욕구가 전에 없이 최고조에 달했다. 한국의 연구자로서 임진전쟁 시기의 정보에 주목한 최초의 연구자이기도 한 저자는 대표적인 연구인 보론 「전쟁 중의 정보수집과 전달」에서 조선의 정보 전달 방식과 실태를 다양한 정보 주체를 통해 살펴보고 있다. 정보 전달의 주체는 봉수와 파발, 역참과 같은 공식적인 것 외에도, 조보(朝報)를 통한 민간의 정보 전달, 그리고 잠상인 등의 활동에 의한 첩보 형태도 있었음을 상세히 밝히고 있다. 전쟁 중에 공식적 정보 전달 방식이 무너지기도 하고, 전달되는 정보 중에는 부정확한 것도 있었다. 그러나 조선은 실수를 반성하며 끊임없이 시스템의 재건을 꾀하면서 대안을 도모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조선의 정치·사회 시스템에 대한 구체적 연구는, 안일함에 젖은 조선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했다는 자조적인 평가에 대한 반론으로 활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3장 「히데요시의 사망과 조·일 교섭」은 시간적으로 전쟁 마지막에 해당한다. 그러나 단순히 “히데요시의 죽음으로 전쟁이 종결되었다”를 이야기하기 위한 글은 아니다. 히데요시의 죽음을 전후한 시기, 다시금 ‘소문’이 들끓기 시작했다. 히데요시는 말년에 이르러 건강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다. 따라서 사망 이전부터 사망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이 글에서는 히데요시 병사 정보가 생성·전달되는 방식과 소문에 대한 조선의 반응을 살펴보고, 나아가 실제 히데요시 사망 후 일본군 철수 과정에서 조선

이 보여준 대응과의 상관관계를 확인했다. 저자는 히데요시 병사 풍문 중에는 전투를 수행하기 어려웠던 일본군이 명과의 강화교섭을 위해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것이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조선은 이를 파악하고 방비에 주력했다고 한다. 히데요시 사후 일본군 철수시에도 조선은 철수 병력이 내전에 동원되는 것으로 생각했으나, 이후 전해진 정보를 통해 히데요시 사망에 의한 것임을 알게 되었다고 하였다.

한편 제2부가 「자연재해와 정유재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흥미롭게 다가올 것이다. 인류 역사의 크고 작은 전환점에 자연이 개입하는 경우가 있다. 1장 「도요토미 정권기의 자연재해와 대외관계」에서는 일본에서 발생한 지진과 도요토미 정권기 사건 사이의 연관 관계를 분석하였다. 특히 당시 빈발했던 지진에 주목했는데, 그 중에서도 1596년 책봉사와 통신사 접견 직전에 발생한 후시미 대지진은 교토라는 정치 중심지에서 발생하여 파장이 컸다고 보았다. 저자는 ‘히데쓰구 사건’에 이어 지진이 일어났고 명과의 교섭마저 결렬되자 히데요시 정권에는 큰 위기가 찾아오게 되었고, 이를 돌파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조선 재침을 감행한 것으로 보았다. 강화교섭과 지진의 관계에 관해 한일 학계에서 진행된 일련의 연구 등, 새로운 연구성과를 적극 반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한편으로, 우리 학계에서도 이러한 연구를 선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게 한다.

5. 전쟁의 종결과 남겨진 이들

이 책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3부와 4부가 전쟁 이후의 일을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제3부에서 정권 대 정권 차원의 외교 관계를 다루고 있다면, 제4부에서는 수면 아래의 존재들과 전쟁 이후 만들어진 기억에 대한 연구를 담고 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전쟁사는 전투만으로 완결될 수 없다. 나아가 전쟁 이전의 어떤 사실이 전쟁으로 이어졌는지, 전쟁이 전쟁 이후의 역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함께 검토해야만 전쟁사를 온전히 재구성할 수 있다. 조선이 안이함에 젖어 전쟁을 자초했다거나, 전쟁 이후 명은 청으로 교체되고, 도요토미 정권은 도쿠가와 정권으로 바뀌었는데 조선만은 국가가 유지되어 일신의 기회를 놓쳤다는 식의 단순명료한 ‘춘평’은 역사를 역사적으로 평가하려는 자세로 보기 어렵다. 앞에서 전쟁 원인론과 강화교섭을 둘러싼 다양한 논점이 살아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전쟁 이후의 관계사에도 검토할 부분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

3부의 1장은 조선과 일본의 새로운 정권인 에도막부와 국교 재개과정을 살피고 있다.⁵⁾ 여기서는 특히 에도막부와 쓰시마의 입장을 전쟁 직후부터 임진전쟁 이후 조선이 최초로 일본에 사신을 파견하면서 국교가 성립하는 시기까지 각 단계별로 자세히 검토하였다. 국교 재개 과정에는 에도막부와 쓰시마가 적극성을

5) 이 교섭을 거쳐 조선과 국교를 맺게 되는 일본의 정권은 에도막부이며, 에도막부의 쇼군은 도쿠가와 가문이다. 이전에 조선과 관계를 맺었던 무로마치막부가 아니며, 도요토미 정권도 아니다. 따라서 이를 국교 재개로 봐야할지, 국교 성립으로 규정해야할지 고민이 될 수 있다. 조선이 ‘일본 국왕’과의 대등한 관계를 원했고, 그 근원이 무로마치막부와 관계라고 본다면 ‘재개’라는 용어도 사용가능하다고 생각된다.

가지고 조선에 접근하고 있었다. 일방적인 침략으로 피해를 입었던 조선으로서는 일본측의 접근에 비교적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국교 재개 과정의 전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당시 일본측의 논리와 명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자칫하면 일본의 군사적 위협에 조선이 무력하게 대응했다는 논리에 휘말릴 수도 있다. 이 글에서는 일본 내 권력을 장악해가던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에도 성 완공 시기를 기점으로 대내외적인 선전 효과를 위해 통신사 도래를 성사시키고자 했다는 것, 그리고 일본의 사정을 정탐하고 전쟁을 마무리 짓고자 한 조선과 명의 조·일 관계에 대한 불간섭 기조 등 세 가지 배경이 국교재개 과정에 종합적으로 연동되었음을 규명하였다.

일본의 지속적인 국교 재개 요구에 대해, 조선은 최종적으로 두 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선릉과 정릉을 파헤친 범릉적(犯陵賊), 그리고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국서(國書)였다. 조선은 현재 일본의 국정을 담당하고 있는 이가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맞는지, 그리고 그가 국교 재개 교섭을 이끌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교섭의 끝자락에 조선에 도착한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국서의 진위 여부는 한일 양국 학계의 큰 논쟁점 중 하나이다. 논쟁의 이면에는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국서가 진서라면 일본이 먼저 굽히고 들어간 것이고, 위서라면 결과적으로 그에 대한 답서인 조선국왕이 국서를 먼저 보낸 것이 되니 일본이 면을 세우게 된다는 해석이 놓여있다. 그러나 양국 학계의 자존심과 별개로, 역사적 사실에 접근하려는 시도는 언제나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저자는 역관 손문욱이 나선 교섭 일선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살피는 한편, 이에야스의 정치적 입장과 당시 일본의 외교문서군을 확인하여, 이에야스가 ‘국서를 먼저 보내는 것’을 꺼릴 이유가 없었다는 결론에 이른다. 즉 일본의 정권 장악

의지를 확고히 표명하기 위한 이에야스에게 국서 작성과 범릉적을 잡아 보내는 일은 어려운 조건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이 글에서도 앞서와 마찬가지로 ‘국가의 기강과 안전을 되찾으려는 조선’, ‘막부정권의 계승과 안정을 국내적으로 과시할 필요가 있었던 일본’, ‘더 이상 조선과 일본의 강화교섭에 관련하고 싶지 않은 명’이라는 세 나라의 입장을 함께 보여주며 논리의 합리성을 확보하고 있다.

4부는 임진전쟁 당시 일본으로 끌려간 조선인 피로인 문제, 조선에 투항한 일본군인 항왜에 대한 고찰, 그리고 에도 시대 일본의 히데요시 인식에 대한 글로 구성되어 있다. 피로인(被擄人)은 당시에 사용했던 용어로서, 대개 민간인으로서 강제로 끌려간 이들을 지칭한다. 일본군은 임진전쟁 전 기간에 걸쳐 조선인을 납치했으며, 특히 정유재란 때에는 조직적으로 대규모의 납치가 이루어졌다. 일본으로 끌려갔다가 다행히도 돌아올 수 있었던 이들이 남긴 여러 기록을 통해, 그리고 에도막부와 국교 재개 후 통신사가 쇄환(刷還)해 온 이들에 대한 기록을 통해, 피로인의 규모와 그들의 인생 역정에 접근할 수 있다. 그러나 피로인이 어떤 목적에서 어떻게 잡혀갔는지, 어디에서 어떤 생활을 했는지 살피기 위해서는 조선의 자료만으로는 충분치 않은 점이 있다. 저자는 일본의 축적된 연구성과와 함께 조선의 사행록을 비교 검토하여, 납치 목적 및 규모, 거주했던 지역, 그리고 그들의 귀환까지 살펴보았다. 그들이 겪어야 했던 고난의 역사를 애석하게 바라보는 데 그치지 않고 원인과 결과까지 꼼꼼히 재구성해내는 것이 역사학의 역할이라는 점을 되새기게 한다.

피로인의 반대편 어딘가에는 항왜(降倭)가 존재한다. 물론 항왜는 대개 전투요원이나 기술자로서 조선에 투항한 이들로, 민간인을 강제로 끌고 간 피로인과는 그 성격에서 큰 차이가 있

다. 그러나 그들의 운명 역시 결코 순탄하지는 않았다. 「투항한 일본인 항왜降倭」에서는 항왜가 발생한 배경과 그에 대한 조선과 일본의 반응을 살핀 후, 항왜가 이후 어떤 운명을 겪게 되었는지까지 관심의 폭을 넓히고 있다. 저자에 의하면 항왜는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식량 부족, 노역 동원에 시달린 일본군이 투항하면서 시작되었고, 정유재란 때에는 염전 분위기가 높아지면서 항왜가 속출했다고 보았다. 항왜는 처음에는 첩포를 제조하거나, 군사 기술을 전수하는 전문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으나, 그 수가 늘어나면서 군사로 편입 되어 일본군과 전투에 투입되었다. 그러나 조선인들에게 이들은 신뢰할 수 없는 이들로 여겨졌다. 따라서 전쟁 이후 이들에 대한 조치는 어려운 문제로 다가왔다. 이들을 북방 변경에 두고 활동에 제한을 두려했던 조선과 조선인과 같은 대우를 받기를 원하는 항왜 사이의 갈등은 ‘이괄의 난’에 일부 항왜들이 동조하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했다. 한편 저자는 일본에서도 항왜 자손의 쇄환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 사료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에 관한 흔치 않은 흔적으로 보인다. 일본에서 조선에 남은 일본인들의 송환을 요구한 바가 있는지, 일본으로 돌아갔다면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4부의 마지막은 「에도江戸시대 히데요시에 대한 인식」이다. 갑자기 분위기가 다른 글로 느껴질지 모르나, 자세히 살펴보면 전체의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쟁은 갈등의 역사이다. 그리고 갈등은 관계의 한 양상이기도 하다. 전쟁에서 전투와 교섭이 병행하듯이, 관계에서는 우호와 갈등이 함께한다. 현재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어떠한가. 역사는 현재 진행형이며, 시대의 필요에 따라 역사는 폭력적인 행위의 근거로 활용되기도 한다. 역사가 가장 피해야 할 활용처이다. 이 글에서는 에도시대

초기 유학자들의 시각에서 부정적인 면이 부각되던 히데요시상에 17세기 말에 이르러 서민 영웅적인 이미지가 등장하기 시작했으며, 해방(海防) 문제가 대두하던 18세기 중후반 이후에는 히데요시의 조선침략을 해외 정복전쟁으로 이해하고 동조하는 상황이 벌어져 궁극적으로는 해외팽창론과 연결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그 결말은 ‘히데요시가 미처 이루지 못 했던 역사의 재현’이었다. 저자는 히데요시의 조선침략을 칭송하고 그에게 영웅의 이미지를 부여한 것은 에도시대부터 잉태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양국 관계가 갈등 일로를 달릴 때, 과거의 역사가 어떻게 기억되고 있는지에 시선을 집중하고, 잘못된 해석을 경계하며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역사학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시켜준다.

종장 「명분 없는 전쟁의 종결」은 이 책의 대단원이다. 저자는 여섯 가지의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임진전쟁의 원인과 목적은 히데요시의 개인적 야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며, 동아시아 국제 정세와 일본의 국내 사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둘째, 전쟁 기간 중 5년 이상은 일본과 조선, 일본과 명 사이에 강화교섭이라는 외교전이 진행되었으며, 강화교섭을 살피는 것은 외교의 실상과 정유재란의 발발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셋째, 조선 지배를 부정당한 히데요시가 정권 유지를 위해 강화교섭을 파국으로 몰고 가 전쟁을 다시 시작한 것이다. 넷째, 1596년 후시미 지진이라는 자연재해가 정유재란 발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다섯째, 정유재란 발발의 배경에 히데요시가 조선의 경상도 지역을 확보하여 국제 무역을 재개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여섯째, 전쟁 후 조선과 일본(에도막부)가 조속히 국교를 재개한 배경에는 양국 모두 정권의 안정이 필요했다는 점과 명의 불간섭 기조가 있었다는 것이다.

저자는 마지막으로 “임진전쟁 연구는 삼국이 모두 자국사의 범위에서 진행되었던 것이 사실”이라는 아쉬움과 함께 “동아시아 공동체 지향과 관련해 새롭고 다각적인 차원에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한 기초적인 작업으로 전쟁시기 삼국의 사료를 집대성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제언을 남기고 있다. 이 책으로 모아진 성과들이 그러한 문제의식과 그에 입각한 노력의 일환이었음이 분명하다. 우리 앞에는 더 늦기 전에 연구자들의 의지와 힘을 모아 다음 세대를 위한 비옥한 연구의 기반을 남길 의무가 놓여있다.

임진전쟁에 대한 저작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따라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라면 옥석을 가리기가 쉽지 않다. 그럴 때면 책을 펼쳐 내용을 살펴보자. 이 책이 우리의 사료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사료도 자유롭게 구사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를 토대로 시간적·공간적으로 이 전쟁을 폭넓게 통찰하고 있는지. 만약 이를 충족한다면 옥에 가까운 저작일 것이다.

이 책은 한국의 임진전쟁 연구가 다다른 지점을 알려주는 중요한 저작이다. 자국의 일부 사료만으로, 그리고 일방적이거나 극단적인 해석만으로 전쟁 전체를 구성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일각에, 자각과 반성을 호소하는 효시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해당 분야의 연구자 및 전쟁사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 그리고 외국 학계의 연구자들 모두에게 일독을 권하는 바이다.

연구소 동정

1. 대외교류 및 주요 활동

○ 2021-2차 군사사연구포럼

- 일자/장소: 2021. 6. 18(금) / 군사편찬연구소 회의실
- 참석: 군 및 대외기관 20여 명
- 세부진행

* 사회 : 김경록(군사편찬연구소)

14:00~14:10	개회사, 참석자 소개, 인사말씀
14:10~15:10	제1주제 : 박은식의 역사물과 독립전쟁 * 발표자: 노관범(서울대) 토론자 : 정욱재 (독립기념관)
15:10~16:10	제2주제 : 일본의 독도영유론 주장에 대한 고찰 * 발표자 : 곽진오 (동북아역사재단) 토론자 : 고선규 (와세다대)
16:30~17:30	제3주제 : 중일전쟁기 일제 헌병의 한국통치 * 발표자 : 조건 (동북아역사재단) 토론자 : 이승희 (동덕여대)
17:30~19:00	맺음말씀, 사진촬영, 폐회, 식사



〈 2021-2차 군사사연구포럼 〉

2. 인 사

○ 임명

- 이신재(조사연구부장) : '21. 7. 1.부
- 윤시원·이휘현(조사연구부) : '21. 7. 1.부

○ 퇴직

- 김태구(국방사부장) : '21. 6. 20.부
- 백기인(군사사부) : '21. 6. 30.부
- 손규석(조사연구부) : '21. 6. 30.부

○ 전역

- 김도영(조사연구부장) : '21. 5. 31.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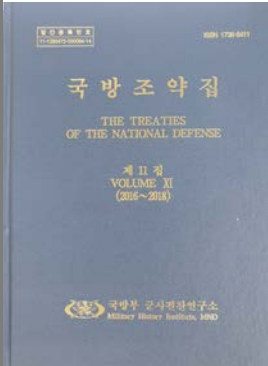


〈 임용자 신고 〉



〈 퇴직행사 〉

신간 도서 소개

구 분	내 용
 국방조약집 THE TREATIES OF THE NATIONAL DEFENSE 제 II 권 VOLUME II (2016~2018)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Military History Institute, MOU 국방조약집 제11집 • 박균용(국방사부) • 4×6배판(양장) • 2021. 6. 31.	국방조약집은 국방·군사 외교상의 조약·협정·합의각서·양해각서·합의서 등 국제적으로 체결된 자료를 연도별 일자순으로 종합정리하여 발간하는 정기역사서로 제1집(1945~1980)부터 제10집(2013~20 15)까지 발간하였으며, 2~3년 주기로 발간하고 있다. 이번에 발간한 국방조약집 제11집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세계 43개 국가들과 군사교류활동을 통해 국방·정보·작전·인사·군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둔 국방·군사관련 조약 88건을 수록하였다. 본 책자와 CD는 국방부 및 합참의 국·실,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 연합사, 각군 본부, 작전사급 이상 부대, 정부 부처, 국회, 공공도서관, 유관 학술기관 및 언론기관 등에 배부되었다. 연구소에서 발간하는 조약집은 국방분야의 다변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향후 국방·군사조약을 체결하는데 도움은 물론, 군사외교정책 수립 시 연구 및 정책자료로 널리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 기증은 군사사 연구의 생명입니다.

〈정보자료실 제공〉

군 관련 자료를 소장하고 계신 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연구소는 최적의 자료 보존 장비와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여러분이 제공한 자료는 생생한 역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자료기증안내〉

◇ 수집대상자료

- 전사자료 : 한국전쟁, 월남전쟁에 관한 피아 작전관계 문서, 지도, 사진 등 전사자료와 참전증언 자료
- 군사사 자료 : 군사적, 학술적 가치가 있는 군사문헌, 고증 자료

◇ 수집방법

- 소장자료를 아래 주소로 보내주시거나, 전화 또는 서신으로 소장자료 제공 의사를 알려 주시면 출장 방문하여 수령하겠습니다.

(비제공 자료는 복제 후 반환)

※ 기증해 주신 자료는 영구 보존되며 장병 및 국민들에게 공개 활용됩니다.

◇ 연락처

- 주 소 : (☎04353)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9(용산동 1가 8번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정보자료실
- 전 화 : (일반) 02)709-3188, 3199
(군) 900-1686, 1688

〈자료이용안내〉

◇ 공개자료 종류

- 장 서 : 역사, 군사도서 등
- 사 료 : 한국전쟁, 월남전쟁, 국방, 군사사, 수기 등
- 기 타 : 학술논문, 수기, 회고록, 간행물 등

◇ 장 소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정보자료실(전쟁기념관 4층)

◇ 이용시간

- 평 일 : 09:30~17:30
-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 휴무

◇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

- 주 소 : www.imhc.mil.kr
- 주요내용 : 소장도서목록, 연구소 역대발간서적 원문서비스,
거제도포로수용자 / 호국전몰용사공훈록 DB 검색 등

『軍史』誌 投稿案内

1. 원고 내용 및 범위

- 가. 국내외 군사정책 / 전략 · 군사제도 · 전쟁 / 전투에 관한 역사적 내용
 - 나. 한국의 국방 및 안보와 유관한 정치사 · 외교사 · 軍事史 분야에 관한 내용
 - 다. 가 · 나항과 관련된 연구논문, 자료소개, 서평(102호부터 신설, 별도 이메일 접수), 연구동향 등
 - 라. 기타 군사편찬연구소 연구활동과 부합되는 글
- ※ 투고 논문은 다른 학술지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함.

2. 원고 작성 요령

- 가. 원고는 한국어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한문과 원어는 꼭 필요한 경우로 제한하고 첫 번에 한하여 괄호 안에 표기함.
- 나. 원고 분량은 각주를 포함하여 200자 원고지 150매 내외
- 다. 註는 각주를 원칙으로 하고 각주 번호는 반괄호 안에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함. 각주의 표기는 저자, 「논문」, 『게재지 또는 저서』, 발행처, 발행연도, 페이지의 순서로 함.

예 : 홍길동, 「00에 관한 연구」, 『군사』 제80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1, 99~101쪽.

- 라. 외국어로 된 경우 각주의 표기는 저자, 서명, 발행지, 발행처, 발행연도, 쪽수의 순서로 하고 서명은 이탤릭체, 쪽수는 'p', 'pp'로 표기한다.

예 : Hong Gildong, "History of Republic of Korean Army", *Military History*, Vol. 82, (2012, 3), p.40.

Hong Gildong, *Korean Military History*(New York: Mcgrow-Hill, 2010), pp.100~110.

마. 참고문헌은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된 모든 문헌의 자세한 문헌정보를 논문 말미의 참고문헌에서 명시.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되지 않은 문헌은 포함시키지 않음.

바. 참고문헌은 인문학에서 주로 사용하는 시카고 스타일을 적용

사. 참고문헌 중 전자출판된 학술지 논문은 저자명, 논문제목, 학술지명 및 발행호수(발행연도) : 페이지수, DOI 또는 UCI 표기

예1 : UCI 홍길동, “대한민국의 역사”, 『군사』 103호(2017):330-359,
http:// uci.or.kr /G704-001528.2017..103.010

예2 : DOI 홍길동, “대한민국의 역사”, 『군사』 103호(2017):330-359,
http:// doi.org/10.12345 / mh.2017.105..103.

※ DOI 정보는 해당논문에서 식별할 수 있으나 UCI 정보는 한국연구재단의 한국연구자식별정보(KCI)에서 식별할 수 있음.

아.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존 『軍史』지 예규를 참고하기 바람.

3. 투고 요령

가. 원고는 그대로 게재할 수 있는 완성된 형태의 글 파일(000.hwp)이어야 하며 원고 제출은 군사지투고시스템에 탑재하여야 함.

※ 최초 투고시 저자 이름 삭제(파일명 포함), 이후 수정논문 탑재시 저자이름을 포함

나. 군사지투고시스템은 인터넷에서 군사편찬연구소 홈페이지 우측상단에 바로가기로 접속할 수 있으며, 논문과 투고계획서(국문 및 영문초록), 저작물이용동의서, 논문유사도 검사결과서를 탑재하여야 함.

1) 투고계획서와 저작물이용동의서의 양식은 군사지투고시스템의 공지사항에서 다운받아 사용

2) 논문유사도검사결과서는 한국연구재단의 KCI의 논문유사도 기능을 활용하여 결과서를 다운받아 제출

다. 공동집필의 경우, 대표집필자 명의로 ‘투고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집필자는 각주에 표기함.

- 라. 심사가 끝난 후 수정논문을 작성하여 논문유사도를 검사결과서,
수정문 요약본과 함께 군사지투고시스템에 탑재
- 마. 세부사항은 군사지투고시스템의 공지사항에서 확인

4. 원고 심사 및 고료

- 가. 원고의 게재 여부는 당 연구소에서 심의를 거친 후 결정함.
- 나. 접수된 원고는 게재 여부에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음.
- 다. 게재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함.

※ 국방부 본부 및 산하기관의 공무원, 군인, 군무원에게는 소정의 격려품(기념품)을 지급함.

- 라.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당 연구소에 귀속됨.

5. 발간시기 및 원고 접수기간

연간 4회 발간(3월 15일, 6월 15일, 9월 15일, 12월 15일)함. 따라서
1월 1일까지 접수된 원고는 3월에, 4월 1일까지 접수된 원고는 6월에,
7월 1일까지 접수된 원고는 9월에, 그리고 10월 1일까지 접수된 원고
는 12월에 게재함.

6. 문의/연락처

- 가.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9(우편번호 : 04353)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軍史』誌 편집위원회

- 전화 : 02-748-1667(김태헌)
- FAX : 02-709-3111
- E-mail : imhc2@mnd.go.kr

- 나. 연구소 인터넷 홈페이지

www.imhc.mil.kr

내용 : 연구소 소개, 소식, 신간안내, 회원모집,
정보자료실(소장도서, 인명DB검색 등)

연구윤리예규

군연-예16

제정 2007. 7. 1

부분개정 2008. 12.1

부분개정 2009. 11.1

부분개정 2017. 8. 1

<목 차>

제1장 총 칙

제 1 조	목	적		253
제 2 조	적용대상		253	
제 3 조	적용범위		253	
제 4 조	용어의 정의		253	
제 5 조	연구 부정행위의 범위		254	

제 2 장 연구자와 연구소의 역할과 책임

제 6 조	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255
제 7 조	연구소의 역할과 책임		256

제 3 장 연구진실성 검증

제 8 조	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257
-------	--------------	-------	-----

제 9 조	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	257
제10조	예비조사 결과의 보고	257
제11조	본 조사 착수 및 기간	258
제12조	조사위원회의 구성	258
제13조	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259
제14조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259
제15조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	260
제16조	판 정	260
제17조	본 조사 결과보고서의 제출	260

제 4 장 검증 이후의 조치

제18조	연구지원기관 등에 대한 자료 제출	261
제19조	결과에 대한 조치	261
제20조	기록의 보관 및 공개	262
부 칙		262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 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 부정행위 발생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예규는 본 연구소 내 연구편찬 활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있는 모든 연구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진실성 검증과 관련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예규에 의한다.

제4조(용어의 정의)

1. “연구 원자료”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자가 실험, 관찰, 조사 등을 거쳐 수집한 가공 이전의 자료와 문헌 등을 말한다.
2. “연구자료”란 연구 원자료를 가공한 자료와 이를 활용한 2차 자료 및 문헌을 말한다.
3. “연구결과”란 연구자가 연구 활동을 통해 얻은 연구자료를 활용하여 도출한 체계화된 결론을 말한다.
4. “연구결과물”이란 연구자가 연구 활동을 통해 최종적으로 얻은 결과를 기술한 보고서·논문·간행물·단행본 등의 학술적 지식재산을 말한다.

제5 조(연구 부정행위의 범위)

① 연구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사료,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 사료·사진·증언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부당한 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기여를 한 연구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연구자와 동등하거나 유사한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6. 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②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본 연구소 또는 연구지원기관에 알린 자를 말한다.

③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본 연구소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

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 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예비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⑤ “본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⑥ “판정”이라 함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 2 장 연구자와 연구소의 역할과 책임

제 6 조(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연구자는 연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연구대상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공정한 대우를 한다.

② 연구대상자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이 보호되어야 한다.

③ 사실에 기초한 정직하고 투명한 연구를 진행한다.

④ 전문 지식을 사회에 환원할 경우 전문가로서 학문적 양심을 견지한다.

⑤ 새로운 학술적 결과를 공표하여 학문의 발전에 기여한다.

⑥ 자신 및 타인의 저작물 활용 시 적절한 방법으로 출처를 밝히는 등 선행 연구자의 업적을 인정하고 존중한다.

⑦ 연구계약의 체결, 연구비의 수주 및 집행 과정의 윤리적 책임을 견지한다.

⑧ 연구비 지원기관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연구결과물

에 연구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를 명시한다.

⑨ 사실에 기초한 정직하고 투명한 연구를 진행한다.

제 7 조(연구소의 역할과 책임)

① 연구소는 연구자가 연구에 전념하고 연구윤리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연구 환경과 연구 문화를 조성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연구소는 연구윤리 확립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연구윤리 예규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연구소는 연구윤리를 확보하고 부정행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연구수행 과정에서의 갈등이나 분쟁을 중재하거나 조정하는 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연구소는 부정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해 검증·판단하는 기구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⑤ 연구자가 연구수행 과정에서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부정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연 1회 정기적으로 연구윤리 교육을 실시한다.

⑥ 연구소는 교육부장관 또는 상급기관의 장이 연구윤리 실태 조사 등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업무를 수행할 때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⑦ 연구소는 인지하거나 제보 받은 부정행위 의혹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하여야 하며, 교육부장관, 전문기관 및 대학 등으로부터 소속 연구자의 연구부정 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 또는 자료를 요청받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 3 장 연구진실성 검증

제 8 조(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 ① 제보자는 기획운영실장에게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에 한하여 허용한다.
- ②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③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만 5년 이전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제 9 조(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

- ① 예비조사는 신고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 소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 ②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1. 제보내용이 제5조 제1항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3. 제보일이 시효기산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 ③ 예비조사는 기획운영실에서 담당하되,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또는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 10 조(예비조사 결과의 보고)

- ① 예비조사 결과는 소장의 승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연구지원 기관과 제보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도록 한다. 다만 제보자가 익명인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②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3. 본 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4. 기타 관련 증거 자료

제11조(본 조사 착수 및 기간)

① 본 조사는 소장의 예비조사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되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본 조사 수행을 위한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본 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한다.

③ 조사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소장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고 기간연장 요청을 하여야 한다.

제12조(조사위원회의 구성)

① 조사위원회는 소장이 임명(위촉)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조사위원회 위원(위원장)은 연구편찬분야 연구원으로 구성하고,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반드시 군사사(軍事史)분야 외부전문가 1인 이상 포함하여 위촉한다.

③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갈등 관계가 있는 자를 조사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아니된다.

- ④ 본 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조사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13조(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 ① 조사위원회는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 ②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소장의 승인을 얻어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해당 연구자료의 압수·보관 등을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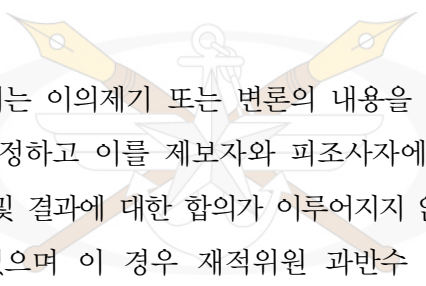
제14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 ①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② 소장은 제보자가 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은 경우 피해를 원상회복하거나 제보자가 필요로 하는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 ③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④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및 기관장과 관계 직원은 조사 및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조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15조(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16조(판정)

- 
- ① 조사위원회는 이의제기 또는 변론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 ② 조사내용 및 결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표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 및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본 조사 결과보고서의 제출)

- ① 조사위원회는 판정 후 10일 이내에 본 조사 결과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라 한다)를 소장에게 보고한다.
- ② 최종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 3.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 4. 관련 증거 및 증인

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6. 조사위원 명단

제 4 장 검증 이후의 조치

제18조(연구지원기관 등에 대한 자료 제출)

- ① 최종보고서는 소장 승인을 득한 후 10일 이내에 해당 연구과제를 지원한 기관에 제출하며, 상급기관 등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선 조사과정 중이라도 즉시 연구지원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법령 또는 해당 규칙을 위반한 경우
 2.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그 밖의 연구지원기관 또는 공권력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19조(결과에 대한 조치)

- ①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해 조사위원회는 소장에게 징계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 ② 징계조치에 관한 사항은 다른 관련 규정에 의하거나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0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 ① 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기획운영실에서 보관하며, 조사 종료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② 최종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조사위원·증인·참고인·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예규는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예규는 200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예규는 200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연구윤리 질의/응답〉

Q) 학위논문이 심사는 완료되었으나, 아직 출판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처를 밝히고 학술지 논문으로 투고할 수 있는가? 이때 게재가 될 경우 학위논문을 학술지에 다시 출판하는 것이 중복게재에 해당되지는 않는가?

A) 국내·외를 막론하고 학위논문을 활용하여 학술지 논문으로 게재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학위논문이 최종 인쇄되기 전에 학위논문의 내용을 활용하여 학술지 논문에 투고하면서 출처를 밝혔고 편집인이 논문게재를 승인하였다면 중복게재라고 할 수 없다. 중요한 것은 이전 저작물에서 활용되는 부분에 대한 출처를 표시하고 이를 이후 저작물을 출판하는 관계자에게 미리 알려 최종적으로 게재여부 판단을 받는 것이다.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 훈령, '18. 7. 17. 개정)

제12조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①항

5.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정경(正經) 세상

유능한 안보
튼튼한 국방

부정청탁의 손길 나라가 무너집니다.



대한민국 국방부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본 『軍史』誌는 한국연구재단의 등재 학술지입니다.
(’08년 선정)

📖 편집위원장

심헌용(군사편찬연구소)

📖 편집위원(가나다순)

강창부(공군사관학교)	기세찬(국방대학교)
김강식(한국해양대학교)	김창석(강원대학교)
박걸순(충북대학교)	박상철(전남대학교)
박태균(서울대학교)	신명호(부경대학교)
심승구(한국체육대학교)	오영섭(경희대학교)
윤경진(경상대학교)	박종상(군사편찬연구소)
이한우(서강대학교)	전호수(군사편찬연구소)
최정준(군사편찬연구소)	홍석률(성신여자대학교)

📖 편집간사

김태현(군사편찬연구소)

軍 史 2021/9(第120號)

2021년 9월 8일 印刷

2021년 9월 15일 發行

發行處 國防部 軍史編纂研究所

(우편번호 : 04353)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9

TEL : 748-1667 FAX : 709-3111

印刷處 국방출판지원단 (M21080506)

本誌에 실린 論文內容은 當 研究所의 公式見解가 아님.

Military History

Vol. 120. 2021. 9.

- | | |
|------------------|---|
| Jeon, Ye-mok | The Process of 'Biological Warfare' Allegation and Behind-The-Scenes Accounts during the Korean War |
| Lee, Dong-won | The Design of Cold War Initiative for the region of East Asia and the Plan for Composition of Korea-U.S. Relations by the delegation of Van Fleet |
| Shim, Ho-sub | The Ideal and Reality in Employing and Operating ROKFV's Company Level Tactical Base during the Vietnam War |
| Choi, Deok-kyoo | Russia's Far East defense plan after the Russo-Japanese war and a policy confrontation between minister of Finance and minister of the Army |
| Moon, Kwang-kyun | Actual Conditions and Characteristics of Special Army Officers of Anheung, Chungcheong-do Province in the Late Joseon Dynasty |

Published by Institute for Military History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Seoul, Korea



國防部 軍史編纂研究所
 Institute for Military History.mnd

